

Territory and Seas

영토해양연구

Vol. 28 Winter 2024





차례

특집논문

- 장정수 ■ 삼척 지역 지리지와 읍지에 보이는 울릉도·독도의 기술 변화 007
전상욱 ■ 삼척 향길고택문고 소장 조선시대 재정 자료의 분석
- 『신상정사목(新詳定事目)』을 중심으로 043

연구논문

- 최진열 ■ 고구려의 경제 지리
- 농업·광업·목축·소금 생산의 지리적 분포를 중심으로 075
소순규 ■ 조선 전기 지리지 속 우산·무릉도 기사에 대한 제언
-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교수의 논설에 대한 비평을 겸하여 159
박병섭 ■ 독도에 대한 현상유지원칙(Uti Possidetis)의 적용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187

자료소개

- 석주희 ■ 일본이도(離島)센터 계간지 『시마(しま)』를 통해 본 낙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33

서평

- 이 훈 ■ 『독도해녀』: 김수희 저, 2023, 동북아역사재단 247
최보영 ■ 『울릉도 1882-검찰사 이규원의 시간 여행』:
김영수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255

영토·해양 일지

엄태일 | 영토·해양 일지 272

규정 및 규칙

편집위원회 규칙 280

발행 및 심사규정 282

투고 요령 286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290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302

특집논문



- **장정수** | 삼척 지역 지리지와 읍지에 보이는 울릉도·독도의 기술 변화
- **전상욱** | 삼척 항길고택문고 소장 조선시대 재정 자료의 분석 - 『신상정사목(新詳定事目)』을 중심으로

삼척 지역 지리지와 읍지에 보이는 울릉도·독도의 기술 변화

장정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관찬지리지의 울릉도·독도 기술
- III. 『척주지』의 발간과 울릉도·독도 기록의 변화
- IV. 수토제 이후 울릉도·독도 기술의 증보 양상
- V. 근현대 삼척 사찬읍지에 수록된 울릉도·독도
- VI. 맺음말

1. 머리말

오늘날 울릉도(鬱陵島)·독도(獨島)의 역사 연구는 주로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감이 크다. 512년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于山國) 정벌부터 1900년 칙령 41호에 의한 울도군(鬱島郡)의 설치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일관된 논리가 정립해 있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三國史記)』,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여지도서(輿地圖書)』, 『척주지(陟州誌)』 등에 수록된 울릉도·우산도(독도)² 관련 내용을 열거하는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512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울릉도·독도의 관계나 인식 혹은 관련 역사 서술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대별 흐름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지역적 특징도 충분히 고려한 입체적인 분석이 요망된다.

강릉·삼척 등 강원도 영동 지역은 중앙과 울릉도·독도를 잇는 연결고리였다.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가 하슬라(何瑟羅: 강릉)의 군주(軍主)였다는 점이나 17세기 말 이후 시행된 울릉도 수토제(搜討制)를 관장한 직책이 삼척의 영장(營將)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상북도에 속하지만 조선시대에는 강원도에 속했던 울진 역시 울릉도·독도와 관련해서 중요한 지역이다. 이 중에서도 삼척은 울릉도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된 계기인 수토제의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전통시대 울릉도·독도의 소속 지역은 대체로 울진으로 알려져

* 논문 투고일: 2024.10.15, 심사 완료일: 2024.11.6, 게재 확정일: 2024.11.15.

1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대표적인 성과로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참조.

2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于山島)라고 불렀다. 간혹 기록에 따라서는 우산도가 독도를 지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적어도 『세종실록』에 수록된 우산도는 독도를 지칭했다고 생각된다. 우산도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도리어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리 정보가 확장되면서 혼선이 생겼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권원으로 자리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우산도와 독도를 함께 쓰는 대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괄 '독도'로 표기했음을 밝힌다.

있다. 『고려사(高麗史)』 「지리지」(地理志)의 울진현조에 울릉도의 기록이 처음 등장한 이래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그랬기 때문이다. 적어도 16세기까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 섬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세기 『여지도서』에는 울릉도의 소속 지역이 삼척으로 바뀌지만, 이 사실은 그다지 강조되지 못하였다. 수도제가 시행된 이후, 울릉도는 울진에서 삼척으로 소속처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울릉도·독도 관련 기술도 수도 기록을 중심으로 증보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동안 삼척을 비롯한 영동 지역과 울릉도·독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드물었다. 울릉도·독도에 대한 조정의 공식적 관리정책이었던 수도제에 관한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³ 삼척이라는 지역을 주목한 경우는 드물다. 아마도 울릉도·독도가 울진현에 소속되었다는 통설의 강한 영향력과 행정적인 소속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황에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실제로 삼척포진(三陟浦鎭)의 첨절제사(僉節制使)를 겸한 삼척영장의 수도는 군사적 차원의 관리정책에 가까웠다.⁴ 그럼에도 수도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지리지상 울릉도·독도의 기술 양상이 변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삼척에 관한 관찬지리지와 사찬읍지의 내용을 분석하여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이 변화한 양상을 추적한다. 이를 위해서 『세종실록』 「지리지」를 비롯한 관찬지리지의 울릉도·독도 기술은 물론 허목(許穆)의 『척주지』에서 출발하는 삼척 지역 사찬읍지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소장 중인 ‘항길고택문고’의 『척주지』 2종과 『진주지(眞珠誌)』 역시 분석 대상으로 삼아 19세기 이후부터 20세기에 이르는 기술의 변

3 대표적인 연구로 宋炳基, 1998, 「朝鮮後期 鬱陵島 經營: 搜討制度의 확립」, 『震檀學報』 86; 유미림, 2009, 「장한상의 울릉도 수도와 수도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韓國政治外交史論叢』 31(1); 손승철, 2010, 「조선시대 空島政策의 허구성」과 「搜討制」 분석, 『이사부와 동해』 1; 배재홍,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도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도제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이사부와 동해』 14; 신태훈, 2019, 「삼척영장과 울릉도 수도제」, 『이사부와 동해』 15; 백인기, 2022, 「조선후기 울릉도 수도」, 『이사부와 동해』 18·19; 신태훈, 2023, 「조선시대 울릉도 수도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희영, 2023, 「조선후기 울릉도 수도의 주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日本文化學報』 98 등을 꼽을 수 있다.

4 장정수, 2023, 「조선시대 울릉도 관리정책의 변화: 수도제의 시행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6.

화도 살필 것이다.⁵ 이를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울릉도·독도 관련 기술이 풍부해지고 체제 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변화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관찬지리지의 울릉도·독도 기술

울릉도·독도는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산국의 영토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을 영토 편입의 계기로 파악하고 나아가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으로 꼽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이 기록된 『삼국사기』 「본기(本紀)」는 우산국이 아닌 신라의 관점에서 기술되었고, 「열전(列傳)」은 이사부의 업적을 다룬 것이다. 그에 반해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신라의 동쪽과 남쪽 경계를 대해(大海)로 기록하여 우산국이나 울릉도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⁶ 무엇보다도 우산국은 신라에 내조(來朝), 헌공(獻貢)했음이 확인될 뿐, 영토 편입으로 볼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산국이 이후에도 한동안 독자적인 정치체로 존속했음을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⁷

『삼국사기』의 「본기」와 「열전」 내용은 우산국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전자는 소국을 병합하면서 동해안으로 북상하던 신라의 모습을, 후자는 기지를 발휘하여 동해의 우산국을 정벌한 이사부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다.⁸

5 항길고택문고는 483책의 고서(古書)와 1,072건의 고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 문고의 '항길고택일기' 12책은 울릉도 수토제와 관련한 중요한 기록들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이원택, 2023,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역주와 그 사료적 가치」, 『동북아역사논총』 81), 항길고택문고 소장 김종연(金宗彦)의 「척주지」 상(上)·하(下), 심탁(沈鐸)의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 그리고 해방 이후 작성된 「척주지」[전(全)], 「진주지」 등은 영인본과 번역본으로 발간되기도 했다(삼척문화원, 1991, 「척주집(陟州集)」, 삼척문화원;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7, 「원역 척주집」, 삼척시; 배재홍, 2001, 「국역 척주집」, 삼척시립박물관; 배재홍, 2003, 「국역 척주선생안」, 삼척문화원).

6 『삼국사기』 권34, 잡지(雜志) 제삼(第三), 지리(地理)1.

7 우산국의 역사에 관해서는 김호동, 2009, 「울릉도의 역사로서 '우산국' 재조명」, 『獨島研究』 7; 최희준, 2022, 「신라의 우산국 복속과 연륙항로」, 『사학연구』 147 등이 참고된다.

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智證麻立干), 13년 6월; 『삼국사기』 권44, 열전4, 이사부(異斯夫).

이 사건이 신라가 강릉·삼척 일대를 장악하기 위해 제해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해석은 꽤 설득력을 가진다. 영토 차원의 병합이라기보다는 우산국의 복속, 신라와 우산국의 연계를 뜻한다는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⁹

이렇게도 이 사건 이후 우산국의 존재 양태를 파악할 만한 추가적인 기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930년에야 우산국은 고려에 내조하는 것으로 역사 기록에 재등장한다.¹⁰ 고려가 통일을 이룬 것이 936년이고, 그보다 한 해 앞서 신라의 귀부가 이루어졌으므로 우산국은 복속의 대상을 신라에서 고려로 바꾸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우산국은 적어도 11세기까지 몇 차례 『고려사』에 등장하였다가 12세기에 이르러서 사라지게 된다.

우산국이 사라진 뒤, 울릉도는 빈 점으로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12세기에 이르러 고려는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울릉도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1141년에는 명주도감창사(溟州道監倉使) 이양실(李陽實)이 사람을 파견했고, 1157년에는 명주도감창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 김유립(金柔立)이 왕명을 받들고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 가운데 김유립은 거주 가능성을 탐지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되었으나 조사 결과 인물의 거주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게 된다.¹¹ 대몽항쟁기에는 최충헌이 '동군(東郡)'¹² 백성들의 입보(入保)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 일련의 시도는 거친 해양 환경을 극복하지 못해 실패했지만 이후에도 울릉도는 원 간섭기에 별목처로 쓰이거나 유배지 등 제한적으로 활용된 사실이 있다.

이상은 우산국이 12세기경까지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신라·고려에 내조했다는 점, 12세기 이후 고려왕조에서 울릉도에 행정구역의 설치를 시도한

9 김정숙, 2000, 「古代 各國의 동해안 運糧과 防禦體系: 신라를 중심으로」, 『전근대 동해안 지역 사회의 운용과 양상』, 경인문화사, 29~34쪽.

1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13년(930) 8월 병오(15일).

11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仁宗) 19년(1141) 7월 기해(3일); 『고려사』 권18, 세가18, 의종 11년(1157) 5월 병자(12일).

12 동군은 동계(東界) 지역 중에서도 울릉도와 가까운 강원도 영동 지역을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침 등을 보여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울릉도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기는 어려워지만, ‘역내(域內)’로 간주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지리지 속 우산국, 울릉도는 어떤 모습일까. 울릉도는 『고려사』의 「지리지」 울진현조에 처음 등장한다. 『고려사』 「지리지」는 수록 내용이 매우 빈약한 편으로 후대의 그것과 비교하면 건치연혁(建置沿革)이 간략히 정리된 수준이다. 그런데 울진현조는 내용이 대부분 울릉도(鬱陵島)로 채워져 있다.¹³ 신라 지증왕 대 울릉도의 복속, 930년 백길(白吉)·토두(土豆)의 고려 내조와 현공, 1157년 명주도감창 김유립의 울릉도 파견, 울릉도(무릉)와 우산도가 2개의 섬으로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좋으면 눈으로 보인다는 ‘소문’ 등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적인 내용을 간략히 수록한 정도인데, 김유립의 파견과 그가 보고한 내용이 전체 분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고려사』의 「지리지」 내용이 이처럼 간략한 것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종실록』 「지리지」가 편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세종실록』의 「지리지」는 관원·호구(戶口)·인구·군정·토성(土姓)·물산·관방(關防)·역(驛)·봉화(烽火) 등의 항목을 구분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남긴 점이 『고려사』와 다르다.

『세종실록』에서도 울릉도는 울진현조에 포함되었으며, 『고려사』의 내용을 따르면서도 훨씬 구체화되었다. 울릉도는 봉수조에 이어서 ‘우산무릉이도(于山武陵二島)’로 배치되었다.¹⁴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再縣正東海中)’라고 한 점이나 우산도와 무릉도의 거리가 가까워서 날씨에 따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점은 『고려사』와 같다. 그밖의 내용은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백길·토두의 내조, 김유립의 파견, 안무사 김인우(金麟雨)의 파견이다. 이 가운데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서술이 구체화되었고, 안무사 김인우의 파견이 새로 추가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울릉도·독도에 관해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13 『고려사』 권58, 지(志) 제12, 지리(地理)3, 동계(東界), 울진현(蔚珍縣).

14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江原道), 삼척도호부, 울진현(蔚珍縣).

있다. 먼저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신라의 영역 확대나 개인의 업적으로 남지 않고 강역(疆域) 차원에서 다루어지게 된 계기였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와 달리 『세종실록』 「지리지」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에 대해 ‘울릉도·독도(우산도)’라는 특정 섬이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논리를 제공한다. 『고려사』 「지리지」 역시 우산국 정벌을 언급만 했을 뿐, 이사부의 이름도 기재하지 않을 정도로 간략히 기술했다. 그에 반해 『세종실록』 「지리지」는 강역에 속한 섬으로 울릉도·독도를 기술한 첫 번째 관찬 사료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김인우의 안무사 파견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수록한 점이다. 김인우는 태종 대와 세종 대에 걸쳐 두 차례 울릉도를 방문하여 현지민들을 쇄출하였다. 조선 건국 초에는 왜구(倭寇)의 침구가 잦아서 해방(海防)에 대한 관심이 한창 고조될 무렵이었다.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어 점차 수군을 줄이고 연해의 방비에 치중하게 되었다.¹⁵ 이 과정에서 울릉도는 왜구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된 현지민들을 앞세운 왜구들이 강원도 등지에 출몰할 우려가 점차 컸다. 1403년 태종은 울릉도의 거주민들에게 육지로 나올 것을 지시했고¹⁶ 김인우의 안무사 파견은 그 연장선상에 놓인 조치였다. 이렇게 조선이 ‘거민쇄출(居民刷出)’¹⁷을 추진한 결과 울릉도는 빈 섬이 되었지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사실은 이를 자국의 경내로 인식했음을 뜻하고 아울러 어떤 방식이든 울릉도의 경영이 현재 진행형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울릉도를 강원도의 울진현조에 수록한 것이다. 태종 대만 해도 ‘무릉도(武陵島)’가 강릉도(江陵道)에 속한다고 할 뿐 울진현을 지명한 것은 아니었다. 『태종실록』의 편찬은 『고려사』와 『세종실록』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15 장정수, 2023, 앞의 글, 12~14쪽.

16 『태종실록』 권6, 태종 3년(1403) 8월 병진(11일). “命出江陵道武陵島居民于陸地. 從監司之啓也.”

17 이 시기 조선의 거민쇄출정책에 관해서는 손승철, 2010, 앞의 글 참조.

므로 안무사 김인우의 파견은 물론 무릉도순심경차관(茂陵島巡審敬差官) 남회(南會)와 조민(曹敏)의 파견¹⁸을 통해서 울진현에 좀 더 가깝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듯하다. 참고로 남회(南顯)로 등장하는 남회는 울진현 출신인이었다.¹⁹ ‘정동’이라는 방위 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진현 경내의 죽변곶(竹邊串)은 울릉도와외의 최단거리에 위치했다. 울릉도의 관련 내용을 울진현조에 수록한 것을 두고, 행정적으로 울진에 예속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서술은 이후의 지리지 편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술 방향은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지리지」의 항목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화되었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사부에 대한 기록은 강릉과 삼척에도 수록되었다. 강릉과 삼척은 모두 훌륭한 치적을 남긴 관원을 기록한 명환(名宦)조에 이사부가 실렸다. 특히 강릉의 경우 그가 하슬라주(何瑟羅州)의 군주(軍主)가 되어 우산국을 정벌한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되었다.²⁰ 그에 반해 삼척의 명환조에는 지증왕 6년 실직주(悉直州)의 군주(軍主)가 된 사실만을 남겼다.²¹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사는 모두 울진현조 산천(山川) 항목에 수록되었다.²² 이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에 기반하면서도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먼저 산천 부분에 들어가서인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세 봉우리를 묘사한 부분이다. 또 “[두 섬이 거리가] 서로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서로 보인다”라는 기록이, 날이 좋으면 산봉우리와 산 밑의 모래톱이 보이며 순풍을 탈 경우 이틀 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보다 상세한 설명으로 바뀌었다. 다음은 새로 확인한 내용을 추가한 흔적들이다. 강릉부의 명환조와 중복임에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상세히 기록되었

18 『세종실록』 권81, 세종 20년(1438) 4월 갑술(21일).

19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강원도, 울진현. “世宗二十年, 遣縣人萬戶南顯率數百人, 往搜逋民.”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강릉대도호부.

2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강원도, 삼척도호부.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강원도, 울진현.

고, 930년 백길과 토두의 헌공 사실, 고려 의종 대 김유립의 파견 사실에 더하여 무인정권기 최충헌(崔忠獻)이 무릉도로 동쪽 지방(東郡)의 백성들을 이주시키고자 한 사실이 추가되었다. 김인우의 파견 이후 1438년 남호를 파견한 사실도 새로이 덧붙여졌다.²³ 아울러 성종 연간 삼봉도(三峯島)를 탐사한 박종원(朴宗元)이 울릉도에 정박했던 사실도 추가된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신라가 강릉·삼척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제해권 장악의 일환이었으나 한반도와 울릉도·독도의 커넥션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 계기이기도 했다. 이후 우산국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재하면서도 12세기에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 고려왕조에 내조했다. 이후 고려왕조는 행정구역의 설치나 해도 입보처(海島入保處)로의 활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거친 해양 환경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선왕조 역시 초기에는 울릉도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방 차원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세종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으로 이어지는 관찬지리지는 이 일련의 사실들을 수록하고 또 보완해 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울릉도·독도가 역내(域內)의 도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울릉도를 서술할 때,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을 직접 인용한 것은 해당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Ⅲ. 『척주지』의 발간과 울릉도·독도 기록의 변화

조선왕조는 지리지를 편찬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의 울진현조에 수록하고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을 명시함으로써 그 역사적 권원을 만들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삼척부는 이사부가 실직주의 군주를 지낸 것 외에 이

23 이때 파견된 인물은 무릉도순심경차관 남회와 조민이다[『세종실록』 권81, 세종 20년(1438) 4월 갑술(21일)], 기록을 대조해 보면 동일인인 남호와 남회를 달리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렇다 할 연관성이 없는 듯했다. 울진현조에 수록된 울릉도와 독도는 삼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17세기 중반에는 울진이 아닌 삼척에 울릉도와 독도의 기록이 수록되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1662년 삼척부사 허목(許穆, 재임 1660.10~1662.8)이 『척주지』를 저술하면서 시작되었다. 허목은 1660년 10월 삼척에 부임하여 1662년 8월까지 부사로 지내면서 다양한 치적을 남겼다. 허목은 목조(穆祖)의 능묘가 있는 삼척에 관한 제대로 된 읍지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이 책을 지었음을 강조했다. 그가 쓴 서문에 의하면 틈틈이 관련 기록물을 찾고 또 인근의 이속(吏屬)들을 방문하여 새로운 자료를 확보해 가며 총 126가지의 세목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²⁴ 하지만 상(上)·하(下)로 구성된 허목의 『척주지』는 항목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허목의 『척주지』에도 울릉도·독도에 관한 내용이 빈출하지는 않는다. 건척연혁 부분에서 505년 이사부가 실직주의 군주가 된 사실을 기술했으나 우산국 정벌을 논하지 않았고, 대신 성씨(姓氏) 부분에서 505년 실직주의 군주를 지낸 김이사부(金異斯夫)가 512년 하슬라주의 군주로서 우산국을 평정했다고 간략히 기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삼척 부분보다는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허목 역시 울릉도를 『척주지』에 수록해야 할지 고민한 듯하다. 본문에 해당하는 상·하가 아닌 별도의 부록(附)을 두고 관련 사실을 썼기 때문이다. 또 그 안에서도 ‘부의 동쪽’이 아니라 “울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기술하였다.²⁵ 허목으로서는 관련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기존의 기록을 참고했을 것이며, 자의적으로 울진현 동쪽을 ‘삼척현 동쪽’으로 바꾸기 어려웠을 것이다.

내용 역시 이전보다 오히려 소략해졌다. 하늘을 찌르는 듯한 세 봉우리와

24 허목, 『척주지』, 서(序), “余於元年十月來守是府, 每以公事之暇, 日訪父老傳說, 又得老吏金允直·金榮鸞私藏雜記古事, 參以輿覺地誌.”

25 허목, 『척주지』, 부(附), 울릉도(鬱陵島), “在海中蔚珎之東.”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순풍이면 금새 다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달리 이들이 아니라 하루면 도착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관련 내용으로는 고려시대 김유립의 파견과 최충헌의 동군 백성 이주 시도, 태종과 세종 대 김인우와 남호의 파견 사실을 차례대로 적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이사부의 기지가 빛난 우산국 정벌의 내용은 제외시켰고, 고려 태조 대 백길·토두의 내조·헌공 사실도 빠졌다.

이처럼 허목의 『척주지』에 수록된 울릉도 기록은 이전보다 상세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감이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삼척의 읍지에 수록했지만, 울진현에 속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유지했다는 인상이 짙다. 그런데 여기서 허목이 한 가지 추가한 내용이 있다. 바로 태종과 세종 대에 안무사로 울릉도를 방문한 김인우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다.

허목이 울릉도를 『척주지』에 기록한 이유는 삼척이 김인우의 출신지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에도 김인우는 삼척 출신의 전 만호(萬戶)로 등장한다. 짐작건대, 울릉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던 당시에는 현지 사정에 무지한 관원들보다는 전직 관료라도 현지 사정에 밝고 및 동해의 해양 환경에 익숙한 인물을 보내야 했다. 삼척 출신의 김인우는 태종 대에 안무사라는 상당히 거창한 직함을 받고 울릉도를 탐사한 인물이다. 허목은 다음과 같이 그를 소개했다.

김인우는 삼척 사람이다. 지금 그의 자손들은 이족(吏族)이 되었는데 부중(府中)에 많이 산다. 김인우는 처음 남은 휘하의 군사였는데 군공을 세워 안포만화와 판장기현사를 지냈고 태종 대에 안무사가 되었다.²⁶

인용한 부분은 김인우를 소개한 전문이다. 소략하고 또 간단한 내용이지만, 몇 가지 사실을 알려 준다.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에는 전(前) 만호(萬

26 허목, 「척주지」, 부(附), 울릉도(鬱陵島), “金麟雨三陟人, 今其子孫爲吏族, 多居府中, 麟雨初以南閩麾下, 有軍功爲安仁浦萬戶·判長鬐縣事, 太宗朝爲安撫使.”

戶)로만 등장하지만, 여기서는 그가 안무사로 기용되기 전에 안인포만호와 판장기현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가 당초 항오에서 발신한 인물이며, 그의 후손들은 25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삼척의 토착 세력으로 널리 정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김인우의 후손들이 삼척의 향리 계층으로 자리를 잡은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소개한 서문에서 허목은 삼척 관련 사실들을 파악하기 위해 향리들이 사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기록들을 확인했음을 스스로 밝혔다. 현지의 토착 세력이 된 김인우의 후손들은 상당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안에는 김인우의 울릉도 파견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과 접촉하고 또 그들이 제공한 정보를 적극 활용한 허목으로서는 『척주지』 안에 어떤 형태로든 울릉도 그리고 김인우의 내용을 어느 정도 기술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한다. 허목은 울릉도와 독도가 울진현에 소속되어 있다는 통념을 유지하는 선에서 부록 형태로 『척주지』에 울릉도 내용을 싣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울릉도가 울진현에 속한다는 인식은 비슷한 시기의 또 다른 사찬읍지에 서도 확인된다. 허목의 『척주지』보다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발간된 유형원(柳馨遠)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동국여지지』는 1656년에 발간되었지만 1660년대까지 증보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척도호부의 명환조에 허목의 치적을 정리해 두었음을 감안하면 『동국여지지』의 강원도 혹은 삼척도호부 항목은 『척주지』(1662)보다 나중에 발간되거나 증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²⁷ 실제로 유형원은 스스로 『척주지』를 참고한 직접적인 흔적도 남겼다. 삼척도호부의 형승(形勝)조에 “고을이 궁벽한 해안가에 있다(邑在窮海之濱)”라는 허목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때 『척주지』에 쓰인 부사 조즙(趙職)의 상소문도 인용했다.²⁸

27 유형원,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 삼척도호부, 명환(名宦).

28 유형원,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 삼척도호부, 형승(形勝), “西歷大山, 東臨巨海, 陟州志, 府使趙職上疏云, 邑在窮海之濱, 本朝許穆云, 邑在窮海之濱, 處山谷巖峻.”

이상의 사실은 유형원이 『동국여지지』의 삼척 부분을 기술할 때는 적어도 허목의 『척주지』를 살펴보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한편, 허목이나 유형원 모두 사찬읍지를 편찬하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크게 참고했고, 이를 증보하는 선에서 크게 나아가지는 못했다. 울릉도와 독도의 기술 양상도 그러하다. 『척주지』와 마찬가지로 『동국여지지』의 강원도 편에서도 이사부는 강릉대도호부 및 삼척도호부의 명환조에 모두 등장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마찬가지로 강릉 부분에만 우산국 정벌을 소개하고 삼척에서는 실직주의 군주가 된 사실만 남겼다. 『척주지』의 부록에 담긴 울릉도 관련 사실이 『동국여지지』에는 본문의 일부인 울진현의 산천조에 기술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²⁹ 그 내용 역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며 『척주지』에 새로이 추가된 김인우 개인의 행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동국여지지』의 삼척 부분에는 울릉도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허목이나 유형원 등 17세기 중후반의 인물들은 울릉도가 울진현에 속해 있다고 여겼다. 아마도 이는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삼척의 지리지에 울릉도의 기록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척주지』에 부록 형태로나마 울릉도의 사실이 수록되면서 변화의 조짐이 일었다. 이후 『척주지』는 여러 사람에 의해 증보되었지만 모두 허목의 『척주지』를 기초로 했음을 밝혔다. 18세기 이후의 『척주지』를 비롯한 삼척 관련 기록에서 울릉도의 기록은 좀 더 다양해지고 상세해졌다. 그 이유는 장을 바꾸어 논하기로 한다.

IV. 수토제 이후 울릉도·독도 기술의 증보 양상

16세기의 대표적인 관찬지리지인 『신증동국여지승람』이라면, 18세기의

29 유형원, 『동국여지지』 권7, 강원도, 울진현.

대표적인 관찬지리지인 『여지도서』이다. 울릉도·독도 관련 기술에서는 두 지리지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여지도서』에는 울릉도 관련 기록이 삼척부에 수록되었다. 부록을 따로 두어 배치한 『척주지』와는 달리, 고적(古跡)조에 포함시켰다. 삼척부의 고적은 다시 속현(屬縣)과 도서(島嶼)로 구분되었다. 전자에는 당시 강릉에 속했던 우계현(羽溪縣) 등이, 후자에는 덕산도(德山島) 등 3개의 섬이 포함되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는 “부(府)의 동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³⁰라는 부분이다. 삼척과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세 봉우리를 묘사한 내용은 전과 대동소이하지만, 순풍이면 이를 만에도달한다고 다시 바뀌었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내용과 930년 우산국의 사절들이 고려에 내조한 사실, 고려 때 김유립의 파견이나 최충헌의 동군백성 이주 시도, 조선 태종·세종 대 안무사 김인우와 경차관 남호의 파견 등이 시간순으로 수록되었다.

추가된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허목의 『척주지』에 추가된 김인우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숙종 대 삼척영장 장한상(張漢相)의 울릉도 수도(搜討)이다. 마지막으로 수도를 3년마다 1차례씩 가는 것으로 제도화된 사실을 기술했다.³¹ 그 밖에 명환조에는 예전처럼 이사부가 포함되었다.

그런데 『여지도서』의 내용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고적조에 수록하면서도 현재 진행형인 울릉도 수도제(搜討制)를 기술한 부분이다. 이는 울릉도를 삼척에 새로이 배치하면서 정확히 어느 항목에 둘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일 것이다. 다음은 울진현에 속했다는 인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 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에서는 울릉도가 삼척부의 ‘동남쪽’에 위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혹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같은 섬이라고 하며 사방 100리로서 울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한다”³²라는 설명을 보

30 『여지도서』, 강원도, 강릉진관소속삼척부, 고적(古跡), “在府東南海中.”

31 위의 책, “肅宗遣營將張漢相, 搜討島中, 後因以爲例三年一往.”

32 위의 책, “或云, 于山·鬱陵一島, 方百里, 在海中蔚珍之東.”

됐다. 울진의 동쪽, 삼척의 동남쪽이라면 지리적인 면에서 삼척보다 울진이 가깝다고 한 셈이다. 이를 입증하듯 『여지도서』에 수록된 지도에서는 삼척이 아닌 울진 지도에 울릉도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선대의 기록을 최대한 남겨 두면서 증보하는 당시의 관행이 반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여지도서』의 울진현 부분에는 울릉도에 관한 내용이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하면 울릉도의 기록이 울진에서 삼척으로 옮겨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울릉도·독도의 내용은 울진현에서 삼척부로 이동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척주지』·『대동여지지』 이후, 새로이 『여지도서』에 추가된 내용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바로 영장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 그리고 이후에 제도화된 수토제가 그것이다. 울릉도 수토는 1694년 삼척영장 장한상, 1699년 월송만호 전회일, 1702년 삼척영장 이준명의 수토를 거치면서 영장과 만호가 교대로 3년에 1번 시행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³³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17세기 중반 『척주지』·『동국여지지』 발간 때까지만 해도 존재하지 않은 제도였다. 따라서 18세기 중반에 발간된 『여지도서』의 기록 변화는 수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여지도서』에 나타난 변화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1741년에 발간된 심탁(沈鐸)의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에 함께 수록된 삼척읍지인 ‘실지(實誌)’의 고적조에는 고죽령현(古竹嶺縣), 만경현(滿卿縣), 해리현(海利縣), 소공대비(召公臺碑), 동해비(東海碑) 등과 함께 울릉도(鬱陵島)가 수록되었다.³⁴ 특히 여기서는 울릉도가 굵은 글자로 강조되었다. 하루 만에 건너갈 수 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허목의 『척주지』를 참고한 듯하다. 여기서는 울진이나 삼척이라는 기준을 두지 않고 “바다 가운데 있는데 수로가 천 리고 파

33 장정수, 2023, 앞의 글, 31~33쪽.

34 심탁,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 병(并) 실지(實誌)』, 고적(古蹟).

도가 극히 험하다”라고 하였다.³⁵ 이 설명에서는 먼 거리와 험한 파도가 묘사되었는데, 수도관들이 여러 차례 오간 사실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담지 않고, 고려 태조 대 우산국 사신의 내조, 의종 대 김유립의 파견, 태종 대 김인우의 파견, 세종 대 남호의 파견이 차례대로 기술되었다. 『척주지』와 달리 김인우에 대한 내용은 수록하지 않았지만, 삼척영장 장한상을 파견하여 이후 영장과 월송만호가 3년 간격으로 오가고 있다는 사실은 수록했다.³⁶

이렇듯 『여지도서』의 내용은 『척주지』와 『척주선생안병실지』를 종합한 듯한 인상을 준다. 여전히 지리적으로는 울진현이 더욱 가깝다면서도 울릉도에 대한 내용이 삼척으로 옮겨진 이유는 이 두 책에서 추가된 내용, 즉 수도제에서 찾은 것이 타당하다. 삼척영장은 1672년 처음 설치되어 강원도의 유일한 수군 거진(巨鎭)인 삼척포진첨절제사(三陟浦鎭僉節制使)를 겸했다. 얼핏 겸영장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행정과 군사를 겸한 것이 아니라 육군과 수군을 통할하는 직책이었다.³⁷

정3품의 당상관인 삼척영장은 토포사를 겸하여 강원도 병마절도사나 방어사가 따로 없던 영동 지역에서는 군사훈련과 치안을 모두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삼척첨사를 겸함으로써 해방(海防)까지 주관했다. 평해(平海)의 월송만호와 ‘교대’한다고 하지만, 월송만호는 삼척포진첨절제사의 지휘를 받는 직책이었으므로 삼척은 영동의 해방 중진으로서 울릉도 수도를 관할했다고 보아야 한다.

울릉도 수도는 1693년에 발생한 ‘울릉도쟁계(鬱陵島爭界)’가 직접적인 계기였다.³⁸ 울릉도쟁계가 진행되는 동안 현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

35 위의 책, “在海中, 水路可千里, 波濤極險.”

36 위의 책, “康熙十一年壬子, 遣營將張漢相復通搜討, 至今營將與越松萬戶, 間三年交互往來.”

37 삼척영장에 관해서는 서태원, 2017, 「조선후기 三陟營將 연구」, 『이사부와 동해』 13; 배재홍, 2018, 「조선후기 三陟營將과 울릉도 搜討」, 『이사부와 동해』 14; 신태훈, 2019, 앞의 글; 장정수, 2023, 「조선후기 三陟營將의 위상과 재임실태」, 『이사부와 동해』 20 참조.

38 울릉도쟁계는 ‘안용복사건’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추이와 논쟁에 관해서는 정영미, 2020,

다는 취지에서 1694년 삼척첨사를 겸한 영장 장한상을 파견한 것이다. 장한상은 설진(設鎭)의 가부를 판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울릉도를 다녀와 「울릉도사적(鬱陵島事跡)」이라는 보고서를 올리고 인물의 거주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³⁹ 이에 따라 설진 대신 실행된 것이 정기적인 울릉도 실태 조사, 즉 수토였다.

수토제의 중요성은 정기적으로 시행된 데 있다. 앞서 안무사 김인우나 경차관 남호가 각각 삼척, 울진 출신의 전임 관료로서 일회성으로 파견되었던 것과 달리 수토는 현직 관료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편이하게 달랐다. 이는 울릉도가 조정의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관리하에 들어갔음을 의미했다. 삼척영장의 수토를 통해서 울릉도는 동해안의 해방체제 안으로 수렴되었다.⁴⁰ 따라서 더 이상 지리상의 원근이나 수로의 험이(險易)만을 기준으로 읍지에 수록할 이유가 없었다. 삼척영장이 주관하는 수토제의 실행은 지리지상 울릉도가 울진에서 삼척으로 이동한 이유이고, 그럼에도 설진 혹은 치읍(置邑)에는 이르지 못했기에 관리해야 할 ‘고적’으로 인식되었다고 생각된다.

19세기에 이르러 삼척을 울릉도의 관리 주체로 여기는 인식은 꽤 보편화되었다. 1830년경 편찬된 『관동지(關東誌)』에는 고적조에 고죽령현 등과 함께 울릉도가 수록되었는데 심탁의 『척주선생안병실지』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나 김인우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지 않은 점은 물론 수록된 내용도 거의 동일하다. 1672년 장한상을 파견한 뒤로 영장과 만호가 3년마다 교대로 울릉도를 오간다는 내용도 그러하다.⁴¹

1841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약려(金若礪)의 『증수척주지(增修陟州誌)』도 비슷하다. 다만, 편목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허목의 『척주지』를 기

³⁹ 안용복 ‘진술’에 대한 새로운 검증,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자체히 다루었다.

³⁹ 이원택, 2018, 「울릉도사적(蔚陵島事跡)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

⁴⁰ 『만기요람(萬機要覽)』 군정(軍政)4, 해방(海防), 동해(東海).

⁴¹ 『관동지』 9, 삼척, 고적(古蹟), 울릉도(鬱陵島).

본으로 하고 내용은 크게 보강한 것이다. 건치연혁과 동일한 읍기(邑基) 부분에 ‘기성(其姓)’조를 두고 김이사부의 우산국(于山國)⁴² 정벌을 포함시켰다. 여기서 두드러진 것은 수도 관련 기록이다. 몇 가지만 추려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숙종) 21년 갑술년(1694), 비로소 울릉도 수도의 행차를 두었다.⁴³
- (숙종) 29년 임오년(1702) 5월, 영장(營將) 이준명(李浚明)·왜학(倭學) 최재홍(崔在弘)이 울도(盍島)로부터 돌아와 그 도형(圖形)과 자단·청죽·석간주·어피 등의 물건을 상납했다.⁴⁴
- (영조) 12년 을묘년, 감사 조취수가 흉년과 기후로 인해 폐단이 있으니 울릉도(盍陵島) 수도(搜討)의 정지를 요청하였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예전 정축년에 왜인들이 이 섬을 청하기에 특별히 장한상을 파견하였다. 그의 도형(圖形)을 보니 대개 그 섬은 땅이 넓고 비옥한 데다 그 서쪽에 또한 우산도(于山島)가 있었다. 이 역시도 매우 광활하기에 마침내 3년마다 수도하는 제도를 정한 것이다. 그러니 어찌 정지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⁴⁵
- (정조 20년 을묘년) 6월, 계하한 관으로 인하여, 영장이 간성 이남의 채취에 능한 군사(善探軍)들을 거느리고 울릉도(盍陵島)에 들어가 삼료(蔘料)를 채취하여 봉진하게 했다.⁴⁶
- (정조 22년 정사년) 울릉도 수도선은 내년 봄을 기다렸다가 건조하라는 일을 논한 보장(報狀). “운운(云云). 선재목(船材木)은 이제 비야흐로 감관과 색리

42 于山國을 子山國으로 잘못 쓴 것이다.

43 김약려, 『증수척주지』, “二十一年甲戌, 始設鬱陵島搜討之行.” 여기서 숙종 21년은 을해년(1695)인데 오기이다. 『증수척주지』의 연도 표기는 1~2년 정도 오류가 난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44 위의 책, “二十九年壬午五月, 營將李浚明·倭學崔再弘, 還自盍島, 上納其圖形及紫檀·青竹·石間朱·魚皮等物壇.”

45 위의 책, “往在丁丑, 倭人請此島, 特送張漢相, 視圖形, 盖其島中地廣土沃, 其西又有于山島, 亦甚廣闊, 遂定三年搜討之制, 何可停止.”

46 위의 책, “六月, 因啓下關, 營將率杆城以南善探軍, 入盍陵島, 探得蔘料封進, 壇.”

를 정하였으니 배어 내서 차례대로 운반하고 이달 15일에 역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⁴⁷

이처럼 『증수척주지』에는 울릉도의 연혁에 대한 소개에서 나아가 수토와 관련된 기록들을 본문에 꽤 빈도 높게 수록하고 있다. 수토제로 인해 조선이 울릉도와의 거리감을 상당히 좁혔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이다.

항길고택에서 소장하고 있는 김종언(金宗彦)의 『척주지(陟州誌)』 상(上) · 하(下)의 내용도 그러하다. 이 책도 허목의 『척주지』를 그대로 옮기면서 누락된 부분에 부(附)를 달아서 내용을 보완했다.⁴⁸ 특히 1848년까지의 내용이 보완되어 있어 크게 참고된다. 김종언은 서문에 이어 동국팔로각군현주부도리기(東國八路各郡縣州府道理記), 기내성위궁전략(畿內城圍宮殿畧)을 추가한 뒤에야 본주지(本州誌)로 삼척 관련 내용을 기술했는데 그 이유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본주지에서는 먼저 삼척의 주요 변천사를 연대순으로 정리했고 512년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이 포함되었다.⁴⁹

사실 김종언의 『척주지』는 허목의 『척주지』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상권의 주된 내용인 본주지(本州誌)와 1662년까지의 본국국기(本國國忌)는 더욱 그러한데, 김종언이 스스로 “이상의 내용은 미수(眉叟) 허목께서 지은 『척주지』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⁵⁰ 따라서 본주지의 북평리(北坪里)의 말미에 실린 울릉도 역시 부(附)로 수록하였다. 내용도 동일하고 특별히 증보된 부분은 없다. 다만, 1662년 이후의 내용은 자신이 추가한 것임을 밝힌 것이기도 하며 1672년 “비로소 영장을 설치하여 칙사를 겸하게 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시사적이다.⁵¹ 또 같은 항목에는 “갑술년(1694) 비

47 위의 책, “云云, 船材木, 今方定監·色, 斫(斫)伐次運下, 今月十五日始役計料是如乎.”

48 김종언은 서(序)에서 허목의 서문을 수록하고 그 뒤에 자신의 ‘새로 덧붙인 서문(新附序)’을 기록했다. 여기서 그는 허목의 『척주지』를 한결같이 따르되 추가된 내용을 찾아서 보완했다고 밝혔다.

49 김종언, 『척주지』 상(上), 본주지(本州誌).

50 위의 책, 본국국기(本國國忌), “此上許眉翁所著誌.”

51 위의 책, 본국국기(本國國忌), “顯廟十三年壬子七月, 書陟州鄉案, 是年始設營將兼僉使.”

로소 수토의 행차를 두었다. 식년마다 영장과 만호가 교대로 간다”⁵²리는 내용이 확인된다. 앞에 인용한 『증수척주지』의 첫 번째 기사와 비교하면 유사하면서도 세부 내용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김중언의 『척주지』가 허목의 그것과 다른 점은 하권에 보인다. 앞서 부록으로 수록된 울릉도 내용은 허목의 『척주지』와 동일하며, 따라서 수토에 관한 기록은 없다. 김중언은 하권의 도서조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했다. 도서조에는 덕산도·정라도·죽곶도·동해비와 함께 울릉도가 수록되었다.

(울릉도는) ① 바닷길 천 리 지점에 있는데 파도가 매우 높다. 우릉(羽陵)이라고도 하고 우산(于山)이라고도 한다. 사방 100리로 세 개의 봉우리가 높이 솟아 있다. 바다가 맑으면 산의 모양을 볼 수 있는데 바람이 좋으면 하루 밤낮이면 건너갈 수 있다고 한다. (중략) ② 강희 11년 임자년(1672)에 영장 장한상을 보내어 다시 통하고 수토하게 했다. 지금까지 영장과 월송만호가 3년마다 교대로 (울릉도를) 오간다. ③ 건륭 60년 을묘(1795) 6월에 계하(啓下)된 관(關)으로 인하여 영장이 간성(杆城) 이남의 선채군(善採軍)을 거느리고 섬에 들어가 삼을 캐서 봉진하였다.⁵³ (밑줄은 필자)

인용문의 ①은 앞서 소개한 심탁의 『척주선생안』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다. 그 아래 부분의 ‘순풍이면’이라는 조건하에 하루 혹은 이를 걸린다는 내용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거리와 파도에 대한 내용은 분명 수토제의 시행 이후에 확인된다. 직접 울릉도를 방문하는 케이스가 잦아진 결과 이렇게 현장감 있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그에 반해 세 봉우리의 모습이나 인용문에서는 ‘(중략)’으로 비워둔 부분의 고려 태조 대 우산국 사신의 내조, 김유

52 위의 책, 본국국기(本國國忌), “甲戌… 始設搜討之行, 每式年營將及萬戶潛行.” 여기서 ‘潛’은 ‘첩’의 오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3 김중언, 『척주지』 하(下), 도서(島嶼), 울릉도, “在海中水路千里, 波濤極險, 或曰岌業, 海晴則可望山形, 風便一晝夜可渡云, … 康熙十一年壬子, 遣營將張漢相, 復通搜討, 至今營將與月松[越松-필자]萬戶, 間三年交互往來, 乾隆六十年乙卯六月, 因啓下關, 營將率杆城以南善採軍, 入島採蔘封進.”

립 과견, 조선 태종 대의 김인우와 세종 대의 남호 과견 등은 내용 면에서 간소해졌다. ②는 장한상의 수토를 언급한 것으로 『여지도서』를 비롯한 18세기 이후의 지리지에 공통적으로 보인다. ③은 『중수척주지』에는 연대기 형태로 기술되었는데, 여기서는 도서조의 울릉도 항목에 덧붙여졌다.

이처럼 김종언의 『척주지』는 허목의 『척주지』 내용을 최대한 남겨 두는 동시에 도서조에 새로이 울릉도 항목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김종언이 증보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내용의 대부분이 수토와 관련된 것임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한편, 이보다는 뒤 시기에 작성된 『척주선생안』 혹은 『진주부선생안(眞珠府先生案)』의 내용도 눈여겨 볼 만하다.⁵⁴ 항길고택에 소장된 이 책은 김구혁(金九赫)이 작성한 것으로 1855년에 탈고한 듯하지만, 그 이후의 1904년 삼척군수(三陟郡守) 정운석(鄭雲楮)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후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보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 책은 읍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말미에 ‘척주지략(陟州誌略)’을 두고 실직국(悉直國) 때부터 1841년에 이르는 삼척의 변천 과정을 간하게 기술했으므로 검토의 가치가 있다.

『진주부선생안』⁵⁵의 척주지략에는 아쉽게도 울릉도와 관련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김구혁이 기록한 삼척부사 관련 기록에도 수토제나 울릉도에 관한 서술이 몇 건 확인된다. 먼저 부사 서정리(徐正履)의 재임기인 1672년 삼척영장을 설치하여 첨사를 겸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다음은 부사 박상형(朴相馨)의 재임기인 1694년 영장 장한상(張漢祥=張漢相)의 울릉도(鬱陵島) 방문을 기록한 부분이다.⁵⁶ 세 번째는 부사 서노수(徐魯修) 재임 시기인 1769년 영장(營將)이 수토(搜索=搜討)하는 차례가 왔지만 재해가 있어 중단했다는 기사이다. 김구혁은 추가로 당시의 영장 홍우보(洪禹普)가 인삼을 캐고자 울릉

54 김구혁,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 읍지병부(邑誌并付)』.

55 이 책의 표제는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 속표제는 「진주부선생안(眞珠府先生案)」이다. 심택의 「척주선생안」과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본문에서는 「진주부선생안」으로 쓴다.

56 김구혁, 『척주선생안(陟州先生案) 읍지병부(邑誌并付)』, “設行鬱陵島, 營將張漢祥往來.”

도에 사람을 보낸 일이 발각되어 파직된 사실을 밝혔다. 이때 감사였던 홍명한(洪名漢)도 탄핵을 받고 파직된 점이 애석하다고 했다. 네 번째는 부사 이민보(李敏輔)가 재임하던 1770년 영장(營將) 김숙(金肅)이 울릉도에서 인삼을 캐 일로 나래(拿來)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 4건의 기사 가운데 첫 번째는 삼척영장에게 수토의 임무가 주어지기 이전의 일이라서 제외하지만, 나머지 3건의 기사는 삼척과 울릉도가 이전 시기에 비해 밀접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게다가 이 기사들은 18세기의 수토와 울릉도의 채삼문제, 조선인들의 공공연한 잠입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아쉬운 점은 1895년 울릉침사 설치와 수토제의 폐지, 1900년 칙령 41호로 인한 울릉군의 설치 등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수토제가 강원도 영동 혹은 삼척과 울릉도·독도를 연결하는 수단이었음에도 그것이 두 섬의 행정적인 편제와는 결이 달랐음을 의미한다.

V. 근현대 삼척 사찬읍지에 수록된 울릉도·독도

18세기 이후 정례화·공식화된 울릉도·독도의 관리는 삼척영장이 주관했다. 삼척영장이 관할한 울릉도 수토는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먼바다의 섬에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분명 다르다. 지리지상 울릉도 관련 기록이 읍진에서 삼척으로 옮겨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행정적 지배가 관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토제는 어디까지나 치읍이나 설진의 대안으로 선택된 제도였기 때문이다. 수토의 시행은 울릉도가 행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직접 경영하기 어려운 섬이었음을 의미한다. 19세기 말에야 울릉도의 개척이 이루어지고 또 1900년 고종의 칙령에 의해 울릉도가 울도군(鬱島郡)으로 편제된 이후 수토제가 종언을 고하게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의 고시(告示)로 독도가 불법 편입되고 또 1910년 국권이 피탈

되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에는 변곡점이 생겼다.

광복 이후, 한국은 울릉도·독도가 자국령임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항길 고택에 소장된 또 다른 『척주지』[전(全)]⁵⁷에는 그러한 정서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척주지』(전)는 1946년 최만희(崔晩熙)·김희경(金禧卿)·홍용학(洪鏞學) 등이 삼척 지역의 역사와 지리, 고적을 정리해 삼척향교에서 편찬한 책이다. 김종언과 마찬가지로 허목의 저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증보하는 형태였다.

그런데 이 시기 울릉도는 이미 경상북도에 속한 울릉군(鬱陵郡)으로서 강원도의 삼척군(三陟郡)과는 행정적으로 다른 곳이었다. 즉, 삼척에 관한 읍지를 내더라도 울릉도·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울릉군에서 편찬한 읍지에 수록되는 것이 타당하다. 최만희 등도 이 사실을 의식했는지, 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울릉도는 원래 본군(삼척)에 속했으므로 함께 엮었다.⁵⁸

이에 의하면 울릉도가 처음부터 삼척에 속한 섬이었던 것 같다. 그동안 울릉도·독도 내용을 수록해 온 『척주지』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삼척 소속의 영토로 이해하려고 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실은 울릉도 관련 사실을 속현으로 유지하면서도 고적이나 도서가 아닌 ‘속현’ 부분을 건치연혁조로 옮긴 데서 명확히 알 수 있다.⁵⁹ 『여지도서』에서는 건치연혁이 아닌 고적조에 속현과 도서를 두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때 속현으로는 우계현 등이, 도서로는 울릉도 등이 있었다. 그런데 『척주지』(전)의 건치연혁 속현조에는 우계현과 울릉도가 함께 수록되었다. 이 부분만 보면 이 두 지역이 모두 삼척에 행정적으로 예속된 지역이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항목명을 ‘울릉도’라는 섬이 아니라 ‘울릉군’으

57 허목이나 김종언의 『척주지』와 구분하기 위해 이 책의 표지대로 『척주지』(전)로 쓴다.

58 삼척향교, 『척주지』(전), 범례(凡例). “盍陵島元屬於本郡, 故亦爲合成焉.”

59 위의 책, 권1 삼척군건치연혁, 속현(屬縣).

로 기술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내용도 매우 풍부해졌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시부의 우산국 정벌부터 고려·조선시대의 관련 사실들은 지리지마다 서로 달랐다. 어떤 사실은 추가되고, 어떤 사실은 빠졌다. 18세기 이후에는 대체로 수토제 관련 내용이 대폭 증가하지만, 전사(前事)들은 들쭉날쭉했다. 그에 반해 『척주지』(전)의 건치연혁조에 수록된 내용은 울릉도 관련 사실의 총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소개한 여러 지리지 중에서 계속 수록되지 않은 부분은 고려시대인 1141년에 이양실이 울릉도에 사람을 파견한 일이다. 이 사건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수록되었고 후대의 기록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만기요람』, 『임하필기』(林下筆記) 등의 울릉도 기록에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관찬지리지와 『척주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유명한 안용복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 『변례집요』(邊例集要)에는 자세히 수록되었고 성호 이익(李瀾)은 안용복을 매우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⁶⁰ 하지만 관찬·사찬의 지리지·읍지에는 안용복이 등장하지 않으며 오직 장한상의 파견이나 수토제의 시행 등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수토제가 국가적인 차원의 공식적인 제도였던 반면, 안용복 관련 내용은 개인적인 행적이었고 또 간략히 기록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울릉도쟁계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한 사실이다.

세종 대의 유계문이나 세조 대의 유수강 등 울릉도에 치읍(置邑)·설진(設鎭)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인물들의 의견들은 소상히 실렸다. 이들의 주장은 실록에서 자세히 확인되지만, 종래의 관찬지리지나 사찬읍지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수토제와 더불어 울도군의 설치 경위까지 두루 실은 『척주지』(전)가 발간 당시 가능한 한 모든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 책이었음을 시사한다.

60 이익, 『성호사설』 권3, 천지문(天地門), 울릉도(鬱陵島).

이처럼 기존에 빠진 내용, 세간에 잘 알려져 있으면서도 지리지에는 미처 실지 못했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기술한 것이 『척주지』(전)에 수록된 ‘울릉군’ 내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당시에 새로 파악된 정보들이 모두 수록되었는데, ‘세 봉우리’의 해발고도가 미터(m)로 표시되는가 하면 경도와 위도까지도 기록했다.

그런데 권4에는 눈길을 끄는 항목이 등장한다. 관찰사(營伯), 수령(邑宰)의 명단에 더하여 ‘울릉도관원(鬱陵島官員)’이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울릉도의 설치 이래 군수를 역임한 인물들의 명단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울릉도와 관련한 일화를 가진 거의 모든 사람을 포함시킨 명단이다.⁶¹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이들이 ‘울릉도의 관원’이라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울릉도를 지배해 온 역사가 장구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탓인지, 관련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어떤 인물들이 수록되었을까.

울릉도관원 항목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신라의 이사부이다. 그 뒤로는 이양실·김유립·허공(許珙) 등 고려시대 인물들이 기재되었다. 이 중에서 허공은 원 간섭기에 작목사(斫木使)로 울릉도에 파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지만,⁶² 그간 삼척 관련 지리지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조선시대의 경우 노골적으로 인원을 부풀린 흔적이 완연하다. 안무사 김인우는 태종과 세종 대에 총 2차례 울릉도를 다녀왔지만 수령으로 재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본 항목에서는 두 번째 파견을 ‘재임(再任)’이라고 표현하여 일반적인 관안(官案)·선생안(先生案)의 형식과 유사하게 기술했다.⁶³ 경차관으로 파견되었던 남호는 월송만호(月松萬戶=越松萬戶)로 탈바꿈하였다. 남호가 전(前) 만호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월송만호라는 것은 여기서 처음 확인되는 사실이다. 추측컨대, 훗날 삼척영장과 함께 수도관이 되었음에 착안하여 덧붙인 것이 아닌가 한다. 남호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남희 역시

61 『척주지』(전), 권4, 울릉도관원(鬱陵島官員).

62 『고려사』 권27, 세가27, 원종 14년(1273) 2월 계축(30일).

63 위의 책. “金麟雨, 按撫使, 太宗丙申.”; “金麟雨, 世宗乙巳七月, 再任.”

다른 인물처럼 구분했고 또 남호와 동행했던 역관 조민(曹敏)도 별도로 기재하였다.⁶⁴

그 이후의 인물들은 더욱 흥미롭다. 최운서(崔雲緒)가 1445년에 안무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해 무릉도에 갔다가 요도(蓼島)를 목격했다는 갑사 최운저(崔雲渚)를 이르는 듯하다.⁶⁵ 갑사를 안무사라는 거창한 직함으로 설명한 것 역시 관련 인물을 최대한 늘려서 기록하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1472년 삼봉도(三峯島) 탐사에 나섰다가 울릉도에 3일간량 체류한 박종원⁶⁶도 수록되었는데 이 역시 조그마한 연관성을 가졌더라도 본 명단에 포함시켰음을 보여 준다.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삼척영장 장한상인데, 1615년인 광해군 을묘년에 파견된 것으로 오기되었다. 짐작건대 『송호선생실적』에 등장하는 김연성(金鍊成)을 이르는 듯하다.⁶⁷ 이 기록에 의하면 김연성은 1613년 삼척영장으로서 갑사 80명과 포수 100명을 대동하고 울릉도를 수도하려 갔다가 귀환길에 전원 익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에 비해 상응하는 관찬 사료가 전혀 없고, 삼척에 영장을 두지도 않았던 시기이므로 김연성의 일은 후대에 부풀려진 모종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척주지』(전)에는 김연성의 행적을 사실로 간주하고 포함한 것이다.

다음은 삼척영장 이준명(李浚明)과 최재홍(崔再弘)이다. 이준명은 장한상·전회일에 이어 1702년 수도관으로 울릉도를 다녀왔는데 그가 데려갔던 역관이 최재홍이다.⁶⁸ 그러나 여기서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연달아 기록하여 마치 별도의 수도행이었던 것처럼 기술했다. 이준명과 최재홍 뒤에는 1900

64 위의 책, “南顯, 戊午爲月松萬戶.”; “南蒼, 戊午爲護軍.”; “曹敏, 戊午爲譯官.”

65 『성종실록』 권109, 세종 27년(1445) 8월 무오(17일).

66 성종연간에는 무오년이 없다. 또 성종 대의 박종원은 관찰사가 아니라 삼봉도경차관(三峯島敬差官)으로서 삼봉도를 찾아나섰다가 표류했고 이 과정에서 무릉도(울릉도)에 3일 간 머물러 조사를 했다[『성종실록』 권19, 성종 3년(1472) 6월 정축(12일)]. 이해는 임진년이다.

67 『송호선생실적』(고려대학교 소장, 만송B12 A484).

68 이준명은 1702년 5월, 삼척영장으로서 울릉도를 수도했다[『숙종실록』 권36, 숙종 28년(1702) 5월 기유(28일)].

년 울도군수가 된 배계주(裴季周)를 썼다. 이준명 이후에도 울릉도를 수토한 삼척영장·월송만호들이 수십 명이나 되지만, 정작 이들은 누락되었다.

배계주 이후에는 1901년 강영우(姜泳禹), 1902년 배계주의 재임, 1905년 심흥택(沈興澤), 1907년 구연수(具然壽)와 심능익(沈能益), 1910년 전태흥(全泰興) 등 역대 울도군수들을 차례대로 기재하고 1912년의 홍종욱(洪鍾旭)을 끝으로 이 항목은 마무리된다.

이렇듯 울릉도관원이라는 항목은 이사부부터 울도군수들까지 울릉도·독도와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실상 모든 인명을 수록한 것이다.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의 관찬 사료에는 더 많은 수토관들이 확인되지만, 아마 당시 이 자료들을 모두 열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최만희 등은 확인 가능한 인물들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한국의 울릉도 지배가 유구하다고 주장한 것이라 생각된다. 일제강점기에 독도를 침탈당한 이후, 울릉도·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강조하게 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항길고택에는 삼척과 관련된 마지막 한문본 읍지인 『진주지』도 소장되어 있었다. 이 책은 삼척군유도회가 기획하고 최만희·홍종범이 주도하여 1963년 회상사에서 발간되었다. 『진주지』 역시 범례를 통해서 『척주지』의 체제를 따랐음을 표방하였고⁶⁹ 총 78조로 나누어 삼척 관련 사실을 정리했다. 일제 관련 사실을 대폭 줄인 것이 『척주지』(전)와의 차이점이다.

『진주지』에는 울릉도와 이사부의 기록이 곳곳에 보인다. 이때쯤 이사부는 삼척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있다. 『척주지』(전)에도 이사부는 읍재와 울릉도관원에 모두 수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물조의 문과(文科) 부분에도 등장한다. 엄연히 말하면 내물왕의 4대손인 그가 문과 출신이라는 내용⁷⁰ 등은 사실무근으로 보아야 한다. 『진주지』에는 보다 광범위하게 이사부에 관한 기록이 실렸다. 서문 뒤의 척주부(陟州賦)에는 울릉도

69 『진주지』 범례.

70 『척주지』(전), 권5, 인물(人物), 문과(文科).

리는 별도의 항목을 두지 않고 아예 삼척의 역사 안에 녹여 냈다. 우산국 정벌, 수토제 등이 자연스럽게 연혁 안에 연대기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진주지』는 건치연혁에서부터 『척주지』(전)를 따랐다. 울릉군은 우계현과 함께 속현으로 기재되었고, 내용도 사실상 동일하다. ‘정동해중’으로 표기한 것도 같다. 차이가 있다면 독도(獨島)가 별도의 항목으로 기재된 부분이다.⁷¹ 이 항목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의 동남쪽 50마일(哩=대략 80km) 떨어진 점, 북위 37도 14분·동경 131도 12분이라는 좌표, 서도(西臺)와 동도(東臺) 등 2개의 섬으로 구성된 점, 둘레는 1마일 반이고 높이는 150m가량이라는 점 등 오늘날의 측정치와 유사한 수치들이 확인된다. 다만, 우산도나 석도 등의 옛 명칭과 독도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관방(關防)조의 삼척포진(三陟浦鎭) 항목에서도 현종 임자년에 영장을 둔 점, 숙종 갑술년에 수토를 시작하여 매년 영장과 만호가 울릉도에 교대로 간다는 사실을 기술하였다.⁷² 그 밖에 울릉도 관련 기록은 기후(氣候)조의 ‘진중’ 부분에도 실렸는데, 한류와 난류가 교차로 흘러 제주도와 대만에까지 이른다는 내용이다.⁷³

『진주지』에도 울릉도관원이 등장한다. 『척주지』(전)와의 차이는 영장 부분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한 것이다. 장한상·이준명·최재홍 등을 기술했는데, 장한상이 광해군 대에 파견되었다는 오해는 여전하다. 그런데 이외는 별도로 ‘관원(官員)’이라는 항목도 두었다. ‘울릉도관원’ 대신 관원이라고만 하되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울릉도선생안(鬱陵島先生案)’이라고 한 부분이 『척주지』(전)와 다르다.⁷⁴ 고려시대의 인물로는 이양실·김유립·허공 외에도 김유(金庠)와 최공철(崔公哲) 등 2인을 추가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공민왕 대에 강릉도(江陵道)에서 활약한 무장들이는데 울릉도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어

71 『진주지』 권1, 건치연혁.

72 위의 책, 관방. “肅宗甲戌, 始設搜討之行, 每年營將及萬戶, 替行鬱陵島.”

73 위의 책, 기후.

74 『진주지』 권2, 관원(울릉도선생안).

보인다. 짐작건대, 당시 삼척이 강릉도에 속한 지역인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수록한 듯하다. 그 밖에 배계주부터 홍종욱까지 울도군수는 『척주지』(전)와 동일하며, 해방 이후 울릉군수를 지낸 서이환(徐二煥)과 허심(許忭), 홍성국(洪成國) 등 3인을 추가로 기록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진주지』는 『척주지』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사실들을 업데이트하는 방식까지 유지했다. 해방 후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의 추이를 잘 보여 준다. 항길고택에서 소장하던 『척주지』(전)와 『진주지』는 울릉도가 삼척과는 별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뉜 뒤에도 여전히 울릉도가 삼척에 속한 섬이었다는 인식이 유지되었음을 보여 준다. 『진주지』는 허목이 저술한 『척주지』를 이은 마지막 한문본으로서 시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 평가받을 만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진주지』에 앞서 1955년 삼척교육감 김정경(金鼎卿)이 저술한 국한문혼용 『삼척향토지』(三陟鄕土誌)와의 차이점이다. 『진주지』보다 이른 시기에 발간되었음에도 이 책은 『척주지』와 거리감이 있고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다. 내용의 상당 부분은 당시 상황에 맞추어져서 고쳐졌고 기본적인 체제를 제외한 세부 조목들은 신설 혹은 재배치되었다. 그에 반해 『진주지』는 한문본을 고집했으며, 좀 더 고전적인 체제를 갖추었다. 『삼척향토지』 역시 『척주지』를 계승했다고 표방했지만 사실은 『삼척군지』(1916)와 더 비슷하다. 삼척군연혁(三陟郡沿革)에서는 우계현과 함께 ‘울릉도’를 속현으로 엮었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역사적 연원에 대한 설명은 대폭 줄었고, 1900년 울릉군을 둔 일과 1903년 군청을 설치한 일, 1907년과 1914년에 각각 경상남도·경상북도로 관할을 옮긴 일에 비중을 두었다. 이 사부의 우산국 정벌이나 수도제 등의 기록은 모두 제외했다.

유사한 점은 영백(營伯)과 읍재(邑宰) 외에 울릉도관원 항목을 유지한 부분이다. 『척주지』(전)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김이사부, 고려의 이양실·김유립·허공, 조선의 김인우·남호·남희·조민·최운서·박종원·장한상·이준명·최재홍·배계주·강영우·심여택(심홍택)·구연수·심익능(심능의)·전태여(전태홍)·홍종욱을 이 항목에 기술했다. 인물록(人物錄) 부분에 이사부를 문과에

배치하여 우산국 정벌을 기록한 점도 비슷한데, 무과 부분에 김인우와 최운서를 배치한 것은 다른 점이다.⁷⁵

이처럼 울릉도·독도 서술은 17세기 후반 울진에서 삼척으로 소속처가 바뀐 뒤에도 계속해서 변화했다. 수토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또 보다 다양한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술되었다. 울릉군이 설치되어 울릉도가 삼척과는 별개의 행정구역이 된 20세기 이후에도 허목의 『척주지』를 저본으로 삼아 증보되었음을 표방한 여러 삼척 관련 읍지에는 계속해서 울릉도·독도 기술이 이어졌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울릉도·독도와 관련한 정보들이 축적된 결과가 지리지와 읍지에 나타난 것이다.

VI. 맺음말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삼척 관련 지리지를 분석해 울릉도·독도 기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거슬러 올라가는 논리는 사실상 『세종실록』 「지리지」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면서 형성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거민쇄출’을 통해서 울릉도를 비워 두었지만, 그로 인한 섬의 ‘무인화(無人化)’가 곧 섬의 방기를 이르는 것이 아니었음을 논증했다. 이는 거민쇄출을 ‘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인지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간주하는 일본 측의 주장과 다른 사실이다.

조선 초기의 거민쇄출정책은 수차례의 왕복을 통해 울릉도 인근에 대한 정보를 축적시켰다. 이는 최단 거리인 울진의 죽변곶을 기준으로 삼아 관련 기록이 울진현조에 수록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17세기 중반까지 울릉도와 독도는 울진현에 속하거나 혹은 인접한 섬으로 여겨졌다. 18세기에 이르러 수토제로 인해 울릉도에 대한 정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증가하면

75 김정경 편저, 배재홍 옮김, 2016, 『삼척향토지』, 삼척시립박물관.

서 관련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수토는 그 자체로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단이 생겼음을 의미하지만, 그 제도를 주관하는 관원이 삼척영장이었던 탓에 점차 울진에서 삼척으로 기록들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에 앞서 허목은 김인우의 후손들을 통해 『척주지』에 울릉도를 부록으로 포함시키면서 그 단초를 열었다.

울릉도는 20세기의 시작과 함께 울도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행정구역에 편제되었다. 독도 역시 석도라는 명칭으로 울도군의 부속도서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일제로부터 가장 먼저 침탈을 받은 곳 역시 독도였다. 그 반사작용이었을까. 해방 이후에 다시 증보된 『척주지』 그리고 『진주지』에는 울릉도·독도를 처음부터 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것처럼 서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마도 독도의 영유권을 강조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변화였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나친 해석이나 과장된 서술이 가미되었다는 한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척주지』를 비롯한 일련의 지리지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역사를 하나의 박제된 틀로만 설명할 수 없음을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 향후 울릉도·독도의 연구에서는 변경, 해양, 도서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인과적인 논리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사료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태종, 세종, 성종, 숙종).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관동지』, 『만기요람』.
 『척주지』(허목), 『척주선생안 병실지』(심탁), 『증수척주지』(김약려), 『척주지』(김중언), 『척주선생안 읍지병부』(김구혁), 『척주지』(최만희), 『진주지』(최만희).
 『동국여지지』(유형원), 『성호사설』(이익).
 『송호선생실적』(고려대학교 소장, 만송B12 A484).

2. 단행본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7, 『완역 척주집』, 삼척시.
 김정경 편저(1955)·배재홍 옮김, 2016, 『삼척향토지』, 삼척시립박물관.
 배재홍, 2001, 『국역 척주집』, 삼척시립박물관.
 _____, 2003, 『국역 척주선생안』, 삼척문화원.
 삼척문화원, 1991, 『척주집(陟州集)』, 삼척문화원.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정영미, 2020, 『안용복 ‘진술’에 대한 새로운 검증』, 동북아역사재단.

3. 논문

김호동, 2009, 「울릉도의 역사로서 ‘우산국’ 재조명」, 『獨島研究』 7.
 배재홍, 2000, 「三陟府使 許穆과 <陟州誌>」, 『朝鮮史研究』 9.
 _____,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도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_____, 2018, 「조선후기 三陟營將과 울릉도 搜討」, 『이사부와 동해』 14.
 백인기, 2022, 「조선후기 울릉도 수도」, 『이사부와 동해』 18·19.
 서태원, 2017, 「조선후기 三陟營將 연구」, 『이사부와 동해』 13.
 손승철, 2010, 「조선시대 ‘空島政策’의 허구성과 ‘搜討制’ 분석」, 『이사부와 동해』 1.
 宋炳基, 1998, 「朝鮮後期 鬱陵島 經營: 搜討制度의 확립」, 『震檀學報』 86.

- 송휘영, 2023,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의 주기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日本文化學報』 98.
- 신태훈, 2019, 「삼척영장과 울릉도 수토제」, 『이사부와 동해』 15.
- _____, 2023,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미림, 2009,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와 수토제의 추이에 관한 고찰」, 『韓國政治外交史論叢』 31(1).
- 이원택, 2018, 「19세기 울릉도 수토제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이사부와 동해』 14.
- _____, 2018, 「울릉도사적(蔚陵島事蹟)의 문헌학적 검토」, 『영토해양연구』 16.
- _____, 2023,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역주와 그 사료적 가치」, 『동북아역사논총』 81.
- 장정수, 2023, 「조선시대 울릉도 관리정책의 변화: 수토제의 시행을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6.
- _____, 2023, 「조선후기 三陟營將의 위상과 재임실태」, 『이사부와 동해』 20.
- 최희준, 2022, 「신라의 우산국 복속과 연륙항로」, 『사학연구』 147.

국문초록

이 글은 조선시대 지리지와 읍지에 수록된 울릉도·독도 관련 기록을 시기순으로 정리하고 변화 양상을 추적한 것이다. 신라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512)에서 시작되는 울릉도·독도 영유의 기본적인 서사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처음 정리되었다. 이 책에 울릉도·독도는 강원도 울진현에 속하는 섬으로 기록되었고,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의 내용을 준용하면서도 이후의 관련 사실들을 추가했다. 17세기 중반 삼척부사를 지낸 허목이 『척주지』를 발간하면서 울릉도·독도를 부록으로 수록했고, 『척주지』는 19세기 말까지 여러 사람에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서술의 보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18세기 중반 편찬된 관찬지리지 『여지도서』에는 울릉도·독도가 삼척부에 속한 섬으로 바뀌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증보된 여러 『척주지』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17세기 말 울릉도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수토제가 발족한 뒤 삼척영장이 이를 관할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확인된다. 한편, 울릉도가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편제된 20세기 이후에도 2종의 한문본 『척주지』가 발간되었는데 이 두 책에서는 울릉도·독도의 서술이 오히려 상세해지는 양상을 보이며 여러 항목에 다양한 형태로 수록되었다. 이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이후 울릉도·독도의 서사가 고정된 형태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서 보다 풍부해졌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울릉도, 독도, 척주지, 『세종실록』 「지리지」, 울진, 삼척, 수토제, 항길고택 문고

ABSTRACT

Changes in the Descriptions of Ulleungdo and Dokdo in the Geographical Books from Samcheok Reg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Jang, Jung Soo

(Research Fellow,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evolution of records on Ulleungdo and Dokdo found in both official geographical books and private gazetteers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foundational narrative of sovereignty over Ulleungdo and Dokdo, which began with the Conquest of Usanguk by Yi Sa-bu of Silla in 512, was first formalized in 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records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revised edition of the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published in the 16th century, followed the narrative of the King Sejong era, but incorporated additional details over time. In the mid-17th century, Heo Mok, the Magistrate of Samcheok, published *Cheokjuji*, which included Ulleungdo and Dokdo in its appendix. This text underwent continuous updates by various scholars until the late 19th century, significantly supplementing its descriptions. Meanwhile, in *Yeojidoseo* (cultural geography of Korea), a governmental geography published in the mid-18th century, the description of the jurisdiction over Ulleungdo and Dokdo was revised, reassigning them to Samcheok-bu. Similar alterations appeared in later augmented versions of *Cheokjuji*. These changes were likely influenced by suto (search-and-control) policy, under which the Samcheok Garrison Commander assumed responsibility for patrolling and managing Ulleungdo starting in the late 17th century. In the 20th century, despite Ulleungdo being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istrict, descriptions of Ulleungdo and Dokdo became more detailed in two versions of *Cheokjuji* published after this period. This indicates that the descriptions and narrative of Ulleungdo and Dokdo, rooted in Yi Sa-bu's Conquest of Usanguk, evolved over time as new details were incorporated, reflecting a dynamic historical process.

Keywords

Ulleungdo, Dokdo, Cheokjuji, *Sejong sillok jiriji*, Uljin, Samcheok, Suto (search-and-control), Hangeil House Collection

삼척 항길고택문고 소장 조선시대 재정 자료의 분석

- 『신상정사목(新詳定事目)』을 중심으로

전상욱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조교수

- I. 머리말
- II. 『신상정사목』의 간행 경위와 사료적 성격
- III. 『신상정사목』의 항목 구성과 주요 내용
- IV. 맺음말

1. 머리말

항길고택은 강릉김씨 감찰공파의 파조인 김자현(1404~1501)의 후손들이 세거해 온 강원도 삼척부(현 동해시) 용정리의 고택 항길장(恒吉庄)을 이른다. 현재 항길고택에는 약 1천여 건의 고서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 방대한 분량의 사료는 1961년 『항길문고도서목록(恒吉文庫圖書目錄)』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었다. 이 목록에는 도서 이름, 소장 및 분실 현황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도서 이외에 각종 기물도 포함되었고, 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도서도 다수 확인된다. 게다가 1970년대 이후 발간 도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항길고택문고’의 방대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¹

이처럼 항길고택문고의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항길고택문고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다. 우선 정경숙과 배재홍은 항길고택의 호구 자료를 활용하여 항길가의 삼척 지방 사족으로서의 위상을 규명하였다.² 그리고 차장섭은 강릉김씨의 족보를 족도, 대동보, 파보로 구분하고, 족적 결합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분석하였다.³ 배재홍은 부조기를 분석하여 조선 후기 결혼식의 부조관행을 주목하였다.⁴ 특히 배재홍은 항길고택문고를 학계에 소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항길고택일기』를 활용하여 18세기 후반 삼척부의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위기 양상과 이에 대한 민의 대응을 주목

* 논문 투고일: 2024.10.14, 심사 완료일: 2024.11.15, 게재 확정일: 2024.11.15,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0368).

1 ‘항길고택문고’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이 참고된다. 이원택, 2023, 『항길고택일기의 율령도 수도 관련 기사 역주와 그 사료적 가치』, 『동북아역사논총』 81; 장정수, 2023, 『항길고택문고 목록집(도서편)』, 동북아역사재단.

2 정경숙, 1993, 『강릉김씨 호구단지 분석연구-18세기 호구단지를 중심으로』, 『인문학보』 16; 정경숙, 1994, 『강릉김씨 호구단지 분석연구(2)-19세기 호구단지를 중심으로』, 『인문학보』 17; 배재홍, 1997, 『조선후기 삼척 지방 江陵金氏 三陟派 姓係의 戶口 자료』, 『朝鮮史研究』 6.

3 차장섭, 1997, 『조선시대 족보의 편찬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

4 배재홍, 1999, 『조선후기 결혼식 부조관행(扶助慣行)-강릉김씨 항길택(宅) 결혼식 부조기(扶助記)를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8.

하였다.⁵ 그리고 울릉도 수토제 운영 실상을 주목하면서 종래에 파악하지 못한 수토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⁶

이 글이 소개하는 『신상정사목(新詳定事目)』 역시 향길고택문고에 소장된 사료이다. 『신상정사목』의 표지에는 “甲戌十一日月 日新頒”과 “新詳定事目”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 쪽에는 “甲戌詳定節目”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신상정사목』이 갑술년에 반포된 상정사목임을 알 수 있다. 강원도 상정법은 갑술년인 영조 30년(1754)에 시행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신상정사목』은 강원도 상정법과 관련된 사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상정사목』 초반부에 수록된 영조의 발언을 통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영조는 관동의 이정(釐正)은 동민을 위한 것인데, 동민의 삼폐가 심하므로 금번에 이정도록 하고, 선혜청당상·관찰사·수령은 각자 임무를 충실히 시행하여 절목 반포 이후에는 읍총(邑摠) 이외의 가정을 처벌하는 내용을 절목 서두에 수록토록 하였다.⁷ 이러한 영조의 발언은 영조 30년(1754) 8월 24일 강원도 상정법 시행 논의 과정에서 강원도 지역의 삼폐 문제를 언급하면서 상정법 시행을 촉구한 발언이다.⁸ 즉, 『신상정사목』은 영조 30년(1754) 강원도 지역에 시행된 상정법의 절목(사목), 즉 운영규정임을 알 수 있다.⁹

5 배재홍, 2004, 「18세기 말 정조연간 강원도 삼척지방 이상기후와 농업」, 『대구사학』 75.

6 배재홍, 2011, 「조선 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7 『신상정사목(新詳定事目)』, “今八月二十四日, 御將·東伯·編次人·儒臣, 同爲入侍時, 傳曰, 噫今則神益耗矣, 而今日又值齋戒, 而 酬應關東釐正者, 意爲東民也, 東民藜藿, 其知熟矣, 況今暮年, 均廳之外, 百事皆闕略, 而均廳之事, 心猶不弛, 豈違他事, 而東民此弊, 甚於良役, 今不釐正, 更待何時, 今則其緒既正, 凡事其本固, 然後其末無弊, 其本雖固, 不善舉行, 末又弊焉, 咨惠堂·道臣·守令, 今 當者着意奉行, 完固其本, 後當者孜孜銘心, 無少放忽, 莫替我爲東民勸懲之意, 節目頒降後, 若或有違, 其邑總, 定式外加數徵捧者, 無論多少, 繩以重律事, 亦爲嚴飭, 以此弁於節目.”

8 『승정원일기』 1110책, 영조 30년 8월 24일(신미); 『비변사등록』 127책, 영조 30년 8월 24일.

9 『신상정사목(新詳定事目)』에는 사목 규정 이외에 삼척부절목(三陟府節目), 삼척계유총(三陟奚酉摠), 축년용하질(逐年用下稜), 임오년(1822) 12삭진상도록 등의 별개의 사료가 첨부되어 있다. 이는 『신상정사목』이 내용상 유사한 사료를 묶은 다음에 표지에 “신상정사목(新詳定事目)”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상정사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글은 표제인 『신상정사목』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부연하면 삼척부절목, 삼척계유총 등의 내용은 상정법 시행 이후 삼척부의 지방재정 개편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해당 자료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신상정사목』을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신상정사목』의 간행 경위와 사료적 성격을 주목하였다. 이는 『신상정사목』의 기본 성격과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3장에서는 『신상정사목』의 항목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신상정사목』 간행 목적인 상정법의 운영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항길고택문고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II. 『신상정사목』의 간행 경위와 사료적 성격

『신상정사목』과 관련된 상정법은 공납제 개혁과 대동법 시행, 대동법의 제도적 한계 노출과 지방사회의 대응, 균역법 시행과 결전 부과 등과 관련이 있었다. 16세기 후반부터 공납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인조 4년(1623) 강원도 대동법 시행으로 귀결되었다. 강원도 대동법은 효종 대 이후 시행된 삼남 지역의 대동법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우선 결당부와 액이 16두로 삼남 지역에 비해 2~4두가량 높게 책정되었다. 그리고 경상남 물(공물, 진상물) 위주로 작미를 시행한 경대동 방식이었다.¹⁰ 이로 인해 관수, 쇠마, 불시지출에 대비한 대동 이외의 잡역 징수가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대동법 시행 이후 강원도 지역은 대동 이외의 잡역이 광범위하게 징수되었다. 이는 ‘6두미’의 부족, 경대동 방식에 따른 지방행정비용의 징수를 용인한 결과였다. 이러한 잡역은 일종의 세목으로 정착되었고, 지방 군현의 관행에 의해서 세목과 액수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별도의 관리체계가 미비하였기 때문에 잡역세의 종류와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¹¹ 이에 대

10 전상욱, 2022, 「17세기 전반 강원도 대동법의 시행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103.

11 김덕진, 1999,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39~48쪽.

해서 지방 차원에서 잡역 징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우선 수령은 읍대동을 시행하였다. 읍대동은 관청별로 일정한 규례에 근거하여 잡역을 운영하는 것이었다.¹² 그리고 숙종 1년(1675) 강릉부사 소두산은 인정비를 작정(酌定)하기도 하였다.¹³ 또한 숙종 10년(1684) 이천현감 박태보는 상정을 시행하였다.¹⁴ 이처럼 수령은 읍대동 시행, 잡역 상정, 인정 작정(人情酌定) 등을 통해 잡역 운영상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관찰사에 의해 도 차원에서도 이루어졌다.¹⁵ 이는 영조 4년(1728) 기유상정 시행으로 이어졌다. 강원도 관찰사는 상정 시행을 위해 1년 용도를 파악하여 세액의 상수(常數)를 확정하였다.¹⁶ 이는 잡역가의 상정을 통해 잡역 부담을 고정한 것이다. 이 같은 도 차원의 잡역 상정은 숙종 35년(1709)과 영조 4년(1728)~영조 5년(1729)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우선 숙종 35년(1709)에 강원도 관찰사 이태좌가 영서이랑읍을 대상으로 잡역

12 읍대동은 지방 군현의 다양한 필요성과 시대적 배경의 결과물로 군현별로 향대동, 별대동, 읍상정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었다. 읍대동의 시행과 운영에 대해선 김덕진, 1999, 앞의 책이 참고된다.

13 『승정원일기』 327책, 숙종 14년 2월 20일(계해), “待講官李塾所啓, 臣有區區所嘗慨然於心者, 敢此仰達矣. 京外人情之弊, 人多言之, 而臣未得其詳矣. 臣待罪江陵時見之, 則其弊罔有紀極. 取考從前流來之規, 則京中大小各衙門及監營, 凡有某物上納時, 所謂人情, 魚物, 則責之於漁戶, 木匹則責之於民結, 蘇斗山爲府使時, 爲慮民弊, 木匹則全減, 而魚物亦減其半, 作爲謄錄.”

14 박태보가 시행한 詳定은 강원도 관찰사인 이태좌와 이형좌가 시행한 잡역 상정과 유사하였다[『승정원일기』 842책, 영조 13년 2월 3일(신유), “江春監司 李重協曰 … 田政且無量案, 前有李台佐·宋廷奎方伯時, 欲爲變通而皆不果, 蓋慮民怨之生也. 其後李衡佐繼至, 則又欲量田, 而猝難設施, 亦未免以常定[詳定]之法, 爲大同應役之責, 所謂詳定, 卽故判書朴泰輔爲伊川時所定也”].

15 조선 후기 부세 운영에 있어서 관찰사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권기중, 2012 「조선후기 부세의 운영과 감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81).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관찰사가 군현 단위에서 운영되는 각종 잡역세 운영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예를 들어 평안도 관찰사는 도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었던 민고절목을 간행함으로써 잡역 운영을 도 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였다(金容燮, 1984, 「民庫制의 釐正과 民庫田」, 『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上, 一, 潮閣).

16 『승정원일기』 673책, 영조 4년 10월 28일(을사), “趙顯命所啓, 關東已量詳定邑, 則雖因用度之不足, 或有倉穀貸用民結先捧之弊, 而不至過濫, 未量邑則一年結捧, 未有限節, 務以給足於一年用度, 而道臣亦無照管, 故貪汚之吏, 得以染手, 而民乃大困, 量田則雖不爲之, 而宜有一番大釐正, 然後可無濫捧剝民之弊矣, 所謂釐正者, 令道臣酌定各邑一年用度, 而取之於民, 定爲常數, 而此外使不得毫分濫捧, 則雖不行詳定, 而詳定之意, 實行於其間矣.”

을 상정하였다.¹⁷ 그러나 강원도 지역 대부분의 군현은 여전히 잡역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미랑읍은 용도가 부족하면 양안에 수록된 전결을 대상으로 잡역을 징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¹⁸ 결국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이형좌는 영조 4년(1728)~영조 5년(1729)에 걸쳐서 나머지 19개 군현을 대상으로 잡역을 상정하는 기유상정이 시행되었다.¹⁹

기유상정은 지방 군현의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1결의 징수액을 확정하였다.²⁰ 이는 지방 군현의 삼가(參價)와 기타 각종 지출 등을 포함한 지출 총액을 전결 수에 나누어서 잡역가를 상정하였음을 의미한다.²¹ 이것은 기유상정은 양출위입이라는 평가를 받는 근거가 되었고,²² 군현별로 잡역 상정가가 상이하게 책정된 요인이기도 하였다.²³ 이처럼 기유상정 시행은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존에는 지방재정의 부족한 재원을 다양한

17 숙종 35년(1709)에 잡역을 상정한 군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다만 영조 4년(1728)의 기유상정 시행 이전 '已量詳定'이라는 표현이 있다(『승정원일기』 673책, 영조 4년 10월 28일(을사)). 이는 숙종 35년(1709)의 잡역 상정이 양전을 시행한 군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숙종 4년(1728) 기유상정 당시 19개 군현에 진행되었다고 언급되었다(『승정원일기』 718책, 영조 7년 2월 9일(임인)). 즉, 영조 35년(1709)에는 7개 군현에만 잡역 상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숙종 35년(1709)에 영동미랑읍에 비해 관찰사의 행정력이 미치지 쉬운 영서미랑읍을 중심으로 잡역 상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8 『승정원일기』 673책, 영조 4년 10월 28일(을사).

19 『승정원일기』 718책, 영조 7년 2월 9일(임인). “趙錫命曰, 關東民役, 比三南最重矣. 判府事李台佐爲方伯時, 略行詳定之法矣. 其未盡行之邑, 則衡佐爲之矣. 上曰, 卿果盡爲之乎? 衡佐曰, 臣奉朝令, 十九邑詳定, 果爲之, 而其中爲弊者, 拘於事勢, 不能一一盡減矣.”

20 『승정원일기』 858책, 영조 13년 11월 20일(계유). “尹容曰, 臣纔自東邑上來, 略知峽邑弊端, 故敢達矣. 江春一道, 各邑皆行詳定, 詳定之初, 從其需用之多少, 酌定一結之所收, 雖邑邑不同, 而以寧越一邑言之, 一結之役出米, 至於二十三斗, 錢亦三四兩矣, 其後加給各驛吏卒復, 又創出人吏復, 敬惠公主房免稅, 亦爲十五結, 故應役實結大縮, 而進上之外, 各樣責應漸廣, 詳定大竭, 一年所捧, 不能當一年之用, 誠爲難支之端, 而既給之後, 雖無奈何, 至於免稅, 則移送三南田結有裕邑, 似無所妨.”

21 『승정원일기』 984책, 영조 21년 3월 27일(기해). “慶尙監司權懋疏曰 … 臣於關東事, 略有一二淺見之商量者, 將欲狀請而未果 … 第念各邑詳定時, 竝移參貢及其他凡百需用, 作爲該邑定規.”

22 『승정원일기』 876책, 영조 14년 8월 1일(신사) 1738. “金鏐曰 … 京畿·三南, 大同頗輕, 而江原道, 則只爲詳定, 他道量入爲出, 而此則量出爲入.”

23 상정세의 각읍不同은 기유상정 시행 초반에 이미 지적되었다. 기유상정 당시 공인과 관련된 징수와 용도가 음다다 不同하여 상정세액의不均이 심각하다고 하였다(『승정원일기』 932책, 영조 17년 6월 4일(정유)). “金尙迪曰 … 大抵詳定, 己酉年李衡佐爲監司時, 所創始, 而創始之初, 凡係公入, 其捧其用, 邑各不同, 此已不均之甚, 而種種雜下, 廣開耗縮之路, 其弊固多端矣.”

방식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1년의 지출용도를 작정(酌定)하고, 이를 전결을 대상으로 부과하여 상정 명목으로 통합 징수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진상첨가, 지방 군현 운영경비 등 지방 군현에서 다양한 재정적 필요에 의해 징수되는 세목을 통합하여, 이를 전결을 대상으로 부과하여 상정 명목으로 통합 징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유상정은 제도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우선 기유상정은 읍대동·사대동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읍대동·사대동은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법적 규정에 의해 시행된 제도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²⁴ 결국 기유상정이 읍대동·사대동이라는 평가는 수령의 자의적인 운영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기유상정의 성격으로 인해 수령에 의한 남용과 가정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인삼 가격 상승으로 인해 지방 군현의 지출은 증가하고 있었다. 영조 14년에 인삼 1냥당 전 30냥이었던 인삼 가격이 영조 29년(1753)에는 전 60·70냥으로 배 이상 올랐다.²⁵ 이로 인해 지방 군현에서는 상정가(詳定價) 이외 잡역 징수가 확대되고 있었다.²⁶ 결국 강원도 지역의 잡역은 기유상정을 계기로 상정된 잡역인 상정가와 상정가 이외 잡역이 병존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균역법 시행으로 결전 부과가 확정되면서 대책 모색이 본격화되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결세인 결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 차원의 잡역에 대한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²⁷ 강원도 지역

24 김덕진, 1999, 앞의 책, 107~111쪽.

25 「비변사등록」 영조 14년 8월 1일,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3월 5일(신유).

26 영조 29년(1753) 울진현은 당시 詳定 명목으로 결당 8냥을 징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유상정 시행 초반과 달리 詳定 이외 추가 징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監營의 詳定文書에는 파악하지 못하는 지방 군현 차원의 추가 징수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영조는 울진현의 1년 징수에 限定이 없다고 할 정도였다[「승정원일기」 1101책, 영조 29년 12월 5일(을유) “嶺東御史李顯重曰, 蔚珍與三陟接界, 小公臺·葛岬, 卽大嶺也. 其風氣則似嶺南, 非江原道也. 往省民間, 則一結捧八兩云. 故臣出道後, 考文書, 則卽詳定也. 每未捧一分, 故初則民皆以爲敬矣. 其後或逐月捧之, 民皆難堪矣. 詳定文書, 一則在於監營, 而蔚珍則雖私用多在其中, 故不得磨勘文書於監營久矣. 益河曰, 一斗落, 歲捧一斗, 例也. 此邑所捧, 多於他邑也. 上曰, 承旨曾往嶺南, 其處亦有此弊乎 光肇曰, 嶺南則無此弊也. 上曰, 蔚珍一年所捧, 如是無常, 民何以從適 此則作法者之罪也. 顯重曰, 當初作法者, 必經民而然也”].

27 정연식, 1993, 「18세기 결포론의 대두와 결미절목의 제정」, 『國史館論叢』 47; 송양섭, 2010, 「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한국사학보』 38.

역시 균역법 시행을 계기로 결전이 부과되면서 전·현임 관찰사에 의해 잡역 변동 논의가 촉발되었다.²⁸ 이러한 논의의 결과물이 잡역 상정법을 개정하는 “갑술개정장”, 즉 상정법이었다.²⁹ 즉, 향길고택에 소장된 『신상정사목』에 ‘新’이 붙은 이유가 바로 기유상정을 개정한 새로운(新) 상정사목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조 30년(1754)에 시행된 상정법은 강원도 대동법의 제도적 한계와 지방 차원의 대응, 균역법의 결미(결전)의 합작품이었다. 이러한 상정법의 운영규정, 소위 상정사목은 삼남의 대동사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³⁰ 그리고 이 글에서 주목한 향길고택문고에 소장된 『신상정사목』은 상정법 운영규정인 것이다. 그러면 『신상정사목』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겠다.

상정법의 운영규정인 상정사목은 홍봉한의 문집인 『어정익정공주고』의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에도 수록되어 있다. ‘촬요’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는 상정사목 전문(全文)이 아니라, 일종의 요약·발췌본이다.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에는 서문과 36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신상정사목』에 수록되지 않은 항목은 다음과 같다.

25조, 분원에 납부하는 목조(木槽)·광판(廣板), 장생전에 납부하는 황장판·고발(羔髮), 조지서에 납부하는 침목(砧木), 상의원에 납부하는 치우, 칙사 시 소용되는 산저모(山猪毛)·도지개(道支介)·황백피(黃柏皮) 등 운반비와 경비·방자기는 이전처럼 복정한다. 균기사의 도관(陶罐) 복정은 한절이 없어서 민폐가 막심하니, 이후에는 매차 30개를 넘게 분정하지 말고, 정수 이외에 흑

28 균역법 시행 이후 강원도 지역의 잡역 변동 논의는 전상욱, 2022, 『조선후기 강원도 지역의 貢納制 개혁과 大同·詳定法 시행』,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이 참고된다.

29 『江原廳事例』, 大同來歷, “英宗30年 追行詳定法於江原道.”

30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12조, “當初詳定 與留置條 付之本官 通融用下 而其法紊亂 日有餘 日不足 巡營與上司 無以憑考 自今爲始略倣三南事目 一年用下 一從新定式施行 而每年歲末 則爲修報 會案於本廳 以爲磨勘之地.”

1개라도 구분정하는 일이 있으면 해당 관원이 입달하여 논책할 것이다.³¹

26조, 각종 분정을 수납할 때에 폐해가 심히 많다. 도선생의 치부는 이천부에 도정, 도사선생의 치부는 평강현에 도정, 사고 수개의 소입은 분정에 따라서 회감, 폭쇄 소입과 수조안 소입하는 붕괴잡물은 강릉부에 도정, 비국에 납부하는 호피방석 1립가 10냥을 춘천부에 도정, 백토군은 양구현에 도정, 재운선마가는 각 읍 원회부로 회감, 치악산제 소입과 회계·포편 등 붕괴잡물가는 원주목에 도정, 동해묘제 소입은 양양부에 도정, 수개 시 잡물은 분정하여 거행, 신감사 지장은 이천·간성·평강·회양에 도정, 도사의 지장은 금성·안협에 도정하여 가전을 윤회하여 수송토록 한다.³²

27조, 장릉의 사초 개수와 정자각 수개 시에 소입하는 잡물, 중앙제 제물, 예조복정, 별치제 제물은 원회부로 회감하고, 부지가는 상정을 계정하여 상하할 것이다.³³

25조는 중앙관청에서 지방에 복정한 물품 내역, 26조는 복정물이 분정된 군현, 27조는 영월 소재 장릉 수리와 관련된 항목이다. 해당 항목은 『신상정사목』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는 삼척읍이 복정, 장릉 수리 등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항목 역시 『신상정사목』에는 누락되어 있다.

31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25조, “分院納木槽廣板 長生殿納黃腸板羔髮 造紙署納砧木 尙衣院納雜羽 勅使時所用山猪毛道支介黃柏皮等輸價 及京婢房子價 依前卜定 軍器寺陶罐卜定 無有限節 民弊莫甚 此後每次 毋過30箇分定 而定數外 或有1箇加分定之事 該司官員入達論責.”

32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26조, “各樣分定輸納之除 爲弊甚多 道先生致贈 都定於伊川府 都事先生致贈 都定於平康縣 史庫修改所入 隨其分定會減 而曝曬所入 及收租案所入 封裹雜物 都定於江陵府 備局所納虎皮方席 1立價10兩 都定於春川府 白土軍 都定於楊口縣 載運船馬價 以各邑元會付會減 稚岳山祭所入 及會計褒貶等 封裹雜物價 都定於原州牧 東海廟祭所入 都定於襄陽府 修改時雜物分定舉行 新監司支裝 都定於伊川杆城平康淮陽 都事支裝 都定於金城安峽 各以價錢 使之輪回輸送.”

33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27조, “莊陵改莎草 及丁字閣修改時 所入雜物 中央祭祭物 禮曹卜定 別致祭祭物 以元會付會減 負持價則以 詳定計程上下.”

39조, 호조 응연가로 포 15동 18필, 전미 28석은 즉 왜인증급조이니, 경에서 봉상하고, 대신 영남목을 구획했다. 그리고 왜공으로 호조에서 소관하는 공목을 작미할 때에 매 필에 2두를 혜청에서 미로 충급한다. 지금 상정 변통할 때에 응연가를 감급하는 대신에 해조에서 추심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허물며 본청에서 소봉하는 수가 심히 많고, 또한 제반 급대한 것이 지부에서 감하는 바로, 본청에서 또한 급대하는 것은 더욱 의의가 없다. 이때 경비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수 내에 절반인 포 7동 34필은 매 2필에 전미 1석으로 하고, 전미 14석을 합하면 206석이니, 재감 여부를 막론하고 연마다 이송할 것이다.³⁴

위 조항은 왜인에게 증급하는 응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강원도 지역은 왜인에게 증급하는 응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은 왜관까지 거리가 멀어서 경상도 지역에서 공목을 통해 응자를 구매하여 대신 납입하면, 강원도 지역은 응자가 호조에 납입하였다. 이 같은 납입방식은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공작미 일부를 선혜청에서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응자가 절반인 206석을 강원도 지역에 지원하였다. 이 규정은 중앙의 강원청과 호조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다. 즉, 삼척읍 운영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신상정사목』에는 해당 항목이 누락된 것이다. 이는 『신상정사목』이 삼척읍에서 상정법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발췌·요약된 사료임을 보여 준다. 이러한 추정은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와 『신상정사목』의 동일한 항목의 표현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 13조: 각 읍의 관수는 풍박을 고려하여 분등하여 가급하니, 철원 전 300냥, 이천 전 280냥, 간성 대미 96석 전 200냥, 평

34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39조, “戶曹薦連價 布15同18疋零 田米28石零 卽倭人贈給條 自京捧上其代以嶺南木區劃 而倭供戶曹所管公木作米時 每疋2斗 以惠廳米充給 今此詳定變通時 薦連價 減給之代 該曹不必推尋 況本廳所捧 減給之數甚多 而又多諸般給代者 則地部所減之 自本廳又爲給代 尤無意義 此時經費 亦不可不念 元數內折半 布7同34疋 每2疋 代田米1石式 支計本 田米14石 合206石 母論災減與否 逐年移送.”

해 대미 80석, 양양 대미 91석 전 150냥, 흡곡 대미 53석 전 150냥, 고성 대미 52석 전 200냥, 울진 조 100석 전 225냥, 통천 대미 72석 전미 10석 전 100냥, 강릉 대미 61석 전 200냥, 정선 전 100냥, 평창 전 140냥, 양구 전 80냥, 삼척 전 200냥, 회양 전 100냥, 금화 전 100냥, 낭천 전 100냥, 인제 전 100냥, 평강 전 100냥은 특별히 획급한다.³⁵ (밑줄은 필자)

『신상정사목』 15조: 각 읍의 관수는 풍박을 고려하여 분등하여 가급하니, 삼척은 전 200냥을 특별히 획급한다.³⁶ (밑줄은 필자)

위 내용은 관수에 대한 규정이다. 상정법 시행 이후 지방 군현에 관수를 책정하였고, 특정 군현에 한하여 추가 재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강원도 대동상정절목촬요」에서는 삼척 이외에 18군현의 추가 지급 재원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에 『신상정사목』은 삼척읍에 전 200냥을 추가 지급한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에서 언급된 타 군현의 사례가 『신상정사목』에는 누락된 사례가 부의와 지장잡물에 관한 규정에서 보인다.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에서는 도선생, 도사선생 등의 부의 규정이 있다.³⁷ 그리고 도 전체 군현의 신영시 지장가와 당참가 액수도 규정되었다.³⁸ 반면에 『신상정사목』에는 삼척읍에 국한한 내용인 읍선생 부

35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13조, “各邑官需 量其豐搏 分等加給 鐵原 錢300兩 伊川 錢280兩 杆城 大米96石 錢200兩 平海 大米 80石 襄陽 大米91石 錢150兩 歙谷 大米53石 錢150兩 高城 大米 52石 錢 200兩 蔚珍 租100石 錢225兩 通川 大米 72石 田米10石, 錢100兩 江陵 大米61石 錢200兩 旌善 錢100兩 平昌 錢140兩 楊口 錢80兩 三陟 錢200兩 淮陽 錢100兩 金化 錢100兩 狼川 錢100兩 麟蹄 錢100兩 平康 錢100兩 特爲劃給.”

36 「新詳定事目」 15조, “各邑官需 量其豐搏 分等加給 三陟錢貳百兩特爲劃給爲白齋.”

37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32조, “先生致賻 以錢磨鍊 道先生50兩 都事先生10兩爲定 而勿爲分定 各邑 都定1邑 而父母喪 則減3分之1 妻喪則減半 以詳定會減 負持1名 計程上下 邑先生賻儀 自官廳費 送 負持1名 賁價 以詳定計程會減.”

38 「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 31조, “各邑新迎時 支裝雜物價 及支費堂參價 分等磨鍊 原州·春川·江陵·鐵原等4邑 支裝價30兩 堂參25兩 寧越·三陟·淮陽·伊川·襄陽·平海·蔚珍·杆城·洪川·橫城·平康·通川等12邑 支裝價25兩 堂參20兩 高城·金化·金城·浪川·楊口·旌善等6邑 支裝價20兩 堂參15兩 平昌·安峽·麟蹄·歙谷等4邑 支裝價15兩 堂參10兩 解由作紙 州府則20兩 郡縣14兩式定.”

의와 삼척읍의 지장가와 당참가 액수만 기재되어 있다.³⁹ 즉, 『신상정사목』은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처럼 상정사목의 전문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발췌·요약을 한 사료이다. 특히 『신상정사목』은 삼척읍에서 상정법 운영을 위한 실무용 서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요컨대, 『신상정사목』은 영조 30년(1754) 강원도 상정법과 관련되어 있다. 상정법은 공납제 개혁과 대동법의 시행, 대동법의 제도적 한계와 지방사회의 대응, 균역법의 시행 이후 결전(결미)의 안정적인 수취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화라는 조선 후기 부세개혁의 전반적인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정법의 운영규정이 『신상정사목』이다. 『신상정사목』은 상정사목의 전문에서 삼척읍 운영과 관련된 항목만을 발췌·요약한 사료이다.

III. 『신상정사목』의 항목 구성과 주요 내용

2장에서 『신상정사목』의 간행 경위와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면 3장에서는 『신상정사목』의 항목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신상정사목』에는 총 50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항목별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9 『新詳定事目』 35조, “邑先生聘儀 自官廳費送 負持1名賞價 以詳定計程會減”; 『新詳定事目』 34조, “各邑新迎時 支裝雜物價 及吏曹堂參價 分等磨鍊矣 三陟 支裝價25兩 堂參20兩 解由作紙 州府則20兩 郡縣14兩式定式爲白齊.”

삼척 향길고택문고 소장 조선시대 재정 자료의 분석

〈표 1〉 『신상정사목』의 항목 구성과 주요 내용

번호	주요 내용
1	간행 경위
2	결역 경감 내역
3	대동·상정세의 결당부과액 조정, 과외 징수 금지
4	경상납 1만 냥, 삼진모, 첩별비곡, 제번전을 삼가와 결역·상정·영음수에 충당
5	인삼의 절가(折價) 증액과 잡비 지원
6	인삼 분정이 불균하니, 삼가(蔘價)가 부족하면 인근 군현의 상정을 지원
7	호조의 천평칭으로 인삼 중량 측량할 것
8	보살고 식리조 혁파 이후 지원 방안, 감영 재정 지원 방안
9	시행 경위, 대동·상정세의 경청(京廳) 관리 강화, 기본 용처와 연동
10	6두 유지 규정의 폐지, 벌역 대비 방안
11	대동상납, 대동유치, 상정의 연동
12	대동상납, 대동유치, 상정 연동 방식
13	간년조 지출 대비
14	대동유치와 상정의 경청 관리 강화
15	관수 액수 책정
16	관수와 아록전 소출 이외에 민에게 잡물 징수 금지
17	춘추식전제 제수가 책정
18	사직제·사액서원·성황제·여제 제수가 책정
19	기우제 제수가 책정
20	제향 희생 저구개(豬口價) 책정
21	전문 봉진 비용 책정
22	군병 시사(試射) 상격가(賞格價) 책정
23	군병 호궤가 책정
24	훈련 중 장관·좌수의 복마·기마가 책정
25	도내 영장의 습조, 군무 왕래시 대동하는 군관과 배리의 쇄마가 책정
26	상정 미·포·전 등의 환산율 책정
27	각 읍 쇄마가와 부지군관 쇄마가 규정
28	각 읍 신·구관 영송 쇄마가
29	감도사 공행 시 마필 마련 방안, 쇄마가는 상정에서 회감
30	의금부 죄인 호송비는 상정에서 회감
31	각 읍 수령 차사원의 고품예목 마련 방안
32	활장목은 상정으로 마련할 것
33	신구감사·도사 영송 시 소대하는 영하인으로 경성 체류 경비 산정
34	각 읍 신영 시 지장잡물·이조당참가 책정
35	읍선생의 부의가 책정

36	각 읍의 관상 부의가 책정
37	각 읍 수령의 추고속(推考贖)은 타도처럼 하고, 상정으로 회감하지 말 것
38	각종 배지잡비 등 책정
39	경사잡비 책정
40	분양마 마장작지가, 고실마의 속전 책정
41	상정문서 지필목가와 마감 시 잡비 책정
42	호적지, 필목가 민호 내지 상정 회감
43	감시, 문과 도회시의 지공은 해읍(該邑)에서 상정 회감
44	원주도회 회계 시 잡비, 강릉도회 군기·실정마감 시 잡비, 강릉과 춘천 수조안 마감 시 잡비 책정.
45	각 읍 진례수리 책정
46	각 읍의 영문 보장사 정수 규정은 기존 읍규를 준수할 것
47	도계진상, 윤식진상, 진하진상 마련 규정
48	각 읍의 상정회감 규정 및 방식
49	각 읍 대동상정 징수를 기한 내에 시행할 것
50	이상 조항을 준수할 것

출처: 『신상정사목』.

이처럼 『신상정사목』에는 총 50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시행 경위, 수취·배분방식, 상정회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시행 경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조. 관동 결역이 날로 증가하여 민이 감당하지 못한다. 만약 지금 변통하지 않으면 실로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대개 본도의 전제는 전세·대동 이외에 또한 상정과 삼공이 있는데도, 오히려 책응할 수 있는 것은 집결이 본래 가벼웠기 때문이다. 근년에 삼가가 올라서 민결에 가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상정은 조가에서 조관하지 않고, 6두류치를 획급한 이후에 본관에 일임하여 출입을 묻지 않고, 남는 것이 있어도 저축함이 없고, 부족하면 가림을 한다.⁴⁰

40 『新詳定事目』 1조, “關東結役日增 民不支堪 若不及時變通 實有無限深慮 蓋本道田制 則田稅大同條外 又有詳定與蓼供 而猶能責應者 以其執結之本輕歇故也 近年蓼價高騰 不得不加徵於民結 且詳定朝家不爲照管 而六斗留置劃給 一任本官 不問出入 有餘而無所儲蓄 不足則惟意加斂.”

위 항목은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에서는 서문에 기재된 내용으로 『신상정사목』의 간행 경위, 즉 영조 30년(1754) 상정법 시행 경위를 설명한 내용이다. 위 항목에서 보듯이 18세기 전반 강원도 지역은 결역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전세, 대동세, 삼수미 등 정규 조세 이외에 기유상정을 계기로 확정된 상정가와 기유상정 시행 이후 지방 군현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한 잡역으로 인해 결역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 양전이였다. 『신상정사목』 9조에서 보듯이 강원도 지역은 전정이 불분명하여 양전을 시행하여 실결 수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양전 시행이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존에 시행된 읍규를 토대로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갑술개상정, 즉 상정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⁴¹ 다음으로 수취·배분방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수취에 관한 조항이다.

2조. 각 읍 결역의 고흥에 따라 분등하여 갑급하면 도합이 전 2,433냥, 포 32동 19필, 대미 227석, 전미 187석, 조 737석, 태 91석, 소두 8석, 진입 8석, 청밀 1석 5두이다. 지금 감한 다소를 헤아려 보니, 비록 적게 감한 읍도 균정의 결전 액수에 상당한다. 매 결에 경감한 분수를 읍총의 서두에 재록한다.⁴²

3조. 전세·삼수미·결전은 정수가 있어 처음부터 논할 수 없고, 다만 대동·상정조는 계산하여 재록하였다. 이 외에 비록 전 1분, 미 1승도 함부로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⁴³

41 『新詳定事目』 9조, “本道田政異於他道 大體言之 田雖大而執卜小 故結雖少而出役反多 今以詳定各色 傍照三南則有若邑大同雜役條 而特以田政之不明 無論大同詳定 並計用下 今若改量田結 明定實結總數 則大同所捧 自然倍多 可無需用不足 詳定混下之弊 而累百年舊規 有難一朝更張 以致許多騷擾之患 不得不一依本道舊規 本道之內 不得不各依邑規 從便釐革 大同與詳定 一體句管於京廳 需用之際條件 宜有稍別 大同條只爲磨鍊上納與留置 詳定條用於下於麥價 及公私諸需 如或不足 則留置條繼用.”

42 『新詳定事目』 2조, “各邑結役 隨其高歇 分等減給 則都合 錢2433兩 布32同19疋 大米227石 田米187石 租737石 太91石 小豆8石 眞荳8石 淸蜜 1石5斗 今此所減多少 自有商量 雖小減之邑 亦可相當於均廳結錢之數 每結所減分數 載錄於邑摠之首.”

43 『新詳定事目』 3조, “田稅三手米結錢 有定數 初不與論 只以大同詳定條 算計載錄 此外雖1分錢1升米 毋得擅自加減.”

위에서 언급된 2조와 3조는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에서는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조와 3조의 내용이 결당징수액 확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 경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강원도 지역은 결역이 과중하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결역에 대한 경감 조치가 있어야만 했다. 이에 대한 내용이 2조와 3조이다. 우선 각 군현에서 전 2,433냥, 포 32동 19필, 대미 227석, 전미 187석, 조 737석, 태 91석, 소두 8석, 진입 8석, 청밀 1석 5두를 경감하였다. 이렇게 경감된 액수는 균역청의 결전징수액에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상정법 시행이 균역청의 결전징수와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감한 액수를 읍총 서문에 기재토록 하고, 이를 대동과 상정세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하였다. 그러나 상정법 시행 이후에도 대동세의 결당부과액은 영서이량읍 12두, 영동이량읍 14두, 영서미량읍 16두로 기존과 동일하였다. 이를 통해 결역 경감분이 상정세의 결당부과액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조 30년(1754) 상정법 시행 이후 삼척읍의 전결세의 결당부과액을 정리한 표이다.

〈표 2〉 삼척읍의 대동·상정의 수세양상

稅種	원전답	속전	권경속전	아륙공수위 전답	균청면세 전답	기타
대동	전미 14두	전미 14두	전미 14두	대미 14두		상화전 전 1,458냥
상정	전미 0.134두 태 0.146두 포 1-13-9 전 1.5냥 삼가전(參價錢) 1.27냥	원전답동 (元田畚同)	원전답동 (元田畚同)	원전답동 (元田畚同)	원전답동 (元田畚同)	학위결 원전답동 (元田畚同)
전세·집비		전미 4두				
삼수량·집비				대미 6.2두		

출처: 『강원청사례』, 수조.

〈표 2〉에서 보듯이, 삼척읍은 대동·상정의 결당부과액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삼척읍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은 삼남 지역과 달리 수세물이 다양하였다. 삼남 지역은 미·포·목 등 수세물이 제한적인 반면에 강원도 지역은

미·포 이외에 전미, 태, 조 등 수세물이 다양하였다. 이로 인해 각 수세물 간의 교환비율을 규정하였다. 다음은 교환비율에 대한 조항이다.

26조. 상정의 용하가 극히 문란하고 미포 절가에 또한 향식이 없으므로 각종 상하(上下)를 중귀미련(從貴磨鍊)하여 상정이 부족한 폐해가 되었다. 이미 상정을 고친 이후에 미포 절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없다. 전세·삼수량·대동미포의 절가는 전에 의하여 시행하고, 상정조는 대미 1석에 5냥, 전미·직미는 매 1석당 각 3냥, 소두 1석은 1냥 6진, 태는 매 1석에 1냥 5진으로 하고, 상정포기는 본청에 보고하여 절정한다. 모든 수용은 유재의 다소를 고려하여 혹 전이 부족한 폐해가 있으면 곡물로 절하하고, 혹 곡물이 부족한 폐해가 있으면 전으로 상하여 추이하여 수용할 것이다.⁴⁴

위에서 보듯이, 『상정사목』에서는 각 물품 간의 교환비율을 설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1석당 대미는 전 5냥, 전미와 직미는 전 3냥, 소두는 1.6냥, 태는 1.5냥으로 책정하였다. 다만 포기는 추후에 본청(강원청)에서 확정토록 하였는데, 이후 포목 1필에 전 2냥으로 확정되었다.⁴⁵ 그리고 다음과 같이 대동·상정의 배분방식을 개정하였다.

10조. ① 영서 미양읍은 대동이 16두, 이양읍은 12두, 영동 이양읍은 14두이니, 각 읍은 6두를 유치하여 수용으로 삼도록 하니, 이것이 바로 전규이다. 지금부터는 유치하는 수를 6두로 정할 필요가 없다. ② 상정이 부족하면 유치 6두 이외에 추가로 남기고, 상정에 여유가 있으면 상납토록 하고, 당연히 이보다 더 있으면 본청에서 임시로 구획하여 반드시 상납토록 한

44 『新詳定事目』 26조, “詳定用下 極爲亂雜 米布折價 亦無恒式 故各樣上下 從貴磨鍊 以致詳定不足之弊 既已改詳定之後 米布折價 不可不酌定 田稅·三手糧·大同米布折價 依前施行 詳定條則大米一石五兩 田米·稷米 每一石各三兩 小豆一石一兩六錢 太每一石 一兩五錢 詳定布價 報本廳折定 凡需用量其用遺在之多寡 或有錢不足之弊 以穀物折下 或有穀不足之弊 以錢上下 推移需用.”

45 『江原廳事例』 作米木錢式.

다. 과도하게 유치하여 지나치게 많도록 하는 데 힘쓰지 말도록 한다. ③ 후의 의외의 별역이 있으면 다음의 유치한 것을 삼남의 예대로 이획토록 할 것이다.⁴⁶ (밑줄은 필자)

①에서 보듯이,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대동의 상납·유치 배분방식이 개편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 삼남 지역의 대동 상납과 유치 배분비율은 수조반강과 마준수조 방식을 통해 매년 확정되었다.⁴⁷ 강원도 지역 역시 대동 중 6두를 정액 배분하는 방식이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변화되었다. 즉,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강원도 지역 대동은 수조반강 절차를 거쳐서 매년 상납·유치 배분비율이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⁴⁸ 다음으로 ②에서 보듯이, 대동유치분과 상정을 통합 운영토록 하였다.⁴⁹ 상정법 시행 이전부터 ‘6두미’와 상정을 혼용(混用)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양전이 시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양전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정이 부족하면 대동유치분을 사용토록 하였다.⁵⁰ 이로 인해 대동유치와 상정의 용처 구분이 불분명해지게 되면서, 지출대상을 ‘상정회감’으로 통칭

46 「新詳定事目」 10조. “嶺西未量邑則大同16斗 已量邑則12斗 嶺東已量邑則14斗 而每邑留置6斗 使之需用 雖是前規 今後則留置之數 不必定以6斗 詳定不足 則留置6斗外 又爲加留 詳定有餘則上納 當有加之 則本廳臨時區劃 必使上納 毋得過加留置 務從優多 或有意外別役 則以他邑留置者 依三南例移劃.”

47 선혜청에서 상납분, 영입수, 저치를 책정하여 이를 각도에 내려 보내는 과정을 수조반강이라 칭하고, 각도에서는 수조반강에 책정된 유치미에 의거하여 영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목별로 기록하여 다시 보고하는 행위를 마준수조라고 한다. 수조반강과 마준수조 절차를 통해 매년 대동의 상납, 유치 배분 비율이 확정되었다 (한영국, 1998, 「대동법의 시행」,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171~173쪽).

48 상정법 시행 이후 상납 10두, 유치 6두로 분록하지 말고, 수조반강을 기다린 다음에 배분 비율을 확정토록 하였다. 이로 인해 상납·유치 배분비율이 매년 不同하게 되었다(「新詳定事目」 12조 “大同留置多少 只觀詳定之足不足 上納多少 又觀留置之足不足 則上納與留置 自當迭相多少 逐歲不同 此後則大同上納條 與留置條 勿爲分錄 待本廳收租稟頒降 上納者 勿論多少 謂之大同 留置者 勿論多少 謂之留置”).

49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상납분과 유치분의 용어가 改稱되었다. 상납분은 ‘大同’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6두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留置’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新詳定事目」 12조. “上納者 勿論多少 謂之大同 留置者 勿論多少 謂之留置”).

50 「新詳定事目」 10조. “今後則留置之數 不必定以6斗 詳定不足 則留置6斗外 又爲加留 詳定有餘則上納 當有加之 則本廳臨時區劃 必使上納 毋得過加留置 務從優多.”

하게 되었다.

③은 불시지출에 대한 대비 방안이다. 상정법 시행 이후 지방 군현에서 상정이 부족하면 인근 군현에서 남은 재원을 이전하여 지출토록 하였다. 이는 삼남 지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삼남 지역은 여미가 부족한 군현은 인근의 여유가 있는 군현에서 추이(推移)하여 충급하였다.⁵¹ 강원도 지역 역시 별역(別役)이 있으면 타 군현의 유치한 것을 삼남의 예대로 이획(移劃)토록 하였다. 이는 인삼 분정의 불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당시 인삼 분정의 불균으로 인해 군현 간의 상정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 인삼 분정이 많은 군현은 상정이 부족한 반면에 인삼 분정이 적은 군현은 상정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인삼 분정방식을 개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이미 10여 년 전에 실패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상정법에서는 상정이 부족하면 여유가 있는 군현의 상정을 이속토록 한 것이다.⁵² 이 밖에 불시지출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재원을 설정하였다. 상정법은 소위 간년조(間年條)와 불시지출 등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지출액을 합산하여 총액의 5분의 4를 지방 군현에 매년 배분토록 하였다.⁵³ 이는 삼남 지역 대동법에서 여미를 설정하여 불시지출을 대비토록 한 방식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러면 상정회감 대상, 즉 상정의 용처는 어떻게 될까? 『신상정사목』에는 상정의 용도를 확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51 『호서대동사목』 6조; 『전남도대동사목』 8조; 『영남대동사목』 6조.

52 『新詳定事目』 6조, “各邑人蔘 分定多少 本自不均 以致詳定不足之不一也 今若改定人蔘分排數文 則詳定亦當均齊矣 久遠之規 猝難更張 此後詳定或有移劃之事 專有於當初分排之不均也 實非劃此與彼也 各邑守令 若或不究其事 從事爭難 則道臣狀聞論罪.”

53 상정법 시행 초반에는 소위 1~2년, 혹은 5~6년, 7~8년에 1번 지출하는 간년조와 불시상하(不時上下)와 같이 항정이 어려운 지출 내역은 1년에 1번 지출하는 방식과 같이 합계를 내어, 총액의 5분의 4를 지방에 배분토록 하였다. 추후에는 상납과 유치는 매년 옹하의 다소를 고려하여 가감토록 하였다(『新詳定事目』 13조, “各邑用下中 逐年應下者 無容更議 所謂間年條者 乃是1.2年1下者 或5.6年 7.8年 1下者 及無時上下 難以恆定者 若以1年1下樣 通同合計 執其影數 留其5分4 則足可支用而有餘 初年則依此數留置 前頭上納與留置 每計用下之多少 輒定新劃之加減 俾準四五留置之數.”).

14조. ① 당초 상정과 유치조를 본관에 주어서, 융통하여 용하토록 하니, 그 법이 문란하다. 여유가 있다고 이르고, 부족하다고도 이르니 순영과 상사에서 빙고할 수가 없다. ② 지금부터 삼남사목을 대략적으로 모방하여 1년 용하를 신정식에 따라서 시행한다. ③ 그리고 매년 세말에 본청에 회안을 수보하여 마감토록 한다.⁵⁴

①에서 보듯이, 상정법 시행 이전에는 상정과 유치조의 지출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 군현에서는 자의적인 집행이 빈번하였고, 감영과 상사에서는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②에서 언급된 방식처럼 삼남 지역의 대동사목을 참고하여 1년 용하 내역을 규정지었다. 이로 인해 상정법 시행 이후 지방 군현은 신정식을 토대로 각종 지출을 집행해야만 했다. 그리고 ③에서 보듯이 연말에 각종 지출 내역을 본청(강원청)에 보고토록 하였다.⁵⁵

이처럼 상정법 시행 이후 중앙정부는 상정회감 대상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지출 내역에 대한 규정이 『신상정사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분야별로 지출 내역 중에서 중요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① 16조. 상정을 이미 이정하고, 관수 또한 넉넉히 지급하면 각 읍의 수용이 당연히 충분할 것이다. 이후에는 조가에서 획급하는 관수와 아록전에서 소출 이외에 관청에서 잡물을 민결에 분정하는 폐해는 일절 통금하고, 어기는 지는 중률로 다스리도록 하다.⁵⁶

54 『新詳定事目』 14조. “當初詳定 與留置條 付之本官 通融用下 而其法紊亂 曰有餘 曰不足 巡營與上司 無以憑考 自今爲始略倣三南事目 一年用下 一從新定式施行 而每年歲末 則爲修報 會案於本廳 以爲磨勘之地.”

55 ‘갑술개상정’ 시행 이후 매년 연말에 강원청에 회계안을 보고하여 마감토록 조치하였다 (『新詳定事目』 9조. “大同與詳定 一體句管於京廳.”).

56 『新詳定事目』 16조. “詳定既釐正 官需又優給 則各邑需用當足 此後朝家所劃官需 及衙祿所捧外 官廳雜用分定民結之弊 一切痛禁 犯者繩以重律.”

② 17조. 춘추석전제의 폐백·제물·지축필묵가는 주부는 70냥, 군은 60냥, 현은 40냥이고, 향교이안고유제는 주부는 20냥, 군은 15냥, 현은 10냥을 마련한다. 원주·강릉 양 읍은 각양 제수는 대학의 예대로 시행하여, 다른 것에 비해 더 마련한다.⁵⁷

③ 28조. 각 읍 신·구관의 영송쇄가는 보통의 기복과 차이가 있으니, 쇄가는 매일 특별히 5전을 추가하여 2냥을 마련하니, 각 읍의 정도에 따라서 일수를 계산하여 상하한다. 신영(新迎)에 유경량미(留京糧米)는 필당에 5전씩 마련하여 가하한다. 영동의 각 읍에 이르러 영로가 심히 어려우니, 각양 쇄가를 마련하는 것에 식례를 강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그중에 과람함이 더욱 심한 것은 간략히 감삭하고, 지나치게 많지 않은 것은 우선 잉존하여 이에 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교군은 타도에 없는 것이니 특별히 혁파할 것이다.⁵⁸

④ 32조. 황장판을 분정한 읍에 합당한 재목이 없어 다음에서 배어 오면, 판재 가본을 상정으로 마련하여 판재 생산된 읍에 이송하고, 상정 중에서 회록할 것이다.⁵⁹

⑤ 47조. 감사도계진상, 간삭진상, 진하진상은 본래 일정하게 정해진 시기가 없고 절기에 따라서 봉진하니, 진상물종을 미리 정해서 상정책에 기록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단지 진상명호와 물종을 기록하고 봉진할 때에 이르렀을 때 모 진상, 모 물종 얼마를 모 읍에 분정하였다고 성책하여

57 『新詳定事目』 17조. “春秋釋奠祭幣祭物紙燭筆墨價 州府七十兩 郡六十兩 縣四十兩 鄉校移安告由祭 州府二十兩 郡十五兩 縣十兩磨鍊 原州·江陵兩邑 各樣祭需 依大學例施行 比他加磨鍊.”

58 『新詳定事目』 28조. “各邑新舊官 迎送刷價 則與尋常騎卜有異 刷價每日特加5錢 以2兩磨鍊 隨其各邑程道計日上下 新迎時 留京糧米 每匹米5錢式磨鍊加下 至嶺東各邑 嶺路甚難 各樣刷價磨鍊 有難強從式例 其中尤甚過濫者 則略略減削 而不爲太多者 姑爲仍存 依此施行 輻軍各色 他道所無 特爲革罷.”

59 『新詳定事目』 32조. “黃腸板分定之邑 如無可合材 斫取於他邑 板材價本 以詳定磨鍊 移送於板材所出邑 以爲會錄於詳定中.”

본청에 보고하여 회감할 때 증빙으로 삼는다.⁶⁰

①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강원도 대동법은 공물, 진상물 등 경상납물 위주로 대동작미를 시행한 경대동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원, 예를 들어 관수 등이 책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은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에 아록공수위진 등의 명목을 통해 제한적으로 획득되었던 지방재정이 상정 내에 영관수를 일정 부분 확보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체계적인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②는 지방의례에 관한 규정이다. 상정법 시행 이전 지방 군현에서는 각종 제수를 어염세 등을 통해 확보하고 있었다.⁶¹ 이는 강원도 대동법에서 지방 의례 경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상정회감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춘추석전제를 포함한 사직제, 기우제, 각종 희생 등은 상정회감되었다.⁶²

③은 쇠마가에 대한 규정이다. 쇠마는 민이 우마를 제공하여 물자의 운송과 관료의 영송에 동원되는 것으로, 지방재정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60 『新詳定事目』 47조, “監司到界進上, 聞上陳賀進上, 本無一定之時, 隨節封進, 則進上物種, 進上物種, 不河預之載錄於詳定冊, 只錄進上名號, 物種段, 當其封進時, 以某進上某物種, 幾許分定於某邑是如, 成冊報本廳, 以爲會減時, 憑考之地爲白齊.”

61 균역법 시행을 계기로 어염세가 균역청에 이속됨으로써 강원도 지방 군현은 제수 확보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비변사등록』 125책, 영조 29년 9월 6일, “又所達, 此卽江原監司尹得和狀達也, 各邑 魚·鹽日次稅, 已爲革罷, 釋采及各節祭需魚物價, 以大同會減事, 爲請矣, 魚鹽日次稅今既革罷, 則釋采 及節祭祭需, 事體重大, 不可不變通, 依嶺西各邑例, 以大同折定會減之意, 分付何如, 令曰, 依爲之.”), 이는 지방 군현에서 각종 의례에 관련된 비용을 어염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62 『신상정사목』에는 사직제, 기우제, 희생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었다. 우선 사직제의 제물, 황축 등 가마는 1석 5두, 필목가는 3전, 사역서원의 제물 가전은 3냥 2전, 필목가전은 3전, 춘추성황려제 3차례의 제물축 가전이 2냥 5전, 필목가전은 4전 5분이다(『新詳定事目』 18조, “社稷祭祭物黃燭等價米一石五斗 筆墨價二錢 賜額書院祭物幣獨價錢三兩二錢 筆墨價錢三錢 春秋城隍陽祭三巡祭物獨價錢二兩五錢 筆墨價錢四錢五分.”), 그리고 기우제 소입은 예대로 원회부회감하고, 혹 관청에서 상하하는 읍은 사체가 미안하니, 이후에는 원회부로 회감토록 하였다(『新詳定事目』 19조, “祈雨祭所入 例以元會付會減 或有自官廳上下邑 事體未安 此後并元會付會減”), 이 밖에 제향에 소용되는 저구기는 본래 타도의 예대로 원회부로 상하하고, 자저·옹저 각 1구는 원회곡으로 무축하여 새끼를 배면 취용하니, 상정 중에서 회감하지 않고, 원주 치악산과 양양 동해모의 제수인 저고는 본읍에 있는 것을 취용하고, 타읍에 분정하는 규정은 혁파하였다(『新詳定事目』 20조, “祭享時所用猪口價 本依他道例 以元會付上下 雌雄猪各1口 以元會數買畜 孳產取用 詳定中勿爲會減 而原州稚岳山 襄陽東海廟祭需 所用猪羔 以本邑所在者取用 他邑分定之規革罷.”).

있었다. 삼남 지역은 대동법 시행 이후 왜마가를 대동작미에 포함시켰다.⁶³ 그러나 강원도 대동법은 왜마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였다. 이로 인해 지방 군현은 대동법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인리 8결, 잡역세 등을 통해 왜마가를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⁶⁴ 이 같은 방식이 상정법 시행을 계기로 상정회감 방식으로 개편된 것이다.⁶⁵ 상정회감 대상에 포함된 왜마 내역은 외방진상 운반, 수령의 공사 업무로 인한 왕래, 신구관의 교체, 사문·전문·향축 등을 가져오는 교생 등이 있다. 지급되는 마필과 회감 액수는 중앙까지의 거리, 업무 목적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식(90리)을 1일정으로 하여 15냥을 지급하였다.⁶⁶

④는 황장목에 대한 규정이다. 황장목은 재질이 단단하여 그 심재부를 취하여 제작한 목재는 왕실의 관을 만드는 사용되었다. 특히 광범위한 산림지대가 위치한 강원도 지역은 황장목의 장량처로 인정받아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봉산이 설정되어 있었다.⁶⁷ 삼척읍 도하면에도 황장목 1립이 분정되어 있었고, 채취와 운반과정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⁸ 이러한 황장목을 상정법 시행 이후에 상정회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분정된 군현에서 황장목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에서 채취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상정에서 지급토록 하였다.

⑤는 진상물에 대한 규정이다. 진상물은 관찰사, 병마·수군절도사 등이

63 金德珍, 2001,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雇馬庫 설립과 운영」, 『韓國史研究』 112.

64 인조 16년(1638) 강릉부사 시절 박명부는 신구관의 영송비 확보를 위해 강원도 지역 각 관에서 인리복호(人吏復戶) 관행을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朴明博, 『知足堂文集』 券1, 疎, 江陵民弊疎. “一日 迎送之弊 當初大同磨鍊時 各官人吏·官奴婢復戶 大邑則都合50結云 必以50結爲新舊迎送之費也.”).

65 『萬機要覽』 財用編3, 大同作貢, 夫刷馬價. “夫刷馬 人夫, 刷馬價, 並以儲置取用, 三南沿邑以錢代用, 京畿, 關東並如儲置例.”

66 『江原廳事例』 夫刷價. “凡進上刷馬負持 及因公往來騎卜馬 計程上下 30里爲1息 或稱1站 本道以日計程3息爲1日程卜馬1.5兩 而新遞則加給5錢 騎馬同卜馬 而小米則2.5斗 負持半減 以各穀布子準折代用 ○各樣凡進上·別卜定·別進上物種載馬負持 毋論他本道封進 并各邑替運 而駄價至京會減 ○因公往來·赦文·箋文·香祝·傳諭·巡審 及別星等行 并隨時會減.”

67 박봉우, 1996, 「황장금표(黃腸禁標)에 관한 고찰(考察)」, 『韓國林學會誌』 85(3).

68 유지영, 2018, 「19세기 삼척부 도하면의 세역과 민원」, 『江原史學』 30.

왕실에 바치는 예물로서, 대동법 시행 이후에도 대부분의 물품이 현물상납 되었다. 진상물 중에서 감사도계진상과 간삭진상, 진하진상은 일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시에 진상물을 바쳐야 하면 지방 군현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상물을 미리 정하여 산지 군현에 분정하고, 이를 추후에 강원청에 보고토록 하였다.

요컨대, 『신상정사목』에는 총 50개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내용별로 분류하면 상정법의 시행 경위, 수취·배분방식, 상정회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IV. 맺음말

항길고택은 강릉김씨 감찰공파의 파조인 김자현의 후손들이 세거해 온 강원도 삼척부(현 동해시) 용정리의 고택을 이른다. 항길고택에는 약 1천여 권의 고서와 고문서가 소장되었고, 이는 ‘항길고택문고’라고 지칭되었다. 항길고택문고에는 족보, 호구자료, 일기류 등 다방면의 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항길고택문고의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항길고택문고에 소장된 사료 중 하나인 『신상정사목』을 주목한 이 글을 통해서 항길고택문고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신상정사목』은 영조 30년(1754) 강원도 상정법의 운영규정에 해당한다. 상정법은 공납제 개혁, 대동법의 시행과 제도적 한계, 지방사회의 대응, 군역법 시행과 결전 부과 등 조선 후기 부세개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강원도 대동법은 삼남 지역과 달리 경대동 방식을 채택하면서 관수, 쇠마, 불시지출 명목의 잡역 징수가 법적으로 용인되었다. 이로 인해 대동법 시행 이후에 광범위한 잡역 징수가 이루어졌고, 잡역 징수로 인한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강원도 관찰사는 잡역 상정을 통해 잡역 징수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영조 4년(1728)에 시행된 기유상

정으로, 잡역 상정가가 확정되면서 잡역 징수액이 고정되었다. 그러나 기유 상정이 가지고 있는 읍대동·사대동이라는 성격과 인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잡역 상정가 이외의 잡역 징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균역법이 시행되면서 급대제원 확보를 위해 결전(결미)이 부과되었다. 중앙 정부는 결전(결미)의 안정적인 징수를 위해 강원도 지역의 잡역 징수에 대한 통제가 선행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기유상정을 개정하는 갑술 개상정, 즉 상정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향길고택문고에 소장된 『신상정사목』은 상정법의 운영규정이다. 그러나 『신상정사목』은 상정사목의 전문이 아니다. 이는 홍봉한의 문집인 『어정의 정공주고』에 수록된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와의 항목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에는 삼척 이외 군현의 사례, 강원청과 호조의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으나, 『신상정사목』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삼척읍의 사례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신상정사목』이 상정사목의 항목 중에서 삼척읍 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요약·발췌한 실무용 서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신상정사목』은 총 5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항목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상정법의 시행 경위, 수취·배분방식, 상정회감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시행 경위 부분을 살펴보면 영조 30년(1754) 상정법이 시행된 경위, 즉 『신상정사목』이 간행된 경위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취·배분방식은 시행 경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강원도 지역의 결역을 경감하고 이를 대동·상정세에 반영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동과 상정의 상납·유치 비율방식의 변경과 대동유치분과 상정의 통합 운영에 관한 내용, 불시지출에 대한 대비 방안, 수취물 간의 교환비율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상정회감방식은 『신상정사목』에서 분량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상정사목』에는 기존에 대동세 회감대상에서 누락된 관수, 쇠마, 지방의례, 황장목 등에 대한 경비를 상정회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도계진상, 간삭진하진상 등 부정기적인 진상물 마련 방식에 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원청사례』, 『신상정사목』, 『어정홍의정공주고』, 『지족당문집』.
- 권기중, 2012, 「조선후기 부세의 운영과 감사의 역할」, 『역사와 현실』 81.
- 김덕진, 1999, 『조선후기 지방재정과 잡역세』, 국학자료원.
- 金德珍, 2001, 「조선후기 지방관청의 雇馬庫 설립과 운영」, 『韓國史研究』 112.
- 金容燮, 1984, 「民庫制의 釐正과 民庫田」, 『增補版 韓國近代農業史研究』 上, 一潮閣.
- 박봉우, 1996, 「황장금표(黃腸禁標)에 관한 고찰(考察)」, 『韓國林學會誌』 85(3).
- 배재홍, 1997, 「조선후기 삼척지방 江陵金氏 三陟派 恠係의 戶口 자료」, 『朝鮮史研究』 6.
- _____, 1999, 「조선후기 결혼식 부조관행(扶助慣行)-강릉김씨 항길택(宅) 결혼식 부조기(扶助記)를 중심으로-」, 『朝鮮史研究』 8.
- _____, 2004, 「18세기 말 정조연간 강원도 삼척지방 이상기후와 농업」, 『대구사학』 75.
- _____, 2011, 「조선후기 울릉도 수토제 운용의 실상」, 『대구사학』 103.
- 송양섭, 2010, 「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한국사학보』 38.
- 유지영, 2018, 「19세기 삼척부 도하면의 세역과 민원」, 『江原史學』 30.
- 이원택, 2023, 「항길고택일기의 울릉도 수토 관련 기사 역주와 그 사료적 가치」, 『동북아역사논총』 81.
- 장정수, 2023, 『항길고택문고 목록집(도서편)』, 동북아역사재단.
- 전상욱, 2022, 「17세기 전방 강원도 대동법의 시행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 103.
- _____, 2022, 『조선후기 강원도 지역의 貢納制 개혁과 大同·詳定法 시행』,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경숙, 1993, 「강릉김씨 호구단자 분석연구-18세기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인문학보』 16.
- _____, 1994, 「강릉김씨 호구단자 분석연구(2)-19세기 호구단자를 중심으로」, 『인문학보』 17.
- 정연식, 1993, 「18세기 결포론의 대두와 결미절목의 제정」, 『國史館論叢』 47.

- 차장섭, 1997, 「조선시대 족보의 편찬과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
한영국, 1998, 「대동법의 시행」, 『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국문초록

항길고택은 강릉김씨 감찰공파의 파조인 김자현의 후손들이 세거해 온 강원도 삼척부(현 동해시) 용정리의 고택을 이른다. 항길고택에는 약 1천여 권의 고서와 고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사료 중에서 이 글은 『신상정사목(新詳定事目)』을 주목하고자 한다.

『신상정사목』은 영조 30년(1754) 강원도 상정법의 운영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상정사목』은 상정사목의 전문이 아니다. 이는 홍봉한의 문집인 『어정의정공주교』에 수록된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江原道大同詳定節目撮要)」와의 항목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강원도대동상정절목촬요」에는 삼척 이외 군현의 사례, 강원청과 호조의 규정 등이 수록되어 있으나, 『신상정사목』에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삼척읍의 사례만 기재되어 있다. 이는 『신상정사목』이 상정사목의 항목 중에서 삼척읍 운영과 관련된 항목을 요약·발췌한 실무용 서적이었음을 보여 준다. 『신상정사목』은 총 50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항목은 내용별로 분류하면 상정법의 시행 경위, 수취·배분방식, 상정회감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같은 『신상정사목』은 강원도 상정법의 운영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주제어>

삼척, 항길고택, 『신상정사목』, 대동법, 상정법

ABSTRACT

An Analysis of Joseon's Financial Data in the Samcheok Hanggil Gotaek Library: Focusing on *Shinsangjeongsamok*

Jeong, Sang Uk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Ajou University)

Hanggil Gotaek, an ancestral residence in Yongjeong-ri, Samcheok-bu (present-day Donghae-si), Gangwon-do, has been the home of the descendants of Kim Ja-hyun, the progenitor of the Gamchalgong branch of the Gangneung Kim clan. The residence houses approximately 1,000 ancient texts and manuscripts. This paper focuses on one such document, *Shinsangjeongsamok* (新詳定事目).

Shinsangjeongsamok contains operating regulations for the Gangwon-do Sangjeong Law during the 30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1754). However, it is not a complete text of the *Sangjeongsamok*; rather, it serves as a practical manual summarizing and excerpting provisions specific to the administration of Samcheok. A comparison with "Gangwondo daedong sangjeong jeolmok chwalyo" included in *Eojeongikjeong gongjugo*, reveals that while the latter includes examples from other regions and regulations from the Gangwon authority and the Ministry of Taxation, *Shinsangjeongsamok* limits itself to cases pertinent to Samcheok-eup. *Shinsangjeongsamok* comprises 50 articles, which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e history of the Sangjeong Law's implementation, methods of collection and distribution, and systems of accounting and expenditure. This text thus provides insight into the practical operations of the Sangjeong Law of Gangwon.

Keywords

Samcheok, Hanggil Gotaek, *Shinsangjeongsamok*, Daedong Law, Sangjeong Law

연구 제언



- **최진열** | 고구려의 경계 지리-농업·광업·목축·소금 생산의 지리적 분포를 중심으로
- **소순규** | 조선 전기 지리지 속 우산·무릉도 기사의 이해에 관한 제언-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교수의 논설에 대한 비평을 겸하여
- **박병섭** | 독도에 대한 현상유지원칙 (Uti Possideti)의 적용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고구려의 경제 지리

- 농업·광업·목축·소금 생산의 지리적 분포를 중심으로

최진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 I. 서론
- II. 농업
- III. 목축
- IV. 광업과 금속 생산
- V. 소금 생산
- VI. 결론

1. 서론

고구려가 요동 지역의 철기를 장악하여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¹ 철기 문제를 제외한 고구려의 경제에 대한 지식은 아직 많지 않다. 이는 고구려의 경제에 대한 사료가 적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막연히 백제나 신라가 농업 생산에서 고구려를 앞지를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다. 고구려 사람들이 절식(節食)한다는 『삼국지』 「고구려전」 기록도 고구려가 농업 후진국이라는 이미지를 부채질하였다.

현재 고구려 농업과 관련된 연구는 고구려² 또는 그 이전 한대 요동군 일대의 농업기술,³ 우경,⁴ 음식·식재료⁵ 및 취사도구⁶를 통한 고구려의 농작물 분석, 탄화미 분석⁷ 등이 있으며 최근에 고구려 토지의 비옥도를 추정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⁸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구려시대 곡창 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아래의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곡창 지대는 요하 유역의 대평원과 아래의 한반도의 평안도·황해도 일대로 추정된다. 현재 중국의 길림성(지린성)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서 기록의 부족으로 두만강과 송화강(松花江)

* 논문 투고일: 2024.8.6. 심사 완료일: 2024.11.15. 게재 확정일: 2024.11.15.

1 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 1, 29~90쪽.

2 김재홍, 2005, 「高句麗의 鐵製 農器具와 農業技術의 발전」, 『동북아역사논총』 8, 57~96쪽.

3 최덕경, 2002, 「『齊民要術』의 高麗豆 普及과 韓半島의 農作法에 대한 一考察」, 『동양사학연구』 78, 87~135쪽; 최덕경, 2005, 「遼東犁를 통해 본 古代 東北지역의 農業環境과 耕作方式: 高句麗 성장기반에 대한 農業史的 試論」, 『동북아역사논총』 8, 7~55쪽; 최덕경, 2007, 「古代 遼東지역의 農具와 農業技術」, 『중국사연구』 49, 1~80쪽.

4 서민수, 2014, 「고구려 전기 牛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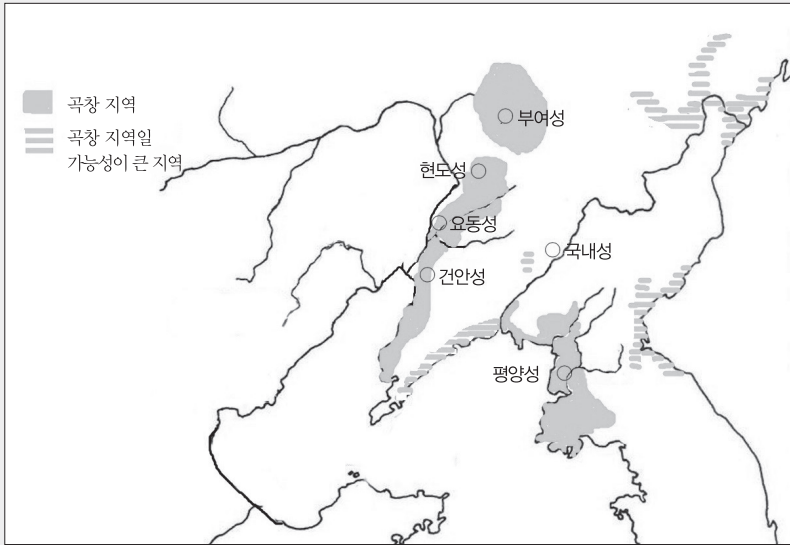
5 박유미, 2012, 「고구려 음식의 추이와 식재료 연구」, 『한국학논총』 38, 39~67쪽.

6 사공정길, 2014, 「고구려의 취사용기와 취사방식」, 『고구려발해연구』 49, 39~78쪽.

7 박태식, 2008, 「韓半島의 三國(百濟, 新羅, 高句麗) 遺蹟에서 出土된 炭化米의 比較」, 『농업사연구』 7-2, 153~161쪽.

8 최진열, 2023, 「高句麗의 농업-토지 비옥도와 인구·곡물 생산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6, 114~166쪽.

고구려의 경제 지리



〈그림 1〉 고구려의 곡창 지대 추정 지역

유역이 곡창 지대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처럼 고구려 농업의 복원은 자료의 부족 때문에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다.

이 밖에 고구려의 철이나 철기 연구는 주로 철기 제작⁹과 유통 문제¹⁰에 집중되었다. 소금 생산에 관하여 제염(製鹽) 유적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한반도 서북부(평안도) 지역의 상황을 분석한 연구¹¹와 고구려 벽화를 분석하여 농업·어업·수공업을 복원한 연구¹²가 있다. 이 밖에 고구려의 수취제도와 세율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¹³ 전체적으로 철기 제작을 제외하면 고구려 경

9 李龍範, 1966, 앞의 글, 29~90쪽; 朴長植·盧泰天, 2004, 「高句麗의 鐵器製作 技術體系에 關한 研究」, 『고구려발해연구』 18, 975~1002쪽; 朴長植, 2005, 「환도산성 및 한강유역 출토 철기에 나타난 고구려의 철기기술」, 『고구려발해연구』 20, 73~97쪽.

10 양인호, 2022, 「고구려의 鐵 유통에 대한 시론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73, 124~126쪽.

11 양인호, 2021, 「소금 생산 유적으로 본 1~5세기 초 평안도 지역의 소금 생산 방식」, 『한국고대사연구』 103, 45~79쪽.

12 耿鐵華, 1986, 「高句麗壁畫中的社會經濟」, 『北方文物』 1986-3, 27원쪽~32원쪽.

13 김기흥, 1987, 「6·7세기 高句麗의 조세제도」, 『韓國史論』 17, 5~30쪽; 김기흥, 1996, 「경제제도」, 『한국

제와 관련된 연구는 적다. 이는 문헌과 출토된 고고 유적 또는 유물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구려 전후의 시대로 시야를 확대하면 철 또는 제철¹⁴을 비롯한 지하자원,¹⁵ 소금 생산,¹⁶ 목축,¹⁷ 이를 종합한 요동 경제¹⁸ 등의 선행 연구를 이용할 수 있다. 지하자원과 소금은 전근대시대 채굴 또는 생산 지역이 일정했으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요동지(遼東志)』, 『전요지(全遼志)』, 『성경통지(盛京通志)』 등 고구려 이후 시대의 지리서 자료를 바탕으로 광산이나 생산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와 고고 유물과 유적, 조선의 경제 지리를 다룬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 만주 지역의 지리를 다룬 『요동지』, 『전요지』, 『성경통지』,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 등 다양한 사료를 정리하면 고구려 경제와 농작물과 지하자원의 지리적 분포 상황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구려의 농업과 야금(冶金)·야철(冶鐵), 목축, 소금 생산은 단순히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지식이다. 비록 자료의 부족으로 각 경제 분야의 총 생산량을 계산할 수 없지만 이 글에서 농업과 금·은·철 등 지하자원, 소금 생산, 목축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상황을 특히 해당 경제 요소의 지리적 분포를 중심으로 고구려의 경제 지리를 복원하려고 한다.

사] 5(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98~201쪽.

14 テゲンクレン著, 甘粕成雄譯, 1940, 『中國鐵鑛誌』, 北支開發株式會社調査課, 85~96쪽; 鬼頭三郎編, 1940, 『滿洲の資源』, 滿洲事情案內所, 6쪽; 集安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2005, 『集安市志: 1984-2003』, 吉林文史出版社, 72쪽; 王俊鋒, 2020, 『漢遼東郡安市, 平郭, 文三縣地望再探—兼論漢代遼南的政區地理』, 『中國邊疆學』 13, 106쪽.

15 Robert Burnett Hall, 1930, "The Geography of Manchuri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152, pp. 278~292.

16 王金令·孫福海·姚景芳, 1999, 『明代營口鹽業研究』,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9-3(總3期), 139쪽; 張光宇·楊新亮, 2011, 『明代遼東營口地區海鹽業的發展之概觀』, 『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2(第13卷 總第56期), 327오른쪽; 張士尊, 2014, 『明代遼東都司鹽場百戶所的地理分布』, 『鞍山師範學院學報』 16-3, 12왼쪽~20쪽.

17 張士尊, 1997, 『明代遼東馬政探論』, 『社會科學輯刊』 1997-3(總第110), 94왼쪽~99오른쪽; 張士尊, 2002, 『明代遼東邊疆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412~418쪽.

18 최진열, 2022, 『前燕·昌黎時代(289-350) 遼東·遼西 經濟』, 『東洋史學研究』 159, 95~149쪽.

먼저 2장에서 문헌과 고고유물 자료를 통해 고구려 사람들이 재배한 농작물의 종류를 곡물류, 콩나무와 삼(마), 인삼으로 나누어 지리적 분포 양상을 살펴본 후(1절), 고구려의 생산기술과 생산량을 분석한다(2절). 이어서 3장에서 고구려의 말 사육과 기병 병력을 검토한 후(1절), 다양한 지리서와 묘지명 등을 분석하여 고구려가 말과 기타 가축을 길렀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정한다. 다음으로 4장에서 철광석 분포 지역과 철기 유물, 제련 유적의 지역 분포를 검토한 후(1절) 금·은·구리 생산 지역을 정리한다(2절). 마지막으로 5장에서 소금 생산 지역을 만주와 한반도 북부·중부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연구는 고구려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농작물과 지하자원, 소금 생산지 등의 지리적 분포를 복원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II. 농업

1. 농작물의 종류와 지역 분포

1) 곡물류

『구당서』 「고려전」에서 고구려의 농경이 대략 중국과 같다고 기록하였다.¹⁹ 『태평환우기』에서 고구려에서 좁쌀, 보리, 검은 기장, 아욱(葵)을 재배했다고 기록하였다.²⁰ 당시 중국 화북 지방에 보편화된 농작물 다수가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먼저 『택리지』의 기록을 통해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땅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했는지 살펴보자. 『택리지』에서 평양 주변 지역이 밭농사 위주였지만

19 『舊唐書』卷199上, 「東夷·高麗傳」, 5320쪽, “種田養蠶, 略同中國.”

20 『太平寰宇記』(樂史, 北京: 中華書局, 1985), 2466쪽, “有粟及麥·稞, 菜則有葵.”

21 劉成贊·李亞光, 2018, 「唐代遼寧地區農業發展述論」, 『瀋陽大學學報(社會科學版)』20-4, 441오른쪽.

벽지도(碧只島)에서 논농사가 가능하다고 기록했으므로²² 논과 밭에서 생산되는 곡물이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평안도가 조세로 바치는 곡물이 쌀과 기장, 좁쌀, 콩, 보리, 참깨와 검은깨(芝麻)라고 기록하였다.²³ 여러 곡물 가운데 쌀(稻米)이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을 보면 쌀이 평안도에서 중요한 재배 작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지리지에서 강계 지역에서 벼를 재배했다고 기록하였다.²⁴ 이는 조선 후기에 압록강과 가까운 지역인 한반도 최북단까지 벼를 재배할 수 있었음을 뜻한다.

황해도는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납·철·면화·벼·기장·생선·소금 따위가 생산되고 있다”²⁵라고 기록했는데 조선 후기에 면화와 벼, 기장 등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오리강 주변 황해·봉산(鳳山)·서흥·평산과 안악(安岳)·문화(文化)·신천(信川)·재령(載嶺)이 땅이 기름져서 오곡과 면화를 가꾸기 알맞았다.²⁶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황해도에서 쌀, 콩, 보리, 지마(芝麻)·향유(香油)·소자유(蘇子油)·봉밀(蜂蜜)·황랍(黃蠟)·말장(末醬) 등을 조세로 징수했다고 기록하여²⁷ 황해도에서도 쌀이 중요한 곡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기사에서 고려 말에 들어온 면화를 제외한 벼와 기장, 오곡으로 통칭되는 곡물이 고구려 당시에 도 황해도 일대에서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택리지』 [이중환 지음, 이익성 옮김, 을유문화사, 1993(개정판 2002)], 「팔도총론」, 평안도·평양조, 37~38쪽.

23 『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平安道條, “墾田三十萬八千七百五十一結, 厥賦, 稻米·稷米·粟米·黍米·豆·麥·芝麻.”

24 『신증 동국여지승람』 6(이행 외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솔, 1996) 제55권 강계도호부·비고·토산조, 634쪽, “... 쇠[鐵: 옛 연주(延州)에서 산출한다]... ·벼(稻)·기장(黍稷)·옥수수[苴生(苴城)에서 많이 생산하며 토민(土民)이 이것으로써 양곡을 대신한다].” 민족문화추진회의 『신증 동국여지승람』 번역문은 『동국여지승람』과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외에 『대동지지』 등 다른 지리지의 기록도 번역하였고, [비고]란으로 표기하였다. [비고]의 원문과 출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에서 번역문을 그대로 실는다.

25 『택리지』, 「팔도총론」, 황해도조, 57쪽.

26 『택리지』, 「팔도총론」, 황해도조, 53쪽.

27 『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黃海道條, “墾田十萬四千七百七十二結, 厥賦, 稻米·【有粳米·中米·糙米·粟米·糯米】豆·【有大豆·小豆·菉豆】麥·【有大麥·小麥·蕎麥】芝麻·香油·蘇子油·蜂蜜·黃蠟·末醬.”

“함흥 이북은 산천이 험악하고 풍속이 사나우며 기후가 춥고 토지도 메말라 곡식은 조와 보리뿐이며, 벼는 적고 면화도 없다”²⁸라는 『택리지』의 기록을 보면 옛 옥저 지역에서도 조와 보리를 재배할 수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²⁹

고고유물 발굴 결과에 따르면, 연천 호로고루와 무등리 2보루 등지의 고구려 산성에서 쌀·조·콩·팥이 다량 출토되었으며, 평양의 대성산성에서는 밀이 출토되었다.³⁰ 연천군의 고구려 산성에서 발견된 곡물이 이곳에서 생산된 것인지, 후방에서 운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의 경기도 북부와 황해도 지역에서 쌀·조·콩·팥이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평양에서 출토된 밀은 발농사가 많다는 평양 주변의 농업 상황을 다룬 『택리지』의 기록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압록강 이북의 만주 지역이다. 『한서』 「지리지」에서 “상곡(上谷)부터 요동(遼東)까지 땅이 넓고 백성들이 드물며 여러 차례 호(湖)의 침입을 받았다. 풍속은 조(趙)·대(代)와 유사하며 물고기, 소금, 대추, 밤이 풍부하였다”라고 기록하였지만,³¹ 이곳에서 생산되는 곡물류는 기록하지 않았다.³²

고구려와 발해 시대 곡물과 관련된 사료를 검토해 보자. 『삼국사기』에 548년(양원왕 4) 환도(丸都)에서 화(禾)를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³³ ‘禾(화)’는 곡

28 『택리지』, 「팔도총론」, 함경도조, 45쪽.

29 『세종실록』 「지리지」에 함길도(함경도)에서 거두는 작물로 쌀과 콩, 보리, 좁쌀이라고 기록하였다(『世宗實錄』 卷154, 「地理志」, 咸吉道條, “墾田十三萬四百十三結。【旱田十二萬三千七百四十二結有奇, 水田六千六百七十結有奇。】厥賦, 稻米【糙米·黃豆·麥【大麥·小麥】·粟米。】。 그러나 『택리지』에서 서술한 것처럼 쌀의 생산량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30 안승모, 2008, 「콩과 팥의 고고학」, 『인제식품과학포럼논총』 15, 77쪽; 박규진·이동진, 2021, 「발해시기 농업의 전개와 성격—철제 농기구와 식물유체 분석을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71, 176쪽.

31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燕地條, 1657쪽.

32 『遼寧省志·地理志』에는 『漢書』 卷28上, 「地理志」 8上의 “東北曰幽州: 其山曰醫無閭, 藪曰獫狁, 川曰河·泲, 浸曰菑·時; 其利魚·鹽; 民一男三女; 畜宜四擾(師古曰: 馬·牛·羊·豕。), 穀宜三種(師古曰: 黍·稷·稻。),”라는 기록을 인용하여 목축과黍·稷·稻의 농경이 가능했다고 서술하였다(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辦公室 主編, 2001, 『遼寧省志·地理志』, 遼寧民族出版社, 18쪽), 그러나 인용한 『漢書』 卷28上, 「地理志」 8上(1541쪽)의 기록은禹의治水에 나오는禹貢九州를 서술한 내용으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3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陽原王四年九月條, “秋九月, 丸都進嘉禾。”

물의 범칭으로 사용되고 속(粟, 좁쌀)이나 벼란 뜻도 있다. 이 기사의 ‘禾’가 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면 압록강 이북의 환도 지역에서 이미 벼가 재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옥저 지역에서 오곡이 재배되었다.³⁴ 오곡은 문헌마다 다르다. 『사기집해』에서 오곡을 서(黍)·직(稷)·콩(菽)·보리(麥)·벼(稻),³⁵ 『한서』 「식화지」 안사고주에서 서(黍)·직(稷)·마(麻)·보리(麥)·콩(豆),³⁶ 『후한서』 「현종기」의 장회태자주에서 정현주(鄭玄注)를 인용해 서(黍)·직(稷)·보리(麥)·마(麻)·콩(尗, 豆)³⁷이라고 풀이하였다. 공통적으로 언급된 곡물은 서(黍)·직(稷)·보리(麥)이며 한지는 다르지만 콩(菽 또는 豆)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영토에 편입된 옥저에서 최소한 기장(黍 또는 稷), 보리, 콩을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제민요술』에 황고려두(黃高麗豆)와 흑고려두(黑高麗豆)³⁸의 명칭이 보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콩 품종이 최소 두 가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서 옥주(沃州)의 솨(蘇), 용주(龍州)의 명주(絀), 노성(盧城)의 벼(稻), 구도(九都, 丸都)의 오얏(李), 낙유(樂游, 樂浪?)³⁹의 배(黎)가 각 지역의 특산물로 기록되었다.⁴⁰ 이 기사에서 만주 지역인 노성에서 벼가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때 편찬된 요동의 지방지인 『요동지』에서 요동도사(遼東都司) 관할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기장(黍·稷·粱), 벼(稻), 미(糜), 좁쌀(粟), 피(稗), 황두(黃豆)·녹두(菘豆)·완두(豌豆)·참두(蠶豆)·흑두(黑豆)·강두(豇豆)·소두(小豆), 보

34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東沃沮傳』, 846쪽, “其土地肥美, 背山向海, 宜五穀, 善田種.”

35 『史記』卷1, 『五帝本紀·黃帝本紀』, 注引集解, 113쪽, “鄭玄曰‘五種, 黍·稷·菽·麥·稻也.’”

36 『漢書』卷24上, 『食貨志』4上, 顏師古注, 1120쪽, “種卽五穀, 謂黍·稷·麻·麥·豆也.”

37 『後漢書』卷2 『顯宗紀』, 永平十年條, 113쪽, “鄭玄注周禮云: ‘五穀, 黍·稷·麥·麻·尗也.’”

38 『齊民要術』(賈思勰 著, 繆啓愉 校釋,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1998) 卷2, 『大豆』, 109쪽, “今世大豆, 有白·黑二種, 及長梢·牛踐之名. 小豆有菘·赤·白三種, 黃高麗豆·黑高麗豆·蠶豆·豌豆, 大豆類也, 豌豆·江豆·蠶豆, 小豆類也.”

39 『校勘記』6에서 『滿州源流考』卷19에서 인용한 『新唐書』 「渤海傳」과 비교하여 ‘九都’는 丸都, ‘樂游’은 樂浪의 오류임을 지적하였다.

40 『新唐書』卷219, 『北狄·渤海傳』, 6183쪽, “俗所貴者, 曰太白山之菟, 南海之昆布, 柵城之鼓, 扶餘之鹿, 鄭頡之豕, 率賓之馬, 顯州之布, 沃州之蘇, 龍州之絀, 位城之鐵, 盧城之稻, 泥沱湖之鯽, 果有九都之李, 樂游之黎.”

리(大麥), 밀(小麥), 교맥(蕎麥), 참깨와 검은깨(芝麻), 소자(蘇子), 촉서(蜀黍), 편두(扁豆)가 있다고 기록하였다.⁴¹ 『전요지』에서도 기장(黍·稷·粱), 벼(稻), 미(糜), 좁쌀(粟), 피(稗), 콩(豆), 보리(麥), 참깨와 검은깨(芝麻), 소자(蘇子), 촉서(蜀黍)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⁴² 『성경통지』에도 기장(粱·稷·黍), 찰수수, 찰벼, 보리, 밀, 광맥(穬麥), 갯배(稭稗), 비마(蓖麻), 각종 콩류(綠豆·豌豆·蠶豆·豇豆·扁豆·菜豆·刀豆·雲豆)가 재배되었다고 기록하였다.⁴³ 청 말에 길림성 각 지역에서 좁쌀, 보리, 각종 콩류, 고량, 갯자(稗子), 밀 등이 재배되었다.⁴⁴ 20세기 전반기 만주 농업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하 평원 남쪽 지역은 다양한 곡물을 경작할 수 있었고 고량이 경작지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⁴⁵ 송화강 평원에서 대두가 경작지의 35%를 차지하며 조는 16%를 차지하고⁴⁶ 고량과 옥수수는 각각 13%와 7%를 차지하지만 주로 남쪽 변두리 지역에서 재배되었다.⁴⁷ 명청시대에 재배된 곡물이 고구려시대에도 재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상의 작물 가운데 신대륙에서 들어온 옥수수를 제외한 곡물들이 고구려시대에도 만주에서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작물 재배 기록과 비교하기 위해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비교해 보자. 연해주 크라스키노 제20구역 발굴 지역에서 기장·밀·콩·조·돌피·

41 『遼東志』(劉立強·劉海洋 主編, 北京: 科學出版社, 2016) 卷1, 「地理志」, 物産·穀條, 32쪽. “黍·稷·稻·粱·糜·粟·稗·黃豆·菉豆·豌豆, 蠶豆·黑豆·豇豆·小豆·大麥·蕎麥·芝麻·蘇子·蜀黍, 扁豆.”

42 『全遼志』(李輔 纂修, 韓鋼 點校, 北京: 科學出版社, 2016) 卷4, 「方物志」, 穀類條, 366쪽. “黍·稷·稻·粱·糜·粟·稗·豆·麥·芝麻·蘇子·蜀黍.”

43 『盛京通志』(阿桂 等纂修, 瀋陽: 遼海出版社, 1997) 卷106, 「物産」1, 五穀類, 1a-3a쪽(1561~1562쪽). “穀·粱·稷·黍·黏蜀黍·黏稻·小麥·大麥·穬麥·稭稗·蓖麻·綠豆·豌豆·蠶豆·豇豆·扁豆·菜豆·刀豆·雲豆.”

44 『吉林行省檔案』1(6-1), 306쪽;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9, 『吉林省志』卷16(1), 農業志/農村生產關係,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75~76쪽.

45 Robert Burnett Hall, 1930, *op. cit.*, p. 286.

46 *Statistical Yearbook*, Appendix and Economic Bureau, C. E. R.; The C. E. R. and its Zone, 1928, maps and statistical data; Tanaka, H., 1924, “Agriculture in Manchuria and Mongolia,” *Chikyū-The Globe*, Vol. 2, No. 2, pp. 42~48; Murakoshi, N., and Trewartha, G., 1930, “Land Utilization Maps of Manchuria,” *Geographical Review*, Vol. 20, No. 3, pp. 480~494.

47 Robert Burnett Hall, 1930, *op. cit.*, p. 287.

팥·보리 등의 작물 유체가 출토되었다.⁴⁸ 또 흑룡강성(헤이룽장성) 세린하 유적 F106호 출토 토기 내부에서 발해시대의 보리, 밀, 조, 녹두, 팥, 개자리속의 식물 유체가 출토되었다.⁴⁹ 연해주 지역의 발해 유적에서 총 16종의 식물 유체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기장, 조, 피는 대다수의 유적에서 확인되며 출토량이 많고, 두류에는 대두, 팥, 완두, 렌틸콩 등이 있다. 특히하게 코르뱃카 유적에서 발견된 오가피는 당시에도 약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⁵⁰ 발해 영토에 해당하는 현재의 길림성과 흑룡강성 등지에서 출토된 식물 유체와 농기구를 통해 발해의 농업은 발농사 위주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⁵¹ 이상의 고고유물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영토 안에서 다양한 공물과 채소 등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² 이는 고구려시대에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이다.

다만 문헌에 환도와 노성 등 일부 만주 지역에서 벼를 재배했다고 기록되었지만, 현재까지 벼 재배와 연관된 고고학 유물은 아직 출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⁵³ 그러나 『요동지』, 『전요지』, 『성경통지』에서 요동 등 만주 지역에 벼가 재배되었다고 기록하였으므로 고구려시대 만주 지역에서 벼를 재배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석구는 『요사』, 『요동지』, 『철령현지』, 『성경통지』, 『수암지략(岫巖志略)』, 『요양주향토지(遼陽州鄉土志)』 등을 인용하여 요~명칭 시대에 만주 각지에서 벼가 재배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한랭기로 알려진 4~5세기에 고구려 땅이 상대적으로 온난하여 국내성 주변 지역에서 광개토대왕의 정복 전쟁 이후 강제 이주된 신래 한예(新來韓穢)

48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08, 『2008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522~527쪽; 박유미, 2012, 앞의 글, 49쪽.

49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18, 『黑龍江海林市細鱗河遺址發掘報告』, 『北方文物』 2018-1, 21~22쪽; 박규진·이동건, 2021, 앞의 글, 162쪽.

50 박규진·이동건, 2021, 위의 글, 164~170쪽.

51 박규진·이동건, 2021, 위의 글, 174쪽.

52 渤海의 영토 안에서 발견된 작물도 高句麗의 영역과 겹치므로 高句麗시대에도 재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3 박규진·이동건, 2021, 앞의 글, 176쪽.

가 벼농사 기술을 전래하여 벼를 재배했다고 추론하였다.⁵⁴ 광개토대왕 재위 전후 시기에 기온이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따뜻했다는 주장은 중국 기후사의 통설과 달라 재검토의 여지가 있지만 4~5세기 만주 지역에서 벼를 재배했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다만 벼의 재배에 기온만 중요하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 예컨대 중국의 화북 지방에서 주로 보리와 밀 등 맥류 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런데 6세기 화북 농업의 상황을 기술한 『제민요술』에 상류에서 벼를 재배해야 하며 땅의 비옥도와 상관없이 물이 많으면 좋은 벼가 생산된다고 기록하였다.⁵⁵ 이는 건조한 밭농사 지대인 화북 지역에서도 물이 많은 상류 지역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이 많이 필요한 벼의 속성상 화북처럼 건조하며 밭농사 위주인 만주에서도 물을 풍부하게 댈 수 있는 여러 강의 상류에서 제한적으로 벼를 재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벼의 재배에 기온보다 풍부한 물이 중요했으며, 상대적으로 추운 지역에서도 물이 충분하면 벼를 재배할 수 있었다.⁵⁶ 따라서 기존 문헌의 벼 재배 기록을 믿을 수 있으며, 훗날의 고고학 발굴성과를 기대한다.

2) 뽕나무와 삼(麻)

『주서』 「고려전」에서 고구려 백성들을 비단(絹)과 포(布), 속(粟)을 세금으로 바쳤다고 기록하였다.⁵⁷ 『구당서』 「고려전」에서도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

54 공석구, 2014, 「《廣開土王陵碑》의 ‘新來韓織’ 考察 -농업생산력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고구려발해연구』 50, 177~186쪽.

55 『齊民要術』 卷2, 「水稻」, 138쪽. “稻, 無所緣, 唯歲易為良. 選地欲近上流(地無良薄, 水清則稻美也).”

56 현재 화북 지방보다 북쪽의 추운 지역에 위치한 만주 지역에서 대량의 벼가 재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백두산 천지의 물이 흘러나온 송화강 상류에서 재배한 쌀이 중국 공산당의 최고위층에게만 제공되는 최고급 식재료라고 한다. 따라서 고구려와 발해 시대에 상대적으로 추운 만주 지역 가운데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벼를 재배할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57 『周書』 卷49, 「異域上·高麗傳」, 885쪽.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 이상 정사류와 『資治通鑑』은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따른다. 반면 『隋書』 「高麗傳」에서 布와 穀을 조세로 납부했다고 기록하였다(『隋書』 卷81, 「東夷·高麗傳」, 1814쪽). 隋는 北周에 뒤를 이어 581년에 건국한 왕조인데 그 이후 고구려의 세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人稅布五匹”의 ‘布’字 앞에 ‘絹’字가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처럼 양잠을 했다고 기록하였다. 양자의 기록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비단과 베(布)를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서 옥주(沃州)의 솜(縣), 용주(龍州)의 명주(絀)가 각각 생산되었다고 기록하였다.⁵⁸ 이 기사에서 옥주에서 생산된 솜(縣)은 면화를 재배했음을 뜻한다.⁵⁹ 또 용주의 명주(絀)는 해당 지역이 뽕나무를 심고 누에고치를 쳐서 명주를 만들었다고 해석된다. 이는 고구려의 만주 일부 지역에서 양잠을 통해 비단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비단은 뽕나무 잎을 먹는 누에의 고치를 삶아 만든 실로 만들며 포는 삼(麻)을 재배해 실로 뽑아내 만든 피륙이다. 조선시대에 중국에서 비단을 수입했으므로 한반도에서 비단을 생산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기타 지리서를 바탕으로 검색하면 비단의 원료인 비단실(絲) 또는 뽕나무 재배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평안도의 삼화(三和縣),⁶⁰ 함중(咸從縣),⁶¹ 증산(甌山縣),⁶² 황해도의 황주(黃州牧),⁶³ 평산(平山都護府),⁶⁴ 충청도의 청풍(淸風郡),⁶⁷ 경기도의 여주(驪州牧)⁶⁸의 토산품이 사(絲)였다. 민족문화추진회가 번역한 『신증 동국여지승람』에서 사(絲)를 실이라고 번역했지만

58 『新唐書』 卷219, 「北狄·渤海傳」, 6183쪽.

59 한국사에서 면화(목화)는 고려 말에 문익점이 원(몽골)으로부터 처음으로 들여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당나라 때 면으로 짠 백첩포가 존재했으며 광동·광서 지역의 특산품이었다(허택은 지음, 이인호 옮김, 2013, 『중국 문화사-인류의 탄생』 1949- 상, 천지인, 352쪽). 몽원시대에 황도파가 해남 여족(黎族)으로부터 씨를 제거하는 기술을 배운 이후 면화 재배가 전국으로 퍼졌다(허택은, 2013, 위의 책, 132~133쪽). 이는 문익점이 원(몽골)으로부터 목화씨를 가져왔다는 사실과 시대적으로 잘 들어맞는다. 따라서 발해가 7~10세기에 면화를 재배하여 솜을 생산한 기사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1999~2000년 부여 능산리 사지 발굴 조사에서 백제 면직물 이 출토되었다. 이는 백제시대에 이미 면화를 재배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심연옥 외, 2011,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백제 면직물 연구」, 『문화재』 44-3, 4~17쪽; 박윤미, 2014, 「백제 직물의 특성과 직조 기술」, 『백제학보』 12, 69~89쪽). 이는 문헌 기록과 달리 한반도에서 문익점의 목화씨 반입보다 800년 앞섰음을 증명한다. 이 사례에서 발해시대 만주에서 면화를 재배하여 솜을 만들었다는 『신당서』 「발해전」 기사의 관련 기사를 믿을 수 있다.

6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三和縣·土產條, 卷52의 7a쪽.

6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咸從縣·土產條, 卷52의 8b쪽.

6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甌山縣·土產條, 卷52의 11a쪽.

6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1, 黃海道·黃州牧·土產條, 卷41의 3b쪽.

6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1, 黃海道·平山都護府·土產條, 卷41의 15b쪽.

‘사(絲)’의 사전적 의미는 비단의 원료인 실, 즉 명주실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평안도·삼화현·토산조에서 삼화현의 토산품이 ‘사(絲)’라고 기록했는데,⁶⁷ 다른 지리서의 내용을 추가한 번역문에서 삼화의 토산품을 뽕나무라고 기록하였다.⁶⁸ 따라서 삼화에서 뽕나무와 사(絲)가 동시에 생산되었으므로, 사(絲)는 뽕나무와 누에를 이용해 만든 비단실임을 알 수 있다. 삼화현 이외에 평안도 맹산현⁶⁹과 강동현⁷⁰의 토산품도 뽕나무였으므로 이 두 고을에서도 비단실을 생산했음이 분명하다. 또 황해도 곡산(谷山郡) 사람들이 잠상(蠶桑), 즉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에 힘썼으며,⁷¹ 장연(長淵縣) 사람들이 잠상과 물고기잡이, 소금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기록하여⁷² 역시 비단실을 생산했음을 명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은 모두 고구려의 영토였으므로 고구려시대에도 비단을 생산했다는 방증 자료가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지리지에 평안도의 영원(寧遠郡),⁷³ 황해도 강령(康翎縣),⁷⁴ 강원도 양양,⁷⁵ 원주,⁷⁶ 춘천,⁷⁷ 인제,⁷⁸ 홍천,⁷⁹ 함경도의 갑산(甲山都護府),⁸⁰ 삼수(三水郡),⁸³

6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清道·淸風郡·土産條, 卷14의 17b쪽.

6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7, 京畿·驪州牧·土産條, 卷7의 4b쪽.

6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三和縣·土産條, 卷52의 7a쪽.

68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52권, 삼화현·비고·토산조, 425쪽. “뽕나무.” 이하 비고의 번역문의 인용 책 이름은 한글로, 원사로는 한자 서명으로 표기한다.

69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55권, 맹산현·비고·토산조, 616쪽. “뽕나무.”

70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55권, 강동현·비고·토산조, 620쪽. “뽕나무·물어·금린어.”

7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谷山郡·風俗條, 卷42의 11a쪽.

7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長淵縣·風俗條, 卷43의 46a쪽.

7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5, 平安道·寧遠郡·土産條, 卷55의 32b쪽.

7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康翎縣·土産條, 卷43의 44a쪽.

75 『신증 동국여지승람』 5(이행 외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솔, 1996) 제44권, 양양도호부·비고·토산조, 542쪽. “삼(麻)·전죽(箭竹).”

76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6권, 원주목·비고·토산조, 25쪽. “삼(麻)·복령·송이.”

77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6권, 춘천도호부·비고·토산조, 40쪽. “삼(麻)·목화·승검초·산겨자.”

78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6권, 인제군·비고·토산조, 61쪽. “붕어·삼(麻).”

79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6권, 홍천현·비고·토산조, 70쪽. “배·삼(麻)·목화.”

8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9, 咸鏡道·甲山都護府·土産條, 卷49의 36a쪽.

경성(鏡城都護府),⁸² 경원(慶源都護府),⁸³ 중성(鍾城都護府),⁸⁴ 은성(穩城都護府),⁸⁵ 경흥(慶興都護府),⁸⁶ 부녕(富寧都護府)⁸⁷이 삼(麻)만 재배하는 지역이라고 기록하였다. 주로 강원도와 함경도에서 삼만 재배하는 지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비단과 베를 동시에 재배하는 지역은 평안도의 평양(平壤府),⁸⁸ 중화(中和郡),⁸⁹ 용강(龍岡縣),⁹⁰ 순안(順安縣),⁹¹ 강서(江西縣),⁹² 안주(安州牧),⁹³ 정주(定州牧),⁹⁴ 숙천(肅川都護府),⁹⁵ 가산(嘉山郡),⁹⁶ 영유(永柔縣),⁹⁷ 의주(義州牧),⁹⁸ 철산(鐵山郡),⁹⁹ 용천(龍川郡),¹⁰⁰ 창성(昌城都護府),¹⁰¹ 삭주(朔州都護府),¹⁰² 구성(龜城都護府),¹⁰³ 선천(宣川郡),¹⁰⁴ 곽산(郭山郡),¹⁰⁷ 영변(寧邊大都護府),¹⁰⁸ 운산(雲山郡),¹⁰⁹ 희천(熙川郡),¹¹⁰

-
- 8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9, 咸鏡道·三水郡·土産條, 卷49의 40a쪽.
 - 8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0, 咸鏡道·鏡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3b쪽.
 - 8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0, 咸鏡道·慶源都護府·土産條, 卷50의 21a쪽.
 - 8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0, 咸鏡道·鍾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36a쪽.
 - 8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0, 咸鏡道·穩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39b쪽.
 - 8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0, 咸鏡道·慶興都護府·土産條, 卷50의 43a쪽.
 - 8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0, 咸鏡道·富寧都護府·土産條, 卷50의 47b쪽.
 - 8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1, 平安道·平壤府·土産條, 卷51의 12a쪽.
 - 8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中和郡·土産條, 卷52의 2a쪽.
 - 9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龍岡縣·土産條, 卷52의 2a쪽.
 - 9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順安縣·土産條, 卷52의 12a쪽.
 - 9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江西縣·土産條, 卷52의 14b쪽.
 - 9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安州牧·土産條, 卷52의 18a쪽.
 - 9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定州牧·土産條, 卷52의 24b쪽.
 - 9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肅川都護府·土産條, 卷52의 30b쪽.
 - 9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嘉山郡·土産條, 卷52의 34b쪽.
 - 9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永柔縣·土産條, 卷52의 38a쪽.
 - 9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義州牧·土産條, 卷53의 6b쪽.
 - 9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鐵山郡·土産條, 卷53의 19a쪽.
 - 10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龍川郡·土産條, 卷53의 23a쪽.
 - 10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昌城都護府·土産條, 卷53의 26a쪽.
 - 10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朔州都護府·土産條, 卷53의 29b쪽.
 - 10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龜城都護府·土産條, 卷53의 32b쪽.
 - 10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宣川郡·土産條, 卷53의 35b쪽.

고구려의 경제 지리

박천(博川郡),¹⁰⁹ 태천(泰川郡),¹¹⁰ 성천(成川都護府),¹¹¹ 덕천(德川郡),¹¹² 개천(价川郡),¹¹³ 자산군(慈山郡),¹¹⁴ 순천(順川郡),¹¹⁵ 상원(祥原郡),¹¹⁶ 양덕(陽德縣),¹¹⁷ 맹산(孟山縣),¹¹⁸ 강동(江東縣),¹¹⁹ 은산(殷山縣),¹²⁰ 강계(江界都護府),¹²¹ 위원(渭原郡),¹²² 이산(理山郡),¹²³ 벽동(碧潼郡),¹²⁴ 황해도의 서흥(瑞興都護府),¹²⁵ 봉산(鳳山郡),¹²⁶ 안악(安岳郡),¹²⁷ 채령(載寧郡),¹²⁸ 수안(遂安郡),¹²⁹ 신천(信川郡),¹³⁰ 문화(文化縣),¹³¹ 해주(海州

- 105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郭山郡·土産條, 卷53의 38b쪽.
 106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寧邊大都護府·土産條, 卷54의 4a쪽.
 10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雲山郡·土産條, 卷54의 9a쪽.
 10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熙川郡·土産條, 卷54의 11a쪽.
 10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博川郡·土産條, 卷54의 11a쪽.
 1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泰川郡·土産條, 卷54의 15a쪽.
 111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成川都護府·土産條, 卷54의 18a쪽.
 112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德川郡·土産條, 卷54의 22a쪽.
 113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价川郡·土産條, 卷54의 24b쪽.
 11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慈山郡·土産條, 卷54의 26b쪽.
 115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順川郡·土産條, 卷55의 2a쪽.
 116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祥原郡·土産條, 卷55의 4a쪽.
 11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陽德縣·土産條, 卷55의 8b쪽.
 11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孟山縣·土産條, 卷55의 10b쪽.
 11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江東縣·土産條, 卷55의 12쪽.
 12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殷山縣·土産條, 卷55의 14b쪽.
 121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江界都護府·土産條, 卷55의 18b쪽.
 1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渭原郡·土産條, 卷55의 23b쪽.
 123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理山郡·土産條, 卷55의 26b쪽.
 12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碧潼郡·土産條, 卷55의 29a쪽.
 12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1, 黃海道·瑞興都護府·土産條, 卷41의 22b쪽.
 12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1, 黃海道·鳳山郡·土産條, 卷41의 32a쪽.
 12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安岳郡·土産條, 卷42의 2a쪽.
 12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載寧郡·土産條, 卷42의 5b쪽.
 12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遂安郡·土産條, 卷42의 8a쪽.
 13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信川郡·土産條, 卷42의 15a쪽.
 13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文化縣·土産條, 卷42의 26b쪽.

牧),¹³² 풍천(豐川都護府),¹³³ 곡산(谷山郡),¹³⁴ 옹진(甕津縣),¹³⁵ 은율(殷栗縣),¹³⁶ 장연(長淵縣),¹³⁷ 함경도의 함흥(咸興府),¹³⁸ 정평(定平都護府),¹³⁹ 고원(高原郡),¹⁴⁰ 안변(安邊都護府),¹⁴¹ 덕원(德源都護府),¹⁴² 문천(文川郡),¹⁴³ 북청(北靑都護府),¹⁴⁴ 단천(端川郡),¹⁴⁵ 이성(利城縣),¹⁴⁶ 홍원(洪原縣),¹⁴⁷ 길성(吉城縣),¹⁴⁸ 명천(明川縣),¹⁴⁹ 경기도 광주(廣州牧),¹⁵⁰ 안성(安城郡),¹⁵¹ 용인(龍仁縣),¹⁵² 양주(楊州牧),¹⁵³ 장단(長湍都護府),¹⁵⁴ 삭녕(朔寧郡),¹⁵⁵ 마전(麻田郡),¹⁵⁶ 연천(漣川縣)¹⁵⁷이었다. 주로 5~7세기 고구려의

-
- 13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海州牧·土産條, 卷43의 3b쪽.
 - 13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豐川都護府·土産條, 卷43의 25a쪽.
 - 13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谷山郡·土産條, 卷42의 11b쪽.
 - 13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甕津縣·土産條, 卷43의 33b쪽.
 - 13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殷栗縣·土産條, 卷43의 38b쪽.
 - 13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長淵縣·土産條, 卷43의 44a쪽.
 - 13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咸興府·土産條, 卷48의 8a쪽.
 - 13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定平都護府·土産條, 卷48의 19a쪽.
 - 14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高原郡·土産條, 卷48의 28a쪽.
 - 14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安邊都護府·土産條, 卷49의 5a쪽.
 - 14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德源都護府·土産條, 卷49의 11b쪽.
 - 14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文川郡·土産條, 卷49의 15b쪽.
 - 14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北靑都護府·土産條, 卷49의 20b쪽.
 - 14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端川郡·土産條, 卷49의 20b쪽.
 - 14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利城縣·土産條, 卷49의 29b쪽.
 - 14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洪原縣·土産條, 卷49의 32a쪽.
 - 14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吉城縣·土産條, 卷50의 10a쪽.
 - 14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明川縣·土産條, 卷50의 16b쪽.
 - 150 『신증 동국여지승람』 2(이행 외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술, 1996) 제6권 광주목·비고·토산조, 44쪽, “... 수철(水鐵), ... 실(絲)·목화(綿)·삼배(麻)”
 - 151 『新增東國輿地勝覽』卷10, 京畿·安城郡·土産條, 卷10의 2a쪽.
 - 152 『新增東國輿地勝覽』卷10, 京畿·龍仁縣·土産條, 卷10의 14b쪽.
 - 153 『新增東國輿地勝覽』卷11, 京畿·楊州牧·土産條, 卷11의 3b쪽.
 - 154 『新增東國輿地勝覽』卷12, 京畿·長湍都護府·土産條, 卷12의 7a쪽.
 - 155 『新增東國輿地勝覽』卷13, 京畿·朔寧郡·土産條, 卷13의 13b쪽.
 - 156 『新增東國輿地勝覽』卷12, 京畿·麻田郡·土産條, 卷12의 15a쪽.
 - 157 『新增東國輿地勝覽』卷12, 京畿·漣川縣·土産條, 卷12의 18a쪽.

수도 평양성이 있었던 조선시대의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에서 뽕나무와 삼을 동시에 재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평안도 전체 지역에서 뽕과 삼(麻)을 심었다는 『택리지』의 기록¹⁵⁸과 일치한다.

조선 후기 지리서에서 뽕나무와 삼을 심었던 지역을 검토하면 고구려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시대 평안도와 황해도에서 뽕나무와 삼을 심는 지역이 많았다. 조선 후기의 상황이 고구려시대와 동일하지 않았다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사서에서 고구려 백성들이 내는 세물(稅物)로 곡물과 함께 비단과 베를 병렬한 것을 보면 백성들 다수가 뽕나무와 삼을 재배하여 비단과 베를 생산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조선 후기 지리서에서 검색한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평안도와 황해도 등지 중 상당수 지역이 고구려시대에도 뽕나무와 베를 재배했을 것이다.

고구려에서 비단을 생산했음은 고고유물 발굴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집안(集安)의 장천 2호묘(長川二號墓) 남쪽 관상(棺床) 서북쪽 모퉁이에서 비단(錦) 조각이 출토되었는데 길이가 23cm이고, 정교하게 짰고, 중국 비단의 제조방법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된다.¹⁵⁹ 배문묘(環紋墓), 왕자묘(王字墓), 연화묘(蓮花墓), 구갑묘(龜甲墓), 장천 1호묘(長川一號墓) 후실(後室), 장천 2호묘 등 4~6세기에 그려진 벽화에 완전히 비단으로 짠 채색 배문(環紋), 왕수문(王守紋), 연화문(蓮花紋), 구갑문(龜甲紋) 등의 도안이 있다.¹⁶⁰ 『건강실록』에 고구려 사람들이 채(綵)와 힐(緜) 등 중국산 비단을 중히 여겨 남성들이 비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고 기록하였다.¹⁶¹ 641년(貞觀 15)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파견된 진대덕(陳大德)이 고구려 관수(官守)에게 능기(綾綺)라는 비단을 뇌물로 주고 이들의 편의로 고구려의 각 지역을 돌아다닌 것을 보면¹⁶² 고구려

158 『택리지』, 「팔도총론」, 평안도조, 42쪽.

159 吉林省文物工作隊, 1983, 「吉林集安長川二號封七墓發掘紀要」, 『考古與文物』 1983-1.

160 耿鐵華, 「高句麗壁畫中的社會經濟」, 31원쪽~31오른쪽.

161 『建康實錄』 [許嵩撰, 張忱石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6(2009重印)] 卷16, 「齊下·魏虜傳附高麗國傳」, 649쪽. 「國有銀山採爲貨并人參·豹皮, 重中國綵繡, 丈夫衣之, 亦重虎皮。」

162 『冊府元龜』 (王欽若等編纂, 周勛初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卷657, 「奉使部」, 機變·唐太宗貞觀

지배층이 비단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¹⁶³ 일부는 중국에서 수입되었지만 지배층뿐만 아니라 불특정 남성들도 비단 또는 비단옷을 애호했기 때문에 중국산 비단을 수입하는 것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백성들이 각지에서 재배한 뽕나무에서 누에를 길러 생산한 비단도 고구려 사람들 사이에서 소비되었을 것이다.

3) 인삼

고구려 사람들이 곡물 이외에 인삼도 재배하였다. 『건강실록』에서 고구려에 인삼이 있다고 기록하였고,¹⁶⁴ 『명의별록(名醫別錄)』에서도 인삼의 산지를 상당(上黨)과 요동이라고 기록하였다. 요동이 고구려 땅이었으므로 고구려의 영토 가운데 요동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삼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⁵ 『태평환우기』 단주(檀州)조에 안동부(安東府)의 인삼(人參)을 공물로 바친다고 하였다.¹⁶⁶ ‘人參(인삼)’은 인삼(人蔘)의 오기(誤記)이고 안동부, 즉 고구려의 옛 영토였던 안동도호부에서 인삼이 생산되었음을 보여 준다. 명대 요동 지역의 지방지인 『요동지』¹⁶⁷와 『천요지』¹⁶⁸에서도 명대 요동도사 지역

十六年十一月條, 7585쪽. “唐陳大德為職方郎中, 貞觀十五年, 大德使于高麗, 初入其境, 欲窺其國俗, 每至城邑, 輒以綵綺遺其官守, 莫不歡悅, 大德因謂之曰: ‘吾性好山水, 所不能忘, 在此何處有林泉勝地, 吾欲時往遊踐.’ 其國人信之, 遇有好山水之處, 輒引大德觀之, 遂得在道屈曲.”

163 최진열, 2024,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113쪽, 주)52.

164 『建康實錄』 卷16, 「東南夷·高麗傳」, 649쪽, “國有銀山, 採為貨, 并人參貂皮.”

165 『名醫別錄』 上品 卷1, 人蔘條, “微溫, 無毒, 主治腸胃中冷, 心腹鼓痛, 胸膈逆滿, 霍亂吐逆, 調中, 止消渴通血脈破堅積, 令人不忘, 一名神草, 一名人微, 一名土精, 一名血參, 如人形者有神, 生上黨遼東.”

166 『太平寰宇記』 卷71, 檀州條, 1435쪽, “土產: 真安東府人參.”

167 『遼東志』 卷1, 「地理志」, 物產·脫粟字條, 34쪽, “人參·五味·細辛·杏仁·芍藥”; 『遼東志』 卷3, 「兵食志」, 邊略·外禁條, 146쪽, “遼邊, 四壁近虜境外, 多物產如貂皮·人參·材木·魚鮮之類, 人圖其利, 往往逾境而取之, 多為虜所害, 我太祖高皇帝作大明律特書: 私出外境及違禁下海之條, 軍民違犯及守邊官故縱者, 皆從重治.”

168 『全遼志』 卷2, 「賦役志」, 田賦條, 75~76쪽, “遼東都司定遼中等二十五衛·永寧監, 額田三萬八千四百一十五頃三畝, 額糧三十七萬七千七百八十九石七斗, 額草三百五十三萬二千六百六十一束, 額鹽三百七十二萬七千一百七十七斤, 額鐵四十二萬一百五十斤, 額貢五味子三百斤人參五百斤, 魚課銀六百二十九兩, 葦炭銀六百兩, 鹽課銀無定數, 課程銀無定數, 銅錢五十二萬二千一百六十文, 金復蓋海草豆價銀一萬一千八十兩五分, 清河等堡開墾荒田科糧准作年例, 銀四百三十一兩九錢四分, 馬價銀

에 인삼이 생산되었다고 기록되었다.¹⁶⁹ 지금의 길림성 일대도 명청시대에 인삼이 생산되었던 지역이다. 청나라는 중국 본토 점령 이전에 팔기(八旗)에게 산삼 또는 인삼 채취를 맡겼지만 1699년(康熙 38)에 팔기의 산삼 채취를 금지시켜 표(票)를 발급하여 삼을 채취하여 삼 채취의 이익을 국가에 귀속하였다.¹⁷⁰ 현재 중국의 인삼 재배 주산지는 길림성, 요녕성(요령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이며 주로 장백산맥 지역에 분포되었다. 요녕성의 환인, 신빈, 청원, 관진, 길림성의 무송, 장백, 정우, 집안, 돈화, 안도 등의 지역을 거쳐 북으로는 흑룡강성 이춘에 이르고 있다.¹⁷¹ 인삼이 재배될 수 있는 기후와 토질을 고려하면 고구려시대에도 장백산맥 주변에서 산삼 또는 인삼이 재배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구려의 영토인 한반도 북부와 중부 지역의 인삼 생산 지역을 살펴보자.

북쪽으로 두 개의 큰 고개를 넘으면 강계부(江界府)이다. 부 동쪽에서 백두산까지가 500여 리이며 그 사이가 폐사군(廢四郡) 지역이다. 세종 때 강계부에 예속시켜, 백성을 옮기고 그 지역을 비워 버렸다. 그리하여 지금은 수목이 하늘에 닿을 듯한 아주 깊은 두메가 되었으며 인삼이 많이 산출된다. 해마다 봄가을에 백성들이 산에 들어가 캐도록 허가하여 그것으로 공물과 세부에 충당하게 하였다. 그래서 강계가 인삼 산지로 나라 안에 유명하였다.¹⁷²

一萬四千七十兩，定遼·中衛·野貓·湖書院官田三頃佃戶，歲租粟七十二石，柴三十車。”

169 『全遼志』 「方物紙」에 인삼(人參)이 언급되어 있으나 細注에 人參·貂鼠皮·靑鼠皮의 세 물건은 高麗(朝鮮의 誤記인 矣), 海西, 黑龍江 諸夷와의 互市를 통해 쉽게 구한다고 기록하였다[『全遼志』 卷4, 「方物志」, 貨類條, 368쪽. “鹽·鐵·絲·蜜蠟·靛·弓·木箭·人參·貂鼠皮·靑鼠皮(以上三物出高麗·海西·黑龍江諸夷互市以易而至).”]. 이 기록을 보면 明代 遼東都司 지역에 인삼이 생산되었지만 양이 많지 않아 朝鮮과의 교역을 통해 조정에 바쳤음을 알 수 있다.

170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9, 앞의 책, 39~48쪽.

171 朴良昊·柳甲喜·尹眞河·姜昇遠·趙守衍, 2015, 「중국 길림성의 인삼 재배현황과 토양특성」, 『북방농업연구』 38-1, 54쪽; 朴良昊·尹眞河·姜昇遠·趙守衍, 2015, 「중국 길림성과 요녕성의 인삼재배 현황 및 인삼 재배지 토양특성」, 『북방농업연구』 38-2, 84~85쪽.

172 「택리지」, 「팔도총론」, 평안도·강계부조, 40쪽.

위의 인용문은 『택리지』 「팔도총론」 평안도·강계부조인데, 폐사군(廢四郡) 지역에서 인삼을 재배했다고 기록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강계의 토산품을 인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¹⁷³ 위의 기록은 사실임을 알 수 있다. 강계뿐만 아니라 평안도의 창성(昌城都護府),¹⁷⁴ 삭주(朔州都護府),¹⁷⁵ 구성(龜城都護府),¹⁷⁶ 영변(寧邊大都護府),¹⁷⁷ 운산(雲山郡),¹⁷⁸ 태천(泰川郡),¹⁷⁹ 성천(成川都護府),¹⁸⁰ 덕천(德川郡),¹⁸¹ 개천(价川郡),¹⁸² 순천(順川郡),¹⁸³ 양덕(陽德縣),¹⁸⁴ 맹산(孟山縣),¹⁸⁵ 은산(殷山縣),¹⁸⁶ 위원(渭原郡),¹⁸⁷ 이산(理山郡),¹⁸⁸ 벽동(碧潼郡),¹⁸⁹ 영원(寧遠郡)¹⁹⁰에서도 인삼이 토산품이었다.

평안도뿐만 아니라 『택리지』 「팔도총론」 함경도조에서도 인삼 생산을 기록하였다.

산에는 잘(貂皮)과 인삼이 많이 난다. 백성은 잘과 인삼을 남쪽 장사꾼의 무평과 바귀 바지를 입지만, 이것도 살림이 넉넉한 자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¹⁹³

173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江界都護府·土産條, 卷55의 18b쪽.
 17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昌城都護府·土産條, 卷53의 26a쪽.
 175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朔州都護府·土産條, 卷53의 29b쪽.
 176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龜城都護府·土産條, 卷53의 32b쪽.
 17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寧邊大都護府·土産條, 卷54의 4a쪽.
 17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雲山郡·土産條, 卷54의 9a쪽.
 17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泰川郡·土産條, 卷54의 15a쪽.
 18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成川都護府·土産條, 卷54의 18쪽.
 181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德川郡·土産條, 卷54의 22a쪽.
 182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价川郡·土産條, 卷54의 24b쪽.
 183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順川郡·土産條, 卷55의 2a쪽.
 18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陽德縣·土産條, 卷55의 8b쪽.
 185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孟山縣·土産條, 卷55의 10b쪽.
 186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殷山縣·土産條, 卷55의 14b쪽.
 18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渭原郡·土産條, 卷55의 23b쪽.
 18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理山郡·土産條, 卷55의 26b쪽.
 18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碧潼郡·土産條, 卷55의 29b쪽.
 19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寧遠郡·土産條, 卷55의 32b쪽.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함경도의 산악 지역에서 인삼을 채취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함경도의 함흥(咸興府),¹⁹² 정평(定平都護府),¹⁹³ 고원(高原郡),¹⁹⁴ 안변(安邊都護府),¹⁹⁵ 덕원(德源都護府),¹⁹⁶ 문천(文川郡),¹⁹⁷ 북청(北靑都護府),¹⁹⁸ 이성(利城縣),¹⁹⁹ 홍원(洪原縣),²⁰⁰ 삼수(三水郡),²⁰¹ 경성(鏡城都護府),²⁰² 길성(吉城縣),²⁰³ 명천(明川縣),²⁰⁴ 경원(慶源都護府),²⁰⁵ 회령(會寧都護府),²⁰⁶ 종성(鍾城都護府),²⁰⁷ 온성(穩城都護府),²⁰⁸ 경흥(慶興都護府),²⁰⁹ 부녕(富寧都護府)²¹⁰ 등 19개 고을의 토산품이 인삼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기타 지리지에서 평안도와 함경도, 이외에 경기도 영평(永平縣),²¹¹ 가평(加平縣),²¹² 삭녕(朔寧郡),²¹⁵ 충청도 괴산(槐山郡),²¹⁶ 영춘(永春

191 「택리지」, 「팔도총론」, 함경도조, 45쪽.

19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咸興府·土産條, 卷48의 8b쪽.

19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定平都護府·土産條, 卷48의 19a쪽.

19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高原郡·土産條, 卷48의 28a쪽.

19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安邊都護府·土産條, 卷49의 5b쪽.

19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德源都護府·土産條, 卷49의 11b쪽.

19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文川郡·土産條, 卷49의 15b쪽.

19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北靑都護府·土産條, 卷49의 20b쪽.

19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利城縣·土産條, 卷49의 29b쪽.

20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洪原縣·土産條, 卷49의 32a쪽.

20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三水郡·土産條, 卷49의 40a쪽.

202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鏡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3b쪽.

203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吉城縣·土産條, 卷50의 10b쪽.

20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明川縣·土産條, 卷50의 16b쪽.

205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慶源都護府·土産條, 卷50의 21a쪽.

206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會寧都護府·土産條, 卷50의 27b쪽.

20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鍾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36a쪽.

20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穩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39b쪽.

20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慶興都護府·土産條, 卷50의 43a쪽.

2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富寧都護府·土産條, 卷50의 47b쪽.

211 「新增東國輿地勝覽」卷11, 京畿·永平縣·土産條, 卷11의 35b쪽.

212 「신증 동국여지승람」 2 제11권, 가평현·비고·토산조, 325쪽, “인삼·오미자가 난다.”

縣),²¹⁵ 청주(淸州牧),²¹⁶ 옥천(沃川郡),²¹⁷ 청안(淸安縣),²¹⁸ 진천(鎭川縣),²¹⁹ 영동(永同縣),²²⁰ 황간(黃澗縣),²²¹ 청산(靑山縣),²²² 황해도 서흥(瑞興都護府),²²³ 안악(安岳郡),²²⁴ 수안(遂安郡),²²⁵ 곡산(谷山郡),²²⁶ 신계(新溪縣),²²⁷ 우봉(牛峯縣),²²⁸ 토산(兔山縣),²²⁹ 강원도 강릉(江陵大都護府),²³⁰ 삼척(三陟都護府),²³⁴ 양양(襄陽都護府),²³⁵ 평해(平海郡),²³³ 간성(杆城郡),²³⁴ 고성(高城郡),²³⁵ 통천(通川郡),²³⁶ 울진(蔚珍縣),²³⁷ 흠곡(歙谷縣),²³⁸

213 『신증 동국여지승람』 2 제13권, 삭녕군·비고·토산조, 405쪽. “인삼·녹용·자초·송이버섯·꿀·늘어·금린어 등이 있다.”

21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槐山郡·土産條, 卷14의 26b쪽.

21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永春縣·土産條, 卷14의 33b쪽.

21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忠淸道·淸州牧·土産條, 卷15의 3b쪽.

21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忠淸道·沃川郡·土産條, 卷15의 23a쪽.

21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6, 忠淸道·淸安縣·土産條, 卷16의 11a쪽.

21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6, 忠淸道·鎭川縣·土産條, 卷16의 14b쪽.

22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6, 忠淸道·永同縣·土産條, 卷16의 22b쪽.

22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6, 忠淸道·黃澗縣·土産條, 卷16의 25b쪽.

22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6, 忠淸道·靑山縣·土産條, 卷16의 30b쪽.

22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1, 黃海道·瑞興都護府·土産條, 卷41의 22b쪽.

22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安岳郡·土産條, 卷42의 2a쪽.

22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遂安郡·土産條, 卷42의 8a쪽.

22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谷山郡·土産條, 卷42의 11b쪽.

22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新溪縣·土産條, 卷42의 17a쪽.

22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牛峯縣·土産條, 卷42의 21b쪽.

22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兔山縣·土産條, 卷42의 30a쪽.

2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原道·江陵大都護府·土産條, 卷44의 7a쪽.

23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原道·三陟都護府·土産條, 卷44의 27a쪽.

23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4, 江原道·襄陽都護府·土産條, 卷44의 35b쪽.

23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江原道·平海郡·土産條, 卷45의 2a쪽.

2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江原道·杆城郡·土産條, 卷45의 9a쪽.

23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江原道·高城郡·土産條, 卷45의 15a쪽.

2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江原道·通川郡·土産條, 卷45의 20b쪽.

23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江原道·蔚珍縣·土産條, 卷45의 27a쪽.

23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江原道·歙谷縣·土産條, 卷45의 32b쪽.

원주(原州牧),²³⁹ 춘천(春川都護府),²⁴⁰ 정선(旌善郡),²⁴¹ 영월(寧越郡),²⁴² 평창(平昌郡),²⁴³ 인제(麟蹄縣),²⁴⁴ 횡성(橫城縣),²⁴⁵ 홍천(洪川縣),²⁴⁶ 회양(淮陽都護府),²⁴⁷ 철원(鐵原都護府),²⁴⁸ 금성(金城縣),²⁴⁹ 양구(楊口縣),²⁵⁰ 낭천(狼川縣),²⁵¹ 이천(伊川縣),²⁵² 평강(平康縣),²⁵³ 금화(金化縣),²⁵⁴ 안협(安峽縣)²⁵⁵에서도 인삼이 토산품이라고 기록하였다.

이상으로 고구려의 영토인 한반도 북부와 중부 5도 전체와 충청도 일부 지역에서 인삼을 토산품으로 기록한 82개 고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인삼이 토산품인 고을이 지나치게 많은 점이 주목된다. 사서에서 ‘人參(인삼)’이라고 표기했지만 사람이 재배하는 인삼과 자연산인 산삼, 산삼의 씨를 뿌려 재배한 장뇌삼을 구별하지 않고 ‘人參’이라고 표기했을 것이다. 『택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조선시대 상황이지만 인삼이 토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고구려시대에도 한반도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도 산삼을 채취하였고 일부 지역에서 인삼이나 장뇌삼을 재배했을 것이다.

23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原州牧·土産條, 卷46의 3a쪽.

24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春川都護府·土産條, 卷46의 13b쪽.

24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旌善郡·土産條, 卷46의 19a쪽.

24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寧越郡·土産條, 卷46의 23a쪽.

24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平昌郡·土産條, 卷46의 26b쪽.

24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麟蹄縣·土産條, 卷46의 29b쪽.

24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橫城縣·土産條, 卷46의 31b쪽.

24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洪川縣·土産條, 卷46의 34a쪽.

24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淮陽都護府·土産條, 卷47의 8a쪽.

24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鐵原都護府·土産條, 卷47의 16a쪽.

24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金城縣·土産條, 卷47의 21b쪽.

25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楊口縣·土産條, 卷47의 24a쪽.

25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狼川縣·土産條, 卷47의 26b쪽.

25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伊川縣·土産條, 卷47의 26b쪽.

25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平康縣·土産條, 卷47의 32b쪽.

25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金化縣·土産條, 卷47의 35b쪽.

25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安峽縣·土産條, 卷47의 38b쪽.

2. 농경 기술

만주 지역의 농업기술이 특히 고구려시대에 발달했는지는 문헌과 고고학 유물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식(崔寔)의 『정론(政論)』에서 후한시대 요동군은 여섯 명이 소 두 마리를 이끌고 논밭을 갈아서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로 경작하는 삼보(三輔) 지역보다 농업기술과 생산력이 낙후되었다고 서술하였다.²⁵⁶ 그러나 16국 전연시대에 화북 지역에서 유입된 유민들이 요서와 요동 지역에서 경작하면서 화북 지방의 선진 농법이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낙후된 상태였다.²⁵⁷ 조양(朝陽) 원대자(袁臺子) 벽화묘의 우경도(牛耕圖)를 보면 한 사람이 왼손으로 쟁기를 들고 오른손에는 채찍을 들어 소 두 마리의 쟁기를 끌었다.²⁵⁸ 조양 구문자(溝門子) 벽화묘의 우경도에 사람과 소의 아랫부분이 남아 있는데 한 사람이 쟁기를 들고 자색(赭色)의 소가 쟁기를 끌었다.²⁵⁹ 이는 우경이 도입되었음을 보여 준다.²⁶⁰ 소 두 마리 또는 한 마리를 한 사람이 이용하는 우경은 북연시대에 더욱 발전하였다. 북연시대 북묘촌(北廟村) 1호묘의 서벽(西壁)에 남은 우경도에는 한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고 그 뒤에 한 사람이 소가 끄는 쟁기를 들고 있다. 아래에 주홍색 그림에 물결 무늬가 있는데 경작한 토지 혹은 구룡(溝壟)이라고 한다.²⁶¹ 이는 농부 1명과 소 한 마리가 끄는 쟁기질이며, 북연시대 요서 지역은 화북의 선진 우경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²⁶²

256 『齊民要術』卷1, 「耕田」, 50쪽, “崔寔政論曰:「武帝以趙過為搜粟都尉, 教民耕殖, 其法三犁共一牛, 一人將之, 下種, 挽耨, 皆取備焉, 日種一頃, 至今三輔猶賴其利, 今遼東耕犁, 轅長四尺, 迴轉相妨, 既用兩牛, 兩人牽之, 一人將耕, 一人下種, 二人挽耨: 凡用兩牛六人, 一日纔種二十五畝, 其懸絕如此。」”

257 최진열, 2022, 앞의 글, 97~100쪽.

258 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1984,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1984-6.

259 陳大力, 1990, 「朝陽縣溝門子晉墓壁畫」, 『遼海文物學刊』1990-2.

260 陳大力, 1990, 위의 글; 李春玲, 2009, 「論十六國時期遼西地區農業經濟的發展」, 『北方文物』2009-2, 82쪽.

261 朝陽地區博物館·朝陽縣文化館, 1985, 「遼寧朝陽發現北燕·北魏墓」, 『考古』1985-10, 922쪽.

262 李宇峰, 1989, 「遼寧漢晉時期農業考古綜述」, 『農業考古』1989-1, 106쪽; 楊富, 2006, 「三燕時期遼

같은 시기 요동을 지배한 고구려에서도 한 사람이 소 한 마리를 끄는 우경이 동원되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벽화나 유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농사기술이 낙후되었다고 가정해도 요서 지역의 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다. 소위 서진(西晉)이 망한 영가의 난 이후 화북 지역의 한인(중국인)이 요동과 요서, 고구려로 유입되었다.²⁶³ 4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402년 후연의 숙군(宿軍)을 공격하자 후연 평주자사 모용귀가 도망갔다.²⁶⁴ 2년 후인 404년에도 후연을 공격하였다.²⁶⁵ 이때 고구려가 낙랑군을 점령한 다음 구민(舊民)과 중국에서 유입된 중국계 망명객을 각지에 분산시켜 지배의 재편을 시도하였다.²⁶⁶ 이때 고구려로 끌려간 농민들이 고구려에 선진 농업기술을 전파했을 것이다. 또 다른 계기가 북연의 멸망이다. 장수왕이 436년에 북위가 북연을 공격할 때 갈로(葛盧)·맹광(孟光)을 보내 북연의 군주 풍홍과 용성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다.²⁶⁷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구려의 출병 목적은 풍홍을 영접한다는 구실로 북연의 백성과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지 북위와 싸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때 고구려로 이주된 북연 백성이 최소 수만 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⁶⁸ 이주된 화

西地區的農業發展」,『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社會科學版)』8-4, 409호쪽; 安樂, 2012, 『簡述三燕時期朝陽的農業』, 『遼寧省博物館館刊』, 356~357쪽.

263 孔錫龜·琴京淑, 2004, 「高句麗에 流入된 中國系人物의 動向-4-5世紀의 考古學 資料를 中心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8, 469~496쪽; 정동민, 2023, 「4세기 초·중반 慕容部·前燕과 高句麗의 유이민 수용-漢人 수용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86, 3~34쪽; 장창은, 2023, 「4세기대 고구려의 국제관계와 이주민 동향」, 『고구려발해연구』 77, 119~147쪽.

264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十一年條. “十一年,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 棄城走.”; 『資治通鑑』卷112, 「晉紀」34, 安帝元興元年五月條, 3543쪽. “高句麗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

265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十三年條. “十三年, 冬十一月, 出師侵燕.”

266 공석구, 2003,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2, 131~159쪽; 孔錫龜·琴京淑, 2004, 앞의 글, 469~496쪽.

267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二十四年四月條. “夏四月, 魏攻燕白狼城, 克之, 王遣將葛盧·孟光, 將衆數萬, 隨陽伊至和龍, 迎燕王, 葛盧·孟光入城, 命軍脫精仗, 取燕武庫精仗, 以給之, 大掠城中. 五月, 燕王率龍城見戶東徙, 焚宮殿, 火一旬不滅. 令婦人被甲居中, 陽伊等勒精兵居外, 葛盧·孟光帥騎殿後, 方軌而進, 前後八十餘里.”

268 薛海波, 2010, 「試論北燕與高句麗的政治關係」, 『東北史地』2010-6, 35호쪽.

룡성의 백성들은 대부분 각종 기술자(百工伎巧)로 유명하여 고구려의 농업과 수공업 발전을 촉진시켰고 고구려로 선진 농업생산기술을 전파하였다.²⁶⁹ 이 밖에 북조시대 전란 때 고구려에 도망친 유민들이 많았다. 효문제 태화 연간에 고구려가 사로잡아 데려간 변민(邊民)이 존재하였다.²⁷⁰ 북위 말 효장제 시기에 행안주사(行安州事) 당주도독(當州都督) 강과(江果)가 반란군을 막지 못하자 아우들과 성민(城民)을 이끌고 고구려로 도망갔다가 동위 효정제 원상(元象) 연간(538~539)에 돌아왔다.²⁷¹ 북제 문선제 552년(天保 3) 고구려가 북위 말의 유민 5천 호를 북제에 돌려보냈다.²⁷² 이 세 사례는 고구려가 북위·동위·북제에 중국의 백성들을 돌려보낸 예인데, 돌려보내지 않고 고구려에 남아 있는 중국인 농민들의 수도 많았을 것이다. 고구려가 북연을 포함한 삼연 문화(三燕文化)의 영향을 받은 유물에 무이고복관(無耳鼓腹罐)²⁷³과 마구(馬具)²⁷⁴가 있기 때문에 고구려가 요서 지역에서 유행한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소를 끌고 쟁기질하는 우경이라는 선진적인 농법을 도입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은 수 양제의 고구려 침략 때 고구려군에 포로가 된 중국인들이다. 『책부원귀』의 기사에서 당의 사신 진대덕이 만난 이들은 유녀(遊女)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농사를 지었다.²⁷⁵ 이들이 농사를 지

269 李輝, 2001, 「南北朝時期高句麗強盛原因試析」, 『長春師範學院學報』, 20-4, 17쪽.

270 『魏書』卷32 「封懿傳附回族叔軌傳」, 764~765쪽, “太和中, 拜著作佐郎, 稍遷尚書儀曹郎中, 兼員外散騎常侍, 銜命高麗, 高麗王雲恃其偏遠, 稱疾不親受詔, 軌正色詰之, 喻以大義, 雲乃北面受詔, 先是, 契丹虜掠邊民六十餘口, 又為高麗擁掠東歸, 軌具聞其狀, 移書徵之, 雲悉資給遣還.”

271 『魏書』卷71, 「江悅之傳附文遙傳」, 1590쪽, “莊帝嘉之, 除果通直散騎侍郎·假節·龍驤將軍·行安州事·當州都督, 既而賊勢轉盛, 臺援不接, 果以阻隔強寇, 內徙無由, 乃攜諸弟并率城民東奔高麗, 天平中, 詔高麗送果等, 元象中, 乃得還朝.”

272 『北史』卷94, 「四夷上·高句麗傳」, 3113~3114쪽, “天保三年, 文宣至營州, 使博陵崔柳使于高麗, 求魏末流人, 敕柳曰: ‘若不從者, 以便宜從事.’ 及至, 不見許, 柳張目叱之, 拳擊成墜於牀下, 成左右雀息不敢動, 乃謝服, 柳以五千戶反命.”

273 孫穎, 2014, 「高句麗與慕容鮮卑關係解讀—以陶器為視角—」,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15-6, 63원쪽.

27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66쪽 圖26; 田立坤·李智, 1994, 「朝陽發現的三燕文化遺物及相關門題」, 『文物』, 1994-11, 30오른쪽~31원쪽.

275 『冊府元龜』卷657, 「奉使部」, 機變·唐太宗貞觀十六年十一月條, 7585쪽.

으며 중국의 농사기술을 고구려에 전파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을 전후로 한 시기부터 평원왕 이전의 시기에 평균기온보다 낮은 한랭기였다. 집안현(集安縣), 동풍현(東豐縣), 환인현(桓仁縣), 길림 등에서 철제 쟁이(鐵耪) 등이 다량으로 출토되었고 철제 보습이 집안과 무순(撫順)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²⁷⁶을 한랭기에 곡물의 수확량이 줄어드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기술로 파악하기도 한다.²⁷⁷ 즉 고구려의 농민들은 기존의 철제보습 등을 개량하고 한랭하게 변화된 기온에 맞는 밭이랑의 최적화된 높낮이 등을 모색²⁷⁸하여 변화된 기후에서도 곡물 생산량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였다.²⁷⁹

3. 고구려 백성의 부담 세액

고구려의 조세 제도는 『수서』 「고려전」의 고구려의 조세규정에서 알 수 있다.

사람마다 포(布) 5필, 곡(穀) 5석을 부과한다. 유인(遊人)은 3년에 한 번 세금을 부과하며, 10인이 함께 세포(細布) 1필을 납부한다. 조(租)는 호(戶)의 등급에 따라 1석, 7두, 5두로 차등 부과하였다.²⁸⁰

위의 인용문을 보면 사람마다 부과하는 인두세가 호등(戶等)에 따라 부과하는 조(租)에 비해 많은 점이 중국의 조세와 다르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5인 가구(戶)의 경우 인두세로 포 25필과 곡 25석을 납부해야 했다. 인두세

276 최덕경, 2005, 앞의 글, 21~22쪽.

277 박유미, 2012, 앞의 글, 52~53쪽.

278 최덕경, 2005, 앞의 글, 36쪽.

279 박유미, 2012, 앞의 글, 53쪽.

280 『隋書』卷81, 「東夷·高麗傳」, 1814쪽. “人稅布五匹, 穀五石,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를 호주만 부담한다고 가정하여 1호(戶)의 곡물 부담액을 5.5~6석으로 추산하는 견해도 있다.²⁸¹ 1인당 5석의 곡물이 지나치게 많다는 ‘상식’에 기반한 주장이며 필자도 위의 사료가 고구려가 지나치게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왜곡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기도 한다. 그런데 『북사』 「고구려전」에서 ‘포(布) 자 앞에 ‘인(人) 자가 생략된 대목이 주목된다.²⁸² 『북사』는 『위서』, 『주서』, 『북제서』 등 북조계 사서와 『수서』가 편찬된 후에 네 사서의 내용을 모아 다시 편찬한 사서이다. 편자인 이연수(李延壽)는 네 사서의 내용을 교감하였는데, 『수서』 원문에서 ‘인(人) 자를 빼고 『북사』에 초록한 것이다. 『북사』의 원문에 따르면 고구려가 사람마다 포 5필과 곡 5석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즉 베(포)와 곡물이 농민 개인이 내는 인두세가 아니라 가구마다 부담하는 호세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근대 중국의 인구 통계는 실제 인구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세금과 유역, 군역을 징발하기 위한 세원 기록이었다. 따라서 인두세(算賦)를 징수했던 진한시대에는 사람 수(口數)까지 파악하여 기록했지만, 후한 말 조조가 호조(戶調), 즉 호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를 창시한 이후 사람 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존하는 위진남북조시대 인구 통계 기록 가운데 호수만 기록한 사례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성인 남성에게 세금과 요역을 부과한 명청시대 호구 통계를 성인남성을 뜻하는 정(丁)의 수로 표기하고 조선시대에 이를 받아들인 것도 세법의 영향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세금이 인두세라는 통설은 사료의 오독과 세제, 호구 파악의 관행을 간과한 억지이다.

중국에서 조(租)는 전조(田租), 즉 토지세를 가리키므로 위의 인용문에서 조(租)와 병렬된 세(稅)는 토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정합적이다. 『주서』 「고려전」에서 “부세(賦稅)는 견(絹)·포(布)·속(粟)이

281 김기흥, 1987, 앞의 글, 30~33쪽; 김기흥, 1996, 앞의 글, 194, 202쪽.

282 『北史』 卷94, 「四夷上·高句麗傳」, 3112쪽. “稅, 布五疋·穀五石; 游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疋. 租, 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며 소유에 따라 빈부를 헤아려 등급을 나누어 부과하였다”²⁸³라고 서술하였다. 세(稅)를 조(租)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으로 해석하면 호등에 따라 징수한다는 『주서』 「고려전」의 세제 서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당 후기 『통전』을 저술한 두우(杜佑)가 『주서』와 『수서』의 고구려 조세 기사 가운데 전자를 택하여 고구려의 조세로 기록한 것도²⁸⁴ 고구려의 조세를 호등에 따른 부과방식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세금 부과 총액이 같지만 사료 원문을 보면 호주(戶主)인 남정(男丁)에게만 세금을 부과했다는 해석²⁸⁵은 지나친 오독이며 고구려는 호(戶)마다 조세(租稅)를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 이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파악한 호구가 호수(戶數)뿐이고 사람 수를 기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등의 1호가 부담하는 포(布) 5필, 곡(穀) 5.7석은 외형상 당나라 전기 중등의 농가가 부담하는 세액보다 훨씬 무겁다.²⁸⁶ 선행연구에 따르면, 당 전기 화북 지방의 농가 생계 유지비용은 75석이며 약 40무(畝)를 경작하였다.²⁸⁷ 50일의 노동일에 해당하는 당의 조용조와 지세(地稅), 호세(戶稅), 각종 잡과(雜科, 稅柴草 등)를 합하면 조세의 총합은 60일의 노동일에 해당된다. 정남(丁男)의 노동일이 300일이라고 가정하면 부세 부담은 20%로 추산된다.²⁸⁸ 그러나 노동일을 365일로 계산하면 16.4%이다. 당 전기 중등 농가의 수입을 75석이라고 가정하면²⁸⁹ 당 전기 중등 농가가 부담하는 세액은 12.3석이다. 고구려의 조세가 『수서』 「고려전」에 실려 있기 때문에 수나라의 도량형을 따랐다고 보면 수나라의 1석은 80.2kg, 당나라의 1석은 71.6kg이

283 『周書』 卷49, 「異域上·高麗傳」, 885쪽.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

284 『通典』(杜佑撰, 王文錦 등點校, 中華書局, 1988) 卷186, 「邊防」 2 高句麗條, 5011쪽.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

285 김기흥, 1987, 앞의 글, 30~33쪽; 김기흥, 1996, 앞의 글, 194, 202쪽.

286 현재 고구려의 도량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자료가 없다. 필자는 고구려의 도량형이 당나라와 달랐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사서에서 당나라의 도량형으로 고구려 상황을 기록했다고 가정하여 서술하였다.

287 王昊, 2019, 「唐前期華北蠶桑紡織與農家生計的量化考察」, 『唐史論叢』 28, 212쪽.

288 張國剛, 2020, 「唐代農村家庭生活計探略」, 『中華文史論叢』 98, 34쪽.

289 王昊, 2019, 앞의 글, 212쪽.

다. 따라서 고구려 중등 농가가 부담하는 5.7석은 당대의 5.09석에 해당한다. 이는 당 전기 중등 농가보다 7.21석을 덜 부담하는 셈이다. 그러나 “포 5필의 가격에 따라 고구려 중등 농가의 부담이 달라진다. 당대 속(粟) 1두가 포(布) 5척(尺)=견(絹) 4척”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선행연구를 참조하고²⁹⁰ 고구려 백성이 부담하는 ‘곡(穀)’과 ‘속(粟)’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포(布) 5필은 200척이므로 속 40두, 즉 4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구려의 중등 농가는 9.07석을 부담하여 당나라 백성보다 2.27석을 덜 부담하였다.

III. 목축

1. 말 사육과 기병 개요

고구려의 시조 추모(추몽)가 부여에서 말을 사육하였다.²⁹¹ 이는 고구려 건국부터 왕실이 목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32년(대무신왕 15) 삼월에 대신 구도(仇都)·일구(逸苟)·분구(焚求) 3인을 다른 사람의 처첩, 소와 말, 재화를 빼앗은 혐의로 내쫓았다.²⁹² 이 세 사람이 착복한 대상 가운데 소와 말이 있었던 사실에서 당시 고구려 지배층이 소와 말 같은 가축을 중시했고 일반 백성들도 가축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다. 121년(태조대왕 69)에 후한의 유주자사(幽州刺史) 풍환(馮煥) 등이 지휘한 군대가 고구려를 침입하여

290 日野開三郎, 1975, 『唐代租庸調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李錦綉, 2007, 『唐代財政史稿』 第二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21쪽.

291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1, 始祖東明聖王條, “王不聽, 使之養馬, 朱蒙知其駿者, 而減食令瘦, 驚者, 善養令肥, 王以肥者自乘, 瘦者給朱蒙.”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이름이 될 정도로 활을 잘 쏘던 朱蒙은 夫餘의 지배층과의 사냥에서도 화살을 쏘서 많은 짐승을 잡았다(『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1, 始祖東明聖王條, “年甫七歲, 巖然異常, 自作弓矢, 射之, 百發百中, 扶餘俗語, 善射爲朱蒙, 故以名云. … 後, 獵于野, 以朱蒙善射, 與其矢小而朱蒙嗜獸甚多.”).

292 『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條, “十五年, 春三月, 黜大臣仇都·逸苟·焚求等三人爲庶人, 此三人爲沸流部長, 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 有不與者即鞭之, 人皆忿怨, 王聞之, 欲殺之, 以東明舊臣, 不忍致極法, 黜退而已.”

예맥 거수(渠帥)를 죽이고 병마(兵馬)와 재물을 빼앗았다.²⁹³ 이 기사에서 후한군이 빼앗은 대상에 말이 포함된 것을 보면 고구려에 말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고을덕 묘지에 고을덕의 할아버지가 『삼국사기』에 영류왕으로 표기된 건무대왕(建武太王) 때 중리소형(中裏小兄)에 임명되고 “상사(塙事)를 맡았다(執塙事)”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상사(塙事)’가 말을 기르는 사무라는 견해가 있다.²⁹⁴ 중리소형인 고을덕의 할아버지가 구체적인 관직 없이 상사를 맡았던 사실은 북위 황제의 호위와 함께 직책 없이 일상사를 처리하는 근시관(近侍官)²⁹⁵과 유사하다. 그러나 ‘상사(塙事)’를 세금 징수(土地稅賦)의 업무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²⁹⁶ 명청시대 사서와 지방지에 ‘상(塙)’ 자가 토지면적의 단위로 사용되는 용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상사(塙事)’를 목축 관리 행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후한서』와 『삼국지』에 따르면 예(濊)에 과하마(果下馬)가 있었다.²⁹⁷ 배송지(裴松之)는 과하마가 높이 3척의 말이며 타면 과일나무 아래로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서 과하(果下)라고 칭해졌다고 주석을 붙였다.²⁹⁸ 『한서』의 안사고주²⁹⁹와 『후한서』의 장희태자주³⁰⁰에도 동일한 주석이 있다. 『한서』 「곽광전」

293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大祖大王六十九年春條, “六十九年, 春, 漢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胤等, 將兵來侵, 擊殺穢貊渠帥, 盡獲兵馬財物.”

294 葛繼勇, 2015,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317쪽; 이성제, 2015,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 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 『中國古中世史研究』 38, 192~193쪽; 葛繼勇, 2016, 「新出高乙德墓誌與高句麗末期的內政外交」, 『鄭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9-1, 145오른쪽.

295 최진열, 2007, 「北魏前期 近侍官의 性格-「文成帝南巡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8, 37~66쪽.

296 王連龍, 2015, 「唐代高麗移民高乙德墓誌及相關問題研究」, 『吉林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5-4, 33쪽.

297 『後漢書』卷85, 「東夷·濊傳」, 2818쪽, “又多文豹, 有果下馬, 海出班魚, 使來皆獻之.”;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濊傳」, 849쪽,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298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濊傳」, 849쪽, “臣松之按: 果下馬高三尺, 乘之可于果樹下行, 故謂之果下.”

299 『漢書』卷68, 「霍光傳」, 2941쪽, “師古曰: ‘小馬可於果樹下乘之, 故號果下馬.’”

300 『後漢書』卷85, 「東夷·濊傳」章懷太子注, 2818쪽, “高三尺, 乘之可於果樹下行.”

에 황태후가 타는 소마차(小馬車)³⁰¹의 주석에 한나라 궁정의 구(廡)에 3척의 과하마가 있어서 황태후가 타는 연거(輦車)를 끌었다고 설명하였다.³⁰² 『송서』 「예지」에 따르면 『주례』에 왕후가 타는 연거가 있었고 현대에도 존재하였다. 전한 성제는 반첩여(班婕妤)에게 동일한 연거를 타도록 하였고, 후한시대에 외척도 연거를 탔다.³⁰³ 『신당서』 「의위지」에 과하마가 양거(羊車)를 끌었다고 기록하였다.³⁰⁴ 북제의 실질적인 건국자인 고환(高歡, 사후 神武帝로 추증)의 장남 고징(高澄, 사후 文襄帝로 추증)이 위경(尉景)에게 과하마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³⁰⁵ 이 일화에서 과하마가 중국의 궁중과 지배층이 사용하는 품질 좋은 말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과하마가 크기는 작지만 민첩하여 산악 지구에서 달리는 데 우수한 품종이라고 평가하였다.³⁰⁶ 과하마는 본래 예(濊)에서 생산되었지만 『위서』 「고구려전」에 과하마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³⁰⁷ 따라서 예가 고구려의 영토가 된 다음에 화북 지방에 고구려의 특산품으로 소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³⁰⁸

3~4세기에 고구려에 중장기병이 등장했음은 벽화와 유물에서 확인된다. 중장기병은 기병뿐만 아니라 말도 갑옷을 둘러야 하는데, 소형의 과하마가 자신과 기병의 갑옷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호마(胡馬)라 불리는

301 『漢書』卷68, 「霍光傳」, 2940쪽, “召皇太后御小馬車, …”

302 『漢書』卷68, 「霍光傳」, 2941쪽, “張晏曰: ‘皇太后所駕遊宮中輦車也, 漢殿有果下馬, 高三尺, 以駕輦.’”

303 『宋書』卷18, 「禮志」, 5, 497쪽, “輦車, 周禮王后五路之卑者也, 后宮中從容所乘, 非王車也, 漢制乘輿御之, 或使人輓, 或駕果下馬, 漢成帝欲與班婕妤同輦是也, 後漢陰就外戚驕貴, 亦輦.”

304 『新唐書』卷23上, 「儀衛志」上, 494쪽, “次羊車, 駕果下馬一, 小史十四人.”

305 『北齊書』卷15, 「尉景傳」, 195쪽, “先是, 景有果下馬, 文襄求之, 景不與, 曰: ‘土相扶為牆, 人相扶為王, 一馬亦不得畜而索也.’ 神武對景及常山君責文襄而杖之.”

306 秦昇陽, 2006, 「高句麗軍事問題述略」, 『通化師範學院學報』, 27-5, 19왼쪽~19오른쪽.

307 『魏書』卷100, 「高句麗傳」, 2215쪽, “出三尺馬, 云本朱蒙所乘, 馬種即果下也.”

308 百濟에서도 果下馬가 생산되었다. 『舊唐書』와 『新唐書』 「百濟傳」에 百濟가 果下馬를 唐에 바쳤다고 기록하였다(『舊唐書』卷199上, 「東夷·百濟國傳」, 5329쪽, “武德四年, 其王扶餘璋遣使來獻果下馬.”; 『新唐書』卷220, 「東夷·百濟傳」, 6199쪽, “武德四年, 王扶餘璋始遣使獻果下馬, 自是數朝貢, 高祖冊為帶方郡王·百濟王.”). 이는 百濟에서도 果下馬가 생산되었음을 뜻한다. 玄宗 開元 연간에 新羅가 果下馬를 바쳤다(『新唐書』卷220, 「東夷·新羅傳」, 6204쪽, “玄宗開元中, 數入朝, 獻果下馬·朝霞紬·魚牙紬·海豹皮.”). 이는 果下馬가 생산된 濊와 百濟가 이 때 新羅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서역의 큰 말이 보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⁰⁹

평강공주와 온달의 일화에서 고구려의 말 사육을 알 수 있다.

처음 말을 살 때 공주가 온달에게 ‘부디 시인(市人)의 말을 사지 말고, 병들고 수척하여 내쫓은 국마(國馬)를 고른 후에 사 오세요’라고 당부하였다. 온달이 공주의 말을 따랐다. 공주는 부지런히 말을 길렀다. 말은 날로 살찌고 건강해졌다.³¹⁰

위의 인용문에서 먼저 온달이 산 ‘국마(國馬)’라는 단어에서 고구려가 국영목장에서 말을 길렀음을 알 수 있다. 평강공주가 이 국영목장에서 병들고 수척한 말을 시장에 방출하는 관행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말을 잘 키운 것을 보면 말의 사육법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궁궐에서 자란 공주가 국영목장의 목축과 말 사육법을 잘 알 정도로 고구려 왕실 사람들부터 목축의 사정에 밝았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가 전쟁 때 동원한 기병의 수에서 전략물자인 말 사육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태조대왕 69년 십이월(121. 12. 27~122. 1. 25)에 왕이 직접 마한과 예맥의 1만여 기를 거느리고 현도성을 포위하였다.³¹¹ 기병으로 공성전을 벌이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고구려가 최소 1만여 인의 기병들을 동원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병들은 여분의 말(중국에서는 副馬로 표기) 1~2필을 더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때 2~3만 마리의 말이 동원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172년(신대왕 8) 명림답부가 수천 기를,³¹² 동

309 南都泳, 1997, 『韓國馬政史』, 과천: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74쪽.

310 『三國史記』卷45, 「溫達傳」, “初, 買馬, 公主語溫達曰: ‘慎勿買市人馬, 須擇國馬病瘦而見放者, 而後換之.’ 溫達如其言, 公主養飼甚勤, 馬日肥且壯.”

311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六十九年十二月條, “十二月, 王率馬韓·穢貊一萬餘騎, 進圍玄菟城.”

312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八年十一月條, “荅夫帥數千騎追之, 戰於坐原, 漢軍大敗, 匹馬不反.”

천왕이 246년에 철기(鐵騎) 5천을,³¹³ 중천왕이 259년에 정예 기병(精騎) 5천을,³¹⁴ 271년(서천왕 2)에 신성재(新城宰) 북부소형 고노자(高奴子)가 500기를,³¹⁵ 광개토대왕이 394년(永樂 4)에 정예 기병 5천을,³¹⁶ 안원왕이 540년 구월에 직접 정예 기병 5천³¹⁷을 각각 거느리고 출정하였다. 고구려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설 때 대개 5천 인의 기병을 거느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645년 고연수와 고혜진이 당나라 군대에 패해 항복했을 때 당나라가 노획한 물자에 말 5만 필과 소 5만 마리가 있었다.³¹⁸ 말이 소와 나란히 나열된 것을 보면 전투용 말이 아니라 물자 수송용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당시 고구려가 보유한 말의 수를 기늠할 수 있다.

2. 만주 지역의 말 사육

구체적으로 고구려의 국영목장 또는 목축지를 서술한 기록은 없지만 만주와 관련된 기록을 통해 목축 지역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요동군 양평현(襄平縣)에 목사관(牧師官)이 존재하였다.³¹⁹ 『주례』에 따르면, 목사(牧師)는 하관(夏官) 사마(司馬)에 속한 관명(官名)이며 목마(牧馬)의 땅을 관리하고 말의 교배와 목지의 분급(分給) 등을 맡았다. 전한의 목

313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二十年八月條, “乃領鐵騎五千, 進而擊之, 儉爲方陣, 決死而戰, 我軍大潰, 死者一萬八千餘人, 王以一千餘騎, 奔鴨渚原.”

314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十二年十二月條, “魏將尉遲楷將兵來伐, 王簡精騎五千, 戰於梁貊之谷, 敗之, 斬首八千餘級.”

315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西川王二年八月條, “二年, 秋八月, 慕容廆來侵, 王欲往新城避賊, 行至鶴林, 慕容廆知王出, 引兵追之, 將及, 王懼, 時, 新城宰北部小兒高奴子, 領五百騎迎王, 逢賊奮擊之, 廆軍敗退.”

316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條, “三年, 秋七月, 百濟來侵, 王率精騎五千, 逆擊敗之, 餘寇夜走.”

317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7, 安原王十年條, “十年, 秋九月, 百濟圍牛山城, 王遣精騎五千, 擊走之.”

318 「三國史記」卷21, 「高句麗本紀」9, 寶藏王四年條, “帝簡耨薩已下官長三千五百人, 遷之內地, 餘皆縱之, 使還平壤, 收靺鞨三千三百人, 悉坑之, 獲馬五萬匹·牛五萬頭·明光鎧萬領, 它器械稱是.”

319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襄平縣條細注, 1626쪽, “有牧師官.”

사관이 『주례』의 목사와 동일한 역할을 맡았다면, 요동군의 치소 양평현에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나라 때 요동의 목축 지역 과도 부합된다. 요동도사(遼東都司)가 6감(監)과 24원(苑)의 목장을 관리하였다. 요동원마시에 속하여 목축을 관리한 승평감(昇平監)은 요양성 서쪽에 위치하였고, 승평감이 관리하는 안산원(安山苑), 감천원(甘泉苑), 고성원(古城苑), 하음원(河陰苑) 4원도 요양 이남, 해주 이북, 요동역로(遼東驛路) 동서, 태자하(太子河) 동쪽 강가 지역에 위치하였다.³²⁰ 통설에 따르면 명대 요양성은 한대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현이었으므로,³²¹ 명대 요양 이남에 있었던 승평감의 위치가 한대 양평현에 있었던 목사관이 실제로 목축을 했던 방증이다. 즉 한대 양평현 이남 지역은 목축에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축이 성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명대 승평감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었던 고성원은 현재의 해성시(海城市) 경장진(耿莊鎮) 서고성촌(西古城村) 일대에 해당한다.³²² 담기양의 『중국역사지도집』 제2책에 현재의 해성시가 한대 신창현(新昌縣)과 안시현(安市縣) 사이에 있었다고 표시하였다.³²³ 따라서 양평현에 치소를 둔 목사관은 최소 양평·신창·안시 3현에 걸친 목장을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³²⁴ 이 지역은 요하 중하류 평원 지역에 해당하는데, 고구려시대에도 목장이 존재했을 것이다.

필자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명청시대 요동과 요서 지역의 목장(草場)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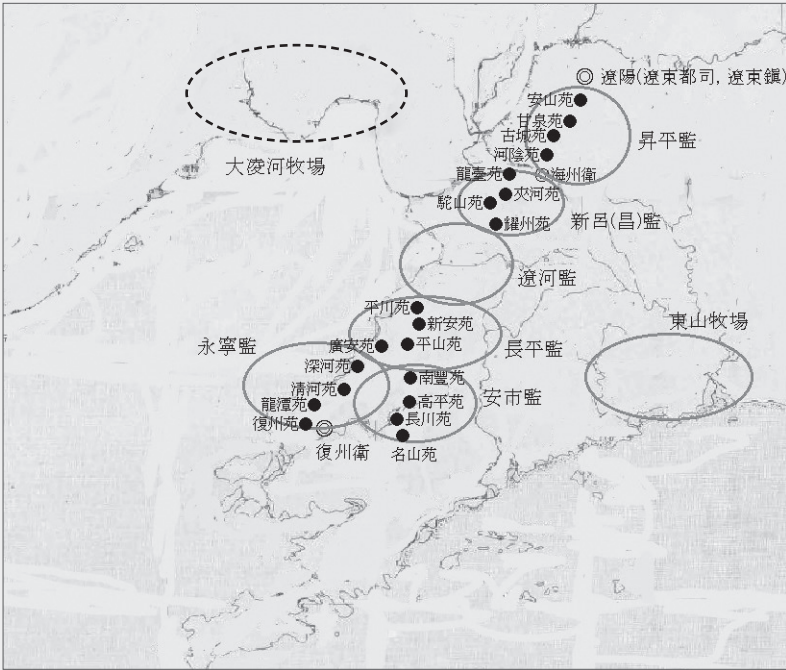
320 張士尊, 2002, 앞의 책, 412~413쪽.

321 明清時代の地理書 혹은 地方志인 『大明一統志』와 『遼東志』, 『盛京通志』에서는 遼陽이 漢代의 襄平이었다고 고증하였다(『大明一統志』卷25, 山東布政司·遼東都指揮使司·建置沿革·定遼中衛條細注, 27단쪽. “附郭. 本漢襄平遼陽二縣. 又遼東郡治所. 晉廢. 遼復置遼陽縣. 爲東平郡附郭.”; 『遼東志』卷1, 『地理志』. 郡名·襄平條細注, 8쪽. “漢城名. 即今遼陽.”; 『遼東志』卷1, 『地理志』. 古跡·襄平城條細注, 43쪽. “遼陽城西北隅今定遼左右後三衛治.”; 『盛京通志』卷100, 『古蹟』1. 奉天府境內郡縣古蹟·遼陽州·襄平故縣條細注. “在遼陽州北. 漢置縣. 爲遼東郡治.”).

322 張士尊, 2002, 앞의 책, 413쪽.

323 譚其驤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第二冊 秦·西漢·東漢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27~28쪽, 幽州刺史部.

324 최진열, 2022, 앞의 책, 138쪽.



〈그림 2〉 명청시대 요동과 요서의 목축 지역 325

비고: 1. 실선 타원형은 明代 草場(苑), 점선 타원형은 清代 牧場(大凌河牧場)

2. ◎: 明代 遼東都司와 衛所, ●: 明代 苑 이름

〈그림 2〉는 명청시대 목장(草場)을 바탕으로 고구려의 목축 추정 지역을 표시한 지도이다.

〈그림 2〉에서 살펴본 명대 요동원마사(遼東苑馬寺)가 관할하는 6감은 승평감(甘泉苑, 安山苑, 河陰苑, 古城苑), 신려감(新呂監, 夾河苑, 龍臺苑, 耀州苑, 駝山苑),³²⁶ 요하감(遼河監, 黃山苑, 沙河苑, 馬鞍苑, 石城苑), 장평감(長平監, 平川苑, 新安苑, 廣安苑, 平山苑), 안시감(安市監, 南豐苑, 高平苑, 長川苑, 名山苑), 영녕감(永寧監, 復州苑, 龍潭苑, 清河苑,

325 譚其驤 主編, 1987, 『中國歷史地圖集』 第八冊 清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10~11쪽, 盛京(奉天); 張士尊, 2002, 앞의 책, 413쪽, 明代 6苑과 東山牧場의 위치는 張士尊의 비정을 바탕으로 필자가 지도에 표시한 것이다.

326 張士尊은 新呂監을 '新昌監'의 誤記로 보았다(張士尊, 2002, 앞의 책, 413쪽).

溧河苑)이다. 감(監)마다 4원(苑)이 속하여 모두 24원이 있었다.³²⁷ 명대 말 사육 지역은 천산산맥(千山山脈) 기슭에 분포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왼쪽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청대의 대릉하 목장(大凌河牧場)이다. 즉 명청시대 목장이 위치한 태자하 하류와 요동반도 서북 해안 지역이 고구려시대에 목축이 발전한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릉하 하류와 해안가의 대릉하 목장 지역이 고구려의 영토였는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곳에서 가축을 키웠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이 밖에 고구려시대에 목축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 현재의 길림성 일대이다. 청 말인 1908년 길림성 장춘부(長春府)의 말이 12만 마리, 소 4,500마리, 양 3,800마리, 노새 1만 마리, 나귀 3,900마리, 돼지 18.6만 마리가 있었다. 신성부(新城府)에 말 18.38만 마리, 소 1.06만 마리, 양 2.2만 마리, 노새 5.6만 마리, 나귀 4.3만 마리, 돼지 1.1만 마리, 닭 510만 마리, 오리 4만 마리가 있었다. 길림성의 각종 가축은 9,542,908마리였다.³²⁸ 이 수치를 보면 길림성 일대에서 말과 소, 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을 많이 길렀음을 알 수 있다. 길림성의 전체 면적에서 산지가 36.0%, 구릉지가 5.8%, 평원 면적이 30.0%, 대지 및 기타가 차지하는 면적은 28.2%이다. 길림성의 동남부는 장백산 등 산간 지역으로 삼림이 많고 농경지가 적다.³²⁹ 말과 양 등은 경사지에서 기를 수 있었으므로 아마도 길림성의 동남부 지역에서 말 등의 가축을 길렀을 것이다.

「두선부묘지(豆善富墓誌)」에서도 목축과 관련된 단서가 있다.

군의 이름은 선부(善富)이고, 자는 휘(暉)이며, 그의 선조는 부풍군(扶風郡) 평

327 『全遼志』卷2, 「馬政志」, 156~157쪽. “遼東苑馬寺設於永樂四年, 原轄升平·新呂·遼河·長平·安市·永寧等六監, 每監各屬四苑, 共苑二十有四, 苑之曰甘泉·安山·河陰·古城者, 升平監所屬也; 曰夾河·龍臺·耀州·駝山者, 新呂監所屬也; 曰黃山·沙河·馬鞍·石城者, 遼河監所屬也; 曰平川·新安·廣安·平山者, 長平監所屬也; 曰南豐·高平·長川·名山者, 安市監所屬也; 曰復州·龍潭·清河·深河者, 永寧監所屬也, 後裁去監五苑二十有二.”

328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9, 앞의 책, 77쪽.

329 朴英善·朴來敬, 2003, 「중국 길림성 농작물 재배지역의 기상환경과 토양특성」, 『북방농업연구』, 16, 29쪽.

릉현(平陵縣) 사람이다. 18세조(世祖) 통(統)은 한나라의 안문태수(雁門太守)였는데, 문무(文武)의 난을 피해 일족을 거느리고 삭야(朔野)로 도망하니, 자손들은 대대로 삭야에서 살았다. 후위가 남쪽으로 이주할 때 흘두릉씨(紇豆陵氏)로 사성(賜姓)되었다. 6세조 보번(步蕃)은 서위(西魏)의 무장이었으며 하곡(河曲)에 주둔하였다. 북제의 신무제(神武帝)에게 격파되어 드디어 요해(遼海)로 달아났으며, 후에는 요해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성을 두씨(豆氏)라고 하였다. 황당(皇唐)이 요(遼)가 신속(臣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정벌하여 군대가 현도의 들에 머물렀다. 군의 아버지는 먼 선조(遠祖) 두융(竇融)이 하외(河外)에서 [후한 광무제에게] 항복했던 일을 흠모하여 마침내 구이열성지장(九夷列城之將)을 참하여 정문(旌門)에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도탄에 빠진 읍락(邑落)의 사람들을 부축하고 □궐(關)에 귀순하였다.³³⁰

위의 인용문에서 요해와 요, 구이는 문맥상 고구려를 지칭한다. 즉 두선부의 선조는 북조 후기 고구려로 망명하였다가 후에 당나라에 항복하였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는 두선부는 본래 부풍군 평릉현 출신의 한인(중국인)이었으나 한대에 두통(豆統)이 삭야, 즉 북쪽 들관으로 도망하였다고 기록하였다. 후위, 즉 북위가 남천(南遷)하여 화북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흘두릉씨로 사성되었다고 한다. 두선부의 6세조 흘두릉보번(紇豆陵步蕃)이 동위의 고환(葛桓)에게는 北齊神武에게 패하였고 전사하였다.³³¹ 또 흘두릉씨는 효문제의 호성(胡姓)의 한성(漢姓) 개칭 조치 때 두씨(竇氏)로 바뀌었다.³³² 따라서

330 「大唐故忠武將軍攝右金吾衛郎將上柱國豆府君墓誌并序」, 『唐代墓誌彙編』(周紹良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下冊, 開元534, 1523쪽. “君諱善富, 字暉, 其先扶風平陵人也, 十八世祖統, 漢雁門太守, 避族文武之難, 亡于朔野, 子孫世居焉. 至後魏南遷, 賜紇豆陵氏. 六世祖步蕃, 西魏將, 鎮河曲, 爲北齊神武所破, 遂出奔遼海, 後裔因家焉, 爲豆氏□□皇唐征有遼之不庭, 兵戈次玄菟之野, 君考夫卒慕遠祖融河外納款, 遂斬九夷列城之將, 稽顙旌門, 扶邑落塗炭之人, 歸誠□關.”

331 『魏書』卷75, 「尒朱兆傳」, 1663쪽. “初, [尒朱]榮旣死, 莊帝詔河西人紇豆陵步蕃等令襲秀容, [尒朱]兆入洛後, 步蕃兵勢甚盛, 南逼晉陽, [尒朱]兆所以不暇留洛, 回師禦之, [尒朱]兆雖驍果, 本無策略, 頻爲步蕃所敗, 於是部勒士馬, 謀出山東, 令人頻徵獻武王於晉州, 乃分三州六鎮之人, 令王統領, 旣分兵別營, 乃引兵南出, 以避[紇豆陵]步蕃之銳, 步蕃至於樂平郡, 王與兆還討破之, 斬[紇豆陵]步蕃於秀容之石鼓山, 其衆退走.”; 『全唐文補遺』第四輯(吳鋼 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1997), 4410라쪽.

332 『魏書』卷113, 「官氏志」, 3012쪽. “次南有紇豆陵氏, 後改爲竇氏.”

용, 즉 두용을 먼 조상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두용이 즉 신나라 말기와 후한 초기에 활동했던 공신이었던 부풍군 평릉현 출신의 한인이므로³³³ 유목민 출신인 흘두릉씨(두씨)와 혈연적 관계가 없다. 그리고 호성인 흘두릉씨의 한성 개칭은 두씨(竇氏)였고, 두씨(豆氏)는 아니었다. 따라서 두선부의 두씨(豆氏)가 부풍군 평릉현 출신의 중국인 두씨(竇氏)로 가문을 세탁한 것이다. 그러나 고증과 논리가 허술하다. 오히려 두선부는 동위의 고환에 패해 고구려로 피난 온 하서(河西, 오르도스)의 유목민이었음을 알 수 있다.³³⁴ 두선부의 6세조 흘두릉보번이 하서 출신이었다. 534년 고환이 하서 고설하(苦洩河)에서 비야두(費也頭)를 격파하고 흘두릉이리(紇豆陵伊利)를 격파한 후 그 부락을 내지로 옮겼다.³³⁵ 흘두릉이리는 흘두릉보번과 같은 부족(部落) 사람이므로 흘두릉씨는 비야두였음을 알 수 있다. 『주서』 「하발승전부제아전(賀拔勝傳附弟岳傳)」에서 만사수락간(万俟受洛干), 철륵(鐵勒) 곡률사문(斛律沙門), 곡발미아돌(斛拔彌俄突), 흘두릉이리를 비야두로 칭하였다.³³⁶ 흘두릉뿐만 아니라 만사(万俟) 등 집단도 비야두에 속했음을 알 수 있다. 수 양제의 고구려 공격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우문술이 본래 파야두(破野頭)이며 선비 사두귀(俟豆歸)에 속했다가 후에 주인의 성을 따라 우문씨라 칭하였다.³³⁷ 이말이 그의 아들 우문화급에게 한 말 가운데 “경은 본래 흉노(匈奴) 조예(卓隸) 파야두(破野頭)였다”라는 대목이 있다.³³⁸ 파야두는 비야두라고도 표기되며 북위 탁발부

333 『後漢書』卷23, 「竇融列傳」, 795쪽, “竇融字周公, 扶風平陵人也, 七世祖廣國, 孝文皇后之弟, 封章武侯, 融高祖父, 宣帝時以吏二千石自常山徙焉.”

334 최진열, 2015, 『발해 국호 연구-당조가 인정한 발해의 고구려 계승 묵인과 부인-』, 서강대학교출판부, 48~49쪽.

335 『魏書』卷11, 「廢出三帝·出帝平陽王紀 永熙三年三年正月壬辰條, 289쪽, “三年春正月壬辰, 齊獻武王討費也頭於河西苦洩河, 大破之, 獲其帥紇豆陵伊利, 遷其部落於內地.”

336 『周書』卷14, 「賀拔勝傳附弟岳傳」, 225쪽, “先是, 費也頭万俟受洛干·鐵勒斛律沙門·斛拔彌俄突·紇豆陵伊利等, 並擁眾自守, 至是皆款附.”

337 『隋書』卷61, 「宇文述傳」, 1463쪽, “宇文述字伯通, 代郡武川人也, 本姓破野頭, 役屬鮮卑俟豆歸, 後從其主為宇文氏.”

338 『隋書』卷70, 「李密傳」, 1630~1631쪽, “密與化及隔水而語, 密數之曰: ‘卿本匈奴卓隸破野頭耳, 父兄弟並受隋室厚恩, 富貴累世, 至妻公主, 光榮隆顯, 舉朝莫二, …’

와 서위북주 황실 우문씨에 역속(役屬)한 흉노(匈奴) 계통의 유목민을 가리킨다.³³⁹ 두선부의 선조가 고구려로 망명한 후에 여전히 목축에 종사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두선부가 645년 당나라 군대에 항복한 곳을 ‘현도의 들(玄菟之野)’이라고 칭하였다. 『위지경덕묘지(尉遲敬德墓誌)』에 태종이 육군을 거느리고 현도에서 관병(觀兵)하고 백랑(白狼)에서 문죄(問罪)했다는 구절이 있다.³⁴⁰ 『장사귀묘지(張士貴墓誌)』에서 645년(貞觀 19)에 군대를 이끌고 요수를 건너 현도 등 여러 성과 대진(大陣)을 격파하여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행좌둔위장군(行左屯衛將軍)으로 승진했다고 기록하였다.³⁴¹ 그러나 『책부원귀』 「제왕부」 친정문의 기록은 다르다.

[貞觀 19년] 사월 무술삭(645. 5. 1)에 이적의 군대가 통정진에서 요수를 건너 현도에 이르렀고 지나가는 봉(烽)·수(戍)를 모두 점령하였다. 고구려 군사들이 크게 놀랐고 고구려의 성읍은 각자 문을 닫고 감히 나가지 못했다.³⁴²

위의 인용문에서 당나라 군대가 현도성까지 진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도성 등의 고구려 군사들은 당나라 군대의 기습에 놀라서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 『독사방역기요』에서 고구려군이 놀란 이유를 용도(甬道)라고 기록하였다. 이적의 군사들이 회원진에서 용도의 북쪽을 따라 진격했기 때

339 石見清裕, 1982, 「唐の建國と匈奴の費也頭」, 『史學雜誌』 91-10, 1586~1609쪽.

340 「大唐故開府儀同三司鄂國公尉遲君墓誌(尉遲敬德墓誌)」, 『全唐文補遺』 第二輯(吳鋼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1995), 156위쪽. “屬辰韓負險, 獨阻聲教, 憑丸都而舉斧, 恃泚水而含沙. 太宗爰命六軍, 親紆萬乘, 觀兵玄菟, 問罪白狼.”; 「大唐故開府儀同三司鄂國公尉遲君墓誌并序」, 『全唐文新編』 20(周紹良主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14029쪽.

341 「大唐故輔國大將軍荊州都督魏國公張公墓誌銘并序(張士貴墓誌)」, 『全唐文補遺』 第一輯(吳鋼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1994), 42위쪽~420 아래쪽. “[貞觀]十八年, 以謫去官, 泊朱蒙之緒, 玄夷之孽, 背誕丸都, 梟鏡遼海, 王師底伐, 屬想人雄. 敕爲遼東道行軍總管, 授金紫光祿大夫·洺州刺史. 十九年, 率師渡遼, 破玄菟等數城大陣, 勳賞居多, 拜冠軍大將軍·行左屯衛將軍.”

342 『冊府元龜』 卷117, 「帝王部」親征第二, 1280쪽. “四月戊戌朔, 李勣師自通定濟遼水至玄菟, 所經烽戍皆下之, 高麗大駭, 城邑各閉門不敢出.”

문에 고구려군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회원진부터 요수를 건너 현도성에 이르는 지역에 용도가 있었다.³⁴³ 어쨌든 「장사귀묘지」의 기록, 즉 장사귀(張士貴)가 현도성 등지에서 싸워 승리했다는 기사가 사서의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다.³⁴⁴ 그러나 이때 현도성 안 또는 그 주변에 있었던 두선부의 아버지가 당나라 군대에 항복하였다. 현도성과 주변 지역의 성읍이 문을 닫고 성을 지켰기 때문에 두선부의 아버지는 성 밖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선부가 목축 활동에 종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두선부묘지」에서 현도성 주변에서 두선부 일족처럼 고구려로 망명한 흘두릉 부족 등 유목민이 목축 생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영토가 된 부여도 목축이 가능했다. 『후한서』 「부여전」에서 부여는 땅이 오곡을 재배하기 적당하며 명마와 붉은 옥(赤玉), 초납(貂納), 대주(大珠)가 생산되었다고 기록하였다.³⁴⁵ 『삼국지』 「부여전」에서 부여 사람들이 제사용 가축 기르기를 잘하며 명마·적옥·초유(貂狍)·미주(美珠)가 생산된다고 기록하였다.³⁴⁶ 이 기사에서 부여에서 말을 비롯한 가축을 길렀음을 알 수 있다. 1980~1981년 송화강 유역의 유수현(榆樹縣) 대파향(大坡鄉)의 노하심촌(老河深村)에서 발굴된 부여 무덤군에서 말머리가 묻힌 구덩이(馬頭坑)와 순장한 말의 이빨(殉馬牙)이 발견되어 부여인이 말을 중시했음을 보여 주며 제사용 가축을 잘 기른다는 『삼국지』 「부여전」의 기사와 일치한다.³⁴⁷ 일단 이 유적에서 부여 사람들이 말을 사람의 무덤에 순장할 정도로 많이 길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43 『讀史方輿紀要』 卷37, 「山東」 8, 遼東都指揮使司·自在州·甯道條, 1708쪽, “在司西遼河上。隋大業八年伐高麗, 起浮橋渡遼水, 因築甯道於河旁。唐貞觀十八年, 伐高麗, 李世勣軍發柳城, 多張形勢, 若出懷遠鎮者, 而潛師北趨甯道, 出高麗不意, 度遼水至玄菟, 即隋所築甯道也。”

344 이 사건은 「資治通鑑」에도 「冊府元龜」의 기사를 그대로 베꼈다(「資治通鑑」 卷197, 「唐紀」 13, 唐太宗貞觀十九年四月戊戌朔條, 6218~6219쪽, “夏四月戊戌朔, 世勣自通定濟遼水, 至玄菟, 高麗大駭, 城邑皆閉門自守.”).

345 『後漢書』 卷85, 「東夷·夫餘傳」, 2811쪽, “於東夷之域, 最為平敞, 土宜五穀, 出名馬·赤玉·貂納, 大珠如酸棗.”

346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夫餘傳」, 841쪽,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狍·美珠.”

347 李宇峰, 1990, 「略述東北古代少數民族的農牧與漁獵經濟」, 『古今農業』 1990-2, 80쪽.

비아두라고 불린 홀두릉 부족뿐만 아니라 고구려에 유목 또는 목축에 중시하는 다양한 이민족이 있었다. 기원전 9년(유리명왕 11) 부분노가 선비를 격파하고 속국으로 삼았다.³⁴⁸ 고구려군은 49년(모본왕 2) 후한의 북평(北平)·어양(漁陽)·상곡(上谷)·태원(太原) 4군을 공격하였다.³⁴⁹ 현재 한국 고대사학계는 모본왕 시기에 아직 고구려가 건국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후한서』 「광무제기」에 49년에 요동 요외(徼外)의 맥인(貊人)이 북평·어양·상곡·태원 4군을 침입했다고 기록되었다.³⁵⁰ 『후한서』 권85 「고구려전」에서 이 4군을 공격한 주체를 ‘구려(句驪)’라고 명기했으므로³⁵¹ ‘맥’이 고구려의 이칭(異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이미 고구려가 존재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이었다면 고구려군이 이 4군을 공격하기 위해 선비 또는 오환의 영토를 우회해야 했다. 이는 고구려가 선비 또는 오환의 일부 부족을 복속시켰거나 우호적이어야 가능하였다. 『후한서』 권20 「제준전부종제용전(祭遵傳附從弟彤傳)」에 고구려에 복속한 선비의 만리(滿離) 부족의 존재³⁵²가 확인된다.³⁵³ 따라서 고구려가 기원전 9년(유리명왕 11) 부분노가 일부 선비 부족을 격파한 후 49년(建武 25)까지 선

348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十一年四月條, “十一年, 夏四月, 王謂群臣曰: “鮮卑特險, 不我和親, 利則出抄, 不利則入守, 爲國之患, 若有人能折此者, 我將重賞之.” 扶芬奴進曰: “鮮卑險固之國, 人勇而愚, 難以力鬪, 易以謀屈.” 王曰: “然則爲之奈何?” 答曰: “宜使人反間入彼, 僞說: “我國小而兵弱, 怯而難動” 則鮮卑必易我, 不爲之備, 臣俟其隙, 率精兵從間路, 依山林以望其城, 王使以羸兵出其城南, 彼必空城而遠追之, 臣以精兵走入其城, 王親率勇騎挾擊之, 則可克矣.” 王從之, 鮮卑果開門出兵追之, 扶芬奴將兵走入其城, 鮮卑望之, 大驚還奔, 扶芬奴當關拒戰, 斬殺甚多, 王舉旗鳴鼓而前, 鮮卑首尾受敵, 計窮力屈, 降爲屬國.”

349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二年條, “二年, 春, 遣將襲漢北平·漁陽·上谷·太原, 而遼東太守蔡彤, 以恩信待之, 乃復和親.”

350 『後漢書』卷1下, 「光武帝紀」下, 建武二十五年條, 76쪽, “二十五年正月, 遼東徼外貊人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 遼東太守祭彤降之.”

351 『後漢書』卷85, 「東夷·高句驪傳」, 2814쪽, “二十五年春, 句驪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 而遼東太守祭彤以恩信招之, 皆復款塞.”

352 『後漢書』卷20, 「祭遵傳附從弟彤傳」, 745쪽, “自是後鮮卑震怖, 畏彤不敢復闕塞, 彤以三虜連和, 卒爲邊害, 二十五年, 乃使招呼鮮卑, 示以財利, 其大都護備何遣使奉獻, 願得歸化, 彤慰納賞賜, 稍復親附, 其異種滿離·高句驪之屬, 遂駱驛款塞, 上貂裘好馬, 帝輒倍其賞賜.”

353 여호규, 1996,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5(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39쪽.

비의 일부 부족을 지배하거나 속국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는 유목 생활을 하는 선비 부족들로부터 말과 양 등 가축을 공납으로 수취하거나 다른 물자를 주고 사들였을 것이다.

고구려의 또 다른 가축 공급원으로 속신(肅慎)이 있었다. 속신은 121년(태조대왕 69년)에 호구(狐裘)·백옹(白鷹)·백마(白馬)를 바쳤다.³⁵⁴ 이는 속신이 말을 길렀음을 뜻한다. 속신은 280년(서천왕 11)에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었다.³⁵⁵ 속신의 백성들이 ‘가(家)’와 ‘부락(部落)’으로 표기되었는데, 전자는 농민, 후자는 유목민 집단을 가리킨다. 이는 읍루(挾婁)가 옛 속신이며 오곡과 소, 말, 마포(麻布)를 생산한다고 기록한 『후한서』와 『삼국지』 「읍루전」³⁵⁶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속신은 농경과 목축을 하는 지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속신을 부용으로 삼은 고구려는 속신으로부터 백마 등 말과 다른 가축을 공납으로 수취할 수 있었고 전쟁 시에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³⁵⁷

속신 이외에 다른 유목민 집단도 고구려의 영토 안에 있었다. 378년(소수림왕 8) 거란이 고구려의 북쪽 변경을 공격하여 함락한 8개 부락³⁵⁸과 광개토

354 『三國史記』, 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六十九年十月條, “肅慎使來, 獻紫狐裘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遣之.”

35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서천왕십일년시월조 기사에 따르면 고구려의 달고가 속신을 격파하고 600여 가를 부여 남쪽 오천으로 이주하고 6~7개 부락을 항복시켜 부용으로 삼았다. 이 공으로 달고가 안국군에 임명되고 양맥과 속신 부락을 거느렸다(『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西川王十一年十月條, “十一年, 冬十月, 肅慎來侵, 屠害邊民. 王謂群臣曰: “寡人以眇末之軀, 認襲邦基, 德不能綏, 威不能震, 致此鄰敵, 猾我疆域, 思得謀臣猛將, 以折遐衝, 咨爾群公, 各舉奇謀異略才堪將帥者.” 群臣皆曰: “王弟達賈, 勇而有智略, 堪為大將.” 王於是, 遣達賈往伐之. 達賈出奇掩擊, 拔檀盧城, 殺酋長, 遷六百餘家於扶餘南烏川, 降部落六七所, 以為附庸. 王大悅, 拜達賈為安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慎諸部落.”). 이 기사를 보면 서천왕 11년에 속신이 고구려에 복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356 『後漢書』, 卷85, 「東夷·挾婁傳」, 2812쪽, “挾婁, 古肅慎之國也, 在夫餘東北千餘里, 東濱大海, 南與北沃沮接, 不知其北所極, 土地多山險, 人形似夫餘, 而言語各異, 有五穀·麻布, 出赤玉·好貂”; 『三國志』, 卷30, 「魏書」, 30, 「東夷·挾婁傳」, 847쪽, “挾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其土地多山險,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有五穀·牛·馬·麻布.”

357 『後漢書』와 『三國志』에서 ‘挾婁’로 표기하고 있는 집단을 『三國史記』에서 ‘肅慎’이라고 표기하였다. 이는肅慎과挾婁가 별도의 나라일 가능성이 있지만 『三國史記』가 집단의 명칭을 잘못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358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八年九月條, “秋九月, 契丹犯北邊, 陷八部落.”

대왕 시기에 정복된 패려(裨麗),³⁵⁹ 거란, 동부여의 압로(鴨盧) 등 다양한 유목민 또는 기마민 집단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말을 비롯한 가축을 수취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고구려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선비, 숙신, 패려, 거란, 말갈, 부여 등을 지배하거나 속국으로 삼았다는 기록을 살펴보았다. 고구려는 고구려가 장악한 여러 유목민 집단으로부터 말을 비롯한 가축을 수취하거나 전쟁 때 동원할 수 있었을 것이다.

3. 한반도 지역의 말 사육

위에서 만주 지역의 목축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한반도 안의 말 사육지는 고려와 조선 시대의 사례로 추정할 수 있다. 『고려사』 권81 「병지」 1에 고려 말기인 1376년(우왕 2) 각 도의 기병 수를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광도(楊廣道)는 5,000필, 경상도 3,000필, 전라도 2,000필, 교주도(交州道) 400필, 강원도 200필, 삭방도(朔方道) 3,000필, 평안도 600필, 서해도(西海道) 500필 등 모두 14,700필이 있었다.³⁶⁰ 기병의 분포를 보면 고구려 후기의 영토에 해당하는 서해도, 평안도, 삭방도의 기병이 4,100인(필)이었다. 이는 전체 기병 수의 27.9%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명마 생산지로 이름난 함경도의 산이 깊고 풀이 무성하며 샘물이 좋은 도련포(都連浦, 함흥), 마랑이도(馬郎耳島, 홍원), 사눌도(四訥島, 문천), 말응도(末應島, 영흥), 두언대(豆彦台, 단천) 목장과 평안도의 신미도(身彌島, 선천), 대곶(大串, 철산), 가도(假島, 철산) 목장, 경기도의 진강장(鎭江場, 강화), 매음도(煤音島, 강화), 경상도의 절영도(絶影島, 동래), 배갑(背串, 장기) 목장 등이었다. 그중에서 북쪽의 도련포, 남쪽의 제주도 목장이 유명했다.³⁶¹ 유명세보다 중요한 것이 목장의 수와 사육하는 말의 수인데, 다

359 「廣開土大王碑」,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裨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 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360 南都泳, 1997, 앞의 책, 168쪽.

361 南都泳, 1997, 위의 책, 234쪽.

고구려의 경제 지리

음 <표 1>은 조선시대 목장의 수를 도별로 정리한 표이다.

<표 1> 조선시대 전국의 목장 수

(단위: 개)

구분	京鐵道	公淸道	全羅道	慶尙道	咸鏡道	黃海道	平安道	濟州	江原道	計	總計
『東國輿地勝覽』	28	10	13	18	6	10	5	2	0	92	92
『牧場地圖』	30	10	49 (56)	23	7	10	4	5	0	138 (145)	138
『輿地圖書』	8	3	15	6	6	5	1		0	44	44
『大東輿地圖』	21	3	50	11	5	5	5	14	0	114	114
『增補文獻備考』	24 (11) <3>	5 (5)	32 (27)	20 (7)	7	7 (4)	4 (1)	15	0	114 (55) <3>	172

출처: 南都泳, 1997, 『韓國馬政史』, 과천: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31쪽, 전국의 목장 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의 목장 수의 합계는 21개(『동국여지승람』과 『목장지도』), 12개(『여지도서』), 15개(『대동여지도』), 18개(『증보문헌비고』)이며 각각 22.8%, 15.2%, 27.2%, 13.2%, 15.8%이다. 이는 삼남 지역의 목장 수보다 적다. 목장 수가 사육하는 말의 수에 비례하지 않지만 일단 고구려의 한반도 지역에서 말을 키우는 목장의 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장 수보다 사육하는 말의 수가 중요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조선시대 도별 말의 수를 살펴보자.

<표 2>에서 조선 전기 황해도·함경도·평안도의 말은 3,367필로 전국 말 수의 8.4%를 차지했다. 후기의 경우 3도의 말은 2,002필로 10%이다. 고려 시대 서해도, 평안도, 삭방도의 면적이 황해·함경·평안 3도보다 적지만 최소 기병이 보유한 말이 27.9%였던 데 비해 조선 전기에 12.7%, 후기에 16.1%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3도의 말의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다. 고려·조선 시대 황해·함경·평안 3도의 말 사육 현황을 보면 한반도 북부에서도 말을 사육할 목장이 15~21곳이 있었고 이곳에서 말을 길렀을 것이다.

〈표 2〉 조선 전·후기 마필 수 비교

(단위: 마리)

도별	시대별	후기	
		전기 성종 원년(1470)	현종 4년(1663)
경기도		1,973(101)	1,387(581) 수말 574 암말 813
충청도		1,556(77)	613 수말 167 암말 446
경상도		2,179	1,488 수말 484 암말 1,004
전라도		4,523(188)	2,465 수말 927 암말 1,538
황해도		918	340(314) 수말 95 암말 245
함경도		491(121)	670 수말 197 암말 473
평안도		1,958	992 수말 359 암말 633
소계		13,598(487)	7,955(895)
제주도	濟州牧		5,788 수말 2,017 암말 3,771
	旌義縣		2,077 수말 649 암말 1,428
	大靜縣		1,248 수말 429 암말 819
	別牧場		2,605 수말 867 암말 1,738
	牛島		410 수말 174 암말 236
	기타		?
소계		26,502?	(12,128 12,411? 12,258)
총계		약 40,000(487)	20,213(895) 수말 6,739 암말 13,274

출처: 南都泳, 1997, 『韓國馬政史』, 과천: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41~242쪽.

고려와 조선 시대 목장 분포의 특징 중 하나는 수도 근처에 목장이 집중 분포했다는 점이다. 고려의 경우 목장들이 개경을 중심으로 경기·황해·충청·강원도에만 설치되었다. 이는 태봉 말 또는 고려 초기의 상황이라고 해

석하기도 한다.³⁶² 조선시대에 경기도의 목장은 28개(『동국여지승람』), 30개(『목장지도』), 8개(『여지도서』), 21개(『대동여지도』), 24개(『증보문헌비고』)이며(〈표 1〉 참조), 이는 황해·함경·평안 3도의 목장 수보다 많다. 말의 수는 조선 전기 1,973필과 조선 후기 1,387필로 3도보다 적긴 하다(〈표 2〉 참조). 그렇다고 해도 경기도에 목장이 많았던 것은 수도 한성과 경기도의 말 수요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고려와 조선이 수도와 가까운 곳에 말을 사육하는 목장을 두어 수도의 군사와 역참 등 수요에 대비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고구려시대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온달은 평강공주와 결혼한 후에 말을 사서 키웠는데,³⁶³ 온달이 살았던 곳은 수도 평양성 부근이었을 것이므로 말을 살 시장과 온달이 말을 기른 장소도 평양성 부근이었을 것이다. 고구려는 봄인 삼월 삼일에 낙랑의 언덕에서 돼지와 사슴을 사로잡아 하늘과 산천의 신에 제사를 지냈다. 이때 평원왕과 신하들, 오부의 병사들도 사냥에 참가했는데 온달도 말을 타고 사냥에 참가하여 많은 사냥감을 얻었다.³⁶⁴ 낙랑의 언덕은 평양성 주변 지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래서 평원왕과 신하들, 수도 주변에 있었던 오부의 병사들이 모두 말을 타고 사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관리하기 위해 평양성 주변에 목장이 다수 분포해야 했을 것이다.

또 조선시대에 섬에 말을 기르는 목장이 많았던 경향이 보인다. 이는 말의 도망을 막고 육지에서 기를 경우 발생하는 농경지 훼손과 사료 제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한반도 북부와 중부 지역인 평안도의 가도(假島),³⁶⁵ 신미도(身彌島),

362 南都泳, 1997, 위의 책, 132쪽.

363 『三國史記』卷45, 「溫達傳」, “初, 買馬, 公主語溫達曰: ‘慎勿買市人馬, 須擇國馬病瘦而見放者, 而後換之.’ 溫達如其言, 公主養飼甚勤, 馬日肥且壯.”

364 『三國史記』卷45, 「溫達傳」,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樂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至其日, 王出獵, 群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 溫達以所養之馬隨行, 其馳騁, 常在在前, 所獲亦多, 他無若者. 王召來, 問姓名, 驚且異之.”

365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53권, 철산군·비고·목장조, 519쪽, “가도장(假島場; 감목관 1명, 선사포 천사가 겸 하였다. 목마(牧馬)가 2백 44필이다) 대곳장(大車場).”

탄도장(炭島場),³⁶⁶ 황해도의 철도(鐵島),³⁶⁷ 용매도(龍煤島), 연평도(延平島),³⁶⁸ 초도(椒島), 석도,³⁶⁹ 기린장(麒麟島), 창린도(昌麟島),³⁷⁰ 순위도(巡威島),³⁷¹ 사늘도(四訥島), 화도(花島),³⁷² 함경도의 말응도(末應島),³⁷³ 마양도(馬養島),³⁷⁴ 대초도(大草島),³⁷⁵ 경기도의 대부장,³⁷⁶ 신도(信島), 거도(居島), 매도(媒島)·모도(茅島),³⁷⁷ 장봉도(長峯島), 풀음도(叵音島)·송가도(松家島)·미법도(彌法島)³⁷⁸에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다. 노비 3천 명을 지닌 재상가에서 바다에 있는 산, 즉 섬에서 가축을 기르다가 먹고 싶으면 썰서 잡았다는 『신당서』 「신라전」 기록³⁷⁹을 보면, 신라에서도 섬에서 말을 비롯한 가축을 길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도 조선시대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경기도 일대의 섬에서 말을

366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53권, 선천군·비고·토산조, 545쪽. “신미도(身彌島)에는 말이 5백 필, 탄도장(炭島場)에는 말이 50필이다. 이상 두 목장은 설표포 목관(牧官)의 소속이다.”

367 『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1권, 황주목·비고·목장조, 290쪽. “용양장(龍驤場; 고려사에 실렸다) 철도장(鐵島場).”

368 『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3권, 해주목·비고·목장조, 416쪽. “용매도장(龍煤島場; 본래 목우장(牧牛場)인데, 뒤에 마장(馬場)이 되었다가 진(鎭)을 설치한 뒤에 폐해졌다) 연평도장(延平島場).”

369 『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3권, 풍천도호부·비고·목장조, 441쪽. “초도장(椒島場; 감목관(監牧官)이 있었는데 초도첨사가 겸하였다) 혁폐 석도장(서용조 대 황주(黃州) 철도(鐵島)에서 이 곳으로 옮겼다).”

370 『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3권, 웅진현·비고·목장조, 451쪽. “기린도장(麒麟島場) 혁폐 창린도장(昌麟島場).”

371 『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3권, 강령현·비고·목장조, 464쪽. “동산곶장·혁폐 순위도장(巡威島場).”

372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8권, 함흥부·비고·목장조, 164쪽. “도련포장(都連浦場; 남쪽으로 40리에 있으며, 지금은 폐지하여 백성에게 경작을 허가하고, 감목관을 옮겨 문천(文川) 사늘도(四訥島)에 두게 하였다) 화도장(花島場).”

373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8권, 영흥대도호부·비고·목장조, 178쪽. “말응도장(末應島場; 축성(築城)이 2백 70파(把)이고, 목책(木柵)이 77파이며 전답(田畝)이 있고 목자(牧子)가 있다.”

374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9권, 흥원현·비고·목장조, 247쪽. “마양도장(馬養島場; 함흥감목(咸興監牧)에 속해 있다).”

375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50권, 온성도호부·비고·목장조, 326쪽. “대초도장(大草島場; 중종 6년에 단천(端川) 땅으로 옮겼으며, 현종 6년에 다시 설치하였다).”

376 『신증 동국여지승람』 2 제9권, 남양도호부·비고·목장조, 172쪽. “대부장(大部場; 섬 가운데 있는데 감목관(監牧官) 한 사람이 있다) 속장(屬場; 선감미·영흥·명홀·이작·소우·불·입피가 있다) 폐장(廢場; 섬에 있는 승항이다).”

377 『신증 동국여지승람』 2 제12권, 강화도호부·비고·목장조, 380쪽. “신도장(信島場)·거도장(居島場)·동검도장(東檢島場)이 있다. 매도(媒島)·모도(茅島)·길상(吉祥)·진강(鎭江)은 모두 없어졌다.”

378 『신증 동국여지승람』 2 제13권, 교동현·비고·목장조, 419쪽. “장봉도(長峯島)·말도(末島; 양을 기른다), 폐장(廢場; 풀음도(叵音島)·송가도(松家島)·미법도(彌法島) 등이다.]”

379 『新唐書』 卷220, 「東夷·新羅傳」, 6202쪽. “宰相家不絕祿, 奴僮三千人, 甲兵牛馬猪稱之, 畜牧海中山, 須食乃射.”

길렀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바닷가를 따라 항해했기 때문에 서해안의 섬에서 말을 길렀을 경우 중국으로 가는 백제나 신라 사신단의 표적이 될 수 있었다. 중국 상선이나 어선도 이를 노릴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서해안 일대의 섬에 말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4. 기타 가축 사육

『태평환우기』에 고구려의 특산물로 과하마 이외에 소와 돼지를 나열하였으며 특히 돼지가 많다고 기록하였다.³⁸⁰ 돼지의 사육은 말갈과 읍루의 기록³⁸¹에서도 확인되며 돼지뼈의 유적발굴³⁸⁶은 고구려 주변에서 돼지사육이 일반화되었음을 뜻한다.³⁸³ ‘광개토대왕비’에 광개토대왕이 패려(裨麗)를 격파한 후 획득한 소와 말의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는 구절³⁸⁴에서 고구려 사람들이 양을 길렀고 양고기를 먹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³⁸⁵ 고구려 영토 안에 거란 등 유목민들도 살았으므로 일부는 양을 길렀다는 선행연구에 동의할 수 있다. 또 일부 고구려 사람들이 양을 길렀음을 시사하는 예도 있다. 당나라 군대가 백애성(백암성)을 점령하자 성안의 부모(父老)와 승려들이 이

380 『太平寰宇記』卷173, 「四夷」2: 東夷2 高句麗國條, 3319쪽,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量貧富差等輸之, 有馬, 皆小便登山, 本朱家所乘馬種, 即果下也畜, 有牛·豕, 豕多.”

381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第30, 挹婁傳, “挹婁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其土地多山險,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有五穀·牛·馬·麻布, 人多勇力,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處山林之間, 常穴居, 大家深九梯, 以多爲好, 土氣寒, 劇於夫餘, 其俗好養豬, 食其肉, 衣其皮, 冬以豬膏塗身, 厚數分, 以禦風寒, 出赤玉, 好貂, 今所謂挹婁貂是也,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鄰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其國便乘船寇盜, 鄰國患之, 東夷飲食類皆用俎豆, 唯挹婁不, 法俗最無綱紀也.”

382 강인욱, 2008, 「동아시아 고고학·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옥저·읍루 문화권의 제기를 중심으로」,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62쪽.

383 윤성재, 2009, 「고려시대의 식품의 생산과 소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2~93쪽; 박유미, 2012, 앞의 글, 56쪽.

384 「廣開土大王碑」, “至鹽水上, 破其三部落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385 董健, 2017, 「淺談高句麗的飲食文化」, 『地域文化研究』, 2017-3, 122쪽.

락(夷酪)과 곤포(昆布), 미병(米餅), 무이(蕪蕒), 메주(豉) 등을 바치자 이세민이 조금만 받고 그들에게 비단을 하사하였다.³⁸⁶ 이 기사에서 이락(夷酪)의 락(酪)은 유제품이다. 당시 젖소를 키우지 않았다면 이 유제품은 양의 젖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마도 백해성 주변에서 양을 길렀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낙타도 길렀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에 28,200호를 강회(江淮) 이남과 산남(山南), 병주(并州), 양주(涼州) 서쪽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때 소 3,300마리와 말 2,900필, 낙타 60마리를 동원하였다.³⁸⁷ 이 기사에서 고구려에서 최소 60마리의 낙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지리서에서 조선 후기에 평안도의 창성(昌城都護府),³⁸⁸ 삭주(朔州都護府),³⁸⁹ 희천(熙川郡),³⁹⁰ 덕천(德川郡),³⁹¹ 개천(价川郡),³⁹² 순천(順川郡),³⁹³ 은산(殷山縣),³⁹⁴ 강계(江界都護府),³⁹⁵ 위원(渭原郡),³⁹⁶ 벽동(碧潼郡),³⁹⁷ 영원(寧遠郡),³⁹⁸ 황해도(遂安郡),³⁹⁹ 곡산(谷山郡),⁴⁰⁰ 함경도의 함흥(咸興

386 『冊府元龜』卷126, 「帝王部」, 納降·太宗貞觀十九年六月條, 1378쪽. “城中父老僧尼, 貢夷酪·昆布·米餅·蕪蕒·豉等, 帝悉為少受而賜之以帛.”

387 『舊唐書』卷5, 「高宗紀」下, 總章二年條, 92쪽. “五月庚子, 移高麗戶二萬八千二百, 車一千八十乘, 牛三千三百頭, 馬二千九百匹, 駝六十頭, 將入內地, 萊·營二州般次發遣, 量配於江·淮以南及山南·并·涼以西諸州空閑處安置.”

38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昌城都護府·土產條, 卷53의 26a쪽.

38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朔州都護府·土產條, 卷53의 30a쪽.

39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熙川郡·土產條, 卷54의 11a쪽.

391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德川郡·土產條, 卷54의 22b쪽.

392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价川郡·土產條, 卷54의 24b쪽.

393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順川郡·土產條, 卷55의 2a쪽.

39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殷山縣·土產條, 卷55의 14b쪽.

395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江界都護府·土產條, 卷55의 18b쪽.

396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渭原郡·土產條, 卷55의 23b쪽.

39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碧潼郡·土產條, 卷55의 29a쪽.

39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5, 平安道·寧遠郡·土產條, 卷55의 32b쪽.

39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遂安郡·土產條, 卷42의 8a쪽.

40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谷山郡·土產條, 卷42의 11b쪽.

고구려의 경제 지리

府),⁴⁰¹ 안변(安邊都護府),⁴⁰² 덕원(德源都護府),⁴⁰³ 북청(北靑都護府),⁴⁰⁴ 단천(端川郡),⁴⁰⁵ 갑산(甲山都護府),⁴⁰⁶ 삼수(三水郡),⁴⁰⁷ 경성(鏡城都護府),⁴⁰⁸ 길성(吉城縣),⁴⁰⁹ 강원도의 원주(原州牧),⁴¹⁰ 춘천(春川都護府),⁴¹¹ 평창(平昌郡),⁴¹² 인제(麟蹄縣),⁴¹³ 횡성(橫城縣),⁴¹⁴ 홍천(洪川縣),⁴¹⁵ 회양(淮陽都護府),⁴¹⁶ 양구(楊口縣),⁴¹⁷ 낭천(狼川縣),⁴¹⁸ 이천(伊川縣),⁴¹⁹ 평강(平康縣),⁴²⁰ 금화(金化縣),⁴²¹ 안협(安峽縣),⁴²² 충청도 진천(鎭川縣)⁴²³의 토산품이 영양(羚羊)이다. 영양은 사전적 의미로 염소와 양, 산양 등을 지칭한다. 한자의 영양이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없으나, 조선 시대에 여러 지역에서 영양을 길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구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
- 40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咸興府·土産條, 卷48의 8a쪽.
 40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安邊都護府·土産條, 卷49의 5b쪽.
 40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德源都護府·土産條, 卷49의 12a쪽.
 40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北靑都護府·土産條, 卷49의 20b쪽.
 40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端川郡·土産條, 卷49의 20b쪽.
 40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甲山都護府·土産條, 卷49의 36a쪽.
 40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三水郡·土産條, 卷49의 40a쪽.
 40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鏡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3b쪽.
 40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吉城縣·土産條, 卷50의 10a쪽.
 41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原州牧·土産條, 卷46의 3a쪽.
 41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春川都護府·土産條, 卷46의 13b쪽.
 41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平昌郡·土産條, 卷46의 27a쪽.
 41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麟蹄縣·土産條, 卷46의 29b쪽.
 41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橫城縣·土産條, 卷46의 31b쪽.
 41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洪川縣·土産條, 卷46의 34a쪽.
 41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淮陽都護府·土産條, 卷47의 8b쪽.
 41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楊口縣·土産條, 卷47의 24b쪽.
 41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狼川縣·土産條, 卷47의 26b쪽.
 41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伊川縣·土産條, 卷47의 26b쪽.
 42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平康縣·土産條, 卷47의 32b쪽.
 42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金化縣·土産條, 卷47의 35b쪽.
 4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安峽縣·土産條, 卷47의 38b쪽.
 423 『新增東國輿地勝覽』卷16, 忠淸道·鎭川縣·土産條, 卷16의 14b쪽.

IV. 광업과 금속 생산

1. 철광·철기와 제련 유적의 지역 분포

『한서』와 『후한서』에 따르면, 평곽현(平郭縣)에서 염관(鹽官)뿐만 아니라 철관(鐵官)이 있었고,⁴²⁴ 후한 시대에도 철이 생산되었다.⁴²⁵ 따라서 고구려시대에도 요동 지역에서 철을 생산했음이 분명하다.⁴²⁶ 고구려시대 철 생산지를 알 수 없지만, 후세 기록과 출토유물, 유적에서 철 생산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신당서』 「발해전」에 각 지방의 특산물 가운데 위성(位城)의 철이 나열되었다.⁴²⁷ 위성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으나 현재의 길림성 북부 또는 흑룡강성 남부 지역에서 철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사』 「지리지」에 동주(同州) 동평현(東平縣)에서 철이 생산되어 300호가 철을 채굴하고 제련하여 나라에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⁴²⁸ 동평현은 현재의 요녕성 개원시(開原市) 중고진(中固鎭)에 해당하므로⁴²⁹ 고구려시대에 이 지역에서 철광석이 산출되었을 것이다. 『요사』 「식화지」에서 동평현과 함께 발해의 철리부(鐵利府)에 해당하는 거란의 광주(廣州, 遼寧省 瀋陽市 大高華堡)에서도 철이 많이 생산된다고 기록하였다. 갱(坑)과 야(冶)가 나라의 동쪽에 많아서 거란의 동경에 호부사(戶部司), 장춘주(長春州, 吉林省 前郭爾羅斯蒙古族自治縣 西北塔虎村 일대)에 전백사(錢帛司)를 설치하였다.⁴³⁰ 즉 동경 요양부의 동쪽 지역에 철광석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갱(坑)은 광물을 파기 위해 뚫은 구덩이란 뜻인데, 갱(坑)과 야(冶)

424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遼東郡·平郭縣條細注, 1626쪽. “有鐵官·鹽官.”

425 『續漢書』志第23, 「郡國志」5, 幽州·遼東郡·平郭縣條細注, 3529쪽. “有鐵.”

426 高句麗의 鐵 문제는 李龍範, 1966, 앞의 글, 29~90쪽 참조.

427 『新唐書』卷219, 「北狄·渤海傳」, 6183쪽. “俗所貴者, 曰太白山之菟, 南海之昆布, 柵城之豉, 扶餘之鹿, 鄭頡之豕, 率賁之馬, 顯州之布, 沃州之繇, 龍州之紬, 位城之鐵, 盧城之稻, 湄沱湖之鰈.”

428 『遼史』卷38, 「地理志」2, 東京道·同州(鎮安軍)·東平縣條, 469쪽. “東平縣, 本漢襄平縣地, 產鐵, 撥戶三百採鍊, 隨征賦輸.”

429 史爲樂 主編, 2005,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78쪽.

430 『遼史』卷60, 「食貨志」下, 930쪽. “神冊初, 平渤海, 得廣州, 本渤海鐵利府, 改曰鐵利州, 地亦多鐵, 東平縣本漢襄平縣故地, 產鐵礦, 置採煉者三百戶, 隨賦供納, 以諸坑冶多在國東, 故東京置戶部司, 長春州置錢帛司.”

가 병렬된 것을 보면 철 생산지에 야철 작업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장백산맥 남쪽에서 만주의 철광석 절반이 생산되었다.⁴³¹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장백산맥에서 철광석이 다수 매장되었으므로 고구려시대에 이곳의 철광이 개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통지』에 거란(遼)의 동산현(銅山縣)에서 철광석이 산출되어 300호에게 철광석을 채굴하여 세금으로 징수하였으며 현재의 주현에도 있다고 기록되었다.⁴³² 이 기사에서 거란시대의 철광산을 청대에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앞에서 언급한 서로 다른 시대의 철광석 산지는 후대에도 철을 생산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 고고학 유적과 유물, 각종 사서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개주시(蓋州市)·대석교시(大石橋市)·안산시(鞍山市)·요양시(遼陽市)·본계시(本溪市)·통화시(通化市)·임강시(臨江市)·집안시(集安市)의 립자구(砬子溝)와 대천촌(大川村)이 철광석 산지로 언급된다.⁴³³ 요녕성 안산시·요양시·본계시 일대는 『요사』 「식화지」에서 서술한 철광석 산지와 대략 일치하며, 통화시·임강시·집안시는 21세기 초 철광석 산지인 장백산맥 남쪽 지역과 대략 일치한다.

다음으로 한반도 지역의 철광 산지를 살펴보자.

강 동쪽은 황해·봉산(鳳山)·서흥·평산이고, 강 서쪽은 안악(安岳)·문화(文化)·신천(信川)·재령(載嶺)이다. 이 여덟 고을은 풍속이 비슷하며 면악산과 수양산의 북쪽에 있다. 땅이 아주 기름져서 오곡과 면화를 가꾸기에 알맞으며, 납과 쇠를 산출하는 산이 각 곳에 흩어져 있다.⁴³⁴

431 Robert Burnett Hall, 1930, *op. cit.*, p. 284.

432 『盛京通志』 卷106, 「物産」 1, 食貨類·鐵條, 5a쪽(1563쪽). “遼史銅山縣產鐵, 撥戶三百, 採煉隨征賊輸, 今各州縣皆有之.”

433 テゲンクレン著, 甘粕成雄譯, 1940, 앞의 책, 85~96쪽; 鬼頭三郎編, 1940, 앞의 책, 6쪽; 集安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2005, 앞의 책, 72쪽; 王俊鋒, 2020, 앞의 글, 106쪽; 양인호, 2022, 앞의 글, 124~126쪽.

434 『택리지』, 「팔도총론」, 황해도조, 53쪽.

위의 인용문인 『택리지』에 따르면 남오리강 주변 황해·봉산(鳳山)·서흥·평산과 안악(安岳)·문화(文化)·신천(信川)·재령(載嶺)에 있는 산에서 납과 쇠가 산출되었다.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납·철·면화·벼·기장·생선·소금 따위가 생산되고 있다. 비교적 부유한 지는 많은 편이나 사대부는 적다.⁴³⁵

위의 인용문은 황해도 지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황해도 산지에서 납과 철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황해도의 평산(平山都護府),⁴³⁶ 서흥(瑞興都護府),⁴³⁷ 봉산(鳳山郡),⁴³⁸ 안악(安岳郡),⁴³⁹ 수안(遂安郡),⁴⁴⁰ 신천(信川郡),⁴⁴¹ 우봉(牛峯縣),⁴⁴² 해주(海州牧),⁴⁴³ 풍천(豐川都護府),⁴⁴⁴ 송화(松禾縣),⁴⁴⁵ 은율(殷栗),⁴⁴⁶ 장연(長淵縣)⁴⁴⁷의 토산품이 철이었다. 즉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황해도의 열두 고을에서 철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은 앞에서 검토한 『택리지』와 일치한다. 즉 조선시대 황해도 각 지역에서 철이 생산되었다. 따라서 고구려시대 황해도 지역에서도 철광석이 생산되

435 『택리지』, 「팔도총론」, 황해도조, 57쪽.

4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1, 黃海道·平山都護府·土產條, 卷41의 15b쪽.

43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1, 黃海道·瑞興都護府·土產條, 卷41의 22a쪽.

43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1, 黃海道·鳳山郡·土產條, 卷41의 32a쪽.

439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安岳郡·土產條, 卷42의 2a쪽.

44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遂安郡·土產條, 卷42의 8a쪽.

441 『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2권 신천군·비고·토산조, 364쪽. “철(鐵)·갈대·물역새.”

44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牛峯縣·土產條, 卷42의 21b쪽.

44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海州牧·土產條, 卷43의 3b쪽.

44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豐川都護府·土產條, 卷43의 25a쪽.

44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松禾縣·土產條, 卷43의 36a쪽.

446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은율 사람들이 鹽鐵로 이익을 얻었다고 기록하였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殷栗縣·風俗條, 卷43의 37b쪽. “俗以鹽鐵爲利(地志).”]. 은율현의 토산품 가운데 철은 없으나 철광석을 뜻하는 석철(石鐵)이 있기 때문에[『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殷栗縣·土產條, 卷43의 38b쪽] 이 광물에서 철을 분리하여 철광석이나 철제품을 만들었을 것이다.

44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長淵縣·土產條, 卷43의 44a쪽.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북부인 함경도의 정평(定平都護府),⁴⁴⁸ 문천(文川郡),⁴⁴⁹ 북청(北靑都護府),⁴⁵⁰ 단천(端川郡),⁴⁵¹ 이성(利城縣),⁴⁵² 삼수,⁴⁵³ 길성(吉城縣),⁴⁵⁴ 회령(會寧都護府),⁴⁵⁵ 종성(鍾城都護府),⁴⁵⁶ 경흥(慶興都護府),⁴⁵⁷ 부녕(富寧都護府),⁴⁵⁸ 평안도의 강계⁴⁵⁹에서 철이 산출되었다. 또 함경도 경성(鏡城都護府)에서 사철(沙鐵),⁴⁶⁰ 개천(价川郡)에서 수철(水鐵)⁴⁶¹을 각각 캐다. 현재 수철은 무쇠, 즉 탄소의 함량이 높은 철의 합금이라는 뜻인데, 조선시대의 ‘수철’도 그런 뜻으로 쓰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한반도 중부인 조선시대의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일대에서도 철광석이 생산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다른 지리서에 따르면, 충청도 충주(忠州牧),⁴⁶² 제천(堤川縣)⁴⁶³, 청주(淸州牧),⁴⁶⁴ 목천(木川縣),⁴⁶⁵ 청안(淸安縣),⁴⁶⁶ 강원도 삼

44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定平都護府·土産條, 卷48의 19a쪽.

44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文川郡·土産條, 卷49의 15b쪽.

45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北靑都護府·土産條, 卷49의 20b쪽.

45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端川郡·土産條, 卷49의 20b쪽.

45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利城縣·土産條, 卷49의 29b쪽.

453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9권, 삼수군·비고·토산조, 260쪽, “쇠(鐵)·송이.”

45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吉城縣·土産條, 卷50의 10a쪽.

455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會寧都護府·土産條, 卷50의 27b쪽.

456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鍾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36a쪽.

457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慶興都護府·土産條, 卷50의 43a쪽.

458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富寧都護府·土産條, 卷50의 47b쪽.

459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55권, 강계도호부·비고·토산조, 634쪽, “... 쇠(鐵) 및 연주(延州)에서 산출한다).... ·벼(稻)·기장(黍稷)·옥수수(苴荳(荳)에서 많이 생산하며 토민(土民)이 이것으로써 양곡을 대신한다.”

46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鏡城都護府·土産條, 卷50의 4a쪽.

461 『新增東國輿地勝覽』卷54, 平安道·价川郡·土産條, 卷54의 24b쪽.

462 『新增東國輿地勝覽』卷14, 忠淸道·忠州牧·土産條, 卷14의 5a쪽.

463 『新增東國輿地勝覽』卷14, 忠淸道·堤川縣·土産條, 卷14의 35b쪽.

464 『신증 동국여지승람』 2 제15권, 청주목·비고·토산조, 509쪽, “철·감·대추·종이·칠·소거리·은어.”

465 『新增東國輿地勝覽』卷16, 忠淸道·木川縣·土産條, 卷16의 6b쪽.

466 『신증 동국여지승람』 2 제16권, 청안현·비고·토산조, 552쪽, “철·대구·은구어.”

척(三陟都護府),⁴⁶⁷ 양양(襄陽都護府),⁴⁶⁸ 횡성(橫城縣)⁴⁶⁹에서 철광석이 산출되었다. 또 경기도의 영평(永平縣)⁴⁷⁰과 충청도 청풍(淸風郡),⁴⁷¹ 옥천(沃川郡),⁴⁷² 회인(懷仁縣),⁴⁷³ 보은(報恩縣)⁴⁷⁴에서 수철(水鐵)이 생산되었다.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한반도 북부와 중부 지역 각지에서도 철광석이 분포하였고 전근대시대에 노천광 등에서 생산한 금속을 사용했으므로 조선시대 철광 생산지는 고구려시대에도 채굴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야철 작업장이 있던 지역을 살펴보자. 먼저 수도 국내성 일대이다. 국내성 일대에서 무기뿐만 아니라 도끼, 낫, 쟁기, 삽 등 농기구가 출토되었다. 일부는 중국에서 유입되었지만 대부분은 고구려에서 만들었다.⁴⁷⁵ 이는 국내성과 그 주변 지역에 제련을 비롯한 철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 작업장이 있었음을 뜻한다. 오회분 4호묘(五盔墳四號墓) 벽화 가운데 쇠를 불러 단련하는 그림이 있다.⁴⁷⁶ 이 벽화를 그린 화가는 쇠를 다루고 철 제품을 만드는 장면을 보고 그림을 그렸을 것이므로 국내성 주변에 철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 공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 학자는 북두동남 유적에서 화로벽(爐壁)과 쇠 찌꺼기 등 제철로 유적이 출토되었다고 보았다.⁴⁷⁷ 철제 유물과 제련 과정을 그린 벽화, 제철로로 추정되는 유적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국내성 일대에 대장간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본계시(本溪市)의 평정산 고구려 산성에서 철제 화살촉과 창날, 삽 등 철기

46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江原道·三陟都護府·土産條, 卷44의 27a쪽.

46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江原道·襄陽都護府·土産條, 卷44의 35b쪽.

46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橫城縣·土産條, 卷46의 31a쪽.

470 『新增東國輿地勝覽』卷11, 京畿·永平縣·土産條, 卷11의 35b쪽.

471 『新增東國輿地勝覽』卷14, 忠淸道·淸風郡·土産條, 卷14의 17b쪽.

472 『新增東國輿地勝覽』卷15, 忠淸道·沃川郡·土産條, 卷15의 23a쪽.

473 『新增東國輿地勝覽』卷16, 忠淸道·懷仁縣·土産條, 卷16의 9a쪽.

474 『新增東國輿地勝覽』卷16, 忠淸道·報恩縣·土産條, 卷16의 18a쪽.

475 耿鐵華, 1989, 『集安高句麗農業考古概述』, 『農業考古』1989-1, 99~101쪽; 李宇峰, 1990, 앞의 글, 81쪽

476 耿鐵華, 1986, 앞의 글, 30쪽, 圖四 五盔墳四號墓藻井鍛鐵圖和製輪圖(摹本) 및 30왼쪽.

477 양인호, 2022, 앞의 글, 124쪽.

가 발견되었다.⁴⁷⁸ 또 본계현 소시중심가(小市中心街)의 고구려 무덤에서 관을 연결하는 철제 못과 부속품이 발견되었다.⁴⁷⁹ 이 지역은 일본의 서쪽에 위치하는데, 정교함을 요구하는 못과 관을 연결하는 부속품을 만들 수 있는 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대장간이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요동 반도이다. 대련시 성산산성에서 끌, 못, 망치, 도끼, 낫, 창, 화살촉, 자귀(鎚), 숟, 거울 등 각종 철기가 발견되었다.⁴⁸⁰ 개주시(蓋州市) 청석령산성(靑石嶺山城)에서 낫, 창날, 화살촉, 등자, 못, 철갑옷 조각 등이 발견되었다. 또 2호 건물지 기초부에서 슬래그(爐渣), 작은 철괴, 목탄 등이 출토됐다. 발굴보고서 작성자는 청석령산성 안이나 그 부근에 대장간 유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⁴⁸¹ 이 지역에서 제철 수공업이 활발했음은 명대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한대(漢代) 평곽(平郭, 즉 고구려의 건안성 일대에 해당되는 명대 개주위(蓋州衛, 현재의 遼寧省 蓋州市) 성 북쪽 90리,⁴⁸² 서쪽 42리의 배음채보(背陰寨堡)⁴⁸³와 반곡보(盤谷堡)⁴⁸⁴ 일대에 철장(鐵場)이 있었다. 해주위(海州衛, 현재의 遼寧省 海城市) 동쪽 90리⁴⁸⁵와 금주위(金州衛, 현재의 遼寧省 大連市 동북 金州

478 梁志龍·馬毅, 2009, 「遼寧本溪市平頂山高句麗山城調查」, 『東北史地』 2009-5, 4오른쪽~5왼쪽.

479 齊俊·梁志龍, 2001, 「遼寧本溪縣小市中心街高句麗墓」, 『北方文物』 2001-2(總第66期), 30오른쪽.

480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鄭元詰 옮김, 2007, 「대련(大連) 성산산성(城山山城) 2005년 조사보고」, 『高句麗研究』 28, 255~256쪽.

481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蓋州市文物局, 2017, 「遼寧蓋州市靑石嶺山城的調查與發掘」, 『考古』 2017-12, 65오른쪽~66오른쪽 및 67오른쪽; 양인호, 2022, 앞의 글, 122쪽.

482 『全遼志』 卷1, 「沿革志」, 蓋州衛·鐵場百戶所條, 28쪽, “城北九十里.”

483 『讀史方輿紀要』 卷37, 「山西」 8, 遼東都指揮使司·蓋州衛·背陰寨堡條細注, 1715쪽, “衛西北十五里. 又西北有平山堡·八角湖堡. 衛南百二十里有五十寨堡. 又衛東北九十里里有排山寨. 東二百五十里有岫巖寨. 鹽鐵場. 《志》云: 衛西四十里有鹽場百戶所, 北九十里有鐵場百戶所.”

484 『讀史方輿紀要』(顧祖禹撰, 賀次君·施和金 點校, 中華書局, 2005) 卷37, 「山西」 8, 遼東都指揮使司·復州衛·盤谷堡條, 1716쪽, “衛東二十里. 其東南又有富川·秀山·臨溪三堡. 又半官寨堡, 在衛西四十里. 衛東南八十里. 又有胡十八寨堡. 鹽鐵場. 《志》云: 鹽場百戶所, 在衛西四十二里. 鐵場百戶所, 在衛北九十里.”

485 『全遼志』 卷1, 「沿革志」, 海州衛·鐵場百戶所條, 27쪽, “城東九十里.”; 『讀史方輿紀要』 卷37, 「山西」 8, 遼東都指揮使司·海州衛·牛家莊驛條細注, 1711쪽, “杜家屯在衛西北, 遼河東岸, 亦與廣寧接壤. 又衛西南九十里鹽場, 衛東九十里有鐵場. 向各置百戶所司之.”

鎭) 동쪽 130리⁴⁸⁶ 또는 230리,⁴⁸⁷ 복주위(復州衛, 현재의 遼寧省 瓦房店市 西北 復州城鎭) 북쪽 90리⁴⁸⁸에 철장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고구려시대에도 요동반도의 서쪽 해안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도 철 생산이 활발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명나라 때의 상황을 살펴보면, 요심(遼瀋)과 그 동쪽의 각 철장은 매년 요동 지역 철 생산량의 49.98%에 달하였고, 요동반도 지역은 44.17%를 점하였다.⁴⁸⁹ 명대의 상황에서 유추하면 고구려시대 요동 지역이 주요한 철기 생산 지역이었을 것이다.⁴⁹⁰

다음으로 요하 하류 지역이다. 영구시 청석령진(靑石嶺鎭) 고구려 산성에 서 철제 등자, 삽, 수레의 쇠뿔, 철갑 조각, 솥, 항아리, 화살촉 등이 발견되었다.⁴⁹¹ 고려성촌(高麗城村) 고려성산산성(高麗城山山城)에서 철제 등자, 삽, 수레의 쇠뿔, 철갑 조각, 화살촉, 솥, 항아리 등이 발견되었다.⁴⁹² 이 지역의 철기도 이 지역의 대장간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요하 중류에서도 고구려시대 철기 유적이 발견되었다. 요녕성 심양시 동북쪽 35km 떨어진 휘산풍경구(輝山風景區)에 있는 석대자산성(石臺子山城)과 주변 마을, 무덤에서 철로 만든 화살촉, 갑옷 조각, 창날 등 무기뿐만 아니라 낫 등 농기구도 출토되었다.⁴⁹³ 무순시(撫順市) 일대의 고이산성(高爾山城)⁴⁹⁴과

486 『讀史方輿紀要』卷37, 「山西」8, 遼東都指揮使司·金州衛·石河堡條細注, 1720쪽. “衛北六十里, 衛西南六十里又有木場堡, 又紅嘴堡, 在衛東八十里, 衛東北七十里有歸服堡, 又東北三十餘里有黃骨島堡, 鹽鐵場. 《志》云: 衛東北百三十里有鹽場百戶所, 衛東百三十里有鐵場百戶所. 《邊防考》: 衛西北二十里有鹽場島.”

487 『全遼志』卷1, 「沿革志」, 金州衛·鐵場百戶所條, 29쪽. “城東二百三十里.”

488 『全遼志』卷1, 「沿革志」, 復州衛·鐵場百戶所條, 29쪽. “城北九十里.”; 『讀史方輿紀要』卷37, 「山西」8 遼東都指揮使司·復州衛·盤谷堡條, 1716쪽. “鹽鐵場. 《志》云: 鹽場百戶所, 在衛西四十二里, 鐵場百戶所, 在衛北九十里.”

489 畢洪娜, 2012.6, 「明初遼東都司人口及其地理分布探究-以《遼東志》爲中心-」,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4쪽.

490 최진열, 2022, 앞의 글, 130~132쪽.

491 王禹浪·王海波, 2009, 「營口市靑石嶺鎭高句麗山城考察報告」, 『黑龍江民族叢刊(雙月刊)』2009-5 (總第112期), 91원쪽; 王禹浪·王文軼, 2011, 「營口地區的高句麗山城」, 『哈爾濱學院學報』2011-9, 40원쪽.

492 崔艷茹, 2009, 「營口地區山城調查與探討」, 『東北史地』2009-3, 270원쪽~280원쪽.

493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1998,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

시가채고(施家菜庫) 북산(北山)의 고구려 무덤에서 무기와 농기구가 출토되었고, 관문촌(關門村)의 고구려 무덤에서 구리와 도금 제품이 출토되었다.⁴⁹⁵ 이는 두 지역에서 무기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용품으로 철제 농기구와 식기를 사용했음을 뜻하며, 주변에 제련과 각종 철 제품을 만드는 수공업장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지역에 명대 철장이 존재하였다. 요동도사의 동남쪽 100리(약 56km)에 위치한 명대 안평산(安平山, 현재의 遼寧省 遼陽市 동남)에 철장이 있었다고 기록하였다.⁴⁹⁶ 또 심양중위(瀋陽中衛)에 안평산성(安平山城) 동쪽 90리⁴⁹⁷와 철령위(鐵嶺衛)의 봉집보성(奉集堡城) 남쪽 210리,⁴⁹⁸ 안락주(安樂州)⁴⁹⁹에 각각 철장백호소(鐵場百戶所)가 있었다. 이는 세 지역 주변에 철광석이 생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철을 생산한 철장백호소가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요동도사 치소 지역은 요동성, 철령위 지역은 현도성에 해당한다. 고구려 성에서 출토된 철기와 명대 요동도사의 위소에서 철장이 존재했던 사실에서 고구려시대 이후에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이용하여 각종 철기를 만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고구려시대에 요동성과 현도성과 그 주변에 철광석이 생산되고 이를 이용한 철 생산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요녕성 안에서 87개의 고구려 산성 유적에서도 철제 농기구가

報告, 『考古』 1998-10, 9오른쪽~10왼쪽;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1,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二次發掘報告」, 『考古』 2001-3, 45오른쪽~48오른쪽; 李龍彬, 2006.4, 「石臺子高句麗山城及墓葬發現與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23~24쪽;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6, 「2004年度瀋陽市臺子山城高句麗墓葬發掘簡報」, 『北方文物』 2006-2(總第86期), 24왼쪽~24오른쪽;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7,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2002年Ⅲ區發掘簡報」, 『北方文物』 2007-3(總第91期), 33왼쪽~35오른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8, 「瀋陽市石臺子山城高句麗墓葬2002-2003年發掘簡報」, 『考古』 2008-10(總第904期), 52오른쪽~53왼쪽;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10,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蓄水設施遺址」, 『考古』 2010-12, 47왼쪽~52왼쪽.

494 遼寧 撫順 高爾山城 발굴 중 500건에 가까운 鐵器가 출토되었다. 비록 대부분 철병기였지만 鐵錘, 鐵錘 등 농기구도 출토되었다(徐家國·孫力, 1987, 「遼寧撫順高爾山城發掘簡報」, 『遼海文物學刊』 1987-2).

495 肖景全·鄭辰, 2007, 「撫順地區高句麗考古的回顧」, 『東北史地』 2007-2, 54왼쪽~55왼쪽.

496 『大明一統志』(明 李賢等 奉敕撰, 天順五年御製序刊本) 卷25, 山東布政司·遼東都指揮使司·山川·安平山條細注, 29뒤쪽. "在都司城東南百里. 上有鐵場."

497 『全遼志』 卷1, 「沿革志」, 瀋陽中衛·鐵場百戶所條, 37쪽. "安平山城東九十里."

498 『全遼志』 卷1, 「沿革志」, 鐵嶺衛·鐵場百戶所條, 38쪽. "奉集堡城南二百一十里."

499 『全遼志』 卷1, 「沿革志」, 安樂州·鐵場百戶所條, 39쪽. "一威寧營東一甜水站北."

발견되었다.⁵⁰⁰ 이는 만주 각지에서 철제 무기와 농기구를 사용했음을 뜻하며 각지에 철 제품을 생산하는 대장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고구려 유물과 명대 요동도사 관할 지역의 철장 분포를 통해 고구려의 야철 작업장 지역을 유추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의 북한 자강도 시중군 노남리 남과동 유적과 황해도 장수산성, 남한의 아차산 3보루 및 무등리 2보루, 중국의 개주시 청석령산성(靑石嶺山城, 高麗城山城)과 집안시 북두동남(北頭東南) 유적이 있고 흥련봉 2보루와 용마산 2보루(모두 서울 광진구), 아차산 4보루(서울·구리), 시루봉보루(경기도 구리), 호로고루(경기도 연천시), 오녀산성(요령성 환인현), 국내성에서 고구려의 제철 유적이 발견되었다.⁵⁰¹ 이 13곳에 각종 철 제품을 만드는 대장간이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유적이 발견되면 고구려의 제철 생산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는 이렇게 생산한 철로 농기구와 무기를 만들었고 이는 고구려의 농업과 군사력 발전에 기여하였다.

2. 금·은·구리 생산 지역

고구려에서 철뿐만 아니라 금(黃金)과 은(白銀)이 많이 생산되었다. 『위서』 「고구려전」에서 고구려가 북위에 해마다 황금 200근과 백은 400근을 ‘조공’했다고 기록하였다.⁵⁰² 북위 시대 1근이 222.73g이었으므로 황금 200근은 44.546kg, 백은 400근은 89.092kg에 해당한다.⁵⁰³ 유리명왕이 기원전 9년(유리명왕 11) 선비(鮮卑)를 격파한 부분노(扶芬奴)에게 황금 30근(斤)과 양마(良馬) 10필을 하사하였다.⁵⁰⁴ 『삼국사기』의 근(斤)이 『위서』의 근(斤)과 같은

500 陳大爲, 1988, 「遼寧高句麗山城初探」, 『中國考古學會第五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李宇峰, 1990, 앞의 글, 81쪽.

501 양인호, 2022, 앞의 글, 118쪽 및 124쪽 〈표 1〉 고구려 제철유적 소지재 및 출토 내용.

502 『魏書』 卷100, 「高句麗傳」, 2215쪽, “後貢使相尋, 歲致黃金二百斤, 白銀四百斤.”

503 2023년 6월 16일 금 시세는 3.75g 당 295,000원(매도 기준)이므로 35억 428만 5,333원에 해당한다.

504 「三國史記」 卷13, 「高句麗本紀」 1, 瑠璃明王十一年四月條, “王念扶芬奴功, 賞以食邑, 辭曰: “此王

무게인지 알 수 없으나 같다고 가정하면 1년의 금 생산량의 15%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유리명왕은 17년(유리명왕 37) 익사한 왕자 여진(如津)의 시체를 찾은 비류(沸流) 사람 제수(祭須)에게 금 10근과 전(田) 10경(頃)을 주었다.⁵⁰⁵ 이 두 사례에서 고구려에 금이 많았음을 보여 준다. 공회(公會)에서 비단과 금은(金銀)으로 치장한 옷을 입었다는 『후한서』와 『삼국지』 「고구려전」의 기사⁵⁰⁶에서 고구려의 지배계급이 금과 은으로 치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과 은의 생산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고구려의 영토에서 금과 은의 생산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20세기 초 금이 장백산맥과 소흥안령 지역에서 발견된 사실⁵⁰⁷에서 고구려도 같은 지역에서 금을 채굴하거나 사금을 채취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위서』 권100 「고구려전」에 북위 정시(正始) 연간(504~508)에 선무제(宣武帝)와 고구려의 사신 예실불(芮悉弗)의 대화가 기록되었는데, 금의 생산지를 부여(夫餘)라고 하였다.⁵⁰⁸ 『삼국지』 「부여전」에 부여의 대가(大家)는 동물의 가죽옷을 입고 금과 은으로 모자를 장식했다고 기록하였다.⁵⁰⁹ 이는 부여에 금과 은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부여의 위치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지만 현재의 길림성 사평시(四平市) 일대로 추정되는 부여성과 인근 지역에서 금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성경통지』에서 역대 사서의 기록을 언급하며 원나라 요양행성의 요동(遼東) 쌍성(雙城)에서 금을 채취했다고 기록하

之德也，臣何功焉。”遂不受，王乃賜黃金三十斤·良馬一十四。”

505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三十七年四月條, “三十七年, 夏四月, 王子如津, 溺水死, 王哀慟, 使人求屍, 不得, 後沸流人祭須得之, 以聞, 遂以禮葬於王骨嶺, 賜祭須金十斤·田十頃。”

506 『後漢書』卷85, 「東夷·高句麗傳」, 2813쪽, “其公會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高句麗傳」, 844쪽,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507 Robert Burnett Hall, 1930, *op. cit.*, p. 284.

508 『魏書』卷100, 「高句麗傳」, 2215쪽, “正始中, 世宗於東堂引見其使芮悉弗, 悉弗進曰: ‘高麗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夫餘, 珂則涉羅所產, 今夫餘為勿吉所逐, 涉羅為百濟所并, 國王臣雲惟繼絕之義, 悉遷于境內,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為.’ 世宗曰: ‘高麗世荷上將, 專制海外, 九夷黠虜, 實得征之, 瓶罄囊耻, 誰之咎也? 昔方貢之愆, 責在連率, 卿宜宣朕旨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擗披吉羣, 輯寧東裔, 使二邑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

509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夫餘傳」, 841쪽, “出國則尚繪錦繡, 大人加狐狸·狍白·黑貂之裘, 以金銀飾帽.”

였다. 쌍성은 철령에 해당하였다. 또 『거란국지』를 인용하며 여진이 금과 은을 생산한다고 기록하였다.⁵¹⁰ 철령은 후한시대 요동으로 옮긴 현도군의 동북쪽 지역에 해당하였고⁵¹¹ 고구려의 현도성으로 비정되므로 현도성 주변 지역에서 은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진은 현재의 길림성과 흑룡강성 남쪽에 분포했으므로 고구려도 이곳에서 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평안도 일대에서 금이 많이 출토되었으므로 고구려시대에도 이곳에서 금이 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은이다. 『위서』 「고구려전」에서 금과 함께 은도 생산되었다. 『건강실록』에 “나라(高句麗)에 은산(銀山)이 있어 채굴해 화(貨)로 삼는다.”⁵¹²라는 기록이 있다. ‘화(貨)’를 금속화폐로 해석할 수 있다면 고구려에서 은화가 화폐로 통용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구려의 은화가 출토되지 않아서 은을 화폐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명칭시대에 은의 무게를 달아 화폐로 사용하는 청량화폐처럼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사』 「지리지」에 은주(銀州)가 은야(銀冶)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라고 기록하였다.⁵¹³ 은주의 신흥현(新興縣)에 발해가 은야(銀冶)를 설치하였다.⁵¹⁴ ‘은야(銀冶)’의 존재는 이 지역에서 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은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경통지』에서 명대 해주위에서 은이 생산되었고 발해 시대부터 철령에 은야를 설치하여 은주라는 지

510 『盛京通志』 卷106, 「物産」 1, 食貨類·金條, 6a쪽(1563쪽), “元史産金之所遼陽省曰大寧, 開元至元十三年, 於遼東雙城採金, 冊府元龜: 天寶七載, 黑水靺鞨獻金銀, 契丹國志: 女真土產, 有金銀, 寧江州樵場以北珠生金爲市, 明一統志, 出雙城, 按遼雙城縣, 今鐵嶺界.”

511 譚其驥 主編, 1982, 앞의 책, 61~62쪽, 東漢·幽州刺史部.

512 『建康實錄』 卷16, 「東南夷·高麗傳」, 649쪽, “國有銀山, 採爲貨.”; 『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 7, 文咨明王十三年四月條, “十三年,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世宗引見其使芮悉弗於東堂, 悉弗進曰: ‘小國係誠天極, 累葉純誠, 地產土毛, 無愆王貢, 但黃金出自扶餘, 珂則涉羅所産, 扶餘爲勿吉所逐, 涉羅爲百濟所并, 二品所以不登王府, 實兩賊是爲.’ 世宗曰: ‘高句麗世荷上獎, 專制海外, 九夷黠虜, 悉得征之, 瓶罄罍耻, 誰之咎也? 昔, 方貢之愆, 責在連率, 卿宜宣朕志於卿主, 務盡威懷之略, 揃披害群, 輯寧東裔, 使二邑, 還復舊墟, 土毛無失常貢也.’”

513 『遼史』 卷38, 「地理志」 2, 東京道·銀州(富國軍)條, 469쪽, “銀州, 富國軍, 下, 刺史, 本渤海富州, 太祖以銀冶更名.”

514 『遼史』 卷38, 「地理志」 2, 東京道·銀州(富國軍)·新興縣條, 469쪽, “新興縣, 本故越喜國地, 渤海置銀冶, 當置銀州.”

명이 생겼지만 청대에 청나라의 발상지라 채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⁵¹⁵ 고구려의 소요하 지역과 요하 하류에서 은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인용된 조선 후기 지리지에 고려 현종 때 강원도 정선에서 은광석이 채굴되었다고 기록하였다.⁵¹⁶ 이 밖에 조선 후기 북부 지방에서 금광과 은광을 개발했던 것을 보면 한반도 북부의 평안도와 함경도 등지에서도 금과 은이 채굴되었을 것이다. 이는 고구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기타 지리지에서 경기도 영평(永平縣),⁵¹⁷ 황해도 수안(遂安郡),⁵¹⁸ 장연(長淵縣),⁵¹⁹ 강원도 평창(平昌郡),⁵²⁰ 금성(金城縣),⁵²¹ 평안도 구성(龜城都護府),⁵²² 함경도 갑산⁵²³에서 구리가 생산되었다고 기록되었다.⁵²⁴ 남은 황해도 서흥(瑞興都護府),⁵²⁵ 강원도 회양(淮陽都護府),⁵²⁶ 금성(金城縣),⁵²⁷ 함경도 단천(端川郡),⁵²⁸ 정평(定平都護府)⁵²⁹ 등지에서 생산되었다. 이 밖에 불특정

515 『盛京通志』卷106, 「物産」1, 食貨類·銀條, 6a쪽(1563쪽), “元史: 産銀之所遼陽曰大寧, 延祐四年, 遼陽惠州銅洞三十六眼, 立提舉司辦銀. 明一統志: 海州衛出銀嶺, 按銀冶之制, 始自渤海於鐵嶺置銀冶, 故鐵曰銀州, 今以發祥重地, 不復採取.”

516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6권, 정선군·비고·토산조, 47쪽, “고려 현종 13년에 명주(溟州)의 정선현에서 은광석이 난다고 아뢰었다.”

517 『新增東國輿地勝覽』卷11, 京畿·永平縣·土産條, 卷11의 35b쪽, “銅鐵·水鐵.”

51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遂安郡·土産條, 卷42의 8a쪽, “鐵(出見造山)·銅鐵(出銅里浦山).”

51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長淵縣·土産條, 卷43의 44a쪽, “絲·麻·銅鐵(出眞石洞)·鐵(出冬羅串·吉串兩處).”

52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6, 江原道·平昌郡·土産條, 卷46의 26b쪽, “銅鐵(出郡西梁吞里).”

52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金城縣·土産條, 卷47의 21b쪽, “銅鐵(出縣南祖洞里).”

522 『新增東國輿地勝覽』卷53, 平安道·龜城都護府·土産條, 卷53의 32b쪽, “銅鐵(產?延)·人參.”

523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49권, 갑산도호부·비고·토산조, 254쪽, “구리(銅)·현석(硯石).”

524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표기된 ‘銅鐵’이 ‘鐵’과 병기된 사례[『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長淵縣·土産條, 卷43의 44a쪽, “絲·麻·銅鐵(出眞石洞)·鐵(出冬羅串·吉串兩處)"]를 보면, ‘銅鐵’은 구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525 『新增東國輿地勝覽』卷41, 黃海道·瑞興都護府·土産條, 卷41의 22a쪽.

526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淮陽都護府·土産條, 卷47의 8a쪽.

527 『新增東國輿地勝覽』卷47, 江原道·金城縣·土産條, 卷47의 21b쪽.

52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端川郡·土産條, 卷49의 20b쪽.

52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8, 咸鏡道·定平都護府·土産條, 卷48의 19a쪽.

광물이 섞인 광석을 지칭하는 석철(石鐵)은 황해도 재령(載寧郡),⁵³⁰ 장련(長連縣),⁵³¹ 해주(海州牧),⁵³² 강원도 정선(旌善郡),⁵³³ 영월(寧越郡),⁵³⁴ 홍천(洪川縣),⁵³⁵ 금성(金城縣),⁵³⁶ 금화(金化縣),⁵³⁷ 안협(安峽縣)⁵³⁸ 등지에서 생산되었다.

V. 소금 생산

1. 만주 지역의 소금 생산 지역 추정지

전한 시대의 요동 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사기』와 『한서』에서 상곡군부터 요동군까지의 지역에 물고기, 소금, 대추, 밤이 풍부했다고 기록하였다.⁵³⁹ 『독사방여기요』에서 명대 요동 지역이 소금과 철이 풍부했다(“鹽鐵之饒”)고 기록하였다.⁵⁴⁰ 이 기록이 『사기』, 『한서』와 비슷한 것으로 보아 한대부터 명대까지 소금과 철의 생산이 풍부했음을 알 수 있다.⁵⁴¹

53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載寧郡·土産條, 卷42의 5b쪽.

531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黃海道·長連縣·土産條, 卷42의 32a쪽.

53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3 黃海道·海州牧·土産條, 卷43의 3b쪽.

533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6 江原道·旌善郡·土産條, 卷46의 19a쪽.

53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6 江原道·寧越郡·土産條, 卷46의 23a쪽.

53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6 江原道·洪川縣·土産條, 卷46의 34a쪽.

53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7 江原道·金城縣·土産條, 卷47의 21b쪽.

537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7 江原道·金化縣·土産條, 卷47의 35b쪽.

53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7 江原道·安峽縣·土産條, 卷47의 38b쪽.

539 『史記』 卷129, 『貨殖列傳』, 3265쪽. “上谷至遼東, 地踔遠, 人民希, 數被寇, 大與趙·代俗相類, 而民雕悍少慮, 有魚鹽棗栗之饒.”; 『漢書』 卷28下, 『地理志』下, 燕地條, 1657쪽.

540 『讀史方輿紀要』 卷37, 『山西』 8, 遼東都指揮使司條, 1699쪽. “州控馭戎貉, 隔限海島, 漢劉歆議孝武東伐朝鮮, 起玄菟·樂浪, 以斷匈奴之左臂者也. 後漢之季, 東陲日漸多事, 及晉失其綱, 慕容氏並有遼東, 遂蠶食幽·薊, 為中原禍, 蓋其地憑恃險遠, 鹽鐵之饒, 原隰之廣, 足以自封; 而招徠旁郡, 驅率奚·羯, 乘間抵隙, 不能無倒植之勢矣. 自晉大興以後, 遼東不被華風者, 幾數百年慕容燕·高麗相繼有之, 隋常圖之, 而不能有, 唐雖得之, 而不能守也. 五代梁貞明五年, 契丹據有其地, 漸營京邑, 以侵擾中華, 金人亦啟疆於此, 用以滅遼弱宋. 蒙古先取遼東西, 而金人根本撥矣, 後亦置省會於此, 以彈壓東垂.”

541 최진열, 2022, 앞의 글, 123쪽.

미천왕이 즉위하기 전에 동촌(東村) 사람 재모(再牟)와 함께 배를 타고 압록강을 통해 강의 동쪽 사수촌(思收村)에서 소금을 팔았다.⁵⁴² 이 사례에서 고구려가 소금을 생산하고 이를 내륙까지 유통하는 소금 판매의 유통망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요동군 평곽현⁵⁴³에 염관이 있었다. 염관은 국가가 소금 생산을 위해 설치한 기관이었으므로 평곽현 일대에 소금 생산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명대의 요동 지방지인 『진요지』에 따르면, 한대 평곽현에 해당하는 개주위⁵⁴⁴와 복주위⁵⁴⁵에 염장백호소가 있었다.⁵⁴⁶ 여기서 평곽현이 있었던 요동반도 서북부 해안 지역이 한대부터 명대까지 대표적인 소금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명대 개주위의 소금 생산량은 명 정덕 연간 1년 액염(額鹽)은 225,726근으로 요동도사에서 세 번째였다(요동도사 전체는 3,774,713근). 가정 연간에는 1년 액염은 225,727근으로 요동 25위(衛) 가운데 정요후위(定遼後衛) 다음의 두 번째였다(요동도사 전체는 3,727,177근).⁵⁴⁷ 평곽현은 고구려의 건안성이었으므로 건안성 주변의 해안 지대에서 소금을 생산했을 것이다.

평곽 이외에 명대의 다른 소금 생산지도 고구려의 소금 생산지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명대 정요중위(定遼中衛), 정요좌위(定遼左衛), 정요우위(定遼右衛), 정요전위(定遼前衛), 정요후위(定遼後衛), 동녕위(東寧衛) 6위⁵⁴⁸와 심양중위(瀋陽

542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 5, 美川王條, “與東村人再牟販鹽, 乘舟抵鴨渌, 將鹽下寄江東思收村人家, 其家老嫗請鹽, 許之斗許, 再請不與, 其嫗恨恚, 潛以履置之鹽中, 乙弗不知, 負而上道, 嫗追索之, 誣以履履, 告鴨渌宰, 宰以履直, 取鹽與嫗, 決答放之.”

543 『漢書』 卷28下, 「地理志」 8下, 遼東郡·平郭縣條細注, 1626쪽, “有鐵官·鹽官.”

544 『全遼志』 卷 1, 「沿革志」, 蓋州衛·鹽場百戶所條細注, 28쪽, “城西四十里.”

545 『全遼志』 卷 1, 「沿革志」, 復州衛·鹽場百戶所條細注, 29쪽, “城西四十二里.”

546 譚其驤 主編, 1982, 앞의 책, 27~28쪽, 幽州刺史部; 譚其驤 主編, 1987, 「中國歷史地圖集」 第八冊 元·明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52~53쪽, 山東二(遼東都司).

547 張光宇·楊新亮, 2011, 앞의 글, 327오른쪽; 최진열, 2022, 앞의 글, 124쪽.

548 『全遼志』 卷1, 「沿革志」, 六衛鹽場條細注, “百戶各一員.”

中衛),⁵⁴⁹ 철령위(鐵嶺衛),⁵⁵⁰ 요해위(遼海衛),⁵⁵¹ 해주위(海州衛),⁵⁵² 금주위(金州衛)⁵⁵³ 등에도 염장백호소가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해주위와 금주위는 해안에 있었고 나머지 위(衛)와 주(州)는 육지에 있었다. 이 가운데 심양중위의 염장백호소는 해주위에, 철령위의 염장백호소는 개주위에, 안락주(安樂州)의 염장백호소가 개주위와 해주위에 각각 존재하였다. 청 초에 쓰인 『독사방여기요』에도 해주위와 심양위, 요해위에 속하는 염장(鹽場) 3개가 있었다고 기록하였다.⁵⁵⁴ 해주위 서남쪽 90리⁵⁵⁵와 개주위 서쪽 40리,⁵⁵⁶ 복주위 서쪽 42리,⁵⁵⁷ 금주위 동북 130리⁵⁵⁸에도 염장이 존재하였다. 반면 해주위,⁵⁵⁹ 개주위,⁵⁶⁰ 복

549 『全遼志』卷1, 「沿革志」, 瀋陽中衛·鹽場百戶所條細注, “海州城西南梁房口.”

550 『全遼志』卷1, 「沿革志」, 鐵嶺衛·鹽場百戶所條細注, “蓋州衛八角湖.”

551 『全遼志』卷1, 「沿革志」, 遼海衛·鹽場百戶所二條細注, “一蓋州西北平山一海州西南梁房口.”

552 『全遼志』卷1, 「沿革志」, 海州衛·鹽場百戶所條細注, “城西南九十里.”

553 『全遼志』卷1, 「沿革志」, 金州衛·鹽場百戶所條細注, “城東北一百三十里.”

554 『讀史方輿紀要』卷37, 「山西」8, 遼東都指揮使司·海州衛·梁房口關條細注, 1711쪽, “衛西南七十里, 又東南九十里, 即蓋州也, 海運之舟, 由旅順口達者, 於此入於遼河, 旁有鹽場三: 其二屬瀋陽衛, 一屬遼海衛, 各置百戶所屯戍.”

555 『讀史方輿紀要』卷37, 「山西」8, 遼東都指揮使司·海州衛·牛家莊驛條細注, 1711쪽, “杜家屯在衛西北, 遼河東岸, 亦與廣寧接壤, 又衛西南九十里, 有鹽場, 衛東九十里, 有鐵場, 向各置百戶所司之.”

556 『讀史方輿紀要』卷37, 「山西」8, 遼東都指揮使司·蓋州衛·背陰寨堡條細注, 1715쪽, “衛西北十五里, 又西北有平山堡·八角湖堡, 衛南百二十里有五十寨堡, 又衛東北九十里, 有排山寨, 東二百五十里有岫巖寨, 鹽鐵場, 《志》云: 衛西四十里有鹽場百戶所, 北九十里, 有鐵場百戶所.”

557 『讀史方輿紀要』卷37, 「山西」8, 遼東都指揮使司·復州衛·盤谷堡條, 1716쪽, “衛東二十里, 其東南又有富川·秀山·臨溪三堡, 又牟官寨堡, 在衛西四十里, 衛東南八十里, 又有胡十八寨堡, 鹽鐵場, 《志》云: 鹽場百戶所, 在衛西四十二里, 鐵場百戶所, 在衛北九十里.”

558 『讀史方輿紀要』卷37, 「山西」8, 遼東都指揮使司·金州衛·石河堡條細注, 1720쪽, “衛北六十里, 衛西南六十里, 又有木場堡, 又紅嘴堡, 在衛東八十里, 衛東北七十里, 有歸服堡, 又東北三十餘里有黃骨島堡, 鹽鐵場, 《志》云: 衛東北百三十里有鹽場百戶所, 衛東百三十里有鐵場百戶所, 《邊防考》: 衛西北二十里有鹽場島.”

559 『明史』卷41, 「地理志」2, 山東·遼東都指揮使司·海州衛條細注, 953쪽, “西南濱海, 有鹽場, 西有遼河, 匯渾河·太子河入海, 謂之三岔河, 又西有南·北通江, 亦合於遼河, 東有大片嶺關, 有鹽場.”

560 『明史』卷41, 「地理志」2, 山東·遼東都指揮使司·蓋州衛條細注, 953쪽, “東北有石城山, 又北有平山, 其下有鹽場, 又東有駐蹕山, 西濱海, 有連雲島, 上有關, 又東有泥河, 南有清河, 東南有畢里河, 下流皆入於海, 又南有永寧監城, 永樂七年置, 又西北有梁房口關, 海運之舟由此入遼河, 旁有鹽場, 又東有石門關, 西有鹽場, 北有鐵場.”

주위,⁵⁶³ 금주위⁵⁶⁴에 염장이 있었다. 『전요지』와 『독사방여기요』, 『명사』 등에 염장백호소와 염장의 기록이 다른 이유가 내륙의 위소(衛所)가 해안의 위소에 염장백호소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요좌위, 정요우위, 정요중위, 정요전위, 정요후위, 동녕위, 심양중위, 요해위 등 8위의 염장백호소는 해주위의 양방구(梁房口) 부근에 설치되었고, 삼만위와 철영위 2위의 염장백호소는 대평산(太平山) 부근에 설치되었다. 위에서 말한 10개 염장백호소는 실제로 양대 염장을 형성하였다.⁵⁶³ 요동 25위 가운데 12위가 영구(營口) 지역에 염장백호소를 설치하였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총 생산 액액은 2,139,471근이었고 전체 요동 액액 생산량의 57%였다.⁵⁶⁴ 요컨대 요동 지역에서 해주위와 개주위, 복주위, 금주위 등 요하 하류와 요동 반도의 해안 지역에 소금 생산지가 있었다. 이 가운데 개주위 지역의 소금 산지가 한대 소금 산지인 평곽현과 일치하였다.⁵⁶⁵ 거란은 동경도(遼東)와 중경도(遼西)로 나누어 소금 산지를 관리하게 하였다. 금나라는 요동과 북경(원래 遼朝의 中京)에 염사사(鹽使司)를 설치하여 개주(蓋州)와 복주(復州) 일대의 염장은 요동염사(遼東鹽司)에 속하였고, 금주(錦州)와 서주(瑞州, 綏中前衛) 일대의 염장은 북경염사(北京鹽司)에서 관리하였다. 몽골(元)은 요양로(遼陽路), 광녕로(廣寧路), 대녕로(大寧路, 金 北京路)가 소금 산지를 관리하였다.⁵⁶⁶ 따라서 명대

561 『明史』卷41, 「地理志」2, 山東·遼東都指揮使司·復州衛條細注, 953쪽. “西濱海, 西南有長生島, 又南有沙河, 合麻河, 西注於海, 東有得利羸城, 元季土人築, 洪武四年二月置遼東衛於此, 尋徙, 又南有樂古關, 西有鹽場, 北有鐵場.”

562 『明史』卷41, 「地理志」2, 山東·遼東都指揮使司·金州衛條細注, 954쪽. “東有大黑山, 小沙河出焉, 又有小黑山, 駱馬河·澄沙河俱出焉, 衛東西南三面皆濱海, 南有南關島, 東有蓮花島, 東南有金線島, 又東有皮島, 又有長行島, 南有雙島及三山島, 西南有鐵山島, 東北有蕭家島, 有關, 又旅順口關在南, 海運之舟由此登岸, 有南·北二城, 其北城有中左千戶所, 洪武二十年置, 又東南有望海碣石城, 永樂七年置, 又衛東有鐵場, 東北有鹽場.”

563 王金令·孫福海·姚景芳, 1999, 앞의 글, 139쪽; 張光宇·楊新亮, 2011, 앞의 글, 328원쪽; 張士尊, 2014, 앞의 글, 140원쪽~16원쪽.

564 王金令·孫福海·姚景芳, 1999, 앞의 글, 139쪽.

565 최진열, 2022, 앞의 글, 124~126쪽.

566 曾仰豐 1984, 『中國鹽政史』, 北京: 商務印書館; 郭正忠·丁長清·唐仁粵, 1997, 『中國鹽業史』, 北京: 人民出版社; 張光宇·楊新亮, 2011, 앞의 글, 327원쪽; 張士尊, 2014, 앞의 글, 120원쪽~120원쪽.

소금 산지(鹽場)는 명대뿐만 아니라 최소 요대까지 소금된다. 이는 대릉하에서 요하로 이어지는 요동만 해안 지역이 예로부터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음을 보여 준다.⁵⁶⁷ 따라서 고구려시대에 평광현과 요동만의 해안 지역과 요동반도 서북 해안 지역에서도 소금이 생산되었음은 분명하다.

2. 한반도 북부·중부의 소금 생산 지역 추정지

『택리지』에 조선 후기 소금이 생산되었던 지역을 서술하였다. 『택리지』 「팔도총론」 황해도조에서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어, 납·철·면화·비·기장·생선·소금 따위가 생산되고 있다”⁵⁶⁸라고 기록하여 황해도가 소금 생산지였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확인된다. 즉 안악군(安岳郡),⁵⁶⁹ 해주,⁵⁷⁰ 연안(延安都護府)⁵⁷¹의 특산물이 소금이었다. 이는 이 세 곳에서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시사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특산물이라고 기록되지 않았지만, 웅진현 사람들이 물고기잡이와 소금으로 생업을 영위했고⁵⁷² 은율현 사람들도 소금과 철로 이익을 보고 있었으며,⁵⁷³ 장연현 사람들이 뽕나무 재배와 누에치기, 물고기잡이, 소금으로 이익을 얻었다.⁵⁷⁴ 장련현의 토산품에도 소금이 있었다.⁵⁷⁵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이 세 곳의 특산물에 소금이 언급되지 않았어도 웅진, 은율, 장연(長淵),

567 최진열, 2022, 앞의 글, 129~130쪽.

568 『택리지』, 「팔도총론」, 황해도조, 57쪽.

569 『新增東國輿地勝覽』卷42, 黃海道·安岳郡·土産條, 卷42의 2a(一〇六)쪽.

570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海州牧·土産條, 卷43의 4a(一四四)쪽.

571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延安都護府·土産條, 卷43의 16a(一三〇)쪽.

572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甕津縣·風俗條, 卷43의 33b(一三九)쪽. 『신증 동국여지승람』 웅진현의 토산품에 소금이 있었다(『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3권, 웅진현·비고·토산조, 451쪽, “실미역·고동·소금.”). 따라서 웅진현에서도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57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殷栗縣·風俗條, 卷43의 37b(一四一)쪽.

574 『新增東國輿地勝覽』卷43, 黃海道·長淵縣·風俗條, 卷43의 46a(一四五)쪽.

575 『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2권, 장련현·비고·토산조, 393쪽, “소금(鹽)·잣·오미자·조개.”

장련(長連)의 백성들이 소금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안악, 해주, 연안, 웅진, 은율, 장연, 장련 일곱 고을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황해도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다는 『택리지』 「팔도총론」 황해도조의 기사와도 일치한다. 즉 황해도 해안가 지역에서 소금을 생산했음은 분명하다.

『택리지』 「팔도총론」 함경도조에서도 함경도의 소금 생산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바다에는 생선과 소금이 많이 난다. 그러나 바닷물이 맑고 사나우며, 바다 밑에는 바위가 많아 생선과 소금 맛이 서해 것보다 못하다.⁵⁷⁶

위의 인용문에서 함경도에도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중환은 서해의 소금보다 맛이 없다고 서술하였다. 함경도에 있었다는 동옥저는 고구려에 담비(貂)·포(布)·물고기·소금과 해산물을 바쳤다.⁵⁷⁷ 동옥저가 고구려에 바친 물품 중에 소금이 있었다. 이는 함경도에서 소금이 생산된다는 『택리지』의 기록과 일치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덕원(德源都護府),⁵⁷⁸ 경성(鏡城都護府),⁵⁷⁹ 경원(慶源都護府),⁵⁸⁰ 중성(鍾城都護府),⁵⁸¹ 은성(穩城都護府)⁵⁸² 경흥(慶興都護府)⁵⁸³ 부녕(富寧都護府)⁵⁸⁴의 일곱 고을 특산물이 소금이었다. 즉 조선시대에도 함경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동옥저

576 『택리지』, 「팔도총론」, 함경도조, 46쪽.

577 『後漢書』卷85, 「東夷·東沃沮傳」, 2816쪽. “句驩復置其中大人(遼)為使者, 以相監領, (貴)其租稅, 貂布魚鹽, 海中食物, 發美女為婢妾焉.”; 『三國志』卷30, 「魏書」, 30, 「東夷·東沃沮傳」, 846쪽. “句驩復置其中大人為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其租稅, 貂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為婢妾, 遇之如奴僕.”

578 『新增東國輿地勝覽』卷49, 咸鏡道·德源都護府·土產條, 卷49의 12a쪽.

579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鏡城都護府·土產條, 卷50의 4a쪽.

580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慶源都護府·土產條, 卷50의 21b쪽.

581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鍾城都護府·土產條, 卷50의 36a쪽.

582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穩城都護府·土產條, 卷50의 39b쪽.

583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慶興都護府·土產條, 卷50의 43a쪽.

584 『新增東國輿地勝覽』卷50, 咸鏡道·富寧都護府·土產條, 卷50의 48a쪽.

와 조선시대 함경도의 소금 생산 기사를 보면 고구려시대에도 함경도의 해안 지역이 소금 생산지였을 것이다.

강원도 지역에서도 소금이 생산되었다.

대체로 이 아홉 고을은 모두 바닷가여서 주민은 고기 잡고 미역 따며 소금 굽는 것을 생업으로 한다. 그래서 땅은 비록 메말라도 부유한 자가 많다.⁵⁸⁵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아홉 고을은 흡곡(歙谷), 통천(通川), 고성(高城), 간성(杆城), 양양(襄陽), 강릉(江陵), 삼척(三陟), 울진(蔚珍), 평해(平海)를 가리키며 태백산맥의 동쪽인 영동의 해안가 지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통천군 사람들이 물고기와 소금의 이익을 취하여 이를 팔아서 살고 있다고 기록하였다.⁵⁸⁶ 이를 종합하면 강원도의 동해안에서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고 고구려시대에도 소금이 생산되었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고구려 후기 수도 평양성 주변 지역을 살펴보자.

민간 풍속에서는 빵과 삼을 섞어 베짜기를 일삼고 생선과 소금은 아주 귀하다. 그러므로 비록 바닷가 고을이라도 소금 굽는 곳이 많지 않다.⁵⁸⁷

위의 인용문에서 조선시대 평안도 일대에서 소금 생산량이 적었다고 기록하였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에 평안도의 토산품으로 소금이 있다는 고을이 기록되지 않았으나 『신증 동국여지승람』 번역본에서 인용한 조선 후기의 지리지 기록에 따르면 의주목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다.⁵⁸⁸ 이는 일부 지

585 「택리지」, 「팔도총론」, 강원도조, 61쪽.

58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45, 江原道·通川郡·風俗條, 卷45의 19a쪽. “魚鹽之利, 貿易以食.” 「신증 동국여지승람」 번역본에서 인용한 다른 지리서의 기록에 따르면 통천군의 토산품에 소금이 있었다(「신증 동국여지승람」 5 제45권, 통천군·비고·토산조, 584쪽. “소금.”), 따라서 통천군에서 소금이 생산되었음이 분명하다.

587 「택리지」, 「팔도총론」, 평안도조, 41쪽.

588 「신증 동국여지승람」, 6 제53권, 의주목·비고·토산조, 510쪽. “소금(鹽).”

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조선 초기의 기록인 『세종실록』 「지리지」에 각 도의 염분(鹽盆) 수가 기록되어 있다. 강원도에 320좌, 충청도에 147좌, 황해도에 246좌, 평안도에 298좌, 전라도에 143좌의 염분이 있었다.⁵⁸⁹ 염분은 소금을 굽기 위해 설치한 소금가마(鹽釜)이므로 염분의 크기가 같았다고 가정하면 평안도에서 소금 생산량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고구려시대 현재의 평안남도 남포시 온천군 원읍로동자구에서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원읍협동농장 제4작업반의 논판 가운데에 있는 흙둔덕에서 ‘원읍협동농장 2014년 유적’과 ‘원읍협동농장 2017년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 ‘원읍협동농장 유적’이 소금 생산시설인 이유는 ① 유적지가 바닷가에 있었고, ② ‘원읍협동농장 2014년 유적’이 산동반도 일대에서 발견되는 서주시대 소금 생산 유적과 구조⁵⁹⁰가 비슷하였으며, ③ 함수(鹹水) 및 생산한 소금을 운반·보관했다고 추정되는 가마의 크기와 질그릇, ④ 재가 쌓인 웅덩이의 발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⁵⁹¹ 4~5세기에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소금 제조 작업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의 배후지에서 소금이 생산되었음은 분명하다. 즉 『택리지』의 평안도 소금 생산 서술은 잘못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경기도의 수원도호부,⁵⁹² 부평도호부,⁵⁹³ 남양도호부,⁵⁹⁴ 인천도호부,⁵⁹⁵ 안산군,⁵⁹⁶ 통진현(通津縣),⁵⁹⁷ 교동현(喬桐縣)⁵⁹⁸

589 김의환, 2015, 「조선후기 소금 생산방식의 변화와 曬鹽法의 대두」, 『韓國史學報』 59, 279쪽, 1

590 山東大學考古系·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東營市歷史博物館, 2010, 「山東東營市南河崖西周煮鹽遺址」, 『考古』 2010-3, 42쪽, 圖8.

591 양인호, 2021, 앞의 글, 45~79쪽.

592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京畿·水原都護府·土産條, 卷9의 3b쪽.

593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京畿·富平都護府·土産條, 卷9의 11a쪽.

594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京畿·南陽都護府·土産條, 卷9의 16a쪽.

595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京畿·仁川都護府·土産條, 卷9의 21a쪽.

596 『新增東國輿地勝覽』卷9, 京畿·安山郡·土産條, 卷9의 27b쪽.

597 『新增東國輿地勝覽』卷10, 京畿·通津縣·土産條, 卷10의 30b쪽.

598 『新增東國輿地勝覽』卷13, 京畿·喬桐縣·土産條, 卷13의 20a쪽.

의 특산물이 소금이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장악하던 시기에 경기도 지역의 일부 해안 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VI. 결론

고구려의 곡창 지대는 부여성·현도성·요동성·건안성을 잇는 요하 유역의 만주 평원과 평양성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북부 지역(평안도·황해도)에 해당한다.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곡물과 채소, 과일, 인삼 등이 재배되었고 옷을 만드는 원료인 뽕나무와 마도 생산되었다. 각종 사료에 만주 지역에 벼가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아직까지 쌀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시대에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지역에서 쌀이 생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구려는 16국시대와 고구려-수당 전쟁 등 여러 전란 때 고구려로 넘어온 한인(중국인)이나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농가의 생산량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세금은 고구려의 중등 농가는 9.07석을 부담하여 당나라 백성보다 2.27석을 덜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구려의 목축 지역은 수도 평양성과 요동성 일대, 천산산맥 북쪽과 요동반도 서북 해안 지역, 현도성 일대, 평양성 주변 지역과 황해·함경·평안 3도의 고려와 조선 시대 목장도 고구려의 목축 지역에 해당할 것이다. 이 밖에 고구려가 지배하거나 속국으로 삼은 선비, 숙신, 패려, 거란, 말갈, 부여 등지에서도 말을 비롯한 다양한 기축을 길렀고, 고구려는 말을 징발하여 군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다만 고구려의 말 사육이 방목 또는 유목이었던지, 곡물 등을 먹여 키우는 형태의 사육이었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지역 모두에서 말을 길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말을 키우기 위해 목장을 만들면 농경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말 사육과 농경의 균형을 유지해야 했는데, 현재에 이를 알 수 있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한다.

고구려 땅에서 장백산맥과 천산산맥 주변 지역, 한반도의 함경북도 회령,

황해도 은율·재령, 남한의 충주시 일대에서 철을 채굴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철 생산은 건안성과 요동 반도 서남쪽 지역, 요동성과 현도성 및 그 주변 지역, 압록강 중류와 황해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과 은은 장백산맥과 소흥안령, 부여성 일대, 조선시대의 평안도 일대에서 채굴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시대에 건안성(漢代 平郭縣)과 요동만의 해안 지역과 요동 반도 서북 해안 지역, 한반도의 평안도·황해도·함경도·강원도 일대에서 소금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문헌

1. 사서

- 『史記』(司馬遷撰, 裴駟集解, 司馬貞索隱, 張守節正義, 北京: 中華書局, 1959).
- 『漢書』(班固撰, 顏師古注, 北京: 中華書局, 1962).
- 『後漢書』(范曄撰, 李賢等注, 北京: 中華書局, 1965).
- 『三國志』(陳壽撰, 裴松之注, 北京: 中華書局, 1959).
- 『宋書』(沈約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魏書』(魏收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北齊書』(李百藥撰, 北京: 中華書局, 1972).
- 『周書』(令狐德棻撰, 北京: 中華書局, 1971).
- 『北史』(李延壽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隋書』(魏徵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3).
- 『舊唐書』(劉昫等修, 北京: 中華書局, 1975).
- 『新唐書』(歐陽修·宋祁撰, 北京: 中華書局, 1975).
- 『遼史』(脫脫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明史』(張廷玉等撰, 北京: 中華書局, 1987).
- 『三國史記』.
- 『齊民要術』(賈思勰著, 繆啓愉校釋,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1998).
- 『建康實錄』[許嵩撰, 張忱石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6(2009重印)].
- 『通典』(杜佑撰, 王文錦等點校, 中華書局, 1988).
- 『冊府元龜』(王欽若等編纂, 周勛初等校訂, 南京: 鳳凰出版社, 2006).
- 『太平寰宇記』(樂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遼東志』(劉立強·劉海洋主編, 北京: 科學出版社, 2016).
- 『全遼志』(李輔纂修, 韓鋼點校, 北京: 科學出版社, 2016).
- 『大明一統志』(明李賢等奉敕撰, 天順五年御製序刊本).
- 『盛京通志』(阿桂等纂修, 瀋陽: 遼海出版社, 1997).
- 『讀史方輿紀要』(顧祖禹撰, 賀次君·施和金點校, 中華書局, 2005).
- 『唐代墓誌彙編』(周紹良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2).

고구려의 경제 지리

- 『全唐文補遺』第一輯(吳綱 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1994).
- 『全唐文補遺』第二輯(吳綱 主編, 西安: 三秦出版社, 1995).
- 『全唐文新編』20(周紹良 主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0).
- 遼寧省地方志編纂委員會辦公室 主編, 2001, 『遼寧省志·地理志』, 遼寧民族出版社.
- 吉林省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99, 『吉林省志』卷16(1), 農業志/農村生產關係,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新增東國輿地勝覽』(민족문화추진회 본 『신증 동국여지승람』 영인본).
- 『택리지』[이중환 지음, 이익성 옮김, 을유문화사, 1993(개정판 2002)].
- 『신증 동국여지승람』2·5·6(이행 외 지, 민족문화추진회 편, 서울: 솔, 1996).

2. 단행본

- 南都泳, 1997, 『韓國馬政史』, 과천: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08, 『2008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 최진열, 2015, 『발해 국호 연구-당조가 인정한 발해의 고구려 계승 목인과 부인-』, 서강대학교출판부.
- 허택운 지음, 이인호 옮김, 2013, 『중국문화사-인류의 탄생~1949-』 상, 천지인.

Statistical Yearbook, Appendix and Economic Bureau, C. E. R.; The C. E. R. and its Zone, 1928, maps and statistical data.

- テゲンクレン著, 甘粕成雄譯, 1940, 『中國鐵鑛誌』, 北支開發株式會社調査課.
- 鬼頭三郎編, 1940, 『滿洲の資源』, 滿洲事情案內所.
- 日野開三郎, 1975, 『唐代租庸調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 郭正忠·丁長清·唐仁粵, 1997, 『中國鹽業史』, 北京: 人民出版社.
- 譚其驥 主編, 1982, 『中國歷史地圖集』第二冊 秦·西漢·東漢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 譚其驥 主編, 1987, 『中國歷史地圖集』第八冊 清時期, 北京: 地圖出版社.

- 史爲樂 主編, 2005, 『中國歷史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李錦綉, 2007, 『唐代財政史稿』 第二冊,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張士尊, 2002, 『明代遼東邊疆研究』,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曾仰豐, 1984, 『中國鹽政史』, 北京: 商務印書館.
- 集安市地方志編纂委員會編, 2005, 『集安市志: 1984-2003』, 吉林文史出版社.

3. 논문

- 葛繼勇, 2015, 「신출토 入唐 고구려인 <高乙德墓誌>와 고구려 말기의 내정 및 외교」, 『韓國古代史研究』 79.
- 강인옥, 2008, 「동아시아 고고학·고대사 연구 속에서 옥저문화의 위치-옥저·읍루 문화권의 제기를 중심으로」, 『고고학으로 본 옥저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공석구, 2003,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2.
- _____, 2014, 「《廣開土王陵碑》의 ‘新來韓穢’ 考察-농업생산력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고구려발해연구』 50.
- 공석구·김경숙, 2004, 「高句麗에 流入된 中國系人物의 動向-4-5世紀의 考古學 資料를 中心으로-」, 『고구려발해연구』 18.
- 김기홍, 「경제제도」, 『한국사』 5(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1996.
- _____, 1987, 「6·7세기 高句麗의 조세제도」, 『韓國史論』 17.
- 김의환, 2015, 「조선후기 소금 생산방식의 변화와 曬鹽法의 대두」, 『韓國史學報』 59.
- 김재홍, 2005, 「高句麗의 鐵製 農器具와 農業技術의 발전」, 『동북아역사논총』 8.
- 大連市文物考古研究所, 鄭元喆 옮김, 2007, 「대련(大連) 성산산성(城山山城) 2005년 조사보고」, 『高句麗研究』 28.
- 박규진·이동건, 2021, 「발해시기 농업의 전개와 성격-철제 농기구와 식물유체 분석을 중심으로-」, 『高句麗渤海研究』 71.
- 朴良昊, 柳甲喜, 尹眞河, 姜昇遠, 趙守衍, 2015, 「중국 길림성의 인삼 재배현황과 토양특성」, 『북방농업연구』 38-1.
- 朴良昊·尹眞河·姜昇遠·趙守衍, 2015, 「중국 길림성과 요녕성의 인삼재배 현황 및 인삼재배지 토양특성」, 『북방농업연구』 38-2.
- 朴英善·朴來敬, 2003, 「중국 길림성 농작물 재배지역의 기상환경과 토양특성」, 『북방농업연구』 16.

- 박유미, 2012, 「고구려 음식의 추이와 식재료 연구」, 『한국학논총』 38.
- 박윤미, 2014, 「백제 직물의 특성과 직조 기술」, 『백제학보』 12.
- 朴長植, 2005, 「환도산성 및 한강유역 출토 철기에 나타난 고구려의 철기 기술」, 『고구려발해연구』 20.
- 朴長植·盧泰天, 2004, 「高句麗의 鐵器製作 技術體系에 關한 研究」, 『고구려발해연구』 18.
- 박태식, 2008, 「韓半島의 三國(百濟, 新羅, 高句麗) 遺蹟址에서 出土된 炭化米의 比較」, 『농업사연구』 7-2.
- 사공경길, 2014, 「고구려의 취사용기와 취사방식」, 『고구려발해연구』 49.
- 서민수, 2014, 「고구려 전기 牛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연옥·정용재·유지아·남궁승, 2011, 「부여 능산리 사지 출토 백제 면직물 연구」, 『문화재』 44-3.
- 안승모, 2008, 「콩과 팥의 고고학」, 『인제식품과학포럼논총』 15.
- 양인호, 2021, 「소금 생산 유적으로 본 1-5세기 초 평안도 지역의 소금 생산 방식」, 『한국고대사연구』 103.
- _____, 2022, 「고구려의 鐵 유통에 대한 시론적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73.
- 여호규, 1996,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 5(고구려), 국사편찬위원회.
- 윤성재, 2009, 「고려시대의 식품의 생산과 소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龍範, 1966, 「高句麗의 成長과 鐵」, 『白山學報』 1.
- 장창은, 2023, 「4세기대 고구려의 국제관계와 이주민 동향」, 『고구려발해연구』 77.
- 정동민, 2023, 「4세기 초·중반 慕容部·前燕과 高句麗의 유이민 수용-漢人 수용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86.
- 최덕경, 2002, 「『齊民要術』의 高麗豆 普及과 韓半島의 農作法에 대한 一考察」, 『동양사학연구』 78.
- _____, 2005, 「遼東犁를 통해 본 古代 東北지역의 農業環境과 耕作方式: 高句麗 성장기반에 대한 農業史的 試論」, 『동북아역사논총』 8.
- _____, 2007, 「古代 遼東지역의 農具와 農業技術」, 『중국사연구』 49.
- 최진열, 2007, 「北魏前期 近侍官의 性格-「文成帝南巡碑」의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8.
- _____, 2022, 「前燕 ‘昌黎時代’(289-350) 遼東·遼西 經濟」, 『東洋史學研究』 159.

_____, 2023, 「高句麗의 농업-토지 비옥도와 인구·곡물 생산량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토해양연구』 26.

_____, 2024, 「645년 高唐 전쟁과 唐의 병참 문제」, 『東洋史學研究』 167.

Hall, Robert Burnett, 1930, "The Geography of Manchuria,"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152.

Murakoshi, N., and Trewartha, G., 1930, "Land Utilization Maps of Manchuria," *Geographical Review*, Vol. 20, No. 3.

Tanaka, H., 1924, "Agriculture in Manchuria and Mongolia," *Chikyū-The Globe*, Vol. 2, No. 2.

石見清裕, 1982, 「唐の建國と匈奴の費也頭」, 『史學雜誌』 91-10.

耿鐵華, 1986, 「高句麗壁畫中的社會經濟」, 『北方文物』 1986-3.

_____, 1989, 「集安高句麗農業考古概述」, 『農業考古』 1989-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文物保管所, 1993, 「集安洞溝古墓群禹山墓區集錫公路墓葬發掘」, 『高句麗研究文集』, 延邊大學出版社.

董健, 2017, 「淺談高句麗的飲食文化」, 『地域文化研究』 2017-3.

山東大學考古系·山東省文物考古研究所·東營市歷史博物館, 2010, 「山東東營市南河崖西周煮鹽遺址」, 『考古』 2010-3.

薛海波, 2010, 「試論北燕與高句麗的政治關係」, 『東北史地』 2010-6.

孫顥, 2014, 「高句麗與慕容鮮卑關係解讀-以陶器爲視角-」,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15-6.

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2001,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二次發掘報告」, 『考古』 2001-3.

_____, 2006, 「2004年度瀋陽石臺子山城高句麗墓葬發掘簡報」, 『北方文物』 2006-2(總第86期).

_____, 2007,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2002年Ⅲ區發掘簡報」, 『北方文物』 2007-3(總第91期).

安樂, 2012, 「簡述三燕時期朝陽的農業」, 『遼寧省博物館館刊』.

楊富, 2006, 「三燕時期遼西地區的農業發展」,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社會科學版)』 8-4.

- 梁志龍·馬毅, 2009, 「遼寧本溪市平頂山高句麗山城調查」, 『東北史地』 2009-5.
- 王金令·孫福海·姚景芳, 1999, 「明代營口鹽業研究」, 『遼寧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99-3(總3期).
- 王禹浪·王文軼, 2011, 「營口地區的高句麗山城」, 『哈爾濱學院學報』 2011-9.
- 王禹浪·王海波, 2009, 「營口市青石嶺鎮高句麗山城考察報告」, 『黑龍江民族叢刊(雙月刊)』 2009-5(總第112期).
- 王俊錚, 2020, 「漢遼東郡安市, 平郭, 文三縣地望再探—兼論漢代遼南的政區地理」, 『中國邊疆學』 13.
- 王昊, 2019, 「唐前期華北蠶桑紡織與農家生計的量化考察」, 『唐史論叢』 28.
- 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瀋陽市文物考古研究所, 1998, 「遼寧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第一次發掘報告」, 『考古』 1998-10.
- _____, 2008, 「瀋陽市石臺子山城高句麗墓葬2002-2003年發掘簡報」, 『考古』 2008-10(總第904期).
- _____, 2010, 「瀋陽市石臺子高句麗山城蓄水設施遺址」, 『考古』 2010-12.
- 遼寧省博物館文物隊·朝陽地區博物館文物隊·朝陽縣文化館, 1984, 「朝陽袁臺子東晉壁畫墓」, 『文物』 1984-6.
- 劉成贊·李亞光, 2018, 「唐代遼寧地區農業發展述論」, 『瀋陽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4.
- 李龍彬, 2006.4, 「石臺子高句麗山城及墓葬發現與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 李宇峰, 1989, 「遼寧漢晉時期農業考古綜述」, 『農業考古』 1989-1.
- _____, 1990, 「略述東北古代少數民族的農牧與漁獵經濟」, 『古今農業』 1990-2.
- 李春玲, 2009, 「論十六國時期遼西地區農業經濟的發展」, 『北方文物』 2009-2.
- 李輝, 2001, 「南北朝時期高句麗強盛原因試析」, 『長春師範學院學報』 20-4.
- 張光宇·楊新亮, 2011, 「明代遼東營口地區海鹽業的發展之概觀」, 『內蒙古農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2(第13卷 總第56期).
- 張國剛, 2020, 「唐代農村家庭生計探略」, 『中華文史論叢』 98.
- 張士尊, 1997, 「明代遼東馬政探論」, 『社會科學輯刊』 1997-3(總第110).
- _____, 2014, 「明代遼東都司鹽場百戶所的地理分布」, 『鞍山師範學院學報』 16-3.
- 田立坤·李智, 1994, 「朝陽發現的三燕文化遺物及相關問題」, 『文物』 1994-11.
- 齊俊·梁志龍, 2001, 「遼寧本溪縣小市中心街高句麗墓」, 『北方文物』 2001-2(總第66期).

- 朝陽地區博物館·朝陽縣文化館, 1985, 「遼寧朝陽發現北燕·北魏墓」, 『考古』 1985-10.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遼寧省文物考古研究所·蓋州市文物局, 2017, 「遼寧蓋州市青石嶺山城的調查與發掘」, 『考古』 2017-12.
- 陳大力, 1990, 「朝陽縣溝門子晉墓壁畫」, 『遼海文物學刊』 1990-2.
- 陳大爲, 1988, 「遼寧高句麗山城初探」, 『中國考古學會第五次年會論文集』, 文物出版社.
- 秦昇陽, 2006, 「高句麗軍事問題述略」, 『通化師範學院學報』 27-5.
- 肖景全·鄭辰, 2007, 「撫順地區高句麗考古的回顧」, 『東北史地』 2007-2.
- 崔艷茹, 2009, 「營口地區山城調查與探討」, 『東北史地』 2009-3.
- 畢洪娜, 2012.6, 「明初遼東都司人口及其地理分布探究-以《遼東志》爲中心-」, 東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黑龍江省文物考古研究所·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2018, 「黑龍江海林市細鱗河遺址發掘報告」, 『北方文物』 2018-1.

국문초록

이 글은 고구려의 경제를 농업, 목축, 광업, 소금 생산으로 나누어 지리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고구려의 곡창 지대는 요하 유역의 대평원과 한반도의 평안도·황해도 일대로 추정되며 고구려의 부여성·현도성·요동성·건안성을 잇는 만주 평원과 평양성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해당한다. 고구려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다양한 곡물과 채소, 과일, 인삼 등이 재배되었고 옷을 만드는 원료인 뽕나무와 마도 생산되었다. 고구려는 16국시대와 고구려-수당 전쟁 등 여러 전란 때 고구려로 넘어온 한인(漢人)이나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농가의 생산량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중등 농가는 9.07석의 세금을 부담하여 당나라 백성보다 2.27석을 덜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고구려의 목축 지역은 수도 평양성과 요동성 일대, 천산산맥 북쪽과 요동반도 서북 해안 지역, 현도성 일대, 평양성 주변 지역으로 추정되며, 황해·함경·평안 3도의 고려와 조선 시대 목장도 고구려의 목축 지역의 후보로 거론된다. 이밖에 고구려가 지배하거나 속국으로 삼은 선비(鮮卑), 숙신, 패려(裨麗), 거란, 말갈, 부여 등지에서도 말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을 길렀고, 고구려는 말을 징발하여 군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고구려 땅 가운데 현재의 장백산맥과 천산산맥 주변 지역, 한반도의 함경북도 회령, 황해도 은율·재령, 남한의 충주시 일대에서 철을 채굴했을 것이다. 철 생산은 건안성과 요동반도 서남쪽 지역, 요동성과 현도성 및 그 주변 지역, 압록강 중류와 황해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과 은은 장백산맥과 소흥안령, 부여성 일대, 조선시대의 평안도 일대에서 채굴되었을 것이다.

고구려시대에 건안성(漢代 平郭縣)과 요동만의 해안 지역과 요동반도 서북 해안 지역, 한반도의 평안도·황해도·함경도·강원도 일대에서 소금이 생

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고구려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농작물과 지하자원, 소금 생산지 등의 지리적 분포를 복원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고구려, 농업, 광업, 제철, 소금, 말, 목축

ABSTRACT

Economic Geography of Koguryo: Focusing o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Agriculture, Mining, Ranching, and Salt Production

Choi, Jin Yeoul

(Research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geography of Koguryo by categorizing it into agriculture, mining, ranching, and salt production.

Koguryo's granary regions are presumed to include the Great Plains of the Liaohe Basin in Manchuria, as well as present-day Pyeongan and Hwanghae Provin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areas correspond to Koguryo's Buyeo, Hyeondo, Yodong, and Geonan in the Manchurian Plain and Pyongyang in the northwestern Korean Peninsula. Various crops, vegetables, fruits, ginseng, and raw materials for clothing such as mulberry trees and hemp were cultivated within Koguryo's territory. It is suggested that Koguryo adopted advanced agricultural techniques through Chinese migrants or captives in the Sixteen Kingdoms period and during conflicts such as the Koguryo-Sui and Koguryo-Tang Wars. While precise agricultural production levels are difficult to estimate, it is calculated that middle-class farmers in Koguryo paid approximately 9.07 *seok* (a unit of grain measurement) in taxes, which was 2.27 *seok* less than their Tang Dynasty counterparts.

Koguryo's pastoral areas are believed to have included the vicinity of Pyongyang (capital) and Yodong, the northern slopes of the Tianshan Mountains, the northwest coastal area of the Liaodong Peninsula, and regions associated with ranches in the Hwanghae, Hamgyeong, and Pyeongan Provinces during the Goryeo and Joseon periods. Additionally, livestock such as horses were raised in areas controlled by Koguryo, including Xianbi, Sushen, Paeryo, Khitan, Mohe, and Buyeo. Horses were likely conscripted for military purposes.

Iron mining in Koguryo is believed to have occurred in regions such as the Changbai and Tianshan Mountains, Hoeryeong in North Hamgyong Province, Eunyul and Jaeryeong in Hwanghae Province, and Chungju in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Iron production likely took place in various locations, including Geonan, the southwestern Liaodong Peninsula, and the vicinity of Hyeondo and Yodong. Gold and silver mining is presumed to have been concentrated in the Changbai Mountains, Xiaosinganling, areas surrounding Buyeo, and Pyeongan Province during the Joseon period.

Salt production in Koguryo is assumed to have occurred in areas such as Geonan, the coastal regions in Liaodong Bay and the northwestern Liaodong Peninsula, and parts of Pyeongan, Hwanghae, Hamgyeong, and Gangwon

Provin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study marks a pioneering attempt to comprehensively reconstruct the economic geography of Koguryo, focusing 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crops, mineral resources, and salt production, thereby holding significant historiographical importance.

Keywords

Koguryo, agriculture of Koguryo, iron mining, salt production, ranching

조선 전기 지리지 속 우산·무릉도 기사의 이해에 관한 제언

–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교수의 논설에 대한 비평을
겸하여

소순규 한양대학교 조교수

- I. 머리말
- II. 쓰카모토의 주장과 논거 요약
- III.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위치 표기 방식의 특징
- IV.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무릉도에 대한 해석
- V.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무릉도에 대한 해석
- VI.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의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한 지 이미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다. 그사이 한국의 학자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들을, 일본에서는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논리들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 상당수 연구들은 과거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중에는 과거의 논리를 새로운 자료나 근거로 입증하는 것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영유권과 관련된 학술 논의는 크게 두 방향 정도로 정리가 가능해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독도를 전통시대 한국의 왕조들이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로는 근현대 국제법적으로 독도의 귀속은 어디에 있는가의 문제이다. 다만 첫 문제에 관한 논의 방향이 두 번째 문제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분리된 문제로 인식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들에서 한일 양국은 상당한 연구들을 내놓고 있어 이 글에서 모두 호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다.¹

필자는 2022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의뢰로 『세종실록지리지』 해도(海島) 기술 원칙과 우산·무릉도 기사의 재검토²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² 독도가 등장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알려진 『세종실록』 「지리지」의 전체적인 편찬 방향을 파악하고, 그 방향에서 섬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 논문 투고일: 2024.10.15, 심사 완료일: 2024.11.5, 게재 확정일: 2024.11.15.

1 최근 연구들 중 한일 양국 논쟁의 쟁점을 정리한 글로는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2018,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박병섭, 2018, 「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獨島研究』 25; 이성환, 2018 「독도문제 연구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을 중심으로—」, 『獨島研究』 25; 박지영, 2021,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관한 고찰—교환공문에 나타난 역사적 근거를 중심으로—」, 『獨島研究』 31; 윤현철·왕사신, 2023,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 탐구(상)」, 『고조선단군학』 51; 윤현철·정영, 2024,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 탐구(하)」, 『고조선단군학』 53 등이 참고가 된다. 아울러 한국 측의 입장에서 독도 관련 주장과 자료를 집대성한 것으로는 신용하, 2020, 「독도 영토 주권의 실증적 연구」(상)·(중)·(하), 동북아역사재단을 참고하였다.

2 소순규, 2022, 「『세종실록지리지』 해도 기술 원칙과 우산·무릉도 기사의 재검토」, 『영토해양연구』 24. 이 연구는 2022년 8월 25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기획한 학술대회 “조선 지리지의 세계와 해양·도서 인식”의 발표 주제를 의뢰받아 수행되었고, 향후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살펴본 글이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첨예한 논쟁 대상인 ‘우산·무릉’ 두 섬의 기술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그런데 해당 연구가 발표된 이후 일본 학자인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도 카이대학(元東海大学) 법학부 교수 역시 지리지의 기술 원칙을 통해 우산·무릉도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世宗實錄地理志の于山は竹島か(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은 다케시마일까?)」란 제목의 해당 글은 본격적인 학술 논문이 아니라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내용을 소개하는 웹 사이트 ‘竹島研究・解説サイト(다케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 발표된 칼럼 형식의 글이었다.³ 해당 논문은 이 웹 사이트의 ‘타국의 주장분석’이란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 웹 사이트에서 언급하는 타국은 주로 한국을 지칭하고 있다. 이 글 역시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은 죽도일까?」라는 논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로 조선시대 지리지 내용의 해석을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거인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 무릉도 기사와 더불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조선 전기 지리지의 편찬 원칙에 따르면 한국 측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내용이었다.

필자와 동일하게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하에서 우산·무릉도를 검토했음에도, 두 연구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쓰카모토의 논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구의 『세종실록』 「지리지」 해도 기술 원칙이 매우 안이하게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앞선 원고에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국한되었던 우산·무릉도 기술 내용을 『신증동국여지승람』까지 함께 파악할 필요도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3 塚本 孝, 2023, 「世宗實錄地理志の于山は竹島か」,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cas.go.jp/jp/ryodo/kenkyu/takeshima/chapter03_column_02-01.html

는 쓰카모토의 논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한편으로 2022년 원고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해도 기술의 원칙에 대해서도 내용을 보충하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먼저 2장에서 쓰카모토의 주장을 요약하고 3장과 4장을 통해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에 입각하여 쓰카모토 주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5장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고, 쓰카모토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II. 쓰카모토의 주장과 논거 요약

우선 쓰카모토는 한국 측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되어 왔다.

둘째, 한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온 역사적 사실은 한국의 관찬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다.

쓰카모토는 이 두 주장이 조선시대 관찬지리지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이 핵심적이라고 파악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에 기록된 두 섬, 즉 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를 한국 측에서 각각 독도, 울릉도로 비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 독도를 조선 전기부터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논지의 전개를 위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 무릉도의 기사를 전재하면 아래와 같다.

- A.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의 정동쪽(正東) 바다 가운데(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신라 때에 우산국(于山國), 또는 울릉도(鬱陵島)라 하였는데, 땅이 방백리이다. 〈사람들이 지세가〉 험함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므로, 지증왕(智證王) 13년에 이사부(異斯夫)가 히슬라주(何瑟羅州) 군주(軍主)가 되어 이 르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 사나워서 위엄으로는 복종시키기 어

러우니, 가히 계교로써 하리라.” 하고는, 나무로써 사나운 짐승을 많이 만
들어서 여러 전선(戰船)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에 가서 속여 말하기를, “너
희들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이 짐승을 놓아서 잡아먹게 하리라.” 하니, 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항복하였다. 고려 태조(太祖) 13년에, 그
섬 사람들이 백길토두(白吉土豆)로 하여금 방물(方物)을 헌납하게 하였다.
의종(毅宗) 13년에 심찰사(審察使) 김유립(金柔立) 등이 돌아와서 고하기를,
“섬 가운데 큰 산이 있는데, 산꼭대기로부터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만여 보이요, 서쪽으로 가기 1만 3천여 보이며, 남쪽으로 가기 1만 5천
여 보이요, 북쪽으로 가기 8천여 보이며, 촌락의 터가 7곳이 있고, 간혹
돌부처·쇠북·돌담이 있으며, 뗏미나리(柴胡)·호본(蒿本)·석남초(石南草)
등이 많이 난다.” 하였다. 우리 태조(太祖) 때, 유리하는 백성들이 그 섬으
로 도망하여 들어가는 자가 심히 많다 함을 듣고, 다시 삼척(三陟) 사람 김
인우(金麟雨)를 명하여 안무사(安撫使)를 삼아서 사람들을 쫓출(刷出)하여
그 땅을 비우게 하였는데, 인우가 말하기를, “땅이 비옥하고 대나무의 크
기가 기둥 같으며, 쥐는 크기가 고양이 같고, 복숭아씨가 되(卵)처럼 큰
데, 모두 물건이 이와 같다.” 하였다.】⁴ (【】은 세주)

A 기사에서는 우산·무릉 두 섬이 날씨가 좋으면 서로 바라볼 수 있는 정
도의 거리가 있으며, 신라 때부터 우산국의 영토로 존재했던 것으로 서술되
어 있다. 그런데 위의 기사에서 쓰카모토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두 섬
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란 부분이다. 현
재 필자의 해석 A는 한국 정부 및 대다수 한국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해석

4 『세종실록』 권153,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于山 武陵二島在縣正東海中【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 新羅時 稱于山國 一云鬱陵島 地方百里 恃險不服 智證王十二年, 異斯夫爲何瑟羅州 軍主謂于山人愚悍 難以威來 可以計服 乃多以木造猛獸 分載戰艦抵其國 誑之曰 汝若不服 則即放此獸 國人懼來降 高麗太祖十三年 其島人使白吉土豆獻方物 毅宗十三年 審察使金柔立等回來告 島中有泰山 從山頂向東行至海一萬餘步 向西行一萬三千餘步 向南行一萬五千餘步 向北行八千餘步 有村落基址七所 或有石佛像鐵鍾石塔 多生柴胡蒿本石南草 我太祖時 聞流民逃入其島者甚多 再命三陟人金麟雨 爲安撫使 刷出空其地 麟雨言 土地沃饒 竹大如柱 鼠大如貓 桃核大於升 他物稱是】”

인데, 그 원문은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 則可望見’이다.

쓰카모토는 한국 측 이해와 달리 해당 부분을 두 개의 의미 단락으로 분리하였다. 즉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다.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나누어 읽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란 것은 두 섬이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섬들을 날씨가 맑을 때 **육지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쓰카모토의 해석대로라면 위의 기사는 “우산·무릉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구절이 되고, 두 섬의 거리가 가까우며, 날씨가 맑으면 육지에서 두 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쓰카모토는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기술의 원칙을 들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종 사후 실록 편찬 시에 부기된 것이지만, 함경도 육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세종 14년에 만들어진 『팔도지리지』를 저본으로 하고 있다.⁵ 그런데 현재 『세종실록』에 부기된 지리지에는 해당 항목의 기술 원칙을 상세히 밝히고 있지 않다. 아울러 저본이 되었던 『팔도지리지』 역시 현재는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세종 14년 『팔도지리지』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리지가 존재하는데, 바로 세종 6년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이다. 이 『경상도지리지』는 세종의 명으로 당시 경상도관찰사였던 하연이 편찬한 것으로, 현존하는 『세종실록』 「지리지」와 항목의 상당 부분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현재 연구자들은 각 도별로 『경상도지리지』와 유사한 지리지를 작성한 이후, 이들을 저본으로 『팔도지리지』를 제작하였으며 그것이 『세종실록』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경상도지리지』에서는 각 항목을 어떠한 원칙에 따라 기재하였는지, 즉 기재 원칙을 서두에 수록하고 있다. 쓰카모토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 『경상도지리지』에서 밝히고 있는 해도 기술 원칙은

5 정두희,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1)」, 『역사학보』 69.

다음과 같다.

B. 바다에 있는 여러 섬은 수로와 육로의 원근(遠近), 섬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할 것⁶

쓰카모토는 이 『경상도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이 그대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즉 B 기사에서 섬을 기술할 때에는 수로 및 육로의 원근, 다시 말해 육지에서의 거리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산·무릉도 역시 위의 원칙에 따라 기재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A 기사에서 나오는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은 한국 및 일본 연구자들 모두 거리를 표현한 문장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쓰카모토는 이 거리를 두 섬 사이가 아닌, 육지에서 두 섬에 이르는 거리로 해석한 것이다.

쓰카모토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문구를 위와 같이 해석한 것을 넘어서, 이것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에서도 계승된다고 보았다. 아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우산도와 울릉도의 기술이다.

C.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羽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삼봉이 높고 험준하여 하늘을 받치고, 남봉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의 나무와 산기슭의 물가가 선명하게 보인다. 바람을 타고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다.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 땅은 방백리이다…】(【1은 세주, 밑줄은 필자)

6 『경상도지리지』 序, “海中諸島 水陸之遠近 入島農業 人物有無.”

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강원도, 울진현, “于山島 鬱陵島【一云武陵 一云羽陵 二島在縣正東海中 三峯岌業撐空 南峯稍卑 風日清明 則峯頭樹木及山根沙渚 歷歷可見 風便則二日可到 一說于山 鬱陵本一島 地方百里…】.”

C 기사의 내용 중 밑줄 친 내용, 즉 ‘삼봉이~ 선명하게 보인다’란 부분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언급한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란 것과 같은 내용이란 주장이다. 그런데 암석으로만 이루어진 독도에 산봉우리의 나무가 보일 리 없으므로, 결국 『세종실록』 「지리지」도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이들 섬에 대한 기술에는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등장하는 ‘二島相去不遠 風日清明則可望’을 한국 측에서는 하나의 문장 단위로 해석하여 ‘두 섬의 상호 거리가 멀지 않아, 일기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쓰카모토는 두 문장이 서로 별개의 문장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二島相去不遠(두 섬의 상호 거리가 멀지 않다)’와 ‘風日清明則可望(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각각 다른 의미 단위이며, 첫 번째는 두 섬이 상호 멀지 않다는 것, 두 번째는 육지에서 이들 섬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경상도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 즉 ‘바다에 있는 여러 섬은 수로와 육로의 원근, 섬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지,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할 것(海中諸島 水陸之遠近 入島農業 人物有無)’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그대로 계승되어 있다는 것이다.

쓰카모토의 주장대로 사료를 해석하게 되면, 기존의 한국 정부 및 한국 측 연구자들의 주장은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울릉도에서 날씨가 좋을 때 볼 수 있는 섬은 독도밖에 없고, 따라서 사료상의 우산도는 곧 독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두 섬 사이가 아니라 육지에서 보는 두 섬이라면 사료상의 무릉, 우산도의 관계는 ‘멀지 않다’만 남게 되며,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인 현재 이름의 죽도가 우산도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쓰카모토는 우산국이 독도를 영유했던 역사적 사실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 측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서로 보이는 섬이 울릉도와 독도이며, 이들 내용에 대한 서술에서 ‘于山國(우산국)’이 등장하므로, 이들이 모두 우산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쓰카모토의 해석처럼 두

섬의 거리가 단순히 가까운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세종실록』 「지리지」 기사는 울릉도에 국한되는 기사가 되고, 우산국의 통치 영역 역시 울릉도에 그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Ⅲ.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위치 표기 방식의 특징

이상에서 요약한 쓰카모토 논설의 핵심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두 섬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육지와 의 거리를 표기한 것이란 주장이다. 해당 주장을 근거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두 기록을 계승 관계로 파악하고, 더하여 우산국의 통치 영역도 울릉도 일대로 국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쓰카모토의 핵심 주장이 되는 내용, 즉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해도를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 재검토해 보겠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해도 기술 원칙이 상세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쓰카모토는 『경상도지리지』의 기술 원칙을 차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실제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해도를 전수 조사해 보면, 『경상도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해도는 총 137개로 파악된다.⁸ 이 중 가장 많은 수의 해도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도로 모두 39개의 섬이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전라도 지역에 기재된 섬들의 경우 방향이나 육지에서의 거리 등 정보가 모두 누락되어 있다. 다만 섬에서 말이나 소를 키우는 목장이 존재할 경우만 간략하게 키우는 우마(牛馬)의 수를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아울러 전라도 이외 섬들 중에서도 충청도의 원산도(홍주), 대잠도(대

8 소순규, 2022, 앞의 글, 40~47쪽 (별표) 참조. 여기서 1개의 해도란 하나의 명칭으로 기록된 섬 단위를 말한다. 다만 『세종실록』 「지리지」에 표기된 섬 중, 강 가운데에 존재하는 섬은 제외하였다.

흥), 경상도의 육질도(고성) 등도 육지와와의 거리를 누락하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재된 해도의 3분의 1 정도의 섬들은 정확한 거리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⁹

아울러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섬의 위치를 표기할 때 군현의 관아나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아니라, 섬과 섬 사이의 거리로 위치를 표기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대한 실례로 아래의 기사들을 참조해 보자.

D-①. 대부도(大部島) 【화지랑 서쪽 2리에 있다…】 소우도(小牛島) 【대부도 서쪽 5리에 있다…】 영흥도(靈興島) 【소우도 서쪽 7리에 있다…】 소홀도(召忽島) 【영흥도 서쪽 30리에 있다…】 덕적도(德積島) 【소홀도 남쪽 60리에 있다…】 우음도(汚音島) 【부 북쪽 수로(水路) 2리에 있다…】¹⁰ (【은 제주)

D-②. 부(府) 서쪽 수로(水路) 2리에 매도(煤島)가 있고, 【옛날의 구음섬(仇音島)이다…】 또 서쪽 수로(水路) 7리에 주문도(注文島)가 있으며, 【둘레가 30리이다.】 또 서쪽 수로(水路) 30여 리에 밤섬(巴音島)이 있고, 【둘레가 40리이다…】 또 서쪽 수로(水路) 15리에 말섬(末島)이 있으며, 【둘레가 10여 리…】 또 동쪽 수로(水路) 16리에 금북섬(今音北島)이 있고, 【길이 10리, 너비 2리이다…】 또 동쪽 수로(水路) 200보(步)에 미법도(彌法島)가 있으며, 【둘레가 15리이다…】 또 남쪽 30리에 장봉도(長烽島)가 있고, 【길이 40리, 너비가 5리이다…】 또 동쪽 60리에 신도(信島)가 있다. (【은 제주)

D-③. 대도도(大都島) 【부의 동쪽에 있는데… 육지와와의 거리가 6리이다】 모도(茅島) 【부의 동쪽 대도도(大都島) 남쪽 10리에 있는데, 육지와와의 거리가 3리이다.】 웅도(熊島) 【부의 동쪽, 대도도의 동쪽 15리에 있는데,

9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섬의 위치 및 거리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섬은 모두 43개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순규, 2022, 위의 글, 40~47쪽 (별표) 참조.

10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수원도호부, 남양도호부.

육지와와의 거리가 15리이다…】¹¹ (【】은 제주)

D-④. 시반두대도(時反豆大島)【후라두도(厚羅豆島) 동쪽에 있는데, 육지와와의 거리가 1리…】¹² (【】은 제주)

D-⑤. 적도(赤島)【남북이 2백 보(步)요, 수로(水路)가 3백여 보(步)이다.】¹³ (【】은 제주)

먼저 D-①의 경우, 대부도, 소우도, 영흥도, 소홀도, 덕적도, 우음도의 거리를 표기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모두 육지에서와 거리가 아니라 인근 섬에서의 거리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소우도에는 대부도로부터의 거리가, 영흥도는 소우도로부터의 거리가, 소홀도는 영흥도로부터의 거리가 표기되었다. 그리고 우음도의 경우는 섬과의 거리가 아니라 육지로부터의 거리가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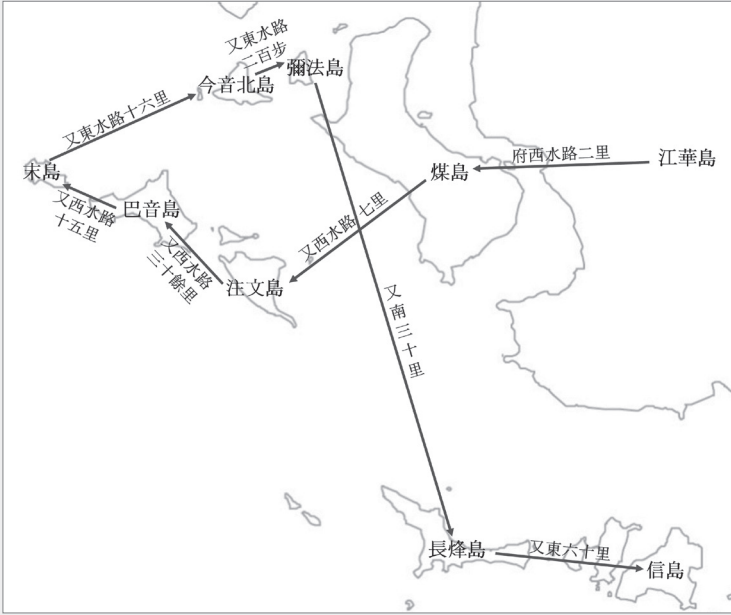
D-②의 경우에도 매도, 주문도, 밤섬, 말섬, 금복섬, 미법도, 장봉도, 신도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들 섬은 강화도에 부속된 섬들이다. 이들 또한 섬에서 다른 섬 사이의 방향과 거리로 위치를 표기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강화 본섬에서 거리를 표기하는 것이 용이한 섬들도 다른 섬과의 거리로 위치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내용을 현재의 지도에 옮겨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장봉도나 신도 등의 섬은 부 관아를 기준으로 측량하여 기재하는 것이 편리한 위치임에도 북쪽에 위치한 미법도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를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③의 경우, 대도도와 모도, 옹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부 관아에서의 거리와 다른 섬에서의 거리가 중복적으로 표기되어 있다. 즉 모도는 부의 동쪽에 있고, 대도도의 남쪽 1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옹도는 부의 동쪽이지만 대도도를 기준으로 남쪽 15리에 위치하고 있다. 육지나 여타

11 『세종실록』 권155, 지리지, 함길도, 영흥대도호부.

12 『세종실록』 권155,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강원도호부.

13 『세종실록』 권155, 지리지, 함길도, 경흥도호부.



〈그림 1〉 경기 강화도호부 소속 해도의 위치 기술

섬과의 거리를 표기한 경우뿐 아니라 이것이 중첩적으로 기술된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④와 D-⑤의 경우는 거리 표기에 있어서 매우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실측 거리를 꼭 기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기사이다. D-④의 시반두대도는 육지와와의 거리가 약 432m 정도, D-⑤의 적도는 300보,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360m였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도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은 『세종실록』 「지리지」 전체에 관철되는 기술 원칙이 아니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기술은 ① 육지와와의 거리가 표기된 경우, ②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표기된 경우, ③ 육지 및 다른 섬과의 거리가 표기된 경우, ④ 거리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네 가지가 모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거리 기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우 가까운 거리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 실측 거리를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무릉도에 대한 해석

위에서 본 것처럼, 『경상도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은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에 일관되게 적용된 원칙이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원칙을 살피려면, 지리지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해도 기술의 원칙을 귀납적으로 추론해 볼 수밖에 없다. 앞서 밝힌 것처럼 필자는 이미 이에 대한 연구를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장에서는 앞의 연구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근거로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 무릉 기사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에서 첫 번째로 언급할 것은, 섬의 위치 표기 방식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섬에 대한 위치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위치를 표기할 경우는 모두 ‘기점+방향+거리’란 방식으로 기재하였다. 예컨대 ‘현 남쪽 90리’라던지 ‘군 북쪽 20리’ 등과 같은 서술이 대부분이었다. 군현의 읍치 관아에서부터 거리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때로는 읍치 관아가 아니라 해당 섬으로 가는 포구나 가장 가까운 육지 지역의 위치를 기점으로 삼기도 하였다. 또 앞에서 본 것처럼 인근 섬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기준이 여러 가지였던 반면 섬의 위치를 기재하는 서술 방식, 즉 기점+방향+거리순으로 기재된다는 원칙은 비교적 일관되게 관철되었다. 물론 기점, 방향, 거리 중 한두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서술의 순서가 뒤바뀐 적은 없었다. 앞서 D 기사들의 서술에서 예를 들자면, D-① 기사에서도 대부도는 ‘화지랑 서쪽 2리’였고, 소우도는 ‘대부도 서쪽 5리’였으며, 영흥도는 ‘소우도 서쪽 7리’였다. 이와 별도로 같은 강화도호부에 속한 우음도는 ‘부 북쪽 수로 2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D-③의 대도도는 ‘부 동쪽 6리’였고, 모도는 ‘부 동쪽 대도도 남쪽 10리, 육지와와의 거리 3리’였다. 모두 기점과 방향 그리고 거리순으로 위치를 표기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 무릉도의 기사를 살펴보자. 앞서 인용했던 A 기사의 일부만 다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A-①. 우산 무릉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두 섬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세주』)

우선 위의 기사에서 기점은 울진현의 관아, 방향은 정동쪽이다. 우리가 파악하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술 원칙에 따르면, 거리는 바로 다음에 나와 있어야 한다. 쓰카모토를 비롯한 다수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란 구절은 정확한 실측 자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거리를 표현하는 기술이었다. 만일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가 육지에서 두 섬까지의 거리라면, 이 기술 문장은 방향 바로 뒤에 위치해야 한다. 만일 쓰카모토가 주장하는 대로 해당 내용이 육지와 의 거리라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 무릉 두 섬의 기술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예시〉 우산 무릉【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아 우산도는 무릉도 동쪽 7리에 있다…】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원칙대로라면 두 섬의 위치가 현을 기점으로 정동쪽에 있고, 거리는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는 거리 정보가 뒤이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산도가 쓰카모토가 주장하는 대로 울릉도에서 매우 가까운 섬, 현재 대한민국에서 죽도라고 부르는 섬이라고 한다면 해당 섬과 울릉도 사이의 거리는 실측이 가능한 거리이다. 죽도는 현대의 실측으로 울릉도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다. 이 거리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대략 7리 정도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우산도와 무릉도 사이의 거리는 방향과 더불어 실측 거리가 제시되었을 것이다.¹⁴

그런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기점과 방향 이후에 거리를 서술하지

14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가장 가까운 섬의 거리는 200보, 가장 먼 거리의 경우 75리까지 표기되고 있다.

않았다. 정확한 거리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제주도를 들 수 있는데, 제주목의 첫 서술은 “본주(本州)는 전라도의 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란 문장으로 시작하며, 육지에서의 정확한 거리를 서술하지 않고 있다.¹⁵ 다만 뱃길로 제주도와 왕래하는 루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자도까지 7일이 걸린다는 서술이 있을 뿐이며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 정보는 누락하고 있다.¹⁶ 따라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육지에서 우산도, 무릉도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거리 정보가 누락된 이후에는 바로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다”란 문장을 삽입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육지에서의 거리 뿐 아니라 섬과 섬 사이의 거리도 ‘기점+방향+거리’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 표현 역시 정확한 실측 거리가 아니라 ‘멀지 않다’란 표현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표현은 ‘멀지 않다’의 구체적 실례로 표기했다고 보는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원칙에 훨씬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해도 기술의 원칙에서 두 번째로 언급할 것은 물리적으로 두 개로 구분된 섬이라 하더라도, 두 섬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거나 하나의 섬이 커서 다른 한 개의 섬이 이에 부속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이를 하나의 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들을 참조해 보자.

E-①. 관음점사(觀音站祠)는 현 서쪽에 있다.【춘추(春秋)로 수령(守令)이 조정의 뜻을 받들어 상박도(上樸島)·하박도(下樸島)·욕질도(褥秩島)의 신(神)

15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16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제주목, 대정현, “舟子往來處有三 發羅州則歷務安 大坵浦 靈巖 火無只 瓦島 海珍 於蘭梁 凡七晝夜 至舟子島 發海珍則從三寸浦 歷巨要梁 三內島 發康津則從軍營浦 歷高子 黃伊 露瑟島 三內島 皆三晝夜 至舟子島 右三處舟子 皆經此島 過斜鼠島 大小火脫島 至于濟州 涯月浦 朝天館 蓋火脫之間 二水交流 波濤洶湧 凡往來者 難之.”

에게 이 사(祠)에서 망제(望祭)한다.】박도(樸島)는 현 남쪽에 있는데, 수로(水路)로 40리이다.【구량량(仇良梁)의 영전 선군(營田船軍)이 내왕하면서 농사를 짓는다.】¹⁷ (【】은 제주)

E-②. 해도(海島)가 1이니, 주자도(舟子島)이다.¹⁸

E-③. 초도(草島)【부의 동쪽에 있다. 예전에 호인(胡人)이 목마(牧馬)하던 곳인데, 속설에 전하기를, “좋은 말(良馬)이 난다”라고 한다. 그 옆에 소초도(小草島)가 있다.】¹⁹ (【】은 제주)

E-④. 또 서쪽 수로(水路) 30여 리에 밤섬(巴音島)이 있다【둘레가 40리이며, 밭 1백 6결(結)이 있는데, 우도 수군영(右道水軍營)의 밭이므로, 교동 수군(喬桐水軍) 8호(戶)가 들어가 산다. 옆에 작은 섬이 있는데, 길이 5리, 너비 2리이며, 밭 5결(結)이 있는데, 교동 수군(喬桐水軍) 4호가 들어가 산다.】²⁰ (【】은 제주)

우선 E-①의 기사에는 박도가 등장한다. 현 남쪽 수로로 4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날 사랑도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해도 기술에서는 마치 박도가 하나의 섬인 듯 기록되어 있으나, 바로 앞의 관음점사에 대한 서술에서 보면 상박도(上樸島)와 하박도(下樸島)란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즉 박도는 본래 상박도와 하박도란 두 개의 물리적인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박도라는 하나의 섬으로 기재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사랑도 역시 상사랑도와 하사랑도의 물리적으로 구분된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E-②에 등장하는 주자도, 즉 오늘날의 추자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추자도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추자도를 하나의 섬으로 인식하고 있다. 혹, 『세종실록』 「지

17 『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주목, 고성현.

18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전라도, 나주목, 해진군.

19 『세종실록』 권155, 지리지, 함길도, 길주목, 경원도호부.

20 『세종실록』 권151, 지리지, 경기도, 부평도호부, 강화도호부.

리지』에서는 현재의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중 하나의 섬만을 기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래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참조해 보면 조선 초기부터 추자도는 두 개의 섬을 하나의 추자도로 인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 **추자도(槪子島)**【주 북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둘레가 30리이고 수참(水站)의 옛터가 있다. 모든 제주에 가는 자가 나주(羅州)에서 떠나면 무안(務安)의 대굴포(大窟浦), 영암(靈巖)의 화무지와도(火無只瓦島), 해남(海南)의 오란량(於蘭梁)을 거쳐 이 섬에 이르고, 해남(海南)에서 떠나면 삼촌포(三寸浦)로 쫓아 거요량(巨要梁)·삼내도(三內島)를 거치고, 강진(康津)에서 떠나면 군영포(軍營浦)로 쫓아 고자황이노슬도(高子黃伊露瑟島)·삼내도를 거치는데, 모두 3주야(晝夜)라야 이 섬에 이른다. 여기를 경유하여 사서도(斜鼠島)와 대화탈도(大火脫島)·소화탈도(小火脫島)를 지나 애월포(涯月浦)와 조천관(朝天館)에 이른다. ○고려 원종(元宗) 11년에 삼별초가 진도로부터 탐라에 들어와서 내외성을 쌓고 험함을 믿고 더욱 창궐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이 몽고 혼도(忻都)와 더불어 추자도에 머물러 바람을 기다리는데, 밤중에 바람이 급하여 지향할 곳을 알지 못하였더니, 새벽에 보니 이미 탐라에 가까워졌는데 바람과 큰 파도가 세차서 오도가도 못하였다. 방경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국가가 편안하고 위태함이 이 한 번 싸움에 달렸는데, 오늘의 일은 나에게 있지 않은가.” 하니, 조금 뒤에 풍량이 그쳐 마침내 진격하여 크게 물리쳤다. 탐라 사람들이 그 공을 생각하여 후풍도(候風島)라고 이름하였다.】**신도(身島)**【곧 추자도의 주봉(主峯)이다.】²¹ 【】은 세주

F 기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인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추자도는 제주목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추자도 설명 다음에 신도(信島)란 섬이 등장한다. 즉 물리적으로 추자도와 신도는 별도의 섬이었다. 그런데 신

2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8, 전라도, 제주목.

도에 대한 제주 설명에서 ‘곧 추자도의 주봉이다’란 표현이 등장한다. 추자도의 주봉이, 추자도가 아닌 인근 섬에 있다는 것이다. 주봉이란 개념은 각 고을에서 중심이 되는 산으로 진산(鎭山)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보통 진산 아래에는 고을의 중심지로 관아 및 시설들이 들어선다. 추자도의 진산이 인근 신도에 있다는 것은 결국 신도 역시 추자도의 일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날 추자도는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과거 고을의 중심지는 상추자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면사무소가 상추자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세워진 최영 장군의 사당이 위치하고 있다. 요컨대 『세종실록』 「지리지」 상에서 이야기하는 추자도는 실제로는 별도의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늘날 상추자도라고 부르는 섬은 물리적으로는 신도(信島)란 별도의 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섬은 모두 ‘추자도’로 인식되었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다.

E-③과 E-④는 앞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다. 박도나 추자도의 경우 크기가 엇비슷한 두 섬을 하나의 섬의 명칭으로 기술한 경우라면 E-③과 E-④는 큰 섬 옆에 작은 섬이 붙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섬으로 호명한 경우이다. E-③에 등장하는 초도는 함길도 경흥도호부에 위치하였던 것인데, 초도에 대한 제주에서 옆에 작은 소초도란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E-④는 경기 강화도 인근의 밤섬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서도 제주에서 옆에 작은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E-④에 등장하는 작은 섬은 별도의 고유 명칭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냥 밤섬의 일부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섬을 기록할 때, 물리적으로 떨어진 섬들을 개별적으로 기술한 것만은 아니었다. 두 개 이상의 섬들이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할 경우, 또는 크고 주요한 섬에 작은 섬이 붙어 있는 경우 복수의 섬을 하나의 섬처럼 인식하되 경우에 따라 제주로 별도의 섬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세종실록』 「지리지」의 편찬 원칙을 고려해 본다면, 만일 우산도를 현재 울릉도에 부속된 작은 섬 죽도 등으로 비정할 경우, 『세종실록』 「지

리지」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이 아예 누락되어 있거나 세주로 소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울릉도로부터 정확한 방향과 실측 거리가 제시되어 기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무릉도와 우산도는 완연하게 별도의 두 개의 섬으로 기록되고 있다. 물론 두 섬 사이의 정확한 거리가 누락되고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란 추상적인 표현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우산도와 무릉도의 기술 방식은 상당한 거리로 떨어진 두 섬을 각각 기술하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상도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모든 섬의 기술에 적용된 원칙이 아니었고, 이를 무리하게 적용한 쓰카모토의 해석은 신뢰도를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V.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무릉도에 대한 해석

앞 장에서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에 의해 쓰카모토의 주장을 재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쓰카모토가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을 계승했다고 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 내용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인용했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다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C. 우산도(于山島) 울릉도(鬱陵島)【무릉(武陵)이라고도 하고, 우릉(狷陵)이라고도 한다. 두 섬은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삼봉이 높고 험준하여 하늘을 받치고, 남봉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의 나무와 산기슭의 물가가 선명하게 보인다. 바람을 타고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다.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 땅은 방백리이다...】²² (○은 세주, 밑줄은 필자)

2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5, 강원도, 울진현.

C 기사를 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섬의 위치를 표기하는 방법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점+방향+거리’란 원칙이다. 기점은 현 읍치, 방향은 동쪽이며 이하의 내용은 모두 거리를 표기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밑줄 친 거리 표현 앞에 『세종실록』 「지리지」와는 달리 ‘두 섬 사이가 멀지 않다’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요컨대 위의 기사에서 밑줄 친 내용은 모두 육지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밑줄의 내용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를 계승한 내용이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 편찬 당시 육지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육지에서 울릉도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동해안의 동해시, 삼척시 등에서 촬영한 망원렌즈에 담긴 울릉도 사진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조선시대에 육안으로 울릉도를 확인하는 게 가능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진들에 담긴 울릉도의 모습은 대부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흡사하다. 아울러 울릉도는 육지로부터 130.3km 가까이 떨어져 있으며, 시간당 4km 정도를 향해할 수 있는 전통시대 향해 속도를 감안하면 이틀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거리 정보 역시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편찬 단계보다 울릉도 지역까지의 거리 정보가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되어 수록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기점(현)+방향(동쪽)을 우선 서술하고 거리가 누락되어 있으며 바로 다음에 두 섬의 상호 거리가 서술되어 있다. 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울릉도에 한하여 기점(현)+방향(동쪽) 다음으로 거리(바라볼 수 있고 이틀의 뱃길)를 서술한 것이다. 당시까지 누적된 지리 정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세종실록』 「지리지」의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두 섬 사이의 거리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섬의 모습에 대한 묘사와 ‘이틀의 뱃길’ 설명은 육지에서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에는 쓰카모토의 주장에 반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다. 바로 ‘우산과 무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라는 내용이다. 만일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술된 우산도가 울릉도 옆의 작은 섬이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라는 추정에 가까운 내용을 포함할 이유가 없어진다.

현대와 달리 정확한 지리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리지에 이러한 구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두 섬의 사이가 (역설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야 가능하다. 한 섬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섬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여야 가능하다. 불충분한 정보로 인하여, 실제로 별도의 섬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지리지 편찬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될 수 있어야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만일 울릉도 옆의 작은 섬 중 하나, 현재의 이름으로 죽도라 불리는 섬이 우산도라면 지리지에 위와 같은 서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VI. 맺음말

이상과 같이 『세종실록』 「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에 비추어 우산·무릉도 기사를 이해하고 아울러 쓰카모토의 주장에 대해 비판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쓰카모토의 글에서 주장한 지리지의 해도 기술 원칙은 『경상도지리지』에서 추출한 것이었다. 다만 이 원칙은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았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육지와의 거리뿐 아니라 섬 사이의 거리로 위치를 표현한 경우도 다수였으며, 거리가 아예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둘째, 섬의 위치가 표기된 경우는 ‘기점+방향+거리’란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이 원칙을 대입해 보면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란 내용은 ‘두 섬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다’의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읽어야 한다. 만일 ‘날씨가 좋으면 바라볼 수 있다’란 내용이 육지에서 두 섬에 이르는 거리에

대한 설명이라면, 두 섬 사이의 거리를 언급하기 이전에 해당 문구가 등장해야 한다.

셋째,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비슷한 크기의 두 섬이 생활권을 공유하거나, 하나의 큰 섬에 작은 섬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섬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만일 울릉도 옆에 존재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죽도라고 부르는 섬이 우산도였다면, 해당 내용은 한 섬으로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혹 별도로 기재된다 하더라도 울릉도로부터 죽도에 이르는 실측 거리가 제시되었을 것인데,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넷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은 『세종실록』 「지리지」의 내용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바라본 울릉도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지리지의 내용 계승을 근거로 자신의 해석을 논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옆의 죽도를 우산도로 비정할 경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일설에 우산과 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라고도 한다’란 주기가 붙어 있는데, 만일 우산도가 죽도에 비정될 경우 7리 정도 떨어진 섬을 대상으로 이러한 이설(異說)을 소개할 이유가 없어진다.

위의 내용들을 감안하면,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독도로 읽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비록 지리지상의 기록이 무릉도 관련 내용에 치우쳐 있고, 우산도와 관련된 내용이 매우 소략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리지 편찬자들은 분명하게 우산도와 무릉도가 실측 거리를 제시하기 어려운 정도로 떨어진 두 섬으로 인식하고 기술하였다. 단편 사료들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사료를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할 때 지리지에 등장하는 무릉도와 우산도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참고문헌

1. 자료

- 『朝鮮王朝實錄』.
『慶尙道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2. 단행본

- 독도연구소 편, 2018,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신용하, 2020, 『독도 영토주권의 실증적 연구』 (상)·(중)·(하), 동북아역사재단.

3. 논문

- 박병섭, 2018, 「한·일 양국의 독도/竹島 고유영토론의 쟁점」, 『獨島研究』 25.
박지영, 2021,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에 관한 고찰-교환공문에 나타난 역사적 근거를 중심으로-」, 『獨島研究』 31.
소순규, 2022, 「『세종실록지리지』 해도 기술 원칙과 우산·무릉도 기사의 재검토」, 『영토해양연구』 24.
윤현철·왕사신, 2023,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 탐구(상)」, 『고조선단군학』 51.
윤현철·정엄, 2024, 「독도 영유권 논쟁의 쟁점 탐구(하)」, 『고조선단군학』 53.
이성환, 2018 「독도문제 연구에 대한 주요 쟁점 검토-도해금지령과 태정관 지령을 중심으로-」, 『獨島研究』 25.
정두희, 1976,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 (1)」, 『역사학보』 69.
塚本 孝, 2023, 「世宗實錄地理志の于山は竹島か」, 竹島 研究・解説サイト, https://www.cas.go.jp/jp/ryodo/kenkyu/takeshima/chapter03_column_02-01.html.

국문초록

이 글은 최근 일본의 외무성에서 운영하는 ‘다카시마 연구·해설 사이트’에 게재된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교수의 글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은 죽도일까?」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한 것이다. 해당 글에서 쓰카모토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섬을 기술할 때에는 육지와와의 거리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나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세종실록』 「지리지」에 표기된 우산도(우산도)는 현재의 독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계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쓰카모토가 주장하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섬 기술 원칙이 사실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 표기된 우산도와 무릉도 기사를 정합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쓰카모토가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 및 무릉도 기술 일부가 계승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검토해 보았다.

쓰카모토가 주장하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섬 기술 원칙은 그보다 8년 전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서 따온 것인데, 모든 섬은 육지로부터의 거리를 표기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검토해 본 바에 따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육지로부터의 거리를 표기한 경우, 다른 섬으로부터의 거리를 표기한 경우, 육지와 다른 섬으로부터의 거리를 중복적으로 표기한 경우, 아예 섬의 거리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경상도지리지』에서 제시한 원칙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아울러 쓰카모토는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 및 무릉도 기사 내용 중 “두 섬의 거리가 멀지 않다.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란 내용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우산도 및 무릉도를 기술한 내용 중 “삼봉이 높고 험준하여 하늘을 받치고, 남봉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의 나무와 산기슭의 물가가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내용이 서로 연관된 서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가 검토한 결과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술 내용은 두 섬이 상호 바라볼 수 있다는 내용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술 내용은 육지에서 울릉도를 바라보았을 때의 기술 내용으로 서로 계승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었다.

필자의 검토에 따르면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섬의 위치를 표기한 방법은 다양하였으나, 모두 ‘기점+방향+거리’로 기술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도 및 무릉도의 기술에 등장하는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내용은 실측적인 거리를 대체한 추상적인 거리 표현이며, 이 거리 표현 앞에는 기점이나 방향이 되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두 섬 사이가 멀지 않다’란 내용이므로 결국 청명한 날씨에 서로 바라보이는 거리란 것은 두 섬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우 “삼봉이 높고 험준하여 하늘을 받치고, 남봉은 약간 낮다. 날씨가 맑으면 봉우리의 나무와 산기슭의 풀가가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내용 앞에 현의 동쪽이란 기점과 방향이 선명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는 해당 표현이 울진현 관아에서 두 섬에 이르는 거리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이 기술 바로 뒤에는 “베로 이틀이면 도착한다”란 내용이 기술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세종실록』 「지리지」 내용의 계승이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한 기술로 이해하는 것이 정합적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우산도, 무릉도

ABSTRACT

A Reassessment of Records on Usando and Mureungdo in the Geographical Books (*jiriji*) of the Early Joseon Dynasty: A Critical Review of Professor Takashi Tsukamoto's Article

So, Soon Kyu

(Assistant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Professor Takashi Tsukamoto's article, "Is Usando in *Sejong sillok jiriji* (Geographical Records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Takeshima (Dokdo)?" which was published on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s website, "Research & Explanation of Takeshima (Dokdo)." Tsukamoto argues that the principle of marking distances from the mainland, as described in *Sejong sillok jiriji*, contradicts Korean claims that Usando refers to modern-day Dokdo. He further asserts that this principle is consistently applied in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revised edition of the augmented survey of the geography of Korea).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sukamoto's claim by analyzing the descriptive principles employed in *Sejong sillok jiriji*. A comparative review of Usando and Mureungdo records across *Sejong sillok jiriji* and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is also provided.

Tsukamoto's interpretation draws from *Gyeongsangdo jiriji* (geographical records of Gyeongsang Province), which had been published eight years earlier than *Sejong sillok jiriji* and recorded distances from the mainland for islands. However, this paper reveals that *Sejong sillok jiriji* employs varied methods to describe distances: some are measured from the mainland, others from neighboring islands, while some omit distances entirely. Thus, the descriptive principles of *Gyeongsangdo jiriji* cannot be directly applied to *Sejong sillok jiriji*.

Tsukamoto also links *Sejong sillok jiriji*'s statement, "The two islands are not far apart. On a clear day, they are visible from the other," with a similar description in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Three peaks are tall and steep, touching the sky, while the southern peak is slightly lower. On a clear day, trees on the summits and the waterside at the base are visibl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description in *Sejong sillok jiriji* refers to visibility between Usando and Mureungdo, whereas the description in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refers to viewing Ulleungdo from the mainland, and the two records are not directly related.

This paper finds that while *Sejong sillok jiriji* uses diverse approaches for

describing island locations, the general format is “starting point + direction + distance.” The phrase, “On a clear day, they are visible from the other,” is interpreted as an abstract expression of proximity between the islands rather than a concrete measurement.

In contrast,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specifies the starting point and direction, suggesting that its description pertains to the distance from Uljin County’s government office to the islands. The statement, “It takes two days by ship to reach them,” further indicates that the record of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is distinct from, rather than a continuation of, *Sejong sillok jiriji*.

Keywords

Sejong sillok jiriji, *Gyeongsangdo jiriji*, *Sinjeung dongguk yeojiseungram*,
Usando, Mureungdo

독도에 대한 현상유지원칙 (Uti Possidetis)의 적용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박병섭 일본竹島=독도연구넷 대표

- I. 머리말
- II. 선행연구와 과제
- II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위
- IV.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 V.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과 문제점
- VI. 한일 양국의 독립과 '법률상 현상유지원칙'
- VII. 맺음말

1. 머리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독도의 소속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현대국제법이다. 일반적으로 영토 문제에서 국제법은 영토 관계 조약을 가장 중요시 하는데, 그러한 조약의 일례가 평화조약이다. 그런데 일본의 영토를 완전히 결정해야 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하 'SF조약')에는 독도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한국 관련 영토조항인 제2조(a)는 단지, “일본은 코리아(Korea)의 독립을 승인하고,¹ 제주도과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간단히 기술했다. 독도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

이 조항의 해석에 관해 한·일 양국 정부는 비슷한 주장을 하지만, 견해는 상반된다. 한국 외무부는 “대일평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영유권 주장에 모순되는 조문이 없다”라고 일본 정부에 주장했다.² 한편 일본 외무성은 “평화조약 중에 竹島(독도)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 섬이 일본 영토의 일부임을 명확히 하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³ 양국 정부 모두 SF조약에 독도가 기술되지 않았음을 들어 자국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가 자국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유는 SF조약 제2조가 말하는 코리아에 독도가 포함되는지가 모호하므로 양국 정부가 제2조를 임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문의 의미가 모호할 때는 관습법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조약법협약’) 제32조의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준비작업 및 체결 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라는 조항

* 논문 투고일: 2024.10.14, 심사 완료일: 2024.10.31, 재심사 완료일: 2024.11.26, 게재 확정일: 2024.12.4.

1 'Korea의 독립'의 근원은 카이로선언(1943.12.1)에 있다. 이 선언은, “상기 [미·영·중] 3대국은 Korea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며, 적절한 시기에 Korea를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의(決意)한다”라고 했다. 이 Korea를 한국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마땅하지 않을 것이다.

2 「한국정부견해 2(1954년)」; 외무부, 1977, 『獨島關係資料集 I: 往復外交文書, 1951~76』, 외무부.

3 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78쪽.

에 의존할 수 있다. 조약 체결 시의 사정에 관해서는 미국에서 SF조약을 전담한 국무부 J. F. 덜레스(J. F. Dulles)의 발언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1951년 9월 SF조약 조인식에서 구 일본 영토의 최종 처분은 완전히 결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⁴ 그러한 영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도이다. 이는 2년 후 덜레스가 주한 및 주일 미국 대사관에 보낸 전보문(1953.12.9)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전보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는 알리지 않았던 리스크 서한처럼 리앙쿠르(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견해는 많은 조약 서명국 중 미국 일국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조약의 해석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제22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해야 하며, 미국은 양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⁵ 일찍이 SF조약 조인식을 한두 달 앞두고 덜레스는 독도의 귀속을 SF조약에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따라서 SF조약에 명기할 수 없었다.⁶

평화조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국제법에서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Uti Possidetis de Facto)’을 적용한다. 원래 로마법에서 유래한 현상유지(유보, 승인)원칙은 국제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H. 그로티우스(H. Grotius)가 1625년 평화조약에 적용할 것을 제창한⁷ 뒤, 국제법에서 확립되었다. 이 원칙은 『국제관계법사전』에 따르면, “전쟁이 교전국의 전투 행위 정지에 따라 종료되고 양국 간 법적 지위를 정하는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통설은 전쟁 종결 당시의 상태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한다. 또한 평화조약이 체결되더라도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당사국 간 법률관계는 평화조약 체결 시의 상

4 毎日新聞社図書編集部, 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486쪽.

5 Telegram by Secretary of State to Embassy, Tokyo, RPTD Seoul (1953.12.9); 영인은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8, 『독도자료 미국편』, III, 국사편찬위원회, 184쪽.

6 박병섭, 201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독도연구』 21, 32쪽; 朴炳涉, 2017,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から洩れた論争中の島々』,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3, 30~31쪽.

7 그로티우스는 저서 *De Jure Belli Ac Pacis*의 항목 ‘평화조약 해석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의심스러운 경우는 현상 유지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믿어진다”라고 적었다. H. Grotius著, 一又正雄譯, 1951, 『グローチウス 戦争と平和の法』 第3卷, 巖松堂, 1204쪽; 新納摩子, 1997, 『国際法におけるウティ・ポシデティスの再検討』, 『立命館法学』 254, 823쪽.

태가 인정된다”라고 한다.⁸

한편,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합(유엔)헌장’이 무력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제법이 크게 변화했다. 이제 ‘정복’이라는 영역의 취득 권원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평화조약, 특히 전승국이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자의적으로 영토를 결정하거나 무리한 배상을 강제하는 평화조약은 현대국제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전승국이 주도하여 평화조약을 맺으면 평화조약이 무효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 특별한 이익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국제연합헌장 이후도 많은 무력 분쟁이 발생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관련 평화조약 이후에 체결된 평화조약은 겨우 4건 정도라고 한다.⁹ 평화조약 대신 한국전쟁의 처리처럼 휴전 혹은 정전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평화조약과 관련하여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도 거의 거론되지 않게 되었다. 이 결과 L. 오펜하임(L. Oppenheim)이 ‘일부의 정복’이라고 이해했던 ‘사실상 현상유지원칙’¹⁰은 현대국제법에서는 존립 기반이 많이 약화했다.

위와 같이 국제연합헌장 이후에 체결된 평화조약에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려면 그 조약이 현대국제법에 비추어 무효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약법협약이 채택된 1969년 이전의 평화조약은 조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 등이 잘 주지되지 않은 채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가 주제로 하는 SF조약은 1952년에 발효되었으므로 조약의 유효성이

8 太寿堂鼎·吉井淳, 1995, 「ウティ・ポッシデティス」, 『國際關係法辞典』, 三省堂, 70~71쪽. 이 사전은 uti possidetis를 ‘현상승인의 법리’라고 번역했다.

9 아래 논문에 따르면 4건은 ① Treaty of Peace between the Arab Republic of Egypt and the State of Israel, 26 March 1979, republished in *ILM*, Vol.18(1979), pp. 362~366 ② Treaty of Peace between Jordan and the State of Israel, 26 October 1994, republished in *ILM*, Vol. 34 (1995), pp. 43~53 ③ (India-Pakistan) Simla Agreement on Bilateral Relations and Statement on its Implementation, in *ILM*, Vol.11(1972), pp. 954~962 ④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State of Erit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l Republic of Ethiopia, 13 December 2000, U.N. Doc.A/55/686-S/2000/11830이다. 広見正行, 2015, 『現代國際法における國際武力紛争終結の法理』, 上智大学(2014年度学位論文), 8쪽, <http://digital-archives.sophia.ac.jp/repository/view/repository/00000035426>(검색일: 2024.10.14).

10 新納摩子, 1997, 앞의 글, 819쪽.

문제될 수 있다. 의심되는 점은 SF조약에서 류큐(琉球)열도 등을 일본에서 분리했던 조항이다. 이들 영토의 분리는 물론 일본인들의 의사에 어긋나는 것이며, 인도조차 반대했다.¹¹ 또한 소련은 SF조약 조인식에서 류큐 등을 일본에서 분리하는 미·영 공동초안은 자의적이며 위법이라고 비판했다.¹² 따라서 SF조약은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편,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은 새로 독립하는 국가의 국경분쟁을 방지하는 관점에서도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무조건 인정한다면, 국가가 독립할 때 민족자결권 등을 명분으로 하여 지배 지역을 넓히려 획책할 수 있으므로 주변국과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은 경시되고, 이제 ‘법률상(법적) 현상유지원칙(Uti Possidetis Juris)’을 찾기 위한 보조 수단의 역할밖에 할 수 없게 되었다.¹³ 그리하여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은 거론되지 않게 되었고, 오늘날 단지 현상유지원칙이라고 하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가리킨다.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잘 알려져 있듯이 19세기 초기 스페인 지배하의 중남미 국가에서 탄생했다. 이들 국가는 스페인에서 독립할 때 식민지 시대의 행정구획을 정한 법률이나 지도를 기준으로 국경선을 획정했는데, 이 관습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으로 발전했다. 한편 남미에서는 포르투갈에서 독립한 브라질은 주변국과의 국경교섭에서 어느 때는 브라질의 실효적 지배가 미치고 있던 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어느 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체결한 조약이 규정한 식민지 분할선을 기준으로 하여 국경선을 주장했다. 후자와 같이 식민지 분할선을 독립 당시의 국경선으로 하는 것도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라고 불렀다.¹⁴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국제법이 아

11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F.O. 371, 92551/J1022/436*, Scholarly Resources Inc; 中村麗衣, 2003, 『日印平和条約とインド外交』, 『史論』 56卷, 54쪽.

12 毎日新聞社図書編集部, 1952, 앞의 책, 521쪽.

13 新納摩子, 1997, 앞의 글, 819~821쪽. ‘Uti Possidetis Juris’와 ‘Uti Possidetis de Facto’에 대해 각각 여러 번역이 있는데 이 글은 두 가지 현상유지원칙을 대비시키기 위해 이들을 ‘법률상 현상유지원칙’,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이라고 번역한다.

14 新納摩子, 1997, 앞의 글, 808쪽.

나라 해당 국가가 독립하기 전 주권국가의 헌법과 행정법을 가리킨다.¹⁵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아프리카에서도 점차 수용되었다. 당초 아프리카에서는 이 원칙에 반대했었다. 예를 들어 1958년 가나의 아크라에서 개최된 ‘전 아프리카 인민회의’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그어진 인위적인 국경선”을 비난하고, “조기에 그러한 국경선을 폐지 또는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었다.¹⁶ 아프리카에서 행정구획선이나 식민지 분할선은 식민지 종주국이 각 부족의 거주 실태나 문화, 사회활동 등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경계선을 그은 것이므로 신흥 국가는 실정에 맞지 않는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경분쟁이 잇따라 일어났다. 그럼에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원칙이나 유효한 수단이 없었다. 이 때문에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평가되었다. 1964년 아프리카통일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는 국경분쟁에 관한 결의, 카이로선언을 채택하고, 국가가 독립할 당시에 존재했던 경계선을 존중할 것을 맹세한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여기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OAU는 식민지 분할선 등을 국경선으로 하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처럼 제국주의 국가들의 여러 조약이나 관습법에 시달린 아프리카 국가들조차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 원칙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분쟁 사건의 심리에서 판단했듯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관습법이 아니라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 이로써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탈식민지화 과정 외에도 널리 응용되고, 유고슬라비아나 소련 등이 해체될 때도 적용되었다. 이 글은 위의 두 가지 현상유지원칙을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 글의 인용문에서 밑줄이나 ‘()’ 안은 원문대로이며, [] 안은 필자의 주다.

15 정재민, 2019, 『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의 인정가능성 확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8쪽.

16 新納摩子, 1997, 앞의 글, 805쪽.

II. 선행연구와 과제

2012년에 김명기가 처음으로 현상유지원칙을 독도에 적용했다. 김명기는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화조약 체결 당시에 있는 현상(status quo)대로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소개하고, “현상유보의 원칙에 의거 1951년 9월 8일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될 당시 1946년 1월 29일 SCAPIN¹⁷ 제677호에 의해 독도의 영역권이 분리된 상태대로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되게 된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분리된 것은 독도의 imperium[영역권이 있으나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은 독도의 dominium[영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그 상태 그대로 1951년 9월 8일 Uti Possidetis의 원칙에 의해 한국은 독도의 영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동 원칙은 그곳에 남아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¹⁸

이에 따르면 한국은 독립 이후에 독도에 대한 dominium[영유권을 취득한 상태이며, 또한 대일평화조약 체결 시 영유권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김명기는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두 번 취득한 이유에 대해, “Uti Possidetis 원칙에 따라 대일평화조약 제2조(a)항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규정에 의해 독도 영유권으로 소급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¹⁹

그러나 제2조에 코리아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모호한 규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한다는 분명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증이 충분하지 않을 듯하다. 한편 SF조약에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려면, SF조약이 현대국제법에서 유효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김명기의 논문에는 그

17 연구자들이 잘못 이해한 경우가 많은데 아래 자료에 따르면 SCAPIN은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dex Number’의 약칭이다. GHQ/SCAP Records Box 757, Sheet No. AG(B)-04519 class No.032, 박병섭, 2014,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 141쪽, 주 7; 朴炳涉, 2014a,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8, 59쪽.

18 김명기, 2012,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독도연구』 13, 298쪽.

19 김명기, 2012, 위의 글, 279쪽.

내용이 없다. 또한 김명기는 독도가 SF조약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보고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했는데, 3년 후 그는 SF조약 제2조 (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²⁰ 따라서 김명기는 현상유지원칙의 적용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2019년에 박병섭은 국제법정에서의 영토분쟁을 염두에 두고 현상유지원칙을 논했다. 영토분쟁이 국제법정에 제소되면 국제법정은 먼저 국경에 관한 조약 등을 참조하고, 이들로부터 명확한 판단을 하기가 불가능하면 현상유지원칙을 고려한다. 독도의 경우 SF조약에서는 어떠한 해석도 불가능하므로, 그다음 단계로 현상유지원칙이 고려된다. 한편 SF조약 성립 시 한·일 간 행정 관할 경계선은 후술하는 지도 (SCAP 관할구역도, 일본 및 남부 코리아)^(이하 'SCAP 관할구역도') 등에 표시된 대로 독도는 한국 영역 안에 있다. 따라서 SF조약에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경우, 독도는 한국이 영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²¹ 이처럼 박병섭은 SF조약이 발효했을 때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했다. 그런데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국가가 독립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데, 박병섭은 어느 나라에 이 원칙을 적용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대상국이 한국이라면 한국의 독립은 1948년이므로 SF조약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한편, 대상국이 일본이라면 SF조약에 따라 일본은 연합국의 군정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했지만,²² 식민지도 아닌 일본에 대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2021년에 정갑용은, “하나의 국가(일본)에서 하나의 국가(대한민국)가 독립한 경우”로서 Uti Possidetis 원칙을 적용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20 김명기, 2015, 「대일강화조약 제2조(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 포함여부 문제의 검토」, 『독도연구』 18, 391쪽.

21 박병섭, 2019,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 『독도연구』 27, 61쪽.

22 日本国立公文書館, 「公文書にみる日本のあゆみ」, https://www.archives.go.jp/ayumi/kobetsu/s27_1952_01.html(검색일: 2024.10.14).

된다고 주장했다.²³ 그 근거는 첫째로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갑용은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영토조약) 등이 없는 경우라고 하는 한편, SF조약 제2조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갑용은 SF조약이 독도와 상관이 없다고 보고 한국이 독립할 때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했을 것이다.

이 논문에 대한 비판인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2024년에 이창위는 한국이 독립할 때 현상유지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 “일본에서 독립한 한국도 [독립 전의] 행정적 경계는 매우 중요하다. 독도가 시마네현의 일부였던 일제시대만 식민지시대로 본다면 독도는 현상승인[원칙]에 의해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군정의 통치를 고려하면, 독도는 한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은 SCAPIN677에서 엘살바도르/온두라스의 경우처럼 행정적 경계를 명확하게 남겼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가 아니라 미군정의 통치를 거친 후 독립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²⁴ 일본에서 독도가 시마네현의 일부였다는 것은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의 1905년 고시나 여러 규칙 등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정갑용은 독도가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에 속했다는 근거로 수로지 등을 거론했으며, 일본의 법령 등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성립될지는 의문이다.

한편 이창위는 위의 논문에서, “현상승인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독도는 대일평화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 8일 시점에서 SCAPIN-677이 공포된 1946년 1월 29일의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한국의 영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²⁵ 또 SF조약에 대해서는, “한국의 영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대일평화조약의 불명확한 영토 규정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

23 정갑용, 2021, 『Uti Possidetis 법리와 독도영유권』, 『원광법학』 37(2), 119쪽.

24 李昌偉, 2024, 『連合国の日本領土に対する政策と独島の領有権』, 『法學論叢』(國民大學校) 第37卷 第1號 (通卷 第77號), 174쪽(日本語), 188쪽(한국어).

25 李昌偉, 2024, 위의 글, 181쪽(日本語).

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내용대로 조약의 문맥, 대상이나 목적 혹은 해석의 보충적인 수단과 함께 당시의 주요 조약, 선언, 문서를 해석하면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²⁶

위와 같이 이창위는 “현상승인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독도는 대일평화 조약이 체결된 1951년 9월 8일 시점 …”이라고 썼는데,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는 시점이 ① 1948년 한국의 독립 당시인지, ② 1951년 SF조약 체결 당시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만약 ①이라면, 정갑용과 마찬가지로 그의 주장은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한다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독립할 때 통치권뿐만 아니라 영유권도 획득했는지가 의문이다. 한편 ②라면, 이창위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SF조약이 불법이 아닌지 등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상과 같이 독도에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했던 선행연구에는 각각 문제점이나 의문점이 있다. 즉, ① SF조약에 대해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려면 SF조약이 독도와 무관함을 밝히고, 아울러 SF조약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한국의 독립 시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했을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까지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가, ③ 한국에 대한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과 SF조약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④ 식민지도 아닌 일본에 대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이 가능한가 등이다.

이 글은 위의 문제점을 해명하려는 것이다. 먼저 SF조약이 독도의 귀속을 결정하지 않은 경위를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뒤, 독도에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아울러 SF조약이 현대국제법에서 무효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원칙에 우선하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한국의 독립 시에 적용하고 SF조약과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는 시점에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

26 李昌偉, 2024, 위의 글, 164쪽(日本語).

하는 문제도 검토한다.

III.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규정하지 않은 경위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독도가 사라진 최초의 시기는 1950년 8월 덜레스 초안이다. 그때까지 미국의 중요한 조약 초안의 추이를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²⁷ 1947년 3월 미국 국무부는 대일평화조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무부는 일본 영토에 관한 기준 시점을 일본이 본격적인 침략전쟁을 개시했던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 1월에 두었다. 이에 따라 초안에서 리앙쿠르암(독도)을 일본 영토 외로 규정했다. 그런데 국무부는 1949년 12월 주일 정치고문 W.J. 시볼드(W.J. Sebald)의 의견에 따라 리앙쿠르암을 일본 영토로 규정했다. 시볼드는 일본 외무성이 제공한 영토조서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4)²⁸를 바탕으로 하는 한편, 미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이 섬[리앙쿠르암]에 대한 일본의 영토 주장은 오래되고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이 섬이 조선 앞바다에 위치한다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또한 안보적으로 고려할 때 이 섬에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에도 이익이 결부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국무부에 보냈다.²⁹ 이 견해가 미국의 초안에 반영되었다.

다음 대일강화조약을 전담한 덜레스는 각국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기 쉽도록 매우 간략한 조약 초안을 작성했다. 이때 리앙쿠르암 등 미국의 관심도가 낮은 많은 섬이 초안에서 빠졌다. 또 덜레스는 일본 주변 바다의 경

27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401~474쪽; 박병섭, 2014, 앞의 글, 159쪽; 朴炳涉, 2014a, 앞의 글, 57~58쪽.

28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1947b,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V, *Minor Is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 Japanese Government.

29 Department of State USA, 194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 900.

계를 드러내는 지도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부 R. A. 피어리(R. A. Fearey)는 계쟁이 될 수 있는 쓰시마(對馬)나 리앙쿠르암 등의 소속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³⁰ 이 시점에서 독도는 아직 잊히지 않았다. 그러나 1951년 3월 미국의 최종 초안에서는 독도와 다이토지마(大東島) 등이 여전히 무시되었다.³¹

오늘날 독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상륙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때로는 한·일 우호를 과구에 몰아넣을 정도로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1951년 당시 독도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던 섬이다. 한국에서는 주미 한국대사관원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독도의 위치를 문의받았을 때, “저희는 독도가 울릉도 인근, 혹은 다케시마 암 인근에 있다고 믿으며, 파랑도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다.³² 그는 1948년 한·미 간에서 큰 문제가 된 미군 공군기에 의한 독도 오폭 사건을 몰랐거나, 혹은 잊어버린 듯하다.

한편, 1949년 5월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비밀 자료 『대일강화조약에 대한 기본적 요구(對日講和條約についての基本的要求)』는 러일전쟁에 대한 포츠머스 조약에서 획득한 남부 가라후토(사할린)를 일본 영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³³ 또한 1951년 일본 국회에서 참의원(參議院) 단 이노(伊能)는 SF조약에 따라 독도가 일본 영토로부터 제외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묵인했다.³⁴ 일본 정부에게

30 이석우, 2006, 『대일강화조약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170쪽; 박병섭, 2014, 앞의 글, 162쪽; 朴炳涉, 2014b,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と千島・竹島=獨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 37쪽.

31 朴炳涉, 2017, 앞의 글, 25~31쪽; 박병섭, 2016, 앞의 글, 23~32쪽.

32 Memorandum by Feary to Allison, Subject: Islands (1951. 8. 3), Lot File 54D423, Box 8; 정병준, 2010, 앞의 책, 765쪽.

33 外務省, 『対日講和條約についての基本的要求』, 1949, 芦田均關係文書(国会図書館寄託)書類の部 No. 230; 朴炳涉, 2016,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後の日本の竹島=獨島政策』,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2, 2쪽.

34 단 의원은 참의원 외무위원회(1951.2.15)에서 “[독도가] 어디에 귀속하는가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이 섬은 일본에서 떠난다고 해도 이는 어느 나라에 귀속할지, 단 하나의 이도(離島)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라고 발언했다. 박병섭, 2014, 앞의 글, 176쪽; 朴炳涉, 2014b, 앞의 글, 48쪽.

는 류큐, 즉 별칭인 오키나와(沖繩)와 북방 4도의 귀속 등이 중대사였으며 독도 및 현재 중국과 문제가 되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다펬위다오(釣魚島)]제도 등은 거의 중시되지 않았다.³⁵ 한편, 영국도 제1차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를 'Liancourt'로 해야 하는데 'Miancourt'라고 오기할 정도였다. 영국의 최종 초안은 리앙쿠르암 등을 일본 영토 외로 하고, 일본 주변 바다의 경계를 드러내는 지도를 첨부했다.³⁶

1951년 4월과 6월까지 두 차례 미·영 양국은 공동초안을 협의했다. 이때 제주도를 일본 영토로 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주목된다. 영국은 한국전쟁의 추이를 보고 제주도를 일본 영토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코리아 전체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전략적 상황은 상당히 악화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한국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군사적으로 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국은 제주도를 한국 영토로 하기로 결정했다.³⁷ 또 미국의 제안에 따라 양국 공동초안에 지도를 첨부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지도에서 일본을 경계선으로 둘러싸면 일본에 심리적 압박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소련이 점유하는 하보마이와 시코탄 양도의 귀속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³⁸ 이로 인해 독도 등에 문제가 생겼다. 지도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일본이 포기하는 섬들을 모두 다 조약 초안에 명기해야 하는데 많은 섬이 빠졌다. 하보마이·시코탄 외에도 독도, 다이토지마, 남사·서사 제도 등이 빠

35 일본 정부는 미국에 보낸 영토조서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2)에서 센토(尖頭, [센카쿠]제도)는 일본의 남서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그 위에 “센토제도(면적은 2평방마일은 사키시마(先島) 그룹의 북쪽에 있는 무인도이며 중요하지 않다”라고 특기했다.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I, Ryukyu and Other Nansei Islands, 1947a, p.2; 朴炳涉, 2017, 앞의 글, 24쪽; 박병섭, 2016, 앞의 글, 26쪽.

36 정병준, 2010, 앞의 책, 576~577쪽.

37 原貴美恵, 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漢水社, 61쪽; 박병섭, 2014, 앞의 글, 181쪽; 朴炳涉, 2014c, 앞의 글, 57쪽.

38 Department of State USA, 195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6,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art 1, pp. 1060~1061; 塚本孝, 1994, 『平和条約と竹島(再論)』, 『レファレンス』, 国会図書館, 47쪽; 박병섭, 2014, 앞의 글, 179쪽; 朴炳涉, 2014c, 앞의 글, 55~56쪽.

졌다. 남사·서사 제도는 프랑스의 지적에 따라 초안에 일본 영역 외로 초안에 명기했다. 또한 다이토지마가 빠졌다고 ‘연합국최고사령관 총사령부 (GHQ/SCAP)’³⁹로부터 지적을 받은 미국 국무부는 앞의 영토조서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4)를 조사하고 다이토지마를 일본 영토 외로 하였다.

한편, 이 자료에 기재된 리앙쿠르암이 초안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국무부 S. W. 보그스(S. W. Boggs)가 발견했다.⁴⁰ 보그스는 7월 13일 공동초안에서 리앙쿠르암을 한국 영토로 규정하기 위해 제2조(a)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울릉도 다음에 리앙쿠르암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3일 후 그는 1949년 12월의 미국 초안에서 리앙쿠르암이 일본 영토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만약 리앙쿠르암을 한국 영토로 하려 한다면 울릉도 다음에 리앙쿠르암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⁴¹ 그를 비롯해서 국무부는 리앙쿠르암에 관한 초안의 기록을 거의 잊고 있었다.

보그스의 제안에 대해 국무부가 결론을 내기 전인 7월 19일 이번에는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이 델레스와의 협의에서 새로이 독도와 과랑도를 한국 영토로서 조약에 명기할 것을 요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앞서 언급한 대로 독도의 위치 등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확실한 정보를 얻지 못한 국무부는 부산에 피난해 있던 주한 미국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8월 8일 독도의 위치 및 독도가 리앙쿠르암이라는 사실을 알았다.⁴² 그러자 국무차관보 D. 러스크(D. Rusk)는 영토조서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4) 등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8월 10일 자 서한을 양유찬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 대해 한국 외무부 장관 변영태가 SF조약 조인식 후인 9월 21

39 General Headquarters/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이를 일본 국회도서관은 연합국최고사령관 총사령부라고 번역했으므로 이에 따른다. https://www.ndl.go.jp/constitution/gaisetsu/kenpo_ghq.html(검색일: 2024.10.14).

40 朴炳涉, 2017, 앞의 글, 24쪽; 박병섭, 2016, 앞의 글, 21~22쪽.

41 “Spratly Island and the Paracels, in Draft Japanese Peace Treaty”, 영인은 이석우, 2006, 앞의 책, 245~246쪽; 정병준, 2010, 앞의 책, 759쪽.

42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8, 앞의 책, 232쪽; 정병준, 2010, 앞의 책, 776쪽.

일 SCAPIN-677 등을 근거로 하여 서한에서 반론하고, 한국의 영유를 뒷받침하는 한·일 양국의 역사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한 미국대사관 2등서기관 S. S. 카펜터(S. S. Carpenter)는 그러한 역사 자료가 있다면 국무부에 전달하겠다고 연락했다.⁴³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자료를 미국에 보냈다는 기록은 없는 듯하다.

이처럼 SF조약 조인 후에도 독도에 관한 한·미 협의가 계속되었는데 양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결과 미국은 앞의 딜레스 전보문에서 볼 수 있듯이 러스크 서한의 입장을 계승했다. 하지만 미국은 리앙쿠르암을 적극적으로 일본 영토로 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은 변영태의 서한으로부터 한국이 독도를 실제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 영유권의 근거를 알게 됨으로써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았는지 소극적인 자세로 변했다. 1951년 12월 미국은 SCAPIN-677을 개정했을 때도 여전히 리앙쿠르암을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한 조항을 그대로 두고 SCAPIN-677/1을 지령했다.⁴⁴ 또 SF조약에 독도를 반영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미 각국이 조인한 조약을 변경하는 일은 절차상 어렵다. 조인이라는 행위에는 조약문의 확인 작업도 포함되며, 확인이 끝난 조약문은 다수국 간 조약의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⁴⁵

결국 대일평화조약은 다음 해 1952년 4월 28일 SF조약으로서 발효했다. 위의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연합국이 SF조약에서 독도의 소속을 결정하지 못했음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에서 대일평화조약을 담당했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1966년, “평화조약 제2조(a)가 말하는,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는 조건 안에 그것[독도]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竹島[독도]의

43 “TRANSMITTAL OF LETTER FROM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N KOREAN CLAIM TO DOKDO ISLAND”, U.S. NARA RG 84, Korea, Seoul Embassy, Classified General Records, 1953-55, Entry Seoul, Korea, 1950-55, Box 12, 322, 795,022/10-351: Dokdo, 1952-54; 朴炳涉, 2017, 앞의 글, 31쪽; 박병섭, 2016, 앞의 글, 21~22쪽; 변영태 서한의 영인은 박병섭, 2019, 앞의 글, 55쪽.

44 지령 SCAPIN-677/1은 남서제도에서 일본의 영토 범위를 종래의 북위 30도 이북에서 북위 29도 이북으로 넓히는 것이며, SF조약 제3조의 일부를 선행하여 실시했다.

45 浅田正彦, 2019, 『國際法』第4版, 東信堂, 59쪽.

시마네현 편입이라는 조치가 국제법상의 영토 취득 조건에서 볼 때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는 일은 법률 전문가를 기다린다”라고 적었다.⁴⁶ 가와카미는 독도의 소속이 국제법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와카미 개인의 견해라기보다 외무성이 국제법학자들의 자문을 얻은 후 도달한 견해였다고 볼 수 있다. 외무성 조약국은 1953년 10월부터 1954년 1월까지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논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법학자와 역사학자들을 불러 연구회를 열어 그들의 연구 성과나 학문적 의견을 듣고 성과물을 인쇄했다. 이 연구회에 참가한 국제법학자는 요코타 기사부로[横田喜三郎, 도쿄(東京)대학 교수], 오히라 젨고[大平善梧, 히토쓰바시(一橋)대학 교수], 에노모토 시게하루(榎本重治, 해군성 서기관), 다카노 유이치(高野雄一, 도쿄대학 조교수), 데라사와 하지메(寺澤一, 도쿄대학 조교수),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洗, 고베(神戸)의 국어대학 교수) 등이다.⁴⁷ 이처럼 많은 국제법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었음에도 외무성은 SF조약에서 독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관해 국제법상 견해를 가질 수 없었다. SF조약이 독도에 관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IV.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유효성

SF조약에 대해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려면 SF조약이 유효함을 밝혀야 한다. 현대국제법에서 조약이 무효가 되는 요건은 조약법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일례로서 제52조(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한 국가에 대한

46 川上健三, 199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復刻新装版), 296쪽.

47 外務省, 年度不明, 『竹島問題』, 『日韓外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 外務省公開文書番号 910, 52쪽; 박병선, 201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독도연구』 19, 272~273쪽; 朴炳涉, 2016, 앞의 글, 16쪽.

강박)는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하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따라 체결된 경우, 그 조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국제연합헌장 성립 당시(1946.10.24)에는 이것이 관습법이 되어 있었다고 하므로,⁴⁸ SF조약에도 적용된다. 이 규정은 “불법행위국이든 피해국이든 상관없이 전승국의 자의(恣意)를 강제하는 전통적인 평화조약을 무효로 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⁹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 저촉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가 조약법협약 제75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75조(침략국의 경우)는, “이 협약의 규정은 침략국의 침략에 관하여 국제연합헌장과 합치되게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서 침략국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약과 관련된 어떠한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일본 등 침략국은 국제연합헌장에 근거한 조치인 평화조약을 꼭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SF조약은 전문에서, “일본국으로는 국제연합 가맹을 신청하고, 아울러 모든 경우에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세계인권선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쓰고 있다.⁵⁰ 따라서 SF조약은 국제연합헌장과 합치되게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본은 무조건 SF조약을 따라야 한다.

한편 제75조를 거론한다면, 최근에는 일본 정부를 납득시킬 수 없다. 1995년 당시는 일본 수상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의 담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일본 수상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침략의 정의에 관해서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허위 발언을 하면서,⁵¹ 일본의

48 이 조항은 히로미 마사유키(広見正行)에 따르면, ‘어업 관할권 사건’(영국 대 아이슬란드)의 판결(1973년)에서 ICJ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서 인정되어 있으며, 적어도 국제연합헌장의 발효에 따라 관습국제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고 한다. 広見正行, 2015, 앞의 책, 14쪽.

49 広見正行, 2015, 위의 책, 16쪽.

50 鹿島平和研究所, 1983,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 第1巻, 原書房, 419~420쪽.

51 日本参議院, 『予算委員会議事録』 2013.4.23, 4쪽.

침략전쟁을 인정하지 않았다.⁵² 이러한 일본 정부를 납득시키려면 조약법 협약 제75조 대신에 제52조를 거론해야 한다.

제52조를 SF조약에 적용한다면 SF조약에서 무력의 위협 등을 배경으로 하는 연합국의 자의적인 강제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이를 보기 위해 일본 정부의 SF조약에 대한 반응을 보고자 한다. SF조약 조인식에서 일본 전권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수상은, “다수국이 평화적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나라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 평화조약을 혼연히 수락하는 우리 일본인조차 몇 가지 점에 대해 고뇌와 우려를 느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요시다가 말하는 고뇌와 우려는 ① 영토 문제, ② 경제 문제, ③ 미귀환자(未歸還者) 문제이다. 이들 가운데 ③은 자의의 강제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①과 ②에 대해 검토한다.

1. 영토 문제

1) 일본 정부의 영토에 대한 희망과 SF조약의 결정

SF조약에서 결정된 일본의 영토는 일본 정부가 희망했던 범위의는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이 영유를 희망하는 섬들은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앞의 비밀 자료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적 요구』에서 볼 수 있다. 이를 SCAPIN-677 및 SCAPIN-841⁵³에서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된 섬들 및 SF조약에서 결정된 일본 영토와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 가운데 다이토지마·이오지마(硫黃島)·오키노토리시마(沖ノ島)·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는 당시는 거의 가치가 없었던 작은 섬들이다.

52 국제적으로 침략의 정의는 “침략은 어느 국가가 타국의 주권·영토보전권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헌장에 위배되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국제연합 총회 결의 UNGA Res. 3314, 1974.12.14)이다.

53 1946년 3월 22일 SCAPIN-677을 개정하는 SCAPIN-841이 지령되고, 이즈(伊豆)제도가 일본국의 정의 안에 들어갔다.

〈표 1〉 일본의 희망과 SF조약의 결정

SCAPIN-677·841(일본국 외)	일본의 희망	SF조약
울릉도, 제주도	기재 없음	코리아
리앙쿠르암(독도)	기재 없음	기재 없음
남서제도(북위 30도 이남)	○	△ (북위 29도 이남)
(남서제도 가운데 류큐)	○ 주민투표에서 결정	△
오가사와라지마	○	△
다이토지마, 이오지마	기재 없음	△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기재 없음	△
나카노토리시마(부준제)	기재 없음	기재 없음
쿠릴열도	○	×
하보마이, 시코탄	○	기재 없음
사할린	○ 남반부	×

△: 미국의 신탁통치를 예정, ×: 일본에서 분리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SF조약에서 일본 영토라고 인정받은 섬은 북위 29~30도 사이에 있는 남서제도뿐이다. 그 외 일본 정부가 바란 바는 SF조약에서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 영토는 연합국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일본 정부를 강박하여 인정시킨 것이 아닌지가 의심될 수 있다. 특히 일본 전권 요시다가 SF조약 조인식에서 고뇌와 우려를 표명한 지역은, ① 북방제도의 하보마이, 시코탄, 치시마(쿠릴)열도, ② 남방제도의 오가사와라지마(小笠原島) 및 남서제도의 류큐와 아미미오시마(奄美大島)이다. 이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단계는 정전협정이 중심이며 시기는 카이로선언(1943.12.1)으로부터 SCAPIN-841(1946.3.22)까지, 둘째 단계는 그 이후로부터 SF조약까지다.

2) 정전협정과 첫째 단계 영토 처리

1945년 7월 미·영·중 3국이 일본에 항복을 촉구하는 포츠담선언을 발표하고, 소련이 선언국의 일원으로서 참가했다.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인 제8항은, “카이로선언은 이행되어야 한다.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규슈(九州) 및 시코쿠(四國)와 함께 연합국이 결정하는 여러 작

은 섬들에 한정된다”라고 규정했다. 연합국이란 후술하는 ‘항복문서’에서는 미·영·중·소 4개국이다.

일본 정부는 8월 14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일 의사를 연합국에 통고하고, 9월 2일 성대히 거행된 항복식에서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정전협정이 발효했다. 이 정전협정은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다. 전통적인 정전협정은 단지 군사적 측면만을 규정했는데, 위의 정전협정은 포츠담선언이 그대로 인용되어, 본래 평화조약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영토의 처분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원칙까지 이례적으로 정했다.⁵⁴ 위의 정전협정은 카이로선언에 따라 일본의 침략전쟁을 끝내려는 무력행사의 결과에서 도출되었다. 카이로선언은 “세 위대한 연합국은 일본의 침략을 제지하고 이를 벌하기 위하여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정전협정은 물론 시제법에 맞으며 불법이 아니다.

일본과의 정전협정이 발효되자 연합국은 카이로선언의 영토조항을 실시했다. 이 조항은, “동맹국의 목적은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전쟁 이후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도서 일체를 박탈할 것과 만주·타이완 및 평후 제도과 같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또한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축출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이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연합국은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항복을 명한 일반명령 제1호 ‘육군·해군’을 지령하고,⁵⁵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제압했다. 이들 지역은 SCAPIN-677 제4항에서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다.

위의 일반명령 제1호는 미·영·소 3개국이 같은 해 2월에 맺은 알타협정의 영토조항도 반영했다. 이 내용은 일본은 사할린 남부를 소련에 반환하고

54 高野雄一, 1953, 「第二次大戦の占領・管理—日本の場合を中心として—」, 『國際法講座』第3巻, 有斐閣, 232쪽.

55 “GENERAL ORDER No.1, MILITARY AND NAVAL”, Office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박병섭, 2014, 앞의 글, 142쪽. 이 명령은 1945년 8월 19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에게 예고되었다. 竹前栄治, 1983, 『GHQ』, 岩波書店, 36쪽.

쿠릴열도를 소련에 인도해야 한다고 정했다. 소련은 일반명령 제1호에 따라 북방제도를 점령하고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이 안에 하보마이·시코탄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연합국은 포츠담선언 제8항에 따라 북방제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소도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이 권한을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이 잠정적으로 실시했던 것이 일본 정부에 대한 지령 SCAPIN-677 제3항 및 SCAPIN-841이다. 이 결과를 SCAPIN-677·841 체제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로써 연합국은 정전협정에 따른 제1단계의 일본 영토의 처리를 완료했다.

3) 제2단계 영토 처리와 SF조약

제1단계에서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된 지역의 최종적인 귀속을 결정하는 일이 제2단계인 대일평화조약의 역할이다. 그런데 <표 1>에 있는 섬 가운데 연합국이 최종적인 귀속을 SF 조약에 명시한 지역은 울릉도·제주도 및 북위 29~30도에 있는 남서제도뿐이다. 나머지 지역은 최종적인 귀속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평화조약으로서 이례적이다. 이처럼 처리되었던 배경에는 정전협정 이후 격화된 미·소 냉전이 있다. 1950년 냉전이 한국전쟁으로 발전하자 대일평화조약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식이 급변했다. 군부는 그동안 대일평화조약에 소련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국무부와 대립했는데, 공산주의 국가와 직접 싸우게 되자 그 주장을 철회했다. 또한 국무부는 일본을 군사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통감하고 군부의 전략에 따라 류큐등을 미국이 직접 통치할 방안을 찾았다. 이처럼 미국 내 갈등이 완화되어 대일평화조약의 책정이 가속되었다.⁵⁶ 국무부는 냉전을 고려해 북방제도 및 남서·남방 제도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

56朴炳洙, 2014b, 앞의 글, 37쪽.

(1) 북방제도

본래 북방제도는 SF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미·영 양국이 전쟁 중에 체결했던 알타협정에 따른다면 소련에 귀속시켜야 한다. 그런데 양국은 냉전 탓으로 소련과 대립하게 되자 소련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신중하게 되고, 북방제도의 귀속을 SF조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SF조약 제2조(c)는 “일본은 쿠릴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귀속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 쿠릴열도에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포함할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치시마(쿠릴)열도의 범위는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⁵⁷ 하보마이·시코탄이 일본 영토가 될지 등에 관해 SF조약의 해석을 보류하고 있었다. 한편, 미국은 하보마이·시코탄을 일본 영토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미·영 협의에서 덜레스는 “소련이 하보마이·시코탄을 점령하고 있으므로 일본으로의 반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안해 영국의 동의를 얻었다.⁵⁸ 이런 경위에서 덜레스는 조약 조인식에서 “쿠릴 열도는 하보마이군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의견이다. 만약 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난다면 제22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단언했다.

일본 정부는 덜레스 발언에서 중요한 언질을 받은 셈이다. 덜레스는 하보마이에 가까운 시코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 정부는 확대 해석하고, 시코탄도 SF조약에서 일본 영토가 되었다고 간주했다. 요시다는 “홋카이도의 일부인 하보마이·시코탄을 소련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소련 전권을 비난했다. 또 요시다는 “치시마열도 남부”의 두 섬 구나시

57 外務省, 2007, 『日本外交文書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 対米交渉』, 674쪽.

58 Department of State USA, 1951, 앞의 책, Part 1, p. 1114; 朴炳涉, 2014c, 앞의 글, 56쪽; 박병섭, 2014, 앞의 글, 179쪽.

리·에토로후는 일찍이 러시아 제국이 1850년대에 일본 영토로 인정했던 섬이라고 설명하고, 이들 섬을 소련이 자국 영토에 편입한 부당성을 비난했다. 구나시리·에토로후가 조약에서 말한 치시마(쿠릴)열도의 남부에 있다는 이 발언은 두 섬이 이 열도에 포함된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방 4도 인식은 일본 정부가 1946년 미국을 통해 연합국에 배포한 영토조서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1)⁵⁹의 인식과 일치하므로 당시 일본 정부의 기본 인식이었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 외무성은 구나시리·에토로후는 치시마(쿠릴)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⁶⁰ 이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남서·남방 제도

미소 냉전의 결과, 미국은 극동의 안전보장을 중대시하는 생각에서 일본의 남서·남방 제도를 자국의 기지처럼 자유롭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미국이 이들 섬을 직접 통치해야 한다는 방침을 간직했다. 영국도 비슷한 방침을 가졌으며, 일본은 이들 섬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51년 1월 덜레스는 일본을 방문해 대일평화조약을 논의했다. 이때 요시다는 남서제도 등을 거론해, “일본은 미국의 어떠한 군사적 요구도 받아들일 것이니 류큐·오가사와라 제도의 신탁통치는 재고해 주기를 원한다, 신탁통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일본도 공동 시정권자가 되고 싶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덜레스는 “국민감정은 잘 이해되지만 [포츠담] 항복조항에서 결정된 일이니, 이를 거론함은 불행한(unfortunate) 일”이라고 말하고 단호히 거부했다.⁶¹ 덜레스의 발언에 충격을 받은 요시다는 류큐 등의 영유를 포기할

59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1946,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 The Kurile islands, The Habomais and Shikotan; 原貴美恵, 2005, 前掲書, 122~124쪽; 박병섭, 2014, 앞의 글, 153~154쪽; 朴炳涉, 2014a, 앞의 글, 55~56쪽.

60 外務省, 2023, 『われらの北方領土』, 2023年版, 11쪽.

61 外務省, 『日本外交文書 平和条約の締結に関する調書』第2冊, 149~150쪽, 158쪽; 박병섭, 2014, 앞의 글, 164쪽; 朴炳涉, 2014b, 앞의 글, 39쪽.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 의한 남서·남방 제도의 직접 통치는 법적 근거가 빈약하며, 소련의 반대가 뻔했다. 미국은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명목상 신탁통치를 SF조약에 규정했다. 제3조는 미국이 남방제도 및 북위 29도 이남에 있는 남서제도에 대해 신탁통치를 시행함을 국제연합에 제안하며, 그때까지 미국이 통치한다고 규정했다. 국제연합헌장은 신탁통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7조 제1 항(b)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적국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은 협정에 따라 이 제도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딜레스는 SF조약 조인식에서 남서·남방 제도를 신탁통치로 하는 이유를, “연합국의 의견이 이처럼 [두 가지로] 갈라져 있으므로, 최선의 방식은 이들 섬에 대해 미국을 시정권자로 하여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제도의 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편, 일본이 남아 있는 주권(residual sovereignty)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⁶² 딜레스가 말하는 잔존주권의 의미는 미국은 통치권을 가지지만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의미인 듯하다.

딜레스 발언을 일본은 반갑게 받아들였다. 요시다는 조인식에서, “아마미 오시마, 류큐열도, 오가사와라제도, 기타 평화조약 제3조에 따라 장차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북위 29도 이남 제도의 주권이 일본에 남겨진다는 미국 전권 및 영국 전권의 발언을 저희는 국민의 이름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양해합니다”라고 말했다. 요시다는 완전히 포기했던 류큐 등에는 일본의 잔존주권이 있다고 다름 아닌 딜레스가 인정했으므로 매우 중요한 언질을 얻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련과 인도는 끝까지 반대했다. 소련 전권은 SF조약 조인식에서 미국은 미·영·중 3개국이 영토 확장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카이로선언을 위반한다고 비난했다. 카이로선언은, “동맹국은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이익도 요구하지 않으며, 영토를 확장할 의도 역시 갖고 있지 않다”라고 기록했다. 한편 인도는 SF조약 조인식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류큐 등 영토 문제이다.

62 毎日新聞社, 1952, 앞의 책, 487쪽.

위의 경위에서 분명히 보이듯이 제2단계인 SF조약에서 영토 문제 관해 무력을 배경으로 한 연합국에 의한 자의의 강제는 없었다. 오히려 SF조약은 SCAPIN-677·841 체제를 개선하는 등 일본에 이득을 준다. 일본의 혜택은 ① 하보마이는 일본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쿠릴열도에 속하지 않고 미국에서 언질을 얻었다, ② 일본의 영역이 북위 30도 이북에서 북위 29도 이북으로 확대되고, 남방제도 및 북위 29도 이남 남서제도에는 일본의 영유권이 남아 있다 등이다. 일본 외무성·법무부(法務府)는 요시다가 말하는 고뇌와 우려에 대해, “이 정도의 고뇌와 우려는 과거 일본이 세계에 준 고통과 참해(慘害)를 생각하면 어찌면 당연한 대가일지도 모른다.”⁶³라고 주장하고, 스스로 고뇌와 우려를 받아들일 의사를 표했다. 이처럼 희생이 어느 정도 있었으나 일본은 속죄의 식에서 영토 문제에 관한 SF조약의 규정을 받아들였다.

2. 경제 문제

요시다는 SF조약 조인식에서 일본이 조약에 따라 전 영토의 45%를 그 자원과 함께 상실하고, 일본인은 나머지 황폐한 지역에 갇혀 있으므로 경제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특정 연합국에 배상할 수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시다가 말하는 ‘특정 연합국’이란 배상을 요구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미얀마), 베트남 등 일본군에 의한 피해가 컸던 동남아 4개국이다.

배상을 규정한 SF조약 제14조(a)는, “일본국은 전쟁 중에 발생한 손해 및 고통에 대하여 연합국에 배상해야 하는 것이 승인된다. 그러나 존립이 가능한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일본국의 자원은 일본국이 모든 상기 손해 및 고통에 대해 완전히 배상하고, 아울러 다른 부채를 이행하기에는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승인된다.”라고 규정하고 일본 경제의 실정을 배려했다.

당초 미국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징벌적인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작성했

63 外務省条約局·法務府法制意見局, 1951, 『解説 平和条約』, 印刷庁, 8쪽.

었다. 또한 미영 양국과 함께 카이로선언을 발표한 중화민국은 특히 전범 문제와 배상 문제를 중시하고, 1944년 말 일본에 요구하는 배상액을 500억 달러 이상으로 산정했다.⁶⁴

그런데 미소 냉전의 진행으로 인해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은 1947년경부터 극동 전략을 전환했다. 미국은 일본을 미국에 우호적인 태평양 경제권에 통합하여 믿음직한 미국의 동맹국으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⁶⁵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대일평화조약에서 배려했다.

결국 SF조약 제14조(b)는 “이 조약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합국은 연합국의 모든 배상청구권, 전쟁 수행 중에 일본국 및 그 국민이 가진 행동으로 발생했던 연합국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및 점령의 직접 군사비에 관한 연합국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남아 4개국 외 연합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배상받는 것을 포기했다. 이런 배상 포기 조항이 규정된 SF조약은 거액의 배상을 두려워했던 일본으로서는 물론 환영해야 할 조약이다. 경제 면에서도 연합국의 자의적인 강제가 없었다. 한편, SF조약 조인식에 초대되지 않았던 중화민국은 1952년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는데 SF조약의 취지를 따라 배상받는 것을 포기했다.

일본 전권인 요시다 시게루 수상은 SF조약 조인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SF조약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조약으로서는 세계의 역사에서 예가 보이지 않는 공정한 것이다”라고 극찬했다.⁶⁶ 이 발언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SF조약에서는 영토 면에서도 경제 면에서도 연합국에 의한 자의의 강제는 없었으며, 조약법협약 제52조에 저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SF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이 가능하다.

64 川島真, 2022, 「第7章 戦後初期中国における対日講和観」,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183쪽.

65 Department of State USA, 194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p. 485~486; 박병섭, 2014, 앞의 글, 157쪽; 朴炳涉, 2014a, 앞의 글, 51쪽.

66 外務省条約局・法務府法制意見局, 1951, 앞의 책, 3쪽.

V.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과 문제점

1. 독도에 대한 적용

SF조약은 제2조(a)에서 울릉도·제주도·거문도를 코리아의 영토로 규정했다. 코리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유엔총회 결의 제195호(1948.12.12)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위의 세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다. 한국은 SF조약의 체결국이 아니지만, SF조약 제21조에 따라 제2조 등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⁶⁷

한편, SF조약은 독도를 규정하지 못했다. SF조약은 조약법협약에 비추어 무효가 아니므로 SF조약에 규정이 없는 독도에 대해 SF조약 체결 시에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조약 체결 당시는 한국이 독도를 통치하고 있었다. 특히 1948년 6월 독도에서 미국 공군기 폭격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과도정부가 사건을 처리했고, 독립 후에는 경상북도 지사가 희생된 어민을 위해 위령비를 독도에 세우는 등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은 SCAPIN-1033(1946.6.22)에 따라 일본 선박이나 승조원이 리앙쿠르암에 접근하거나, 이 섬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독도는 일본에서 완전히 분리되었다. 따라서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으로 인해 독도는 한국이 영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현대국제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좀 문제가 있다.

2. 두 가지 현상유지원칙

역사적으로 실효적인 점유를 기초로 하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은 법적 권원을 기초로 하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과 종종 상충했다. 이 경우 후자

67 이익을 받을 권리만 가지며, 손실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최지현, 2023,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비당사국 지위와 독도」, 『독도연구』 34, 60~61쪽.

가 우선됨은 머리말에서 썼다. 박희권은 “역사상 스페인 지배하에 있었던 중남미 제국가 간에서도 UTI POSSIDETIS [JURIS]의 보조개념으로서 UTI POSSIDETIS DE FACTO가 원용되기도 하였다”⁶⁸라고 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독도가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한국 영토로 판단되더라도 법적 권원을 바탕으로 하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뒤집힐 수도 있다.

실효적인 점유나 활동과 법적 권원과의 관계에 대해 ICJ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분쟁 사건에서 명확한 판결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1960년 프랑스에서 각각 독립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가 양국 간 국경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까지 일으켰던 국경분쟁 사건이다.⁶⁹ ICJ에서 부르키나파소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입장에 섰다. 즉 부르키나파소는 식민지 행정당국의 실효적인 활동(effectivités)에 따라 현존하는 법적 권원이 뒷받침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 증거적 가치는 어디까지나 법적 권원에 의해 체계적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행정당국의 실효적인 활동이 법적 권원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말리는 조약의 문언에 어긋나는 경우는 실효적인 행동을 고려할 수 없다고 인정하지만, 협정상이나 입법상 국경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실효적인 행동이 행해졌는지 조사가 필수적인 작업이라 하면서 그 보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para. 63).⁷⁰

이러한 양국의 주장에 대한 ICJ 판결(1986.12.22)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이 법과 완전히 합치하는 경우, 즉 실효적인 활동(effectivités)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부가되는 경우는 ‘effectivités’의 유일한 역할은 법적 권원에서 도출되는 권리행사를 확인하는 것이다. ② 사실이 법에 합치하지 않는 경

68 박희권, 1990, 「UTI POSSIDETIS의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35(1), 194쪽.

69 波多野里望·尾崎重義, 1996, 『國際司法裁判所判決と意見』 第二卷, 國際書院, 313쪽.

70 ICJ REPORTS,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REPUBLIC OF MALI) JUDGMENT OF 22 DECEMBER 1986; 許淑娟, 2012, 『領域權限論』, 東京大学出版会, 230쪽. 이하 ‘para.’는 ICJ REPORTS의 paragraph를 말한다.

우, 즉 분쟁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법적 권원을 가진 국가 외에 의해 실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법적 권원을 가지는 자가 우선한다. ③ ‘effectivités’가 어떠한 법적 권원과도 공존하지 않는 경우는 ‘effectivités’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④ 마지막으로 법적 권원이 이와 관련된 영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경우 ‘effectivités’는 실행에서 어떻게 법적 권원이 해석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para. 63).⁷¹ 이처럼 ICJ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우선됨을 제시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③이나, 모호한 경우 ④에만 실효적인 활동(점유)이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다. 이 기준 등을 바탕으로 ICJ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을 결정했다. 위와 같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우선되므로, 이 글은 이 원칙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의 독립 회복 시에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 시점은 국가가 독립하는 순간이 기본이다. 이는 독립 후 국경선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요하며, 독립하는 순간의 영역 상황을 사진으로 찍은 듯한 법적 문서가 무엇보다 중시된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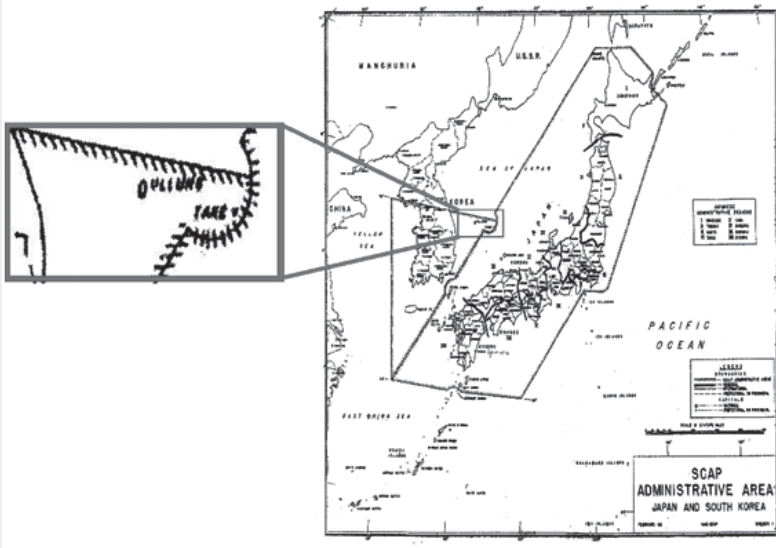
VI. 한일 양국의 독립과 ‘법률상 현상유지원칙’

1. 한국에 대한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

광복 직후 남부 코리아 구역은 미국 태평양육군(AFPAC: Army Forces, Pacific Ocean Areas) 관할하에 있는 ‘재코리아 미국육군 총사령부 군정청’(USAMGIK: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이하 ‘미군정청’)에 의해 지배되었다. AFPAC은 1947년 미국 극동군(FECOM: Far East Command)으로 개편되었다.

71 許淑娟, 2012, 위의 책, 230쪽. 許淑娟은 원문의 ‘act’를 ‘事實’이라고 번역했다.

72 許淑娟, 2012, 위의 책, 227쪽.



〈그림 1〉〈SCAP 관할구역, 일본 및 남부 코리아〉

출처: NARA, RG 554, Entry A1 1256,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 - 6/30/1949, Box7(국사편찬위원회 전자도서관에서 재인용).

이듬해 8월 한국은 미군정청의 지배로부터 독립했다. 그때 한국 정부가 미군정청에서 계승한 영역은 〈그림 1〉〈SCAP 관할구역, 일본 및 남부 코리아〉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독도를 포함하고 있다.

본래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국가가 독립하는 순간에 적용되는 것이 기본인데 독도, 울릉도, 제주도 등의 소속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 적용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수락한 포츠담선언(1945.7.26) 제8항이 일본 주변 소도의 귀속은 연합국이 결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제8항은 포츠담선언의 전체 구상 속에서 보면,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미국에게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태평양의 패권을 중시하는 미국은 소련이 반발하거나 인도가 반대하거나, 류큐·오가사와라 등을 미국의 요새로 만드는 일을 중요시했고, 그리하여 미군이 바라는 대로 일본 주변에 바다의 경계를 설정했다. 이 경계선을 그린 것이 SCAPIN-677 제3항을 반영한 〈SCAP 관할구

역도)이다. 다만 SCAPIN-677은 잠정적인 결정이며,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 SCAPIN-677 제6항에 명시되어 있다. 최종 결정은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제주도·울릉도에 대해 통치권을 가졌지만, 영유권은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어 일본 영역이 확정될 때 함께 결정된다. 실제로 제주도조차 일본 영토가 될 가능성이 있었음은 앞에 쓴 바 있다. 따라서 독도 등 한·일 간 소도에 대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려면 일본의 독립이 회복되는 대일평화조약의 발효 시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그때 일본의 영토나 한·일 간 바다의 국경이 확정된다.

2. 일본의 독립 회복과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의 적용

앞의 지도(SCAP 관할구역도)는 1946년 당시 미국이 독도를 한국 영역으로 취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다. 그런데 이 지도는 마치 남부 코리아를 SCAP 관할구역처럼 그렸는데, 1946년 당시 남부 코리아는 태평양육군(AFAPAC) 아래 미군정청이 관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도의 신뢰성이 의문시될 수 있으므로 규명해야 한다.

이 의문에 대해 박병섭은, “맥아더가 SCAP과 AFPAC 사령관을 겸임한 관계상 GHQ 각 부처는 한국에서의 미군정에 관한 특정문제에 대해 어느 시기까지 맥아더에게 조언을 했다.⁷³ 그 사이에 <그림 1>이 그려졌으므로 한국 영역이 SCAP 관할처럼 그려졌다”라고 간단히 설명했다.⁷⁴ 이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 당시 일본이 어떻게 통치되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8월 일본 정부는 포츠담선언을 수락했고, 9월 2일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연합국과 맺었다. 연합국은 포츠담선언을 실행하

73 조언을 한 시기는 天川晃他編, 1996, 『GHQ日本占領史』第2卷, 日本図書センター, 72쪽에 따르면 GHQ 민정국은 1947년 2월까지, 기타는 1948년 3월까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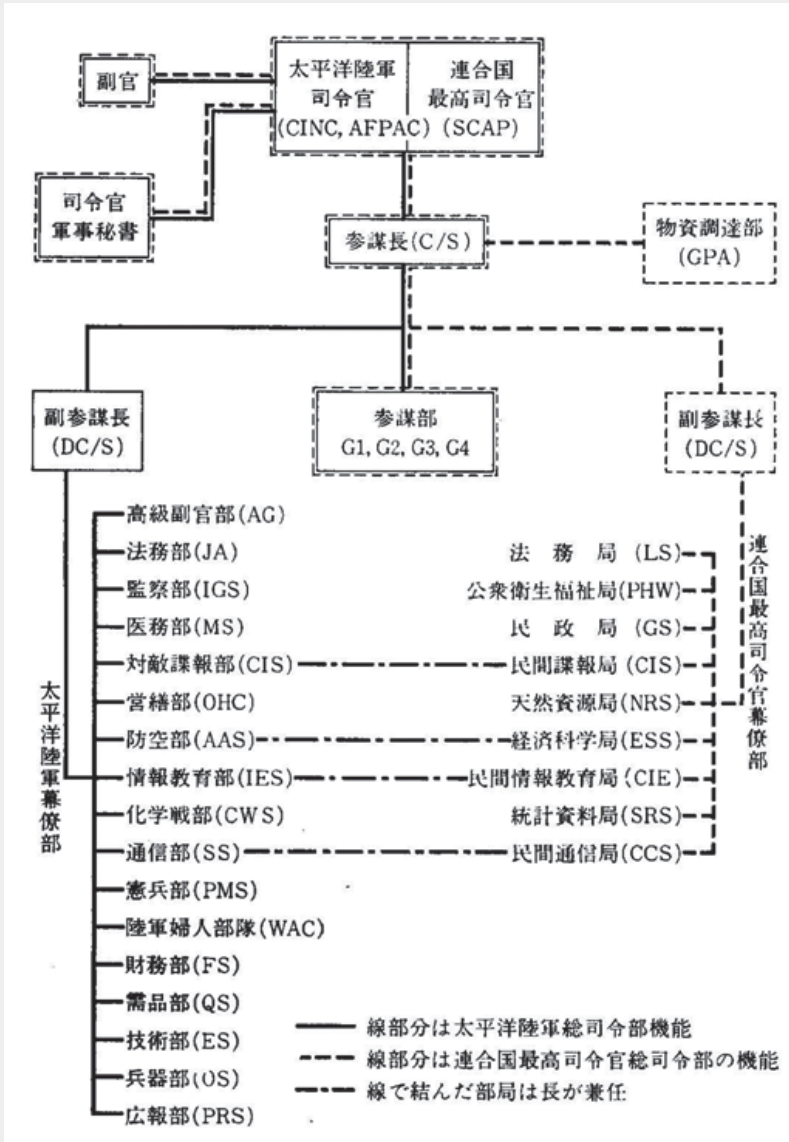
74 박병섭, 2014, 앞의 글, 145쪽; 朴炳涉, 2014a, 앞의 글, 46쪽.

기 위해 AFPAC 사령관 맥아더를 SCAP로 겸임시켜 일본으로 파견했다. 맥아더는 SCAP 총사령부(GHQ)를 창설할 때 많은 인재를 그가 관할하는 AFPAC에서 구했다. 이로써 두 조직은 사령관뿐만 아니라 부관이나 실무책임자인 참모장, ‘GHQ/SCAP 및 AFPAC 조직도’⁷⁵(〈그림 2〉참고)에서 일점쇄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GHQ/SCAP 국장의 절반 가까이가 AFPAC 부장을 겸무했다. 또한 AFPAC 총사령부(GHQ)는 도쿄에 있는 SCAP/GHQ와 같은 건물 안에 있었으며, 맥아더는 GHQ/SCAP과 GHQ/AFPAC를 거의 일체처럼 운용했다. 따라서 AFPAC의 일은 부분적으로 SCAP의 일이 되었으므로 〈SCAP 관할구역도〉가 자연스럽게 작성된 것이다.

한편, 연합국은 GHQ/SCAP의 정책에 관한 실시 상황을 재검토할 목적으로 워싱턴에 극동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그 현지 기관으로서 도쿄에 대일이사회(對日理事會)를 설치하여 GHQ/SCAP과 정기적으로 협의했다. 극동위원회의 결정은 미국 정부가 SCAP에 지령으로 하달했다. 그러나 미·소 양국 간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이러한 기구가 잘 기능하지 않아, 일본에 대한 SCAP 군정은 거의 미국의 의도대로 실시되었다. 즉 군정 후반기는 미국이 거의 독단으로 일본을 지배했다.

이러한 미국의 지배로부터 일본은 1952년 독립을 회복했다. 일반적으로 독립한 국가의 영토는 관련 조약에서 결정되는데 조약에서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한다. ICJ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 분쟁 사건 판결에서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의 의의에 관해, “이 원칙은 국제법의 어떠한 특정 체제에만 적용되는 특별규칙이 아니다. 이는 장소를 불문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과 논리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통치 세력이 철수함에 따라 국경선에 이의를 제기하고 동족 간 투쟁이 유발될 수가 있다. 현상유지원칙은 이러한 동족 간 투쟁으로 인하여 신생국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위협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para. 20)”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ICJ에 따르면 이 원칙은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독립하는 국가만이 대상이 아니라,

75 竹前榮治, 1983, 앞의 책, 89쪽.



〈그림 2〉 SCAP 및 AFPAC 조직도

출처: 竹前榮治, 1983, 『GHQ』, 岩波書店, 89쪽.

통치 세력이 철수할 때 독립하는 국가에도 독립과 안정성이 위협에 빠지지 않도록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다.

일본의 경우 1952년 4월 28일 SF조약이 발효되고 SCAP·FECOM 총사령부의 군정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했다. FECOM은 AFPAC이 개편된 조직이다. 일본의 영토는 SF조약에 규정되었는데 일찍이 SCAPIN-677에서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된 한·일 간 소도 중에서 독도만은 SF조약에 규정되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에 관해서는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는 순간에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유보되었던 독도·울릉도·제주도에 대한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그 순간에 적용할 수 있으며, 한·일 양국 간 바다의 국경이 확정된다.

SF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유효한 법적 문서는 SCAP이 작성한 SCAPIN-677/1 등이다. 이는 SCAPIN-677 등을 개정한 것인데 리앙쿠르암을 일본국의 정의에서 배제한 규정에는 변함이 없다. 리앙쿠르암은 역사적으로 한국, 아니면 일본에 속한다는 추측이 성립되므로 일본국의 정의에서 배제되면 한국에 속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앞의 <SCAP 관할구역도>이다. 지령 SCAPIN-677은 단지 리앙쿠르암을 일본에서 분리했을 뿐인데, 이 지도는 리앙쿠르암을 남부 코리아 영역으로 그렸다. 그 후 한·일 간 바다의 경계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없다. 따라서 이 지도는 자료 SCAPIN-677/1의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자료가 근거가 되어, SF조약에서 결정하지 못했던 독도가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의해 한국 영토로 결정된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한,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ICJ가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분쟁 사건에서 판단한 사실과 법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양자가 합치하는 사례①에 해당한다. 즉 실효적인 점유(effectivités)가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부가되는 경우가 된다. 따라서 실효적인 점유는 법적 권원에서 도출되는 권리행사를 확인하는 것이며,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은 사실상도 법률상도 현상유지원칙에 의해 공고히 된다.

Ⅶ. 맺음말

아시아·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이는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연합국과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이 정전협정은 포츠담선언이 그대로 인용되어, 본래 평화조약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영토의 처분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의 원칙까지 이례적으로 정했다. 이런 정전협정은 카이로선언에 따른 무력행사의 결과로 도출되었으나, 이는 물론 시제법에 맞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발효되자, 연합국은 포츠담선언이 인용한 카이로선언의 영토조항에 따라 일본 영토의 처분을 시작했다. 일본이 침략으로 약탈한 영토 등을 일본에서 분리했다. 또한 포츠담선언의 영토조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일본 주변 소도를 처분하는 SCAPIN-677 제3항을 지령하고 일본 바다의 경계를 정했다. 이를 지도에 표시한 것이 〈SCAP 관할구역도〉이다. 또한 연합국은 제3항을 조금 수정하는 SCAPIN-841을 지령해 SCAPIN-677·841 체제를 확립했다. 이로써 연합국은 첫째 단계의 영토 처분을 완료했다. 이와 같이 분리된 지역의 귀속을 확정하는 일 등이 둘째 단계인 대일평화조약의 몫이다.

SCAPIN-677에 따라 일본에서 분리된 북방제도도 소련이 알타협정에 따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 또한 〈SCAP 관할구역도〉에서 남부 코리아의 영역으로 그려진 독도·제주도·울릉도는 미국 태평양육군(AFPAC), 훗날 극동군(FECOM)이 관할하는 미군정청에 의해 지배되었다가, 1948년 8월 독립한 한국에 계승되었다. 이후 SCAPIN-677은 1951년 12월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SCAPIN-677/1이 지령되었는데, 한·일 간 바다의 경계에는 변경이 없었다. 다만 이 지령 등은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유효하며, 최종 결정은 물론 대일평화조약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 종결을 선언하는 평화조약은 본래 영토문제를 완전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1951년 9월 조인된 SF조약은 독도

의 소속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유는 SF조약을 주도한 미국이 대일평화조약 미·영 공동초안에 리앙쿠르암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된 시기가 SF조약 조인식 2개월 전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조약에 한국 영토로 명기하도록 요망이 있었던 독도가 리앙쿠르암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기는 SF조약 조인식 1개월 전이었다. 미국은 급히 일본 정부가 작성한 영토조서 『일본 본토 주변의 소도』(4)를 바탕으로 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리스크 서한을 한국 정부로 보내고 회답을 기다렸다. 그 사이에 SF조약 조인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조약문의 변경은 불가능해졌다.

SF조약 조인 보름 후 미국은 한국 외무장관 변영태로부터 회신을 받아 협상을 계속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의 주장을 알게 된 미국은 독도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현상 유지하는 길을 택했다. 즉 미국은 리스크 서한의 입장을 계속 취하는 한편, 12월 개정된 SCAPIN-677/1에서 독도를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두었다. 한편 SF조약은 이듬해 4월 28일 발효했고, 일본은 SCAP·FECOM의 군정으로부터 독립을 회복했다.

SF조약이 독도를 명기하지 못했으므로 독도는 두 가지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이며, 이는 평화조약 체결 시에 적용된다. 또한 평화조약은 현대국제법에 비추어 유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은 조약법협약이 규정하고 있으며, 제 52조는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국가를 강박하는 조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75조에 따라 침략국의 침략에 관하여 국제연합헌장과 합치되도록 취해진 조치의 결과로서 침략국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조약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침략국인 일본은 국제연합헌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SF조약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2년 집권한 아베 내각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대동아(大東亞)전쟁이라고 부르는 세력에 대해 위의 제75조를 거론해도 소

용이 없다. 이러한 경우는 제52조를 거론하는 것이 낫다. 제52조는 무력을 배경으로 하여 전승국이 자의를 강제하는 조약을 무효로 규정한다.

한편 연합국은 일본 주변 소도를 자의적으로 일본에서 분리하고, 자국의 영토에 편입하거나, 자국 영토처럼 통치했다. 이런 행위는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자의의 강제 결과이므로 자칫하면 SF조약이 조약법협약 제52조에 저촉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정전협정 당시 영토 처분의 첫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둘째 단계인 SF조약에는 그런 자의의 강제가 없었으며 조약법협약 제52조에 저촉하지 않는다. 실제로 SF조약은 일본 수상 요시다 시게루가 말했듯이 이 종류의 조약으로서는 세계의 역사에 예가 보이지 않는 공정한 것이었다. 이처럼 SF조약에는 무력을 배경으로 한 연합국에 의한 자의의 강제는 없었을뿐더러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포츠담선언 제8항을 바탕으로 하는 SCAPIN-677·841 체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것이었다. 또한 배상 문제도 일본 경제를 충분히 배려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SF조약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위와 같이 SF조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SF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원래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은 평화조약에 규정이 없는 한 당사국 간 법률관계는 평화조약 체결 시의 상태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SF조약 체결 당시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일본은 독도로 접근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한국은 SF조약 체결국이 아니지만 영토에 관한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SF조약에서 규정하지 못했던 독도에 대해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하면 독도의 영유권은 한국이 지닌다.

그러나 현대국제법에서는 부르키나파소/말리 국경분쟁 사건에 대한 ICJ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실효적인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보다 법적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또 하나의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후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며 탈식민지화 과정에 따른 독립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으로는 구 통치 세력이 몰러나고 국가

가 독립할 때 적용된다. 이는 한국의 독립 및 일본의 독립 회복 시에도 적용되며, 독립국의 영토는 특별한 영토 관련 조약 등이 없다면 구 통치 세력의 법적 문서가 드러내는 경계가 국경선이 된다.

한국은 1948년 8월 미국 극동군(FECOM) 아래에 있는 미군정청의 군정으로부터 독립했고, 영토는 <SCAP 관할구역도>에 표시된 남부 코리아의 영역을 미군정청으로부터 계승했다. 이 영역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SCAPIN-677 제3항에 기재된 한·일 간 소도, 즉 독도·제주도·울릉도의 최종적인 귀속은 포츠담선언 제8항에 따라 연합국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한국은 이들 세 섬에 대해 통치권을 가질 뿐이다. 영유권 결정은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고 일본 영토가 조약 등에서 규정될 때까지 유보된다.

한편 일본은 항복문서에 서명한 직후 SCAP·AFPAC 군정의 지배를 받았는데, 1952년 4월 SF조약이 발효함에 따라 SCAP·FECOM 군정으로부터 독립했다. SF조약은 한국의 영유권이 유보된 위의 세 섬 가운데 제주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했으나, 독도는 소속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럴 경우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의 독립 시 유보된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SF조약 발효 시에 적용할 수 있다.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유효한 법적 문서는 SCAPIN-677/1이다. 또한 한·일 간 바다의 국경선에는 변경이 없었으므로 <SCAP 관할구역도>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 SCAP 자료에 따라 일본이 독립을 회복하는 순간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의해 독도는 한국이 영유권을 지닌다. 결국 법률상도 사실상도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8, 『독도 자료 III』 미국편, 국사편찬위원회.
- 김명기, 2012, 「SCAPIN 제677호에 관한 한국정부의 견해 검토」, 『독도연구』 13.
- _____, 2015, 「대일강화조약 제2조(a)항에 규정된 울릉도에 독도 포함 여부 문제의 검토」, 『독도연구』 18.
- 박병섭, 2014,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연구』 16.
- _____, 201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독도 정책」, 『독도연구』 19.
- _____, 201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독도연구』 21.
- 박희권, 1990, 「UTI POSSIDETIS의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35(1).
- 외무부, 1977, 『獨島關係資料集 I : 往復外交文書, 1951~76』, 외무부.
- 이석우, 2006, 『대일강화조약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 정갑용, 2021, 「Uti Possidetis 법리와 독도영유권」, 『원광법학』 37(2).
- 정병준, 2010, 『독도 1947』, 돌베개.
- 정재민, 2019, 『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의 인정가능성 확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지현, 2023, 「한국의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비당사국 지위와 독도」, 『독도연구』 34.
- British Foreign Office, *Japan: Correspondence, F.O. 371*, Scholarly Resources Inc.
-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1947a,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I*, Ryukyu and Other Nansei Islands.
- _____, 1947b,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V*, Minor Islands in the Pacific, Minor Islands in the Japan Sea.
- Department of State USA, 1947,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6,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_____, 194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7,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_____, 1951,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Vol. 6, Part 1,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ICJ REPORTS, *CASE CONCERNING THE FRONTIER DISPUTE (BURKINA FASO / REPUBLIC OF MALI) JUDGMENT OF 22 DECEMBER 1986*, ICJ.

H. Grotius 著, 一又正雄譯, 1951, 『グローチウス 戦争と平和の法』第3卷, 巖松堂.

浅田正彦, 2019, 『国際法』第4版, 東信堂.

天川晃 [ほか]編, 1996, 『GHQ日本占領史』2卷, 日本図書センター.

外務省, 2002, 『日本外交文書 平和条約の締結に関する調書』第2冊.

_____, 2023, 『われらの北方領土』, 外務省.

_____, 年度不明, 「竹島問題」,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XV, 外務省公開文書番号 910.

外務省, 1949, 『対日講和條約についての基本的要求』.

外務省条約局・法務府法制意見局, 1951, 『解説 平和条約』, 印刷庁.

鹿島平和研究所, 1983, 『日本外交主要文書・年表』第1卷, 原書房.

川上健三,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_____, 199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復刻新装版).

川島真, 2022, 「第7章 戦後初期中国における対日講和観」,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と東アジア』, 東京大学出版会.

太寿堂鼎・吉井淳, 1995, 「ウティ・ポッシデティス」, 『国際関係法辞典』, 三省堂.

高野雄一, 1953, 「第二次大戦の占領・管理一日本の場合を中心として」, 『国際法講座』第3卷, 有斐閣.

竹前栄治, 1983, 『GHQ』, 岩波書店.

塚本孝, 1994, 「平和条約と竹島(再論)」, 『レファレンス』, 国会図書館.

中村麗衣, 2003, 「日印平和条約とインド外交」, 『史論』56卷.

新納摩子, 1997, 「国際法におけるウティ・ポッシデティスの再検討」, 『立命館法学』254.

朴炳涉, 2014a,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と千島・竹島 = 独島問題(1)」, 『北東アジア文化研究』38.

- _____, 2014b,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 = 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
- _____, 2014c,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 = 独島問題(3)」,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
- _____, 2016,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後の日本の竹島 = 独島政策」,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2.
- _____, 2017,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から洩れた論争中の島々」,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3.
- 波多野里望・尾崎重義, 1996, 『国際司法裁判所 判決と意見』 第二卷, 国際書院.
- 原貴美恵, 2005, 『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の盲点』, 溪水社.
- 広見正行, 2015, 『現代国際法における国際武力紛争終結の法理』, 上智大学(2014年度学位論文).
- 許淑娟, 2012, 『領域権原論』, 東京大学出版会.
- 毎日新聞社図書編集部, 1952, 『対日平和条約』, 毎日新聞社.
- 日本政府, 1951,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の説明書』, 芦田均関係文書.
- 李昌偉, 2024, 「連合国の日本領土に対する政策と独島の領有権」, 『法學論叢』(國民大學校) 第37卷 第1號 (通卷 第77號).

국문초록

원래 전쟁 종결을 선언하는 평화조약은 영토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나 하보마이 등을 명기하지 못했다. 독도의 경위를 말하면, 동 조약 조인식 2개월 전 미국은 조약 초안에 리앙쿠르암(독도)이 빠져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독도를 조약에 규정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한국 정부와의 협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약 조인식이 거행되었고, 조약의 수정은 불가능했다. 결국 한·미 협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미국은 독도의 귀속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되었다.

이처럼 독도는 조약에 규정하지 못했으므로 독도의 귀속은 두 가지 현상유지원칙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실상 현상유지원칙'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조약법협약에 비추어 무효가 아니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조약 체결 당시 한국만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 그러나 이 원칙보다 또 하나의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이 우선하므로 후자의 검토가 더 중요하다.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은 세계 어디에서나 통치 세력이 철수하고 국가가 독립할 때 적용되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이며, 한·일 양국의 독립 당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독도나 제주도 등 일본 주변 소도의 귀속은 포츠담선언 제8항에 따라 연합국이 결정한다고 하므로, 한국이 독립한 1948년에는 이들 섬에 대해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적용은 대일평화조약이 발효되고 일본이 독립을 회복할 때까지 유보된다. 그때 한·일 간 소도의 귀속이 결정된다.

한편,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주도·울릉도 등을 명기했으나 독도를 규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독도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그때 중요한 판단 자료는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 법적 문서인 SCAPIN-677/1 및 관련 지도 <SCAP 관할구역, 일본 및 남부

코리아) 등이다. 이러한 법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독도는 ‘법률상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한국에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법률상도 사실상도 현상유지원칙에 따라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인정된다.

〈주제어〉

리앙쿠르암, SCAPIN-677/1, 〈SCAP 관할구역도, 일본 및 남부 코리아〉,
조약법협약, 포츠담선언

ABSTRACT

Application of *Uti Possidetis* to Dokdo and the Validity of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Park, Byoung Sup

(Representative, Takeshima=Dokdo Research Net, Japan)

A peace treaty, which declares the end of a war, plays a crucial role in resolving territorial issues. However,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failed to explicitly address Dokdo or Habomai. Regarding Dokdo, two months before the treaty's signing ceremony, the United States realized that the Liancourt Rocks (Dokdo) were omitted from the draft treaty and made efforts to include them. However, due to time constraints and ongoing discussions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e treaty signing proceeded without amendments. As a result, the South Korea-US negotiations failed to reach a conclusion, and the United States, considering the issue challenging, became reluctant to resolve it. Since Dokdo wa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treaty, its dominium must be determined based on two types of *uti possidetis*. The first is *uti possidetis de facto*, which applies becaus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remains valid under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Under this principle, since Korea exercised effective control over Dokdo at the time of the treaty's conclusion, Dokdo should be considered Korean territory. However, *uti possidetis juris*, which takes precedence over *uti possidetis de facto*, is more significant. *Uti possidetis juris* i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that applies when a governing power withdraws, and a new nation gains independence. This principle was applicable during the independence of both Korea and Japan. However, under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the sovereignty over small islands around Japan, such as Dokdo and Jeju Island, was to be decided by the Allied Powers. Consequently, *uti possidetis juris* could not be applied to these islands when Korea achieved independence in 1948. Its application was deferred until Japan regained independence upon the effectuation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At that point, the dominium over small islands between Korea and Japan would be decide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came into effect in 1952, explicitly mentioned Jeju Island and Ulleungdo but omitted Dokdo. Therefore, Dokdo's ownership must be assessed under *uti possidetis juris*. Key legal documents in this assessment include SCAPIN-677/1 and the "SCAP Administrative Area Map," issued by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CAP). Based on these documents, Dokdo was determined to belong to Korea under *uti*

possidetis juris. Thus, Korea's dominium over Dokdo is supported by both *uti possidetis juris* and *uti possidetis de facto*.

Keywords

Liancourt Rocks, SCAPIN-677/1, "SCAP Administrative Area/Japan and South Korea Map",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Potsdam Declaration

자료소개



- 석주희 | 일본이도(巖島)센터 계간지 『시마(しま)』를 통해 본 낙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일본이도(離島)센터 계간지 『시마(しま)』를 통해 본 낙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석주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들어가며
- II. 『시마』의 연도별 주제 및 특징
- III. 『시마』와 시마네현 오키군의 지역재생

I. 머리말

일본이도(離島, 낙도)센터는 낙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로 1966년 2월 22일 도쿄에 설립되었다. 현재 대표는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정장인 아라키 고지이며 임원 17명, 평의원 11명, 회원 수 1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이도센터는 낙도에 관한 조사 연구의 실시 및 제언, 강연회·연구회·연수회 등의 개최, 홍보지 및 섬 관련 도서를 간행·배포하였다. 또 이벤트의 개최, 정보의 수집, 자료의 정비 및 공개, 섬 만들기 활동 조성 등을 실시했다. 2013년 4월 공익 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래 1) 낙도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및 정책 제언, 2) 낙도 관련 강연회, 연구회, 연수회 등 개최, 3) 낙도에 관한 홍보 활동 실시 및 도서 간행, 배포, 4) 낙도 지역 정보 수집 및 자료 정비, 5) 낙도 진흥 활동 관련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일본이도센터는 1968년부터 매년 낙도 관련 통계 연보를 간행(현 『낙도통계 연보』)하고 전국낙도진흥협의회와 연계하여 낙도 지역의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리더 연수를 실시했다. 1973년부터 홍보지 계간 『시마(しま)』(1~71호: 전국낙도진흥협의회, 72호~: 일본이도센터)를 발행했다. 1995년부터 ‘낙도 인재육성기금 조성사업’을 개시했으며 2010년부터 ‘낙도·관광 물산 등 진흥 선전 활동 조성사업’을 개시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도센터에서 발간하는 계간 『시마』의 지난 20년간 주제 및 주요 목차를 정리하고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II. 『시마』의 연도별 주제 및 특징

『시마』는 낙도진흥법이 성립된 1953년 12월 전국낙도진흥협의회 의 기관지로 창간한 잡지이며, 1973년부터 일본이도센터에서 연 4회 발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소위 ‘죽도의 날’을 선언한 2005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의 발간 주제 및 주요 특징에 대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표 1〉 『시마』의 연도별 발간 주제 및 주요 내용

호수	발행연월	주제	주요 내용
279호	2024. 9	마을 만들기과 관계 인구	관계 인구를 어떻게 지역 진흥과 연계시킬 것인가-디지털 명함이나 NFT 활용, 관계안내소 설치 등 섬에서 모색하는 섬 밖 인재를 활용한 지역 조성 현황 소개
278호	2024. 7	아마미 · 오가사와라법 개정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아마미군도 · 오가사와라제도 특별 조치법의 개설, 각 지역의 개정법 관련 사항 게재
277호	2024. 3	자연재해와 낙도 진흥	노토반도 지진 · 해일 피해 현황 보고와 더불어 최근 낙도에서 발생한 화산 폭발, 토석류 등 자연재해 피해에서 복구 · 부흥까지의 진행 상황 소개
276호	2024. 1	낙도진흥공로자 표창	2023년 11월에 개최된 '낙도진흥공로자 표창식'의 내용과 국토교통대신 표창 수상자의 공적 및 기념강연 초록 등을 게재
275호	2023. 9	낙도진흥계획	올해 4월에 시행된 개정 낙도진흥법에 근거해 책정되어, 향후 10년간의 각종 진흥 시책의 기초가 되는 7개 도현의 계획 개요 소개
274호	2023. 6	· 개정 낙도진흥법시행 · 특정유인국경낙도지역의 현황	· 낙도진흥기본방침이나 국토교통성을 비롯한 각종 시책을 개략적으로 설명 · 고용기회 확충 등 지역사회 유지 노력을 사례와 함께 소개
273호	2023.3	낙도진흥법 개정	낙도관계자의 뜨거운 생각을 등에 업고 10년간의 연장이 실현된 낙도진흥법, 바로 레이와 신시대를 기하기에 어울리는 법률이 된 개정법의 개요, 낙도 시정촌이나 지식인들의 개정법에 대한 기대 등을 게재
272호	2023.1	섬×나다운 삶의 방식	지역가꾸기협력대로 부임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찾아 정착한 전직 대원 6명의 성과와 향후 전망, 수용 측의 기대 등을 게재
271호	2022.10	섬에서 옹기고, 섬으로 옹기다	화물선 · 도해선 운항사업자, 택배 및 이사 사업자, 섬의 주민 생활 및 산업을 지원하는 물류기업 현황 소개
270호	2022.6	새로운 낙도 진흥을 향한 제언 III	항로 유지, 의료 · 돌봄 인력 확보, 섬 교육 활성화, 빈집 활용, 낙도 시정촌의 대표적인 대처에 대한 개요와 낙도진흥법 개정에 대한 기대 등을 게재
269호	2022.3	새로운 낙도 진흥을 향한 제언 II	'새로운 담당자'에 의한 지역 조성, 섬의 특성에 따른 관광 전략, 프랑스의 낙도진흥시책 사례, 각 시각에서의 정책론을 게재
268호	2022.1	새로운 낙도 진흥을 향한 제언 I	· '낙도진흥법 개정 검토회의' 보고 · 해양안전보장, 수산 진흥, 지역밀착협력 제도의 활용, 각 시각에서의 정책론
267호	2021.9	섬에서 생각하는 일본 VI	낙도 의료와 지역 만들기를 위한 의사나 간호사, 그것을 지탱하는 행정 · 조직 등 의료 현황 보고, 향후의 낙도 의료에 대한 고찰
266호	2021.6	섬에서 생각하는 일본 V	새로운 근무방식 · 생활방식으로서 텔레워크나 워케이션, 쾌적한 통신 · 오피스 환경의 제공, 섬만의 자연체험이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 등 사례 소개

호수	발행연월	주제	주요 내용
265호	2021,3	섬에서 생각하는 일본 IV	이주자 자원과 공유 공간 운영, 음식점과 외국인 관광객이 드, 정원 가구기와 굴 양식, 무료신문 편집과 숙박업 등 국내외 U.I.턴 사례 소개
264호	2021,1	섬에서 생각하는 일본 III	농림축산업, 상점·음식점 경영, 개인사업, 프리랜서 활동, 포트폴리오 워크조함 운영 등 생계유지와 취미 및 지역 공헌 양립을 실현하는 사람들
263호	2020,9	섬에서 생각하는 일본 II	독자적인 사업 지속 대책, 주민용 관광이나 온라인 이주 상담 실시, 영유아 급부금 지급 등 코로나 극복 사례 소개
262호	2020,6	섬에서 생각하는 일본 I	섬에서 대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만들기-지역 자원의 디자인화, 출판 사업, 커뮤니티 도서관의 운영, 특산물 개발이나 쇼핑 지원 등에 의한 관계 인구의 확대나 정주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주민들
261호	2020,3	섬을 건강하게 하는 조직 VI	스몰 비즈니스나 안테나 스툴, 상품의 부가치치화와 판로 개척, 지역 창업 등의 사례 소개
260호	2020,1	섬을 건강하게 하는 조직 V	음식·숙박의 사업 승계, 현실적인 섬 살림 체험 및 가게 강화 실시, 빈집·공터 활용 등을 통해 신규 정주자나 고용 증가 사례 소개
259호	2019,9	섬을 건강하게 하는 조직 IV	마을버스 운영, 식당 운영, 정기선 등 물류 지원, 지자체의 각종 수탁사업 등 교류와 일자리 창출 사례 소개
258호	2019,6	섬을 건강하게 하는 조직 III	전통예능, 지질공원, 창작요리, 경관보존, 마을투어-주민 주체의 '섬 가이드'와 '체험프로그램'으로 교류·관계 인구 확대를 도모하는 각 단체 사람들 소개
257호	2019,3	섬을 건강하게 하는 조직 II	삼, 골목, 섬, 해변, 무인도, 세계유산-섬 각각의 매력을 발굴, 주민들의 '체험프로그램' 기획 사례 소개
256호	2019,1	섬을 건강하게 하는 조직 I	삼 자체가 관광자원, 주민이 선생님이나 되는 체험프로그램 등 내·외부 교류 실천 사례 소개
255호	2018,9	섬 정착과 창업 VI	숙소나 카페의 경영, 물리치료사나 디자이너, 오가닉 농가로서 자립을 목표로 하는 '기업화, 계약화, 이업화, 다업화'와 커뮤니티 사례 소개
254호	2018,6	섬 정착과 창업 V	지역 맥주나 된장, 빵의 제조·판매, 음식숙박업의 시작과 운영-섬의 자원 발굴 '관계 인구' 만들기 사례 소개
253호	2018,3	섬 정착과 창업 IV	농축산업, 음식점, 게스트하우스 운영, 돌고래 관찰-가업 계승으로 섬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착민 사례 소개
252호	2018,1	섬 정착과 창업 III	게스트하우스와 사진관, 식당 운영, 섬 가구기 회사와 교류 공간 운영 등으로 정착을 도모하는 U.I.턴 사례 소개
251호	2017,9	섬 정착과 창업 II	빵집과 바, 게스트하우스 운영, 취업지원조직 운영, 와인과 맥주, 액젓 제조 등을 운영하는 국내외 이주자 사례 소개
250호	2017,6	섬 정착과 창업 I	화훼재배나 소금제조, 유리, 가족세공, 섬 가이드, 영화제작, 청년자립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U.I.턴을 한 사람들의 동향
249호	2017,3	섬 교육과 지역 만들기 III	상선고등전문학교, 전문과 고등학교 등 섬의 교육방식 소개
248호	2017,1	섬 교육과 지역 만들기 II	고등학교의 존속과 활성화-'낙도 유학', '지역학', '공영학원' 시도 등 매력화 선진지로부터의 보고
247호	2016,9	섬 교육과 지역 만들기 I	'낙도유학'과 '낙도통학'-소규모 초등학교·중학교를 중심으로 섬 재생 모색

호수	발행연월	주제	주요 내용
246호	20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인국경낙도법제정 낙도의료와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년 4월 시행될 새 법, 항로 등 운임 저렴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기대를 소개 야마다 다카시(의사) · 오쿠보 아키라(이센정장) 두 사람에게 의한 특별 대담
245호	2016.3	낙도재생 동향 II	'교육의 섬 창조', '주민의 행복도 향상'-시정촌 '지방판 종합전략'의 대표 사례를 책정 과정을 중심으로 소개
244호	2016.1	낙도재생 동향 I	책정 과정을 중심으로 시정촌 지방판 종합전략 대표사례 소개, 지역계승 방안 소개
243호	2015.9	수산업의 새로운 전개 IV	낙도어업재생지원교부금 활용, 안테나 주점 및 이동판매, 후계자 확보 등 소개
242호	2015.6	수산업의 새로운 전개 III	어협과 농협 연계, 김 가공 협업화, 저이용 물고기의 상품화 사례 소개
241호	2015.3	수산업의 새로운 전개 II	바다업의 창출, 휴게소 출몰, 참다랑어 양식 생산 과정에 대한 정보의 발신
240호	2015.1	수산업의 새로운 전개 I	개별어획할당제도 시행,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양식사업화, 해조장 수복 · 조성을 통한 환경재생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 소개
239호	2014.9	낙도활성화교부금	현이나 낙도 시정촌의 대표적인 대처 개요와 성과, 향후에 대한 기대나 전망 등 게재
238호	2014.7	지역부흥 협력대	전국 섬에서 활약해 온 지역밀집협력대원 14명의 성과와 수용자의 기대와 향후 과제 게재
237호	2014.4	아마미 · 오가사와라법 개정	각 지역 진흥의 전망과 개정법에 대한 기대, 법률의 취지 개설 등을 게재
236호	2014.1	낙도진흥공로자표창	2013년 11월에 개최된 낙도 진흥 60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국토교통대신 표창 수상자의 공적, 기념강연 초록 등을 게재
235호	2013.9	도도현낙도진흥계획	향후 10년간 진흥시책의 기초가 되는 7개 도도현의 계획 개요 소개
234호	2013.6	개정 낙도진흥법시행	낙도진흥기본방침의 개요, 낙도 활성화 보조금 · 교부금, 유통 효율화 사업의 구체적인 예 등 소개
233호	2013.3	낙도진흥법에 대한 기대	개정법에 대한 기대와 전망, 주민참여형 계획안 마련의 구체적 사례 소개
232호	2013.1	낙도진흥법에 대한 기대	문화경관과 해양환경, 경영전략과 '지(知)'의 활용에 따른 새로운 진흥론
231호	2012.9	낙도진흥법 개정	법률의 개요, 성립에 이르는 경위와 입법자의 생각, 조문의 취지 개설 등을 게재
230호	2012.6	낙도 진흥을 향한 제언 III	로지스틱스, 창업 · 사업 창조, 중요 국토 보전 및 정책론
229호	2012.3	낙도 진흥을 향한 제언 II	지역(교장)학과 생활문화, 섬 자치, 지방 재정 및 정책론
228호	2012.1	낙도 진흥을 향한 제언 I	해양안전보장, 연안 · 해양공간계획, 관광 진흥 및 정책론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시마』에 게재된 기사들의 주요 논지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섬 진흥 개발과 지역사회, 생활에 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

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낙도진흥법 개정에 관한 논의이다. 2012년 낙도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관한 제언과 개정법 내용, 낙도진흥기본방침 개요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했다. 2013년에는 도도현낙도진흥계획을 주제로 2022년까지 향후 10년간 추진되는 7개 도도현의 계획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2012년 9월 231호에 실린 ‘낙도진흥법 개정’을 살펴보면 법률의 개요와 성립에 이르는 경위, 입법자의 취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개설했다. 2022년에는 2013년도부터 추진한 도도현낙도진흥계획이 마무리되고 낙도진흥법이 10년간 연장되면서 ‘새로운 낙도 진흥을 위한 제언’이 주제로 등장했다. 2023년 3월 273호에는 낙도진흥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개정법의 개요, 관계자들의 기대 등을 게재했다.

2023년 6월 274호는 개정 낙도진흥법 시행에 따른 낙도진흥기본방침과 각종 시책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낙도진흥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은 2023년 3월 31일 국토교통성 대신, 경제산업대신 및 환경대신 연명으로 관보에 고시되었다. 기본방침은 낙도진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22년 법률 제92호) 부칙 제2조 제1항 규정에 기반한 ‘낙도진흥대책실시지역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서 책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개정한 이후 낙도진흥법 제2조로 규정되어 창설되었다. 기본방침의 특징은 ‘거주자가 없는 낙도의 증가 및 낙도의 인구 감소 방지, 낙도의 거주 촉진’을 모색하기 위한 방침을 명시한 것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도입 및 활용, 관계 인구와 같은 낙도 이외 지역의 인재 활용 등을 명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국경에 위치한 섬들의 인구 감소와 섬 관리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둘째는 섬 주민 생활에 관한 것이다. 낙도진흥법의 기본적인 목적에는 낙도활성화로 거주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2013년 4월에 창설된 낙도활성화 교부금을 통해 정주촉진사업과 교류촉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낙도의 생활환경 개선이 추진되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지역 만들

기, 관계 인구 등을 주제로 섬과 섬 바깥을 연계하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운송업, 섬 주민, 의료, 교육, 관광 전략 등 섬 지역의 활성화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관계 인구는 섬 지역을 주기적으로 왕래 하며 교류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실제 거주 인구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지역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인적 요소로 작용한다. 시마네현 오키노시마 야마정은 정주촉진정비사업의 주요 대상 지역 중 성공사례로 제시되었다.

셋째는 수산업에 관한 것이다. 수산업 관련한 기사의 경우 낙도어업재생 지원교부금과 개별어획할당제도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산업에 관한 내용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된 52권 가운데 3권에서만만 다루어지는 등 타 주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III. 『시마』와 시마네현 오키군의 지역재생

『시마』에서 오키섬은 인구 감소 시대의 지역재생의 성공 사례로 제시되었다. 오키섬은 행정구역상 독도가 자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으로 과거 일본 어민들이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하고 전복, 성게 등을 채취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오키섬 구미(久見)에는 소위 ‘죽도 역사관’과 표지판 등 독도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오키군 교육위원회는 오키섬과 독도의 역사를 수록한 부교재 『후루사토 오키(ふるさと隠岐)』를 발간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했다. 오키섬에서는 올해 11월 9일 오키노시마정 오키문화회관에서 소위 ‘죽도’ 영유권 확립운동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는 14년 만에 단독으로 열렸으며 유튜브로 집회를 생중계했다. 이 집회에서는 “독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일본 어민들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도록”하는 요구서를 발표했다. 이처럼 오키섬 곳곳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시설물 설치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키섬이 실제 당면한 과제는 독도 영유권보다는 지역재생, 인구 감소이다.

2024년 9월에 발행한 『시마』 279호에는 오키섬 아마정에서 추진하는 지역재생과 ‘관계 인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아마정에서는 2020년 ‘어른의 섬 유학’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른바 관계 인구 경영 구상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을 오키섬에 취업시키거나 교육을 통해 지역을 부흥시키도록 했다. 관계 인구는 일본 총무성에서 제시한 인구 감소 대책 방안으로 섬에 반드시 거주하지 않더라도 왕래하는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섬의 환경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에서는 오키섬뿐만 아니라 국경에 인접한 섬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여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오키섬은 대외적으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활동을 통해 내셔널리즘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대내적으로는 인구 감소, 어업후계자 부족, 교육, 생활 인프라 낙후 등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일본의 도서정책은 대부분 교육, 의료, 물류, 운송, 관광 등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섬이 직면한 인구 감소, 어업자원 감소, 낙후한 생활인프라 관련하여 정책이나 법안을 제출하여 낙도진흥법이 추진된 것이다. 일본이도센터에서 발행하는 『시마』는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도서 정책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일본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주권 영토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의 전략과 지역사회의 실질적 요구라는 간극에서 궁극적으로 일본의 해양영토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평

나

- **이훈** | 『독도해녀』: 김수희 저, 2023, 동북아역사재단
- **최보영** | 『울릉도 1882-검찰사 이규원의 시간 여행』: 김영수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독도해녀』

(김수희 저, 2023, 동북아역사재단)

이훈 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I. 독도지킴이 ‘독도해녀’

II. 광복 이후 독도 수호 실태와 ‘독도해녀’

III. 독도 수호와 여성

1. 독도지킴이 ‘독도해녀’

최근 『독도해녀』(김수희, 2023, 동북아역사재단)라는 제목의 책이 간행되었다. 익숙한 듯 낯선 제목이었지만, 한국전쟁 직후 정부의 독도 경비가 어려웠던 시기에 실제로 독도에서 몇 달씩 생활하면서 미역을 채취하는 한편, 일본의 독도 침탈을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겪어 냈던 해녀, 즉 독도를 지키는 여성들의 이야기였다.

한국전쟁 당시 울릉도 주민이 조직한 민간단체인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수호활동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 수호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해녀’들을 모집하고 미역 어장을 경영하면서 독도를 생활이 가능한 공간으로 개척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는 이 책에서 1950년대 이후 독도에 간 제주도 한림읍 협재 해녀 1명, 구좌읍 하도리 해녀 4명을 실제로 만나 이들과의 면담을 통한 구술 자료, 그리고 풍부한 사진, 신문 자료 등을 토대로 독도 어장 경영에 함께 했던 제주해녀들의 존재와 어장 경영의 실태를 밝히고 있다. 그중에서도 수십 명의 제주해녀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독도로 데리고 들어가 장기간 거주하면서 미역 채취에 종사했던 사례 소개를 통해서도, 비록 불편함은 있었을 지언정 생활공간으로서의 독도가 머릿속에 저절로 그려지기도 한다.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는 반세기 이상 주로 역사학과 지리학, 국제법적 관점에서 영토 주권(영유권)이 한일 양국의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논점의 대상이었다. 이에 비하면 이 책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 의용수비대를 비롯한 울릉도 주민과 제주해녀들, 말하자면 정부와 더불어 민간의 독도 어장 활용과 경영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증명하고 있음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광복 직후부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신생 정부로서 독도 경비가 어려웠던 시기의 독도 수호 실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도해녀’라는 여성의 관점에서 독도 수호를 서술하다 보니, 독도가 1년에 한 번 어쩌다 연례행사처럼 듣는 단어가 아니라, 훨씬 우리 생활 가까이 있는 섬처럼 느끼지게 한다.

II. 광복 이후 독도 수호 실태와 ‘독도해녀’

이 책은 독도재단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저자가 오랫동안 연구에 매진해 온 성과를 교양서로 녹여낸 만큼, 누구라도 한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각 장의 내용이다.

들어가며, 영토주권의 상징 독도해녀

제1장 한국의 해녀는 누구인가?

제2장 광복 후 독도의 아픈 역사

제3장 바닷말류 숲의 독도 어장과 어업 행정

제4장 독도 어장을 개척한 제주해녀

제5장 해녀의 독도생활사

들어가며에서는 저자가 이 책의 주어를 ‘독도해녀’로 정했듯이, 독도 수호에 있어서 독도해녀의 위상을 정의하였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 독도의용수비대의 ‘도우미’로서의 독도해녀가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독도를 한국인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개척해 낸 주체 내지는 영토주권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 장에서는 독도해녀의 주체가 실제로는 제주해녀라는 증거로 제주도 협재마을에 세워진 ‘울릉도 출어부인 기념비’(1956년)를 제시하였다. 이 기념비는 독도의용수비대 대장 홍순철을 따라 독도로 출어했던 해녀(37명)들이 어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함에 따라 건립된 것으로,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독도해녀의 ‘기록’으로 정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 기념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16년)으로 등재된 것도 소개하였다.

제2 장에서는 광복 후 독도의 아픈 역사를 정리하였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맥아더라인 선포(1946.6.22)하에서의 일본의 독도 어장 침탈

행태를 시작으로, 미군기의 독도 어선 폭격 사건(1948.6.8), 1950년대 일본 수시선 등의 독도 상륙 및 침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및 독도의용수비대의 독도 수호 활동을 소개하였다.

먼저, 1946년 6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가 선포한 ‘맥아더라인’[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SCAPIN) 1033호]이란 일본인의 어업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일본 선박과 선원은 독도로부터 12마일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이 접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島根縣)에서도 행정구역과 어장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법령(시마네현령 49호, 1946.7.26)을 정하여 일본인의 독도 접근 금지 및 일본령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947~1951년에 걸쳐 일본인들이 독도 어장에 침입하여 울릉도 어선에 충격을 가하거나 독도 물골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해녀들을 총으로 위협한 사실을 소개했는데, 독도 어장의 해녀들이 이들 일본인의 침탈을 ‘왜구’로 표현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리고 1948년 6월 미역 채취를 위해 독도 어장에 간 어민 59명이 18척의 어선에 나눠 타고 조업하던 중 미군 연습기의 폭격으로 사망자 및 행방 불명자, 중경상자 등이 발생한 피격사건을 소개하였다. 저자는 한국 정부가 이 피격사건을 미군기의 오인 폭격으로 수습한 것(독도조난어민위령비 건립, 1950.6.8)에 대해 광복과 분단, 군정과 주권국가 부재의 혼란 속에서 겪은 약소국의 수난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한국 정부의 대응으로 독도 학술조사를 통한 영유권 확인 작업과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도 소개하고 있다. 먼저 남조선 과도정부가 학술 전문가 그룹인 ‘조선산악회’와 함께 울릉도·독도 학술조사를 추진(1947.8.16.~8.28)한 것에 대해서는, 독도에 영토 표지판(울릉도 남면 소속)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의 역사를 알리는 홍보활동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송석하·방중현·신석호와 같은 연구자들이 「심홍택보고서」와 같은 영유권 관련 역사 사료 발굴을 통해 독도의 역사, 명칭을 연구하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한편, 한국 정부가 일본의 독도 침탈에 단호한 대응을 보인 것은 1953년

독도에 나타난 ‘해쿠라’라는 이름의 일본 순시선에 대해 정부의 순라반이 총격을 가한 ‘해쿠라피격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1954년에 독도에 경비초소를 건립하고 등대를 세웠으며, 서울 주재 각국 공관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독도 경비명령’을 내려 독도 경비원의 독도 주둔을 결정함으로써 영토 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소개하였다. 한편 같은 시기 독도에 주둔하고 있던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정부가 민간으로서 독도 수호에 전념한 공적을 인정하여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관민 협조에 의한 독도 수호의 역사로 평가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1943~1957년 일본 관용선의 독도 침입과 한국의 경비상황을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점이 돋보인다.

제3장에서는 독도 어장의 성격과 어업 행정의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독도 해역의 특징을 미역, 다시마, 대황 감태, 모자반류가 군락을 이루는 ‘바닷말류 숲(바닷속의 그린벨트)’으로 정의하고, 일제강점기 이래 미역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이 해녀의 ‘나잠어업’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독도 어장은 개인이나 일정 단체의 면허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독도의용수비대는 ‘국방 기타 군사상 필요할 때’ 공익상 필요에 의한 제한·정지·취소 규정이 적용되는 수산업법 제20조 제2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독도 수비를 위해 공동어업권 중 미역 채취권을 허가받은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 주둔과 함께 제주해녀를 동원해 어장을 경영했음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구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독도해녀들의 독도 어장 개척 실태를 소개하였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제주해녀가 독도에 가서 미역을 채취한 역사적 경위가 있기는 하지만,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철 대장의 독도 입도를 계기로 제주해녀들을 공개 모집함에 따라 제주해녀들(50여 명)이 집단으로 독도 어장 개척에 참여하여 1957년까지 해마다 미역을 채취한 사실을 밝혔다. 독도에서는 홍순철 대장 등 의용수비대원들과 더불어 식수 채취가 가능한 서도의 물골에서 몇 개월씩 거주하면서 미역을 채취했으며,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해녀의 수익 배분은 ‘6대 4’ 또는 ‘5대 5’로 공정

했음을 밝혔다.

특히 이 장에서는 독도해녀들이 미역을 채취하는 기간에 일본 순시선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독도해녀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행태를 지적했는데, 일본의 위협적인 독도 침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독도 어장을 지켜 냈던 해녀들의 영유권 인식을 소개하고 있다.

“야 이곳은 우리 땅인데 일본놈들이 와서 해녀 물질을 지켜보고 간다. 내가 아무리 여자라도 왜 이 귀한 땅을 내주겠냐”라고 한국 경비대에 ‘호소’한 것이 그것으로, 한국 정부에 확실한 영유권 행사를 요청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제5장에서는 해녀의 독도생활사를 소개하고 있다. 독도의용수비대 당시 서도 물골의 간이주택부터 재향군인회의 3층짜리 주거공간, 최초의 독도 주민 최종덕에 이르기까지 생활공간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III. 독도 수호와 여성

앞서 언급했듯이, 이 책의 저자는 근대 한일 양국의 어업사 연구가 전공으로 오랫동안 어장과 어민들의 이동에 주목해 왔다. 독도 어장 역시 어민들의 생명줄과 같은 미역 어장이었다는 관점에서, 조선시대에는 1820년경부터 개척령기에 이르기까지 거문도 사람들이 미역 채취를 위해 울릉도·독도로 도향한 역사적 경위를 밝힌 바 있다.¹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인들이 제주해녀를 고용하여 독도 어장에서 성게 채취를 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수년 전에는 광복 후 독도를 광복과 함께 다시 찾은 영토로 인식하고 독도의용수비대가 제주해녀를 동원하여 독도 어장을 개척한 사실을 논문으로

1 김수희, 2011, 「개척령기 울릉도와 독도로 건너간 거문도 사람들」, 『한일관계사연구』 38; 김수희, 2007, 「일제시대 남해안 어장에서 제주해녀의 어장 이용과 그 갈등 양상」, 『지역과 역사』 21.

밝힌 바 있다.² 이러한 연구활동을 통해 거문도 어민과 제주해녀들의 울릉도·독도 어장 진출을 미역의 상품적 가치는 물론, 그들의 생계활동과 관련하여 역사적 경위를 밝힌 것은 연구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저자의 『독도해녀』 집필은 이러한 내공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뭐라 해도 ‘독도해녀’라는 새로운 역사용어의 등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는 이 책에서 1950년대 제주해녀들의 독도 어장 진출에 대해 생계활동을 위한 어장 개척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제주해녀들이 독도의용수비대의 모집으로 독도 어장에 진출하기는 했지만, 서도의 물골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음용수 확보를 위해 수신(水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서, 독도가 스쳐 지나가는 바위섬이 아니라, ‘물이 있는 섬’으로 거주가 가능한 생활공간으로서의 독도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제주해녀가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일본의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를 수호하는 모습을 통해서, 독도의용수비대의 ‘도우미’를 넘어 바로 독도 ‘지킴이’였다는 생각이 스며들게 한다.

제주해녀를 넘어선 ‘독도해녀’라는 이 한 마디에는, 광복 직후부터 한국 전쟁을 전후한 시기, 신생정부로서 독도 경비가 어려웠던 시기 독도 수호 및 실효적 지배의 실태가 압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픈 역사 속에서 독도를 지킨 여성의 역할도 살펴볼 수 있는 저자의 탁월한 용어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

2 김수희, 2012, 『독도 어장과 제주해녀』, 『대구사학』 109.

『울릉도 1882-검찰사 이규원의 시간 여행』

(김영수 저, 2024, 동북아역사재단)

최보영 용인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며
- II. 서사와 내용의 의미
- III. 의의와 한계의 착종

I. 들어가며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은 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열강의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역사적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세계사적 조류에 편승하느냐 또는 기존의 전통 질서를 사수하느냐의 갈림 외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사적 흐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제의 대륙 진출의 첫걸음이었던 1905년 독도 편입에는 그 누구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일본의 독도 편입에 대한 1906년 박제순의 저항이 일시적이거나 있었으나 곧 대한제국은 패망하고 말았다. 일본의 독도 편입 이후 꼭 40년 뒤 조선은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은 광복된 지 꼭 80년이 되는 해다. 일본의 불법 편입 기간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일본은 독도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부여잡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에 대응해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저술은 해마다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무수한 독도 관련 서적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로 ‘독도는 우리 땅’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울릉도 1882-검찰사 이규원의 시간 여행』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책은 기존 도서들과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목에 독도가 없다. 물론 울릉도는 언제나 독도와 하나로 짝하는 섬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제시해도 독도와 관련한 책이라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독도를 전면내내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호기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SF이나 나올 법한 ‘시간 여행’이라는 단어가 울릉도와 만나니 묘한 기분마저 들게 한다. 1882년으로 떠난 시간 여행이니 지금부터 140여 년 전 울릉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게 하는 제목이었다. 235쪽의 두껍지 않은 분량에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펼쳐 들었다. 그러곤 순식간에 읽어 내려갔다. 요즘 말로 시간이 ‘순삭’되었다.

이 글은 김영수 박사의 새로운 저서인 『울릉도 1882-검찰사 이규원의 시

간 여행』을 읽고 이에 대해 비평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비평 혹은 서평이라는 것은 예비 독자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책을 추천하거나 혹은 추천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조금의 힘이 있다. 서평자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져도 되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면을 대한 것은 이 책에 의해 기존의 독도 연구에 대한 지평이 조금은 넓어졌음을 예비 독자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또 이 책이 역사 연구의 성과를 대중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분명 대중서에 가깝다. 보통의 대중서가 전문 연구자에 의해 집필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연구자의 글쓰기가 대중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도 이 책은 전문 연구자에 의해 쓰였다는 게 마지막 특징이다.

II. 서사와 내용의 의미

저자 김영수의 이력을 봤을 때 이 책은 다소 무겁거나 또는 어려운 연구 서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김영수는 성균관대학교 역사교육과 및 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데다가 근대 조선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러시아의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역사학부에서 공부하여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역사 연구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연구력이 곧 저서의 성격을 규정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저자가 그동안 집필한 주요 저서인 『미켈의 시기: 을미사변과 아관파천』(경인문화사, 2012), 『제국의 이중성: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동북아역사재단, 2019), 『고종과 아관파천: 이희, 러시아공사관에서 375일』(역사공간, 2020), 『100년 전의 세계일주: 대한제국의 운명을 건 민영환의 비밀외교』(EBS Books, 2020) 등은 대중들을 위한 전문 연구서로서 대중서와 연구서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저서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집필 이력을 봤을 때 이 책을 관통하는 문체는 어쩌면 김영수다운 서술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듯하다.

이 책은 울릉도검찰사(檢察使)로 임명된 이규원이 1882년 4월 7일 창덕궁 회정당에서 고종을 알현하고 서울을 떠나 울릉도에 다녀온 공무 일지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규원을 검찰사로 임명할 때 고종은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차임한 것이니 각별히 감찰하라. 그리고 앞으로 읍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라는 세세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검찰 활동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라도 이규원은 검찰사행 과정의 내용을 소상히 기록한 것이다. 이규원이 남긴 『울릉도 검찰일기』는 울릉도 거주민의 실태와 정착 가능 지역 및 포구·산악·해안에 대한 지리적 조사, 토산품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저자는 이규원이 직접 남긴 『울릉도검찰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 책을 집필하였다.

『울릉도검찰일기』는 고종의 명령에 의해 작성한 계초본(啓草本)으로 이 책의 핵심 사료라 할 수 있다. 『울릉도검찰일기』는 지금까지 이 자료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진, 고전 중 하나이다. 특히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의 영토와 해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자료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이규원의 행적을 재구성한 이 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4월 10일 서울을 출발한 이래 4월 29일까지 울릉도까지 이동하는 행적을 재구성하였다. 둘째, 4월 30일 울릉도에 도착한 이후 5월 11일까지 체류하며 울릉도검찰사로서 활동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셋째, 5월 12일 울릉도를 출발해 5월 27일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을 파악하였다. 총 47박 48일의 여정을 이규원이 남긴 기록을 통해 온전히 고증한 것이다. 저자는 이규원이 서울로 돌아온 5월 27일을 여정의 마지막으로 삼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서울로 돌아와 별단과 지도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의 보고를 위해 고종을 다시 알현하는 6월 5일까지의 시간을 포함하면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사 활동은 더 길어질 것이다. 이 책은 만 두 달 동안 이뤄진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사로서의 활동을 저자 특유의

1 『고종실록』 고종19년 4월 7일조.

문학적 문체로 서술하면서도 고금을 넘나드는 문인·화가의 시(時)와 서(書)와 그림(畫)을 동원해 읽는 이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 책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울릉도검찰사로 발탁된 이규원은 전주이씨 덕천군파로 1833년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조상 대대로 문관을 역임하는 문관 가문이었지만 이규원은 학문뿐만 아니라 무예에도 뛰어나 1851년 무과에 급제해 관직에 진출하였다. 1882년 울릉도검찰사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주로 1868년 함경도 정평, 단천과 황해도 풍천부사 등 7개 부·현에서 장을 맡아 공무를 수행하였다. 울릉도검찰사 활동 이후에는 경상좌도병마절도사·어영대장·총융사를 거쳐 광복총관(海防總管)·동남제도개척사(東南諸島開拓使)로 임명된 이래 함경남도병마절도사·제주목사·군무아문대신·안무사·경성부관찰사·중추원의관·궁내부특진관·함경북도 관찰사 등 관직의 요직을 두루 지냈다. 1901년 5월 10일 함경북도 관찰사의 사직 상소가 받아들여진 이후 6개월여 뒤인 11월 11일 강원도 금화군 금화읍에서 사망했다. 거의 사망 직전까지 관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셈이다. 당시 나이 69세였다. 지금 기준으로 관직 생활을 하기엔 적지 않은 나이였다. 18살에 무과에 급제했으니 사망할 때까지 50년을 넘게 관직에 있었던 것이다. 시호는 장희(莊僖)이다.

이규원에게 내려진 검찰사는 “고려와 조선 시대 병력을 동원하여 특별 임무를 띠고 단속하고 조사를 실행하거나 외적에 대항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이었다.² 이규원의 검찰사는 수토사와 다르지만 울릉도에 대한 수토 활동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수토는 수색하여 조사·탐색함을 의미한다. 울릉도검찰 활동은 수토의 연장으로 고종 1881년(고종 18) 강원감사 임한수의 보고에 의해 이뤄졌다. 임한수는 일본인의 선박이 울릉도를 왕래하는 일이 잦아 이들이 울릉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폐단이 있고 특히 불법적 채벌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울릉도 수토관의 보고를 받은 임한수는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2 김영수, 2024, 『울릉도 1882—검찰사 이규원의 시간 여행』, 동북아역사재단, 6쪽.

임명할 것을 고종에게 요청하였다.³ 주지하듯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우산국이었던 신라 지증왕 때 이미 한반도에 편입된 이후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며 관할하던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수토 및 울릉도검찰사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게 이뤄져 왔다. 수토는 수토 활동에 앞서 수토사 일행의 출항과 귀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수토사의 출항지가 삼척부의 장오리, 울진현의 죽변진과 울진포, 평해군의 구산포 등 다양하였음이 확인되었다.⁴ 검찰사 이규원은 수토사의 출항지인 평해의 구산포를 거쳐 울릉도로 넘어간 것이다.

이 책은 두 가지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조선의 영토 관리와 영토 개척의 인식을 수토와 이주라는 극단적 전환으로 이끌어낸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의 활동에 주목하여 생생하게 보여 준다는 점이다. 즉 조선의 도서 정책, 그중에서도 울릉도 정책과 이규원의 검찰사 임명과 활동 내용 그리고 검찰 활동 이후 이규원이 제시한 울릉도 이주 정책과 고종의 정책 수용, 나아가 울릉도를 둘러싼 한일 간의 외교 문제 등을 함께 정리한 것이다. 또 독도 연구의 새로운 연구 방법과 시각을 제시했고 더 나아가 이를 대중적으로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기존 독도 관련 연구가 영유권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 책은 자료가 제시하는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관점으로만 이규원의 검찰 활동을 담백하게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에게 1882년 조선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이 책을 통해 울릉도와 한반도 동부 내륙 및 동해 연안을 유람하게끔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읽는 재미도 추가하였다.

필자는 이규원의 역할과 활동 그리고 독도 연구에서 이규원이 갖는 의미에 대해 이 책의 입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서평에서는 책의 구성과 각 장에 포함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일정한 비판을 가하는 것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 「고종실록」 고종18년 5월 21일조.

4 손승철, 2015, 「조선후기 수토기록의 문헌사적 연구」, 『한일관계사학회』 51, 116쪽.

『울릉도 1882-검찰사 이규원의 시간 여행』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장 검찰사 이규원은 누구인가

1. 울릉도검찰사 전후 이규원의 활동 / 2. 이규원의 성품과 조희순의 『손자수』

2장 서울부터 평해까지 여정

1. 서울부터 평해까지 전체 일정 / 2. 이규원이 참고한 지도들 / 3. 서울에서 영주까지 과정과 인물 / 4. 봉화현 및 영양부터 평해까지 과정과 인물 / 5. 평해에서 수토 준비 / 6. 영남만인소와 유도수 / 7. 기생 경란과 석재 서병오 / 8. 월송정과 검제 정선 / 9. 동해신제 / 10. 울릉도로 출발, 그리고 거문도 / 11. 성하신당과 안무사 김인우

3장 울릉도의 검찰 여정

1. 검찰사 수행원의 구성과 울릉도 육로 탐사 / 2. 울릉도 해안 탐사와 부속 섬 / 3. 검찰사 이규원의 일본인 심문

4장 평해부터 서울까지 여정

1. 평해에서 서울까지 전체 일정 / 2. 이규원의 평해와 올진 도착 / 3. 이규원의 삼척 도착과 강릉 출발 / 4. 이규원의 원주 도착과 고종 알현

5장 울릉도검찰사 이후 이규원의 활동

1. 1888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 2. 1891년 제주목사 겸 찰리사 및 전라도수군방어사 / 3. 1894년 함경북도안무사와 1895년 경성부 관찰사 / 4. 함경북도 관찰사 임명과 사망

1장은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이규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규원은 정종(定宗)의 10번째 왕자 덕천군의 13대손으로 왕실의 후손으로 소개하며 아버지

이면대(李勉大)와 7대조로 호조판서를 역임한 이경직(李景稷) 등을 언급하면서 고위 관료를 역임한 문인 가문임을 강조하였다. 또 이규원이 태어난 강원도 금화군 금화읍 암정리와 사망한 운장리를 비롯한 조선시대 금화현의 인문지리적 환경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였다. 또 이규원이 거쳤던 다양한 관직 상황을 시대순으로 잘 정리하여 이규원이 오랜 기간 동안 관직에 머물며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음을 각종 자료를 동원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이규원의 성품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대개의 연구자들이 그러하듯 연구 대상에 대한 무한한 지지와 찬사에 가까운 표현을 두루두루 활용하고 있다.

2장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릉도검찰사로 임명된 이후 서울에서 울릉도로 입도하기까지의 여정을 이규원의 발과 눈 그리고 그의 감상을 같이 호홉하며 서술하였다. 이규원은 4월 10일 서울을 출발해 열흘 뒤인 20일에 평해에 도착했다. 이러한 길목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여정을 떠나기 전에 이규원이 참고했을 것으로 판단하는 몇 개의 지도를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이 조금 흥미롭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이규원이 남긴 기록을 활용했는데 이는 이규원이 자신의 여정을 매우 꼼꼼히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규원이 참고했을 법한 지도를 제시하고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높여 주었다. 저자는 이규원이 자신의 여정과 거리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도리도표(道里圖標)」를 사용했을 것이며 이와 함께 정상기의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참고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당시 육로 출장을 위해 지도는 당연하게 지참하고 참고했을 법하다. 하지만 이규원이 이들 지도를 참고했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 맥락적 이해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2장에서는 이규원의 이동 경로를 소개함과 동시에 고종을 비롯해 이규원이 만난 여러 인물들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한 인물들은 이규원이 여정에서 만난 인물들이 아니라 이규원이 여정에서 들른 지역과 관련한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예컨대 영남만인 유도수라던가 겸재 정선은 일면식도 없는 인물들이었다. 기생 경란의 경우 이규

원이 평해군에 머물 때 차를 마시며 기생 경란의 노래와 가무를 관람하고 그에게 돈을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한 인연을 계기로 조선시대 기생제도를 논한다거나 기생 경란을 다룬 문인화의 대가 서병오를 여러 페이지에 걸쳐 소개한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다. 물론 이러한 글을 통해 저자가 역사 연구자이면서도 다양한 역사적 소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으나 이 책의 맥락과 크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서울을 떠난 이규원이 지역에서 만나는 풍광을 그리는 과정에서 저자는 당나라 시인 백거이와 현재를 살아가는 작가 이문열 등이 남긴 기록을 소환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대한 정취를 더욱 깊게 느끼도록 독특하게 글을 짓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3장은 원래 이규원의 검찰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파격적이게도’ 이 부분의 분량이 가장 적게 편성되어 있다. 처음 목차 구성을 살펴봤을 때 의아했던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을 탐독한 후에는 그 이유가 이해가 되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책은 이규원이 울릉도에서 벌인 검찰 활동에만 주목한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규원 검찰사의 활동을 고종으로부터 임명받은 시점부터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를 모두 포괄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검찰사 활동을 지나치게 우리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이규원의 활동을 단선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검찰사로서의 이규원의 활동을 소략해서 서술한 것도 아니다. 이 장에서는 검찰사 수행원의 구성을 살피고, 울릉도로 들어가는 항해 과정과 울릉도 도착 후 태하, 나리동, 성인봉, 사동, 학포 등 울릉도 육로 탐사와 이어 진행한 울릉도 해안 탐사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특히 검찰 과정에서 발견한 일본인과의 문답 내용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에서 일본인과 이규원의 독도 인식을 추출해 냈다. 이규원을 울릉도에 파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몰래 왕복하면서 삼립을 도벌했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삼립 벌목을 조사하기 위해서 1881년 5월 22일 조선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은 검찰사의 파견을 요청했고 이에 가장 적절

한 인물로 이규원이 발탁된 것이다. 조선 정부는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면서 일본 정부에 공식 항의하였다. 1881년 6월 예조판서(禮曹判書) 심순택(沈舜澤)은 일본 외무경(外務卿)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울릉도에 서의 일본인 불법 벌목을 항의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때 심순택은 1693년 안용복의 1차 도일 사건으로 촉발된 일본인의 울릉도 입도 문제에 대해 1697년 조일 사이에 정리된 일본인의 울릉도 입도와 어업 금지 문서를 언급하며 울릉도의 소속과 일본인의 울릉도 입도 금지를 분명히 하였다. 이에 이노우에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규원의 울릉도 파견은 이러한 외교적 결과와 더불어 실제 울릉도의 상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규원은 울릉도 탐사 과정에서 송도, 죽도, 우산도 등의 명칭을 파악하고 위치를 정리하는 등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이뤄 낸 것이다. 검찰사 파견 이전에 이규원은 우산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를 울릉도로 인식했고, 울릉도에서 20~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송죽도가 있으며 송도와 죽도가 별개의 섬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 고종과의 면담에서 일치된 견해가 제시되지 못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이규원이 독도를 적극적으로 찾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규원은 검찰사 활동 당시 울릉도의 성인봉에 올라 울릉도 주변의 새로운 섬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은 독도를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당연하게도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기록은 없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대목을 아쉬워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규원이 비록 독도를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즉 이규원은 우산을 울릉도와 송도와 죽도를 모두 포괄하는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판단했다. 하지만 독도를 실제로 관찰하지는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보고서에 따르면 울릉도 주변의 새로운 섬을 찾으려는 노력 자체가 독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행동이었다는 저자의 지적은 타당하다.

4장은 울릉도검찰 활동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이규원은 서울에서 평해로 가는 역순으로 돌아오지 않고 새로운 여정으로 서울로 돌아왔다. 5월 12일 울릉도를 출발하여 그날 밤 평해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5월 15일 평해를 출발, 5월 27일 서울 두모포에 도착하였다. 서울에서 평해로 가는 여정이 열흘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은 이틀이 더 걸려 총 12일이 소요되었다. 평해에서 곧바로 내륙으로 들어오지 않고 삼척·동해·강릉을 거치는 우회로를 택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에 대한 서술 역시 임무 수행길과 마찬가지로 이규원이 들른 곳에 대한 설명과 그 역사적 이야기를 재미있게 덧붙이고 있다. 특히 강릉에 갔을 때 만났던 강릉부사 김병기에 대한 이야기가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김병기는 갑신정변의 주역인 김옥균의 양부(養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김옥균의 가계에 연관된 사람들의 소개에 그치고 실제로 이규원과 김병기의 조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지 않고 있다. 아마 자료의 한계로 그러한 것이겠지만 1882년은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이기도 하다. 덧붙여 김병기의 세계관과 검찰 활동에 대한 인식이 파악되어 기술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든다.

귀로에 대한 서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4장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규원과 고종이 다시 만난 장면일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은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이규원의 검찰 활동 이후 그가 고종에게 제시한 울릉도 이주 정책이 역사적 관점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인데 소략하게 처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5장은 울릉도검찰사 활동 이후 이규원의 관직 생활을 정리한 것이다. 1888년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1891년 제주목사 겸 찰리사 및 전라도수군방어사, 1894년 함경북도안무사, 1895년 경성부 관찰사 그리고 말년에 맡았던 함경북도 관찰사가 주를 이룬다.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시기 이규원의 행적에 대해 저자가 활용한 자료는 거의 이규원의 치적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건립한 「원용이공규원거사비(元戎李公奎遠去思碑)」(1889년 12월), 「원임장신이공규원청덕거사비(原任將臣李公奎遠清德去思碑)」(1890년 1월), 「절도사이규원해

폐리정유혜비(節度使李奎遠海弊整遺惠碑)」(1890년 4월) 등이다. 그만큼 해당 지역의 민의를 수용하고 선정을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봉기를 진정시킬 인물로 고종은 이규원을 떠올렸다. 제주목사로 파견된 이규원은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일본 어민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흉년으로 궁핍해진 백성들의 삶을 구원하고자 노력했다. 또 갑오개혁기 흥흥해진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고종은 또다시 이규원을 함경북도 안무사로 임명해 민심을 살피도록 하였다. 고회를 바라보던 나이에도 이규원은 계속해서 공직에 있었다. 1900년 7월 또다시 고종은 이규원을 함경북도 관찰사에 임명한 것이다. 고종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는가를 알 수 있다. 결국 이규원은 함경북도 관찰사를 마지막으로 병을 이유로 1901년 5월 사직상소를 올렸다. 사직상소를 올리고 6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사망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규원은 18세에 관직에 오른 이후 선정을 베풀어 고종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으며 50년 넘게 쓰러져 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다.

III. 의의와 한계의 착종

독도 관련 대중서는 많다. 하지만 연구성과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대중서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책은 저자가 기존 제출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저술되었다. 기존 연구 성과의 일부는 저명한 역사학계 저널인 『사람』과 독도 관련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독도연구』에 게재된 것이다. 또 저자의 단행본인 『제국의 이중성: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를 참고하였다. 특히 2023년 6월, 울진의 수토 활동과 월포진성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발표한 성과를 묶은 『울진, 수토와 월성포진성 연구』(한국이시부학회 편, 경인문화사, 2023)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저자가 그동안 천착해 온 울릉도와 독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결과물을 토대로 이규원이라는 인물이 울릉도로 가기 위해 거쳐

간 여정을 탐색하면서 기존 연구서의 문법과는 다른 새로운 대중서를 창작해 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서와 다른 방식을 추구하면서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을 집필하려다 보니 새로운 서사 방식을 도입하려 한 것 같다. 모두에 언급했듯 저자는 동서고금의 문인과 화가 그리고 이규원이 여정에 만난 사람과 그 사람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 곳곳에 펼쳐 두었다. 그러다 보니 한 권의 책이 관통하려는 주제가 무엇인지 탐독 중에 혼란함을 경험하였다. 앞서 언급했지만 특히 이규원이 울릉도로 가는 여정에서 제시한 이야기거리 중에 기생 경란과 석재 서병오에 대한 서술은 책의 주제가 무엇이 있는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야기였다. 이규원이 기생 경란과 만난 것은 잠깐이고 그 잠깐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 데다가 이규원과 서병오의 관계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서사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적지 않게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다소 아쉽다. 이 책이 취하는 서사 구조는 울릉도로 떠나는 여행서이자 답사서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그래서 읽는 맛이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래의 의도를 희석시키면서까지 불필요한 서사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한다.

그럼에도 이 책이 강조하는 부분이 조선의 울릉도·독도 인식의 실태를 면밀히 고증하고 일본의 울릉도 불법 벌목과 어업 행위에 대한 실태를 고발하는 것이라면 다행스럽게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저자가 밝힌 것처럼, 이규원이 울릉도검찰사 활동 과정에서 비록 독도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울릉도 주변의 새로운 섬, 즉 독도를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은 의미가 크다. 고종이 이규원에게 울릉도검찰사행을 명한 것은 1882년 4월 초로 이 때는 조선이 청국의 중재에 의해 미국과 근대적 조약을 협의하던 때였다. 일본에게만 한정했던 조약 관계를 서양으로 확대하던 중차대한 시기에 고종의 울릉도검찰 명령은 자국의 영토에 대한 확인을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고종의 영토인식이 도서 지역까지 확장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이규원의 검찰 활동 이후 울릉도에서 벌어

지던 일본인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고 조선인의 울릉도 이주 정책을 수립한 것을 보면 억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규원의 울릉도검찰 활동은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관계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예컨대 저자가 밝힌 바와 같이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사 활동은 일본 정부로부터 향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 조치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이규원의 검찰사 활동 이후 1882년 12월 16일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담은 유시(諭示)를 작성했는데 그는 “울릉도에 대해 조선 정부와 의정(議定)한 연월을 삽입해서 종래부터 조선에 속했으며 특별히 오늘날에 정한 것이 아님을 인증(引證)하고 울릉도의 위치를 명시하여 도항을 금하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나아가 이에 대해 1883년 3월 1일 일본의 태정대신(太政大臣)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앞선 이노우에가 상신한 문서를 승인했다.

한편 송도·죽도·송죽도 등의 명칭에 대한 이해는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사 활동에서 중요한 독도 인식의 한계로 작용했다. 만약 이규원이 독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면 울릉도검찰사로서의 활동이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이 단순히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사 활동에만 주목한 것이 아님은 모두에도 언급한 바 있다. 독도를 직접 다루지 않지만 이 책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의 기본이 담겨 있으므로 독도 연구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독도 관련 대중서 중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이규원의 인식은 기대와 달리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규원의 당시 인식의 한계가 활동 자체를 폄훼할 기제가 되지는 않는다. 검찰사 활동 이후 제시한 이주 정책은 이후 울릉도민의 독도 인식과 어업 등을 통한 독도 생활권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규원의 울릉도검찰사 활동 이후 이규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조선 정부는 본격적인 울릉도 이주 정책을 실행했다. 수토 혹은 쇠환으로 섬을 비워 백성을 통제하는 방식을 폐기하고 울릉도를 비롯한 인근 섬의 왕래를 허락함으로써 해양 영토의 활용 및 거주민의 자유로운 조업 활동의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이러한 울릉도 이주 정책은 조선이 일본에게 허락한

개항장에 울릉도가 포함되지 않은 당연한 사실을 인식하여 울릉도로 넘어오는 일본인의 처리를 조약에 기초하여 함으로써 섬에 대한 영토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곧 머지않아 제정·반포하게 되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도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규원의 관직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가 울릉도검찰사 활동 시기였음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 책은 기존 연구나 도서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이규원의 삶 전체와 그의 울릉도 여정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대체로 인물 연구는 대상 인물에 대한 객관성을 잃고 서술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경우 연구 대상에 대한 부정적 관점보다는 긍정적 관점으로 서술하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연구 대상에 대해 깊이 있게 천착하고 일상생활에서도 그 대상을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저자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한 서술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규원의 활동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양극단의 평가를 바라는 바는 아니나, 이규원의 인식 오류 문제에 대해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저자는 이규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규원의 인품과 백성을 위하는 성정이 본래 그러했겠지만 이러한 평가는 독자들에게 맡겨 두고 저자는 관련한 자료의 제시와 의미 부여에 치중했으면 어땠을까 한다.

이처럼 이 책은 기존 독도에 대한 시각에서 벗어나 시간 여행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구성과 내용 서술을 시도하면서 1882년 당시 조선의 육로와 풍경 그리고 울릉도의 인문지리적 재고찰을 꾀할 새로운 방식의 대중서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그 과정에서 다소 불필요한 내용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간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시대를 읽는 폭과 깊이를 넓게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디 이 책이 새로운 독도 이해의 시작점이 되고 더불어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이규원이 밟았던 조선 내지와 울릉도 풍경이 일본인에게도 소개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서평을 마친다.

영토·해양일지



영토·해양 일지

염태일 한림성심대학교

2024년	국내	국외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합참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과 감행을 탐지하고 대응했다고 발표 26일: 해군은 7년 만에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 도서 일대에서 K-9, 천무, 스파이크 전력을 운용해 해상사격훈련 실시 27일: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관측하고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공격 감행 4일: 넷플릭스가 <더 에이트 쇼> 자막에 동해를 일본 해로 잘못 표기한 것을 수정 7일: 중국 해양경비대 소속 선박 4척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을 항해하고 이 해역에 대한 "법 집행 노력"을 강화 표명 7일: 일본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영해를 침범했다고 발표하고 유감 표명 18일: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18~28일 10일간 동해 등지에서 40척가량의 함정과 20대가량의 해군 항공기들[장거리 대잠초계기 투플레프(Tu)-142M3, 일류신(IL)-38, IL-38N을 포함]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 돌입 20일: 일본 어선 4척이 20~24일 5일간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실시하고, 순찰선 여러 척이 순항 24일: 중국은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선박들을 몰아내고 불법 해양 활동 즉시 중단 및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고 촉구 26일: 북한은 '다탄두 개별목표 재진입체(MIRV)'로 일컬어지는 다탄두미사일 발사 및 성공 주장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2발을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하고 미일과 긴밀하게 공유 및 분석 중이라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북한이 새벽 5시경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포-11 2발 발사

영토·해양 일지

2024년	국내	국외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일: 외교부는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하자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 30일: 공군은 중국의 무인 정찰기 4 30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해 비행한 것을 식별하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 8일: 일본·필리핀이 남중국해 위협에 따른 상호파병 군사협정을 체결 10일: 중국 해경은 일본·필리핀 협정 이후 센카쿠열도 순찰을 실시 10일: 일본 해경은 중국 해경 순찰에 대응해 해경선을 급파 12일: 일본이 20년째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처음으로 한국을 파트너라고 지칭 25일: 미국 언론은 북한이 평안북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철로 확장 및 현대화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 30일: 중국의 무인 정찰기 우전(wz)-7 3대가 KADIZ에 진입해 이어도 북동쪽 해상을 비행 30일: 중국 무인 정찰기의 KADIZ 진입에 일본 항공자위대도 전투기를 출격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일: 국방부가 독도 표기 오류로 논란이 된 정신교육교재를 보완 8일: 합참은 북한 주민 1명이 서해 NLL을 넘어 귀순했다고 발표 12일: 서울지하철 역사(잠실역, 안국역, 광화문역) 3곳에 설치돼 있던 독도 모형이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철거 15일: 서울교통공사는 독도조형물을 철거한 역사 3곳에 10월 25일 '독도의 날'에 맞춰 새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발표 1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19~23일 4일간 국가비상대비태세를 위한 '24 을지연습'에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일: 일본은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발표 20일: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라디오 뉴스에서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중국 땅"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방송

2024년	국내	국외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 해군·해경은 동해에서 독도를 방어하는 동해영토수호훈련을 비공개로 실시 • 22일: 서울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이 지난 6월 철거되고 한국 전쟁 참전용사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배정 •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른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 • 25일: 대통령실은 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부정하며 선동하지 말라고 반박 • 26일: 한미 공군이 26~28일 3일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의 일환으로 서해 해상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 • 30일: 한국군의 독도방어훈련은 역대 최소 규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 • 30일: 공군은 중국 군용기의 KADIZ 무단 침범 횟수가 2018년 140회, 2019년 50회, 2020년 75회, 2021년 65회, 2022년 65회, 2023년 133회에 달한 것으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일: 일본은 한국군의 독도 정례 훈련에 대해 강하게 항의 • 26일: 중국 군용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 • 26일: 일본 각료가 중국 군용기의 일본 영공 침범과 관련해 항의 • 3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의 쿠릴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역사 왜곡이라고 비난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일: 해군은 동해영토수호훈련 규모 논란에 대해 '목적에 맞게 결정했다'라고 해명 • 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이 진행되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동맹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 • 5일: 해병대가 서해5도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과 천무 등 해상사격 훈련을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일: 북한은 4~9일 5일간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대량 살포 • 6일: 기시다 일본 총리는 6~7일 2일간 일정으로 방한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실시 • 6일: 중국 해경이 일본 총리 방한 일정에 맞춰 센카 쿠릴도 순찰 실시

영토·해양 일지

2024년	국내	국외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합참은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추적·감시했다고 발표 • 17일: 국군은 북한 주민 1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 NLL을 넘는 것을 포착, 귀순을 유도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발표 • 18일: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SRBM 수발을 포착해 분석 중으로 미일과 북한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발표 • 19일: 공군과 국토교통부가 여객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서해 하늘 군작전구역(MOA)을 축소하기로 결정 • 19일: 해경과 해군이 가을철 꽃게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 어선 차단을 위한 합동 물고기 기동훈련을 실시 • 25일: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독도 역사 홍보 행사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확인 • 29일: 배우 이시영이 독도에 방문하여 태극기를 든 사진을 SNS에 공개하고 일본인 누리꾼에게 악플 세례를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북한은 12일 아침 평양 일대에서 SRBM 수발을 발사 • 12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 •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 다수의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 • 12일: 러중이 한반도 동해 인근에서 실사격 훈련 '오션 2024(Ocean-2024)'을 실시 • 13일: 북한은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 • 17일: 북한 남성 주민 1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서해 백령도 인근 NLL을 넘어 귀순 • 18일: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SRBM 수발을 발사 • 18일: 유럽연합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 • 20일: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의 총재 후보들이 연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 • 26일: 미국 언론은 북한 서해발사장의 현대화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철거되었던 독도조형물이 보존 처리를 완료하고 전시를 재개 	

2024년	국내	국외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일: 서해 해경이 항공기와 대형경비 함정을 투입해 중국 어선 12척의 불법 어로행위를 차단 • 10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일본이 한국의 독도 해양과학조사를 총 75회 방해, 중국은 서해 이어도 주변에 조사선을 194회 출몰시켰다고 발표 • 14일: 합참은 북한군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 준비 정황을 포착 • 18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제15회 독도상 수상자로 '독도학술상'에 김수희 독도재단 교육연구부장을, 독도주권 수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독도사랑상'에는 김성민 남해정 보산업고 교사와 지적박물관을 선정 • 18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군, 동해어업관리단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회의를 개최 • 21일: 서울 여행박람회에 참가한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제공해 논란 • 2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독도의 날'을 맞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영토의 최동단, 독도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 • 25일: 경북 울릉도에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북한군은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서 폭파 작업을 준비하는 등 남북 연결 육로들을 차단하는 작업 실시 • 15일: 일본 어선은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실시했으며 일본 해경선도 배치 • 15일: 북한이 인천 서해5도 인근 해역을 영해로 편입시키기 위한 헌법 개정 실시 • 17일: 중국 해경이 센카쿠열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어선을 퇴거 조치했다고 표명

영토·해양 일지

2024년	국내	국외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 변화를 촉구 • 25일: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센트럴파크역에 독도라운지를 조성 •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 • 27일: 경상북도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 대비 예산을 삭감해 논란 • 31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일: 북한은 신형 ICBM을 발사하고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합참은 황해북도 일대에서 발사된 SRBM 수 발을 포착했으며 미일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발표 • 8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독도와 동해 북방해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경비함정을 찾아 상황 대비와 대응 태세를 점검 • 9일: 합참은 북한이 8~9일 2일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강력히 경고 • 9일: 경북도의회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도발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 • 10일: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첫날인 11월 10일 제2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개최 • 1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중국 산둥성 수색구조센터와 항공기 추락 사고를 가상한 해상 수색구조 통신 훈련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일본 언론은 지난 6월 중국 경비함 '해경 2901호'가 센카쿠열도 인근을 이례적으로 항해했다고 보도 • 5일: 북한이 미국 대선 직전 동해상으로 SRBM을 여러 발 발사 • 8일: 중국 해경이 센카쿠열도를 순찰했다고 표명 • 9일: 북한이 8~9일 2일간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 • 9일: 일본 시마네현은 오키노시마초 오키문화회관에서 열린 '독도 영유권 확립 운동 집회'를 실시하는 등 명백한 영토 도발 행위를 실시 • 10일: 북한의 최근 GPS 전파 교란 도발은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를 의식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 제기

규정 및 규칙

나

- 편집위원회 규칙
- 발행 및 심사규정
- 투고 요령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별첨】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편집위원회 규칙]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개정 2018. 04. 19.

제1조 본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영토·해양 관련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 소속기관 등의 제반 요인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 편집위원장은 재단 소속 직원 중의 1명을 편집간사로 지명하여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편집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

1.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 발간 전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영토해양연구』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영토해양연구』 게재 특집 및 일반 논문, 연구노트, 자료해제, 서평, 일지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및 심사위원 추천
 - 3) 논문심사 및 『영토해양연구』 출판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4) 기타 『영토해양연구』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주재하고, 『영토해양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4.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발행 및 심사규정)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10. 25.
개정 2020. 07. 22.

제1장 발행규정

제1조 『영토해양연구』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연구노트,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독도와 관련된 주제
2. 영토 및 해양과 관련된 주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제2조 『영토해양연구』는 6월 30일, 12월 31일 매년 2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타 학술지에 발표 또는 게재 신청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만약 타 학술지에 중복으로 게재 신청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영토해양연구』에 게재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아울러 해당 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제4조 제출 원고는 『영토해양연구』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규정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제5조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 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제2장 심사규정

제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신청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해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제7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논문표절방지시스템 검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관련 전공자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 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정 및 조치한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 가능	A	A	A
수정 후 게재	A	A	B
	A	A	C
	A	B	B
	B	B	B
	A	B	C
수정 후 재심	A	B	D
	A	C	C
	A	C	D
	B	B	C
	B	B	D
	B	C	C
게재 불가	A	D	D
	B	C	D
	C	C	C
	C	C	D
	C	D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영토해양연구』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영토해양연구』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투고 및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수정제의 및 게재 불가사유를 투고자에게 전자 우편으로 통보한다.

4.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차기 호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재심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2020.07.22. 개정)

제9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영토해양연구』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투고 요령)

제정 2011. 06. 30.
개정 2017. 04. 21.
개정 2017. 10. 25.

제1조(투고 규정 일반)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자는 투고원고,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영토해양연구』 온라인 제출 시스템(또는 메일(tas@nahf.or.kr))을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상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제2조(원고 작성요령)

1.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2.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4.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1,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5.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 예) 김동복,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 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7.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색일: 2014.12.17).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권),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研究』, 臺北: 中華經濟研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꺾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 허생 · 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 · 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울: 북앤피플.

5)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11.11. 규칙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

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 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실장,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과 『영토해양연구』 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건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 4. 본조사 실시 여부
-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

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인지를 고려
-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여 재심의·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인)

편집위원장

도시환 _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 실장

편집위원

강병근 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영 _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김제한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박한민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송규진 _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교수

심정보 _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윤유숙 _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편집간사

방제의 _ 동북아역사재단 콘텐츠팀



영토해양연구 Vol. 28

초판 1쇄 인쇄 2024년 12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4년 12월 31일

펴낸이 박지향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6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